나주의병사 3

자료편(구한말 나주의병)

2022

나주시
NAJU CITY

나주의병사 3

자료편(구한말 나주의병)

2022

나주시
NAJU CITY

차 례

1장 나주 출신 구한말 의병 명단

1. 개요 ····· 5

2. 서훈자 명단 ····· 7

3. 미서훈자 명단 ····· 8

2장 나주의병 관련 주요 문헌

1. 한국 문헌 ····· 17

2. 일본 문헌 ····· 22

3장 한국 문헌에 보이는 나주의병

1. 1896년 나주의병 ····· 25

1) 1896년 기우만이 나주의병에 보낸 통문 및 격문 ····· 25

2) 1896년 나주의병의 주도인물 ····· 38

2. 을사늑약 이후 나주의병 ····· 39

1) 나주의병의 격문과 통문 ····· 39

2) 나주 출신 의병의 판결문 ····· 61

3) 나주의병 관련 신문기사 ····· 82

4) 나주 출신 의병장의 사형집행 ····· 98

5) 나주 출신 의병장「金準傳」 ····· 99

4장 일본 문헌에 보이는 나주의병

1.『暴徒에 관한 編冊』에 보이는 나주의병 ····· 107
1)『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 의병편 Ⅰ ····· 107
2)『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 의병편 Ⅱ ····· 113
3)『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 의병편 Ⅲ ····· 133
4)『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 의병편 Ⅳ ····· 145
5)『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 의병편 Ⅴ ····· 146
6)『한국독립운동사』자료 13 : 의병편 Ⅵ ····· 159
7)『한국독립운동사』자료 14 : 의병편 Ⅶ ····· 202
8)『한국독립운동사』자료 15 : 의병편 Ⅷ ····· 218
9)『한국독립운동사』자료 16 : 의병편 Ⅸ ····· 247
10)『한국독립운동사』자료 17 : 의병편 Ⅹ ····· 256
11)『한국독립운동사』자료 18 : 의병편 Ⅺ ····· 263
12)『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 : 의병편 Ⅻ ····· 263
2.『暴徒史編輯資料』에 보이는 나주의병 ····· 276
3.『陣中日誌』에 보이는 나주의병 ····· 280
1) 1907년 ····· 280
2) 1908년 ····· 282
3) 1909년 ····· 284
4.『第二巡査隊에 관한 編冊』에 보이는 나주의병 ····· 290
5.『全南暴徒史』에 보이는 나주의병 ····· 308
6.『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에 보이는 나주의병 ····· 317

참고문헌 / 318

1장 나주 출신 구한말 의병 명단

1. 개요

『나주의병사』 3권은 구한말 나주의병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은 책이다. 1896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 전후에 활약했던 나주 출신 의병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이 자료의 지역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현재 나주시 지역이다.

구한말 의병의 인적 범위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의병과 비록 서훈을 받지 않았지만 객관적 자료로써 의병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나주 출신 의병 명단〉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서훈자 45명(출신지 불명 가운데 나주 출신이 명백한 경우 포함)과 객관적 자료에서 의병활동이 확인되지만 아직 서훈이 이루어지지 못한 195명을 미서훈자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 자료'라 함은 원칙적으로 의병활동 시기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960년 이전에 생산된 자료로서 서훈의 근거 또는 참고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참고로 독립유공자 훈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7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서훈자의 공훈내용은 1권 3부 3장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나주의병 관련 주요 문헌〉은 크게 한국 문헌과 일본 문헌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한국 문헌은 의병활동 시기부터 1960년 이전에 생산된 자료로서 의병이나 한국인이 작성한 것으로, 서지사항과 나주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다. 일본 문헌은 일제의 통치기관과 군대 및 경찰이 편찬하거나 간행한 자료로서, 의병항쟁 시기에 작성되거나 그 직후에 간행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 문헌 역시 생산(간행) 시기순으로 간단한 서지사항과 나주의병 관련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미서훈자 명단〉의 말미의 전거 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약칭으로 정리하였다.

미서훈자 명단 주요 자료의 약칭표

(가나다순)

자료명	약칭	저자 / 발행기관	간행년도
(14연대)진중일지 1-3	진중1-3	토지주택박물관	2010
난파유고	난파	정석진	1913
독립운동사자료집 2-3	독운자2-3	독립운동사편찬위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별집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봉서봉남일기	봉남	변만기	1979
송사집	송사	기우만	1979
수형인명부	수형	국가기록원 소장	
양원유집 하	양원하	신기선	1981
염재야록	염재	조희제	1934
전남폭도사	폭도사	전라남도 경무과	1913
제2순사대에 관한 편책	제2	내부 경무국	1908
조선폭도토벌지	토벌지	조선주차군사령부	1913
증보재판 호남절의사 하	절의사	김정상	1961
통감부문서1-10	통감부	통감부;국사편찬위원회	1998~2000
판결문	판결문	국가기록원 소장	
폭도사편집자료	편집자료	내부 경무국	1909
폭도에 관한 편책;한국독립운동사 자료8-19	자료8-19	국사편찬위원회	1979~1990
한국독립운동사 1	독운사1	국사편찬위원회	1965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의병편	의병편	박성수 편	1993
해산창의록	해산	전해산	1961
호남삼강록 天	삼강록	기우채 등 50인	1952
호남순열모의록	모의록	포충사	1946
호남순열사실기	실기	포충사	1946
호남절의록 下	절의록	광주향교	1964

〈한국 문헌에 보이는 나주의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주의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위주로 소개하되, 자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였다. 편의상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였다. 다만, 비슷한 내용이 여러 자료에 실려 있는 경우 대표적인 자료로 판단되는 자료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전거는 해당 자료의 말미에 달았다. 〈일본 문헌에 보이는 나주의병〉에서는 나주의병 관련 내용을 자료별로 정리하였다.

2. 서훈자 명단

(훈격별 가나다순)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생몰년도	훈격
1	김 율(金 聿)	金律//靑峰	1881~1908	독립장(1995)
2	김 준(金 準)	金太仲/泰元/竹峰	1870~1908	독립장(1962)
3	박사화(朴士化)	朴士過,朴士弘//平南	1880~1912	독립장(1998)
4	조정인(趙正仁)		1872~1909	독립장(1977)
5	강달주(姜達周)		1880~1960	애국장(1990)
6	곽재구(郭在九)		1889~1932	애국장(1990)
7	권영회(權寧會)	權澤,權瓚,鄭贊會/月山/	1885~1910	애국장(1990)
8	김교풍(金敎豊)	/啓善/老石	1857~1908	애국장(1996)
9	김도숙(金道淑)	金濟憲/濟現/南湖	1872~1943	애국장(1990)
10	김석현(金晳鉉)	金鍾錫//	?~1896	애국장(2003)
11	김유성(金有星)	金有聖,金庾聖//	1868~1910	애국장(2016)
12	김창균(金蒼均)	金蒼坤/文華/	?~1896	애국장(1995)
13	나성화(羅成化)	羅聖化/相集/鶴山	1881~1910	애국장(1990)
14	박도집(朴道集)		1864~?	애국장(2015)
15	박민홍(朴民洪)	玟洙,憲洙,明洪//	?~1909	애국장(1991)
16	박여홍(朴汝洪)	憲陽/陽洙/	?~1909	애국장(1991)
17	박응천(朴應天)		1887~1956	애국장(2001)
18	박인찬(朴仁贊)		1878~1910	애국장(2000)
19	송석래(宋錫來)	/京煥,敬煥/西齋	1876~1910	애국장(1996)
20	윤영채(尹榮采)	/孝源/雪松	1886~1908	애국장(1991)
21	이행순(李行順)		1888~1924	애국장(2011)
22	임도돌(林道乭)		1887~1910	애국장(2000)
23	임영화(林永化)		1884~1910	애국장(2000)
24	전예중(全禮中)		?~1909	애국장(2014)
25	정석진(鄭錫珍)	/台完/蘭坡	?~1896	애국장(2010)
26	최광현(崔匡鉉)	/正汝/	1854~1909	애국장(2010)
27	최병현(崔炳鉉)	/正煥/	1863~1909	애국장(2010)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생몰년도	훈격
28	최우평(崔羽平)	崔友平/鍾翼/後槐	1878~1908	애국장(1990)
29	최윤룡(崔潤龍)	/應天/松坡	1884~1909	애국장(2010)
30	최택현(崔澤鉉)	/正滿/	1862~1909	애국장(2010)
31	홍승민(洪承泯)	洪承學//錦松	1872~1908	애국장(1991)
32	황견중(黃堅仲)		(1862)~1909	애국장(1991)
33	강판수(姜判秀)	姜判水//	1886~1925	애족장(2013)
34	서상국(徐相國)		1879~1944	애족장(1990)
35	염원숙(廉元淑)		(1878)~미상	애족장(2017)
36	오덕홍(吳德弘)	/丙洙/	1885~1909	애족장(1997)
37	이민영(李敏英)		1879~미상	애족장(2013)
38	이재대(李載大)	/福南,福男,奉南/	1885~1932	애족장(1990)
39	장용삼(張用三)		1885~1919	애족장(2013)
40	정태인(鄭泰仁)	/仁勉/曲庵	1874~1945	애족장(2016)
41	최봉관(崔鳳官)	崔奉官//	1880~1919	애족장(2008)
42	박근욱(朴根郁)	点林, 点五/元實/	1838~미상	건국포장(2022)
43	박화실(朴化實)	二五, 贊林/(和實)/贊郁	1839~미상	건국포장(2022)
44	임성근(林成根)		1868~미상	건국포장(2010)
45	김화백(金華白)		1843~미상	대통령표창(2003)

3. 미서훈자 명단

(성명 가나다순)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1	강응선(姜應善)		47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2	강치덕(姜致德)		39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3	곽용욱(郭用旭)		31	1909년 폭동죄로 태80	수형
4	김경포(金敬泡)		29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7
5	김계화(金啓化)		35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7
6	김계환(金桂煥)		35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77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7	김군칠(金君七)			김율의진 활동	자료9-497, 독운자2-699
8	김기준(金奇俊)		26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9	김명서(金明瑞)		33	백목상, 1909년 김동수의진 활동	자료14-641-642
10	김병옥(金炳玉)			1908년 전해산의진 활동	별집1-696-697
11	김복동(金福東)			1909년 조경환의진 동몽집사로 활동	독운사1-681-682
12	김봉옥(金鳳玉)		18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13	김봉채(金奉采)		26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78
14	김봉한(金鳳寒)		32	1909년 강도/폭동죄로 징역7년	수형
15	김삼화(金參化)		30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16	김상민(金相潤)	//剛齋		1908년 김준/심남일의진 활동	삼강록-40a
17	김석균(金錫均)			1896년 나주의병 활동	양원하-312, 독운자3-74
18	김선호(金善鎬)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3
19	김성군(金成君)		27	1909년 박민수 (민홍)의진의 사령(使令)	자료13-136
20	김성률(金成律)		46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3
21	김성옥(金成玉)		27/ 2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22	김성일(金成日)		39	1910년 폭동죄로 징역1년	수형
23	김순기(金順基)		33	1909년 심남일의진 활동	자료15-758
24	김순서(金順瑞)		30	1908년 내란죄로 유3년	수형
25	김영구(金永口)		37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26	김영수(金永守)		26	1910년 폭동죄로 징역2년	수형
27	김오봉(金五鳳)		33	심남일의진 활동	자료15-758
28	김옥현(金玉玄)		31	김율의진 가맹명부, 1908년 김태원의진 후군장으로 활동	제2(1908.4.21. /5.30), 폭도사-43,49, 자료9-190
29	김용기(金龍基)		23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30	김용술(金用述)		23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31	김원여(金元汝)		29	1910년 폭동죄로 징역2년	수형
32	김은식(金殷植)			1909년 박사화의진 활동	진중3-198
33	김인찬(金仁贊)		28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34
34	김재수(金在洙)		41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8
35	김재환(金在煥)			향리, 1896년 나주의병 군무	독운자3-75
36	김점수(金占水)		32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37	김정태(金正泰)		23	1908년 김태원의진 활동	자료11-261
38	김제홍(金濟鴻)			1908년 족형 濟現과 같이 심남일의진 활동중 전사	삼강록-40b
39	김치범(金致範)		43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40	김태옥(金太玉)		30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61
41	김판암(金判岩)		25	1908년 전해산의진의 포수	진중3-89
42	김판진(金判進)		27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43	김현진(金賢鎭)		32	1908년 최한룡의진 활동	통감부2-162-166
44	김형윤(金亨允)		28	1909년 의병활동	자료13-713
45	나경문(羅京文)		33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46	나경성(羅經成)			주서, 1896년 나주의병 활동	독운자3-75,77
47	나경식(羅璟植)			1896년 나주의병 활동	독운자3-67
48	나기옥(羅奇玉)		24	1909년 폭동죄로 태30	수형
49	나내춘(羅乃春)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50	나명환(羅明煥)			1908년 의병활동	자료10-304
51	나병두(羅秉斗)			유생, 1896년 나주의병 참모	독운자-75
52	나봉일(羅鳳一)		30/ 21?	1909년 의병활동, 특수노동자 징발	자료15-802, 자료17-483
53	나순홍(羅順弘)		40	1909년 폭동죄로 징역3년	수형
54	나인권(羅仁權)		24	1909년 폭동죄로 태80	수형
55	나창준羅昌俊)		27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4-192
56	나태환(羅台煥)	/文三/ 竹隱		김준의진 군수 및 의병 조달	절의사-498-499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57	나화욱(羅華旭)			1908년 의병활동	자료10-304
58	노수룡(盧受龍)		1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59	노쌍동(盧雙童)	/炳友/ 一堂	30	1908년 심남일의진 후군장 활동	제2(1908.9.27.), 자료14-633, 15-308, 19-681, 독운사1-686-687
60	류경채(柳京彩)		32	1909년 폭동죄로 태80	수형
61	박경선(朴京先)		28	1909년 폭동죄로 징역2년	수형
62	박기순(朴基順)		25	1909년 심남일의진	자료15-758
63	박명진(朴明辰)			1909년 전해산의진 활동	별집1-696-697
64	박문기(朴文基)		31	1909년 심남일의진 활동	자료15-758
65	박상수(朴相洙)	朴祥壽//	32	1909년 의병활동	독운자3-70, 자료15-777
66	박석순(朴石順)		38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77
67	박석주(朴錫柱)		27	1909년 폭동죄로 징역3년	수형
68	박성채(朴成彩)		28	1909년 조경환의진 활동	자료15-772,802
69	박용식(朴鏞植)			1909년 조경환의진의 도통대장 활동	매천-500, 자료13-679, 자료14-584, 588, 독운사1-681, 682,703,704,
70	박운기(朴雲起)		27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71	박재홍(朴在洪)		38	1909년 의병활동	자료19-662
72	박채홍(朴采弘)		32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5, 독운자2-577-578
73	박춘화(朴春化)		31	1909년 의병 활동	자료14-367
74	박태만(朴泰萬)		27	1910년 강도모살/ 폭동죄로 종신징역형	수형
75	박태삼(朴泰三)		28	1909년 폭동죄로 태80	수형
76	변홍기(卞洪基)		33	1908년 내란죄로 유7년	수형
77	서석진(徐碩振)		26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3
78	서태화(徐太華)		20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3
79	설재근(薛在根)		34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9
80	손상문(孫商文)			향리, 1896년 나주의병 군무	독운자3-75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81	손신흥(孫信興)			1896년 나주의병의 군무	독운자3-75
82	손응설(孫應契)			전 현감, 1896년 나주의병의 참모	독운자3-75
83	송영호(宋泳浩)		20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6
84	송종희(宋鍾熙)			유생, 나주의병 서기	독운자3-63.75,76
85	송창삼(宋昌三)		31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86	승갑표(昇甲杓)			향리, 1896년 나주의병 문서전달	독운자3-70,74
87	시귀성(柴貴成)		22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88	신가술(申可述)	申基述?	31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신기술과 동일인 여부
89	신경광(申景光)		23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8
90	신삼봉(申三奉)		25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34
91	신재화(申在化)		29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92	신철순(申喆順)		3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93	심형일(沈亨一)		33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94	안장원(安長元)		22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9,209
95	양경춘(梁京春)		45	1909년 폭동죄로 태30	수형
96	양덕원(梁德元)		22	1909년 폭동죄로 태70	수형
97	양인환(梁仁煥)			1896년 나주의병 군무	독운자3-75
98	양지술(梁志述)		32	1910년 폭동/ 강도죄로 징역2(3)년	수형
99	양평옥(梁平玉)		26	1909년 폭동죄로 태30	수형
100	염효진(廉孝鎭)			유생, 1896년 나주의병의 군량관	독운자3-75
101	오계수(吳桂洙)			유생, 1896년 나주의병 활동	독운자3-87
102	오귀동(吳貴童)		23	1909년 폭동죄로 태80	수형
103	오득환(吳得煥)			향리, 1896년 나주의병 문서전달	독운자3-70
104	오승환(吳勝煥)	/仁範/ 蓮汀		김준의진에 군자금 제공	절의록-76
105	오용섭(吳用燮)		27	1908년 전해산의진 활동	진중3-96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106	오원규(吳元圭)		34	1910년 폭동죄로 징역3년	수형
107	오인섭(吳寅燮)	/子善/		1908년 사호전투 순절	모의록, 실기
108	오일선(吳一先)		24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8
109	오재수(吳在洙)			나주향교 부교임, 1896년 나주의병 활동	독운자3-67,73,76, 폭도사-15
110	오재화(吳在化)		50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5
111	오정규(吳貞圭)		32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8
112	오정수(吳正洙)		2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34
113	오칠봉(吳七鳳)		20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34
114	오학선(吳鶴善)			유생, 1896년 나주의병 활동	독운자3-77
115	원재윤(元在允)		16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116	유경선(柳慶善)			전순필의진 활동, 전북 고산 출신 동명이인 서훈자 있음	자료17-474
117	유기영(柳畿永)	柳紀淵?//		1896년 나주의병의 수성장	독운자3-70,75
118	유덕일(劉德一)		43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9
119	유문익(柳文益)		33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26
120	유정렬(柳正烈)		20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8
121	윤거현(尹去玄)		24	1909년 박성실의진	자료15-513
122	윤대연(尹大淵)		23	1909년 김도숙의진 활동	자료15-843
123	윤덕신(尹德信)			1908년 김율의진 및 조경환의진 활동	자료9-187, 독운자2-397
124	윤상형(尹相馨)	尹相香//	23	전 주사, 1908년 김율의진 활동 1909년 폭동/강도죄로 징역7년,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7, 자료13-227,248, 자료16-528, 수형
125	이갑삼(李甲三)			1896년 나주의병 활동	내각래거안(조회26호)
126	이경운(李京云)		46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127	이경춘(李敬春)		52	1909년 폭동죄로 징역3년	수형, 의병운동2- 193
128	이관호(李官鎬)		25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129	이대형(李大亨)		34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130	이동규(李東奎)		30	1909년 오정실의진 활동	자료15-806
131	이동연(李東衍)	/尙春/		김준의진 활동	절의록76
132	이민상(李敏尙)		48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7
133	이병수(李炳壽)			유생, 1896년 나주의병 문서작성	독운자3-68,73,76,81,88, 금성정의록 저술
134	이복규(李福奎)		28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7
135	이봉권(李鳳權)		54	1909년 의병활동 중 체포	자료19-660
136	이봉순(李鳳順)		41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9
137	이사언(李士彦)		35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138	이성오(李成五)		34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139	이승수(李承壽)			전 사과, 1896년 나주의병 중군장	독운자3-75
140	이양원(李良元)		2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141	이원길(李元吉)		18	1908년 폭동죄로 태100	수형
142	이원서(李源緖)			유생, 1896년 나주의병 군량관	독운자3-70
143	이윤삼(李允三)		25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144	이응원(李應元)		30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9
145	이재윤(李在允)		29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146	이채일(李采一)		25	1908년 전해산의진 활동	진중3-96
147	이태경(李兌京)		29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90
148	이태권(李泰權)		16	1908년 김태원의진 활동	제2(1908.4.25)
149	이태수(李太洙)	李左洙 -오기	27	1909년 박민수(민홍)의진 선봉장, 1909년 폭동죄로 태30	수형, 독운사1-660-661, 자료13-136-137
150	이태조(李泰祚)			나주 금안동 순절	실기, 모의록
151	이택규(李澤圭)			1908년 의병 활동	자료10-304
152	이판석(李判石)		26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153	이판수(李判須)		23	1909년 박성실의진 활동	자료15-513
154	이학상(李鶴相)			전 주서, 1896년 나주의진 의병장	독운자3-67, 난파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155	임권중(林權仲)		56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77
156	임긍규(林肯圭)			유생, 1896년 나주의병 문서전달	독운자3-70
157	임노술(林魯述)		18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34
158	임맹옥(林孟玉)		24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7
159	임상오(林尙午)		29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160	임장택(林長澤)		27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9
161	임중옥(林中玉)		37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77
162	임홍규(林鴻圭)			1896년 나주의병 서기	독운자3-75
163	임화희(林化喜)		26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164	장길한(張吉翰)			1896년 나주의병 군무	독운자3-75
165	장동문(張東文)			1908년 의병 활동	자료10-304
166	장봉삼(張鳳三)			향리, 나주의병 군무	독운자3-75
167	장성삼(張成三)	張志禹 /成三/ 南岡	35	1908-1909년 김준의진 등 활동, 1909년 폭동/강도죄로 징역5년	수형, 절의록-87
168	장익수(張益守)	張益洙//	41	1909년 폭동죄로 징역3년	수형, 자료15-142,342
169	정계문(鄭啓文)		36	1908-9년 심남일의진 및 김도숙의진 활동	자료15-843
170	정막동(鄭莫童)		28	1910년 폭동죄로 징역2년	수형
171	정선화(鄭先化)		30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172	정순일(鄭淳一)	/致吾/ 南松		1908년 능주 화옥전투 순절	실기, 모의록
173	정흥숙(鄭興淑)		31	1909년 의병활동	수형, 자료19-662 (정영숙은 오기)
174	조군언(趙君彦)		1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175	조도현(趙道玄)		48	1909년 김도숙의진 활동	자료15-843
176	조만석(趙萬石)		1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22
177	조응률(曺應律)		30	1908년 내란죄로 유3년	수형, 자료9-503

연번	이름(한자)	이명/자/호	연령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자료
178	조창선(趙昌善)		33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1, 조찬성과 동일인 확인 필요
179	주낙갑(朱洛甲)		25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3
180	최덕문(崔德文)		24	1910년 폭동죄로 징역2년	수형
181	최동석(崔東石)		1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802
182	최동현(崔東鉉)		29	1909년 의병활동	자료15-777
183	최성진(崔成辰)		32	1908년 조정인의진 활동	자료11-397
184	최중빈(崔仲彬)		27	1909년 김도숙의진 활동	자료15-843
185	최학중(崔學仲)		22	1909년 폭동죄로 징역5년	수형
186	추낙범(秋洛凡)		28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6
187	추명환(秋明煥)		26	김율의진 가맹명부	자료9-185
188	추몽구(秋夢九)		22	1909년 박성실의진 활동	자료15-513
189	한두환(韓斗煥)		29	1909년 권택의진 활동	자료15-844
190	한세환(韓世煥)		28	1909년 나주 덕룡산 활동	자료13-414
191	한종선(韓從先)		28	1910년 폭동죄로 징역2년	수형
192	한학선(韓學善)			능주전투에서 순절	실기, 모의록
193	홍승용(洪承榕)	/應元/ 獨靑		1908년 심남일의진 활동하다 영암에서 순절	절의록-94, 실기, 모의록
194	홍승희(洪承戱)		35	1909년 능주 활동	자료14-367
195	황명오(黃明午)		26	1909년 심남일의진 활동	자료15-758

2장 나주의병 관련 주요 문헌

1. 한국 문헌

제목	저자	생산시기	주요 내용	비고
司法稟報	法部	1894~1907	조선말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법부아문으로 보낸 보고서와 질품서 등을 모아 놓은 자료. 1896년 나주의병에 가담한 동학농민군의 일부를 확인할 수있는 자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별계·사법품보』(2018)로 국역, 간행.	규장각 소장
奉使日記	申箕善	1896	1896년 2월 남로선유사에 임명된 신기선이 경기도와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 와서 선유하는 과정을 일기체로 정리한 자료로서 1896년 나주의병의 해산과정이 기록되어 있음. 특히 나주의병을 주도한 인물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陽園 遺集-신기선 전집』下(아세아문화사, 1981) 수록.	
錦城正義錄 (丙編)	李炳壽	1896	1896년 나주의병의 결성 과정, 주도 인물, 활동 내용 등을 가장 상세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 이병수의 유고집『謙山遺稿』(20권10책)에 들어 있음.『독립운동사자료집』3(1971)에 번역, 수록되었고, 1991년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에서 번역, 간행되었음.「역주 겸산유고」(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7)와『한국근대문집선간3-겸산유고』(한국학호남진흥원, 2020)의 표점 영인본을 참고할 수 있음.	
鳳棲·鳳南日記	邊相轍 邊萬基 외	1896	1896년 장성과 나주에서 일어난 의병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성의병과 나주의병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 나주의병과 장성의	

제목	저자	생산시기	주요 내용	비고
鳳棲·鳳南日記	邊相轍 邊萬基 외	1896	병이 연합하는 과정, 나주의병의 주모자 중에 김창균 김석현 부자의 순국과정을 전해주는 기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79년 간행.	
判決文	法院	1906~1910	1906년 이후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의병들의 판결문으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음. 대부분의 판결문은『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1(1974)에 번역, 수록.『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의병운동 1·2』(국가기록원, 2011)에 일부 판결문 수록.현재 국가기록원은 새로이 발굴한 판결문과 요약번역문,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나주출신 권택 조정인 의병장 등 판결문 9건이 들어 있음.	
新聞		1907~1910	주로『대한매일신보』와『황성신문』등에 게재된 나주의병 관련 기사가 적지 않아 나주의병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자료.『나주근대백년사』(목포대박물관 · 나주시, 1997)에 상당수의 관련 기사 발췌 수록. 한편,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간한『독립신문』에도 김태원 등이 들어 있음.	
舊韓國官報		1907~1910	관보의「司法」,「告示」,「彙報」란에 의병의 재판결과, 유배, 사면, 사형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나주출신 의병의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陣中日記	全海山	1908~1909	바다와 산을 넘나들며 의병항쟁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담아 해산(海山)이라 자호한 전기홍의 진중일기. 다만, 결락된 부분이 많은 편인데, 원래 5책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3책이 분실되었다고 함. 작성 시기는 1908년 음력 8월부터 1909년 윤 2월까지 약 7개월간의 일기임. 의진간의 연합 문제와 나주에서의 활동 내용을 전해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독립운동사자료집』2(1970)에 번역, 수록.	순천대학교 박물관 소장
松沙先生文集拾遺	奇宇萬	1909~1916	기우만의 문집인『松沙集』(1931) 간행시 제외되었던 유문 중에 주로「호남의사열전」과「연보」등을 수록한 자료로서 나주의병과 관련하여「김준전」이 들어 있음.『독립운동사자료집』2(1970)와『노사학파가 기록한 호남의병열전』(상상창작소봄, 2020)에 들어 있음.	

제목	저자	생산시기	주요 내용	비고
奇參衍實記		1909~1940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한 기삼연 의병장 관련 자료가 풍부하며, 의진의 결성과 활동내용을 전함. 노사학파 기우만의 「호남의사열전」과 오준선의 「의병전」 수록, 그 가운데 나주출신 「김준전」이 들어 있음. 장성 거주 奇宇采 소장본을 조선사편수회가 수집하여 1940년에 필사하여 전함. 해방후 『省齋奇先生擧義錄』(1946;1961)으로 간행되었고, 1990년 번역 간행. 『성재기삼연선생전』(기호원 편, 한국문화사, 1990) ; 『노사학파가 기록한 호남의병열전』(상상창작소봄, 202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竹峰靑峰事蹟		1909~1940	기삼연이 결성한 호남창의회맹소의 핵심인물로 활동한 김준 김율 형제 의병장에 관한 자료. 김준·김율의 제문 만사 전 행장 등이 들어 있음. 김준·김율 형제의 의병활동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 나주 거주 金聖一 소장본을 조선사편수회가 수집하여 1940년에 필사하여 전함. 『義重泰山』(죽봉김태원의병장기념사업회, 1998)에 수록.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統監府來去案(제12책)	議政府	1910	한말의병 122명의 재판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데, 성명 주소 나이 적용죄목 형량 등을 파악할 수 있음. 전라도 출신 52인 중에 나주출신 5인(임영화 박인찬 임도돌 김유성 박사화)의 재판 결과가 들어 있음. 『統監府來文』(제11책)과 같은 내용.	규장각 소장
蘭坡遺稿	鄭錫珍	1913	흔히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으나, 정석진이 1896년 나주의병의 핵심인물로 활동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함. 4권1책으로 1913년에 간행된 목활자본. 나주의병의 활동 내용과 1896년 음력 3월 11일 정석진이 해남에서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아울러 그를 추모한 시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1896년 나주의병 당시 정석진의 활동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정석진과 蘭坡遺稿』(순천대 지역개발연구소, 2010) 및 김옥경, 「역주 난파유고」(전남대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2015)를 참고할 수 있음.	
義兵傳	桂琫禹	1920	전국적으로 활약한 의병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호남출신 의병장 25인이 소개되어 있음. 그 중에 나주 출신 의병장으로는 김태원이 들어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인 『獨立新聞』(상해) 수록.	

제목	저자	생산시기	주요 내용	비고
後石遺稿	吳駿善	1934	노사 기정진의 제자로서 기우만과 동문수학한 유학자 오준선의 유고집. 기삼연 고광순 김준 전해산 등 4인의 의병전을 수록하여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간행하여 금서처분을 받았던 문집. 하지만 오준선이 저술한 의병전은 비밀리에 필사되어 『기삼연실기』 및 『죽봉청봉사적』 등으로 전해졌음. 『독립운동사자료집』 2(1970) 및 「호남의병장열전」(상상창작소봄, 2020)으로 번역, 간행.	
念齋野錄	趙熙濟	1934	주로 전라도에서 활동한 의병장 14인의 전기와 각종 항일 상소와 시문, 격문 등을 수록함. 일제강점기에 저술하는 과정에서 일제 경찰의 심한 고문을 받은 후 자결했으며 비전한 유고를 해방 후에 간행. 나주의병과 관련하여 「김준전」 수록. 『염재야록』(임실 回陽齋, 1950) 및 『염재야록』(고려대 역사연구소, 2017)으로 번역, 간행.	
盡至錄	沈南一	1938?	남도 제일의 의병장을 표방하여 남일(南一)이라 자호한 심수택(沈守澤)의 의병 활동을 전해주는 자료. 심남일 의진의 서기 廉元淑(나주 출신)의 자료에 의거하여 정리된 자료로 전하는데,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편집한 필사본. 「접전일기」를 비롯한 나주 출신 박사화 권택 의병장의 활약, 나주지역 전투 기록 등이 들어 있음. 『독립운동사자료집』2(1970)에 번역, 수록.	필사본
倡義將 吳公行錄	吳成述	1945	오성술 의병장의 집안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찬술한 행록과 만사 등을 수록한 자료. 오성술 의병장의 의병 활동을 전해주는 자료로서 「倡義將吳公行錄」(吳龍根, 1934), 「吳聖述略曆」(柳秉汶), 「輓狀」(吳弼善) 등이 실려 있음. 오성술은 현재 광주광역시로 편입된 옛 나주 삼도면 출신 의병장.	필사본
後柏堂遺稿	吳泳瓚	1946	김준의진에서 활동한 함평출신 오영찬의 의병활동을 전해주는 자료. 오영찬의 가장 행장 등과 김준을 추모하는 제문, 그리고 「軍中日記」 등이 들어 있음. 「군중일기」의 경우 일지 정리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목활자본
雪松尹 公實錄	尹榮采	1946	보성의 안규홍의진에서 활동한 나주출신 윤영채의 의병 활동을 전해주는 자료로서 「尹烈士傳」(宋光世, 1946), 「大原寺被害實錄序」(裵玄基,	

제목	저자	생산시기	주요 내용	비고
雪松尹 公實錄	尹榮采	1946	1945) 등이 실려 있음. 해방 직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영채가 1908년 4월 보성 대원사전투에서 순국하는 과정을 알 수 있음.	필사본, 포충사 소장본
湖南殉 烈慕義錄	褒忠祠	1946	호남의 순국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결성된 慕義契와 慕義碑 건립과정에 관한 제반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 호남 출신의 대표적 순국열사 약 60인의 행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나주의병과 관련하여 김준 김율 최종익 권택 오성술 박민홍 나상집 김도숙 홍승학 김교풍 10여 인이 들어 있음.	필사본
湖南殉 烈士實記	褒忠祠	1946	해방 직후 포충사 유림의 주도로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순국열사 약 60인의 행적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 또한 1951년에 건립한 호남순국열사비문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음. 나주의병으로 김준 김율 형제를 비롯한 10여 인이 포함되어 있음.	필사본
南湖纂錄	金道淑	1948	심남일의진의 도통장으로 활동한 김도숙(자-濟鉉)의 활동을 전해주는 자료. 이 자료의 「거의일기」는 심남일의 의병 활동을 기록한 『盡至錄』과 거의 유사함. 그리고 1919년 만세시위를 도모한 내용과 김도숙에 관한 제문 가장 행장 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음. 해방 직후 남평향교를 중심으로 그의 의병활동을 선양하기 위한 왕복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김도숙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필사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의병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에 「거의일기」가 들어 있음.	
湖南三綱錄 (天)	奇宇采 외	1952	장성 유림 기우채 김기환 등 약 50여 명이 편찬한 자료. 원래 『호남삼강록』(9권8책)은 1903년에 편찬되었는데, 기우채 등이 1952년에 간행한 후 1957년에 중간한 자료. 한말 호남의병 약 70인의 전기를 소개하는 자료. 나주의병과 관련하여 김준 의병장 등 10여 인이 포함되어 있음.	
海山倡義錄	전해산	1961	나주를 비롯한 전남 서부지역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한 전해산의 유고집. 전해산의 의병 관련 문서와 시 행장 제문 만사 등이 수록된 자료로서 나주 출신의 김준 권택 오성술 의병장과 협력한 내용뿐만 아니라 나주에서의 의병항쟁, 영산포헌병대에서의 옥중생활을 살필 수 있는 자료.	石印本

제목	저자	생산시기	주요 내용	비고
湖南節義錄 (下)	광주 향교	1964	조선 정조대에 간행한 『호남절의록』(1799)을 보완하여 조선 태종대 義蹟을 시작으로 광주학생운동 참여자까지 수록한 자료로서 국역본. 〈하권〉에 한말 호남의병 약 100인의 전기가 소개되어 있으며, 나주의병과 관련하여 김준 의병장 등 10여 인이 들어 있음.	

2. 일본 문헌

제목	편찬기관	편찬시기	주요 내용
駐韓日本 公使館記錄	주한일본 공사관	1895~ 1896	1895년 이후의 의병활동과 일제의 대의병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참고되는 자료. 나주의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음.
統監府文書	통감부	1906~ 1910	통감부 개설 이후의 의병동향과 일제의 대의병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나주의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1909년 전후 나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과 그가 거느린 의병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은 『폭도에 관한 편책』에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暴徒에 관한 編冊	내부 경무국	1907~ 1910	1907-1910년 사이에 발생한 일제 군경과 의병 간의 전투일지.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자료를 번역하여 간행(『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19 義兵篇 Ⅰ-ⅩⅨ 전12책〉, 1979-1990). 이 자료에는 체포된 의병장의 신문 조서, 격문과 통문, 귀순자 명단,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의 전개와 결과 등 일제의 의병 진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한말의병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14연대가 작성한 『진중일지』와 중복되는 내용도 적지 않음. 나주지역에서 전개된 의병활동의 파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료.
陣中日誌	보병 제14연대	1907~ 1909	일본 보병 제14연대가 작성한 의병진압 전투일지. 총 14책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1907년 7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약 2년간 제14연대는 의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주로 영남 및 호남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자료. 나주출신의 의병장 김준 김율 형제, 박사화, 박민흥, 나성화 등이 전개한 항일투쟁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토지주택박물관에서 구입하여 『진중일지』(전3책, 2010)로 영인, 간행.

제목	편찬기관	편찬시기	주요 내용
暴徒檄文		1907~1910	1907~1910년 사이에 전국의 의병들이 배포한 격문이나 통문을 수집, 정리한 자료. 일제 당국은『暴徒檄文』을 5집까지 간행했는데, 규장각에 소장된 4집을 제외하고 일본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총 107건의 격문 통문 광고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의병의 창의 이념, 활동 방향,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호남의병이 배포한 격문류가 2/5를 차지하는데, 나주출신 의병장 권택 박용식 박사화의 격문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에서는『秘 暴徒檄文集』(綠蔭書房, 1995), 한국에서는『한말의병전쟁자료집-폭도격문』(선인, 2000)으로 영인, 간행.
제2巡査隊에 관한 편책	내부 경무국	1908	일제는 의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3개 巡査隊를 특설했는데, 제1순사대는 강원·경상도, 제2순사대는 전라남도, 제3순사대는 함경도 의병의 진압을 담당했음. 1908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제2순사대의 의병진압 활동이 기록되어 있음. 제2순사대는 警視 權重彬이 지휘했으나, 南部守備管區에 배속되어 일본 경찰(警部 安藤友熊)의 지휘통제를 받았음. 김준 김율 형제 의병장의 체포와 순국 전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暴徒史編輯資料	내부 경무국	1909	1908년 10월에서 1909년 3월 사이에 각도에서 내부로 보고한 문서로서 의병활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후기의병의 봉기 원인, 대표적인 의병장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 의병부대의 동향과 활동 구역, 교전 날짜와 결과 등이 수록되어 있음. 나주출신 김준 김율 형제 의병장을 높이 평가한 내용이 들어 있음. 이 자료는『독립운동사자료집』3(1971)에 번역, 수록.
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	임시한국파견대	1910	1909년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호남의병 초토화 작전을 자행했던 임시한국파견대가 일본으로 철수하여 1910년 4월 도쿄(東京)에서 발간한 사진첩. 임시한국파견대의 사령관 와타나베 스이사이(渡邊水哉) 소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체포된 의병장 23인, 의병의 무기, 의병진압 상황을 알려주는 사진 174컷이 수록되어 있음. 23인의 의병장 중 나주 출신 오성술 권택 박사화 나성화가 포함된 희귀한 자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南韓義兵鬪爭寫眞帖』(1987)으로 영인, 간행.
朝鮮暴徒討伐誌	조선 주차군 사령부	1913	1906~1911년 사이에 일어난 의병의 원인과 봉기과정, 진압의 전말을 각 도별로 일지 형태로 정리한 자료. 권말(卷末)에는 이 시기에 발생한 일제 군경과 의병 간의 피해 규모, 그리고 교전회수와 교전 의병수 등이

제목	편찬기관	편찬시기	주요 내용
朝鮮暴徒討伐誌	조선 주차군 사령부	1913	첨부되어 있음. 나주의병의 활동 내용은 거의 없음. 『독립운동사자료집』 3(1971)에 번역, 수록.
全南暴徒史	전라남도 경무과	1913	전라남도 경무과에서 작성한 전투일지. 1906-1909년에 전남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의병장 양회일 고광순 기삼연 김태원 김율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권택 조경환 김원국 양진여 임창모 등의 행적을 수록. 이 자료는 1906년 이후의 전라남도 의병의 활동을 3기로 구분하여 의병과 일제 경찰 사이의 전투 전말을 날짜순으로 기록함. 따라서 1906년 이후 전라남도에서 활동한 의병장이나 의병부대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나주의병의 활동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자료. 일본 작가(深川宗俊)로부터 사본을 입수한 전남일보가 번역, 간행하여 국내에 처음 소개함(이일룡 역, 『비록 한말전남의병투쟁사』, 1977).

3장 한국 문헌[1]에 보이는 나주의병

1. 1896년 나주의병

1) 1896년 기우만이 나주의병에 보낸 통문 및 격문

1895년 음력 12월 통문(輪告列邑文)

삼가 아룁니다. 진항(陳恒)이 군주를 시해하자 공자(孔子)가 목욕하고 토벌하기를 청했으니, 인륜을 무너뜨린 변고는 이웃나라도 오히려 그러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국모의 원수를 신하들이 와신상담(臥薪嘗膽)할 때인데 한 사람도 목욕하고 토벌을 청한 자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계속하여 또한 협박하는 변고가 담장 안[蕭牆]에서 일어나니 이는 군주가 치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내신(內臣)들 중에는 치욕을 막고 무력으로 싸워 죽은 자가 없고, 외신(外臣)들은 서로 왕명을 가탁하여 받들고 머리 깎기를 독촉하니 이것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래서 오랑캐의 자취[蹄跡]611)가 날마다 교차하여 중화(中華)가 변하여 이적(夷狄)이 되었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음이 없으니, 차라리 머리카락을 자르고 보존하기 보다는 머리카락을 보존하고 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음이 없으니, 차라리 머리카

---

1) 여기서 한국 문헌이라 함은 의병활동 시기부터 해방 이전에 저술된 자료로서 의병이나 한국인이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1960년 이전의 자료를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저술 시기를 1960년으로 한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시 주로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만, 1896년 나주의병을 이해하는데 가장 귀중한 자료인 이병수의 『금성정의록』(병편)과 정석진의 유고집 『난파유고』는 여기서 제외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간행되거나 번역되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락을 자르고 살기 보다는 머리카락을 보존하고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성인(聖人)을 위하여 죽고 선왕(先王)을 위하여 죽으며 선조(先祖)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절로 왜인의 앞잡이 된 자가 아니라면 치욕이 국망(國亡)보다 심하고 미움이 죽음보다 심하다고 여기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백성들의 떳떳한 도리[民彝]가 민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명나라 말기에 온 가족이 자진(自盡)한 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보면 하소연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주(聖主)께서 위에 계시어 호오(好惡)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근자에 명령을 독촉함은 모두 왕명을 가탁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아, 그것이 왕명을 가탁한 것임을 알면서도 받들어 행하는 자는 군주를 과오의 길로 인도하여 스스로 그 몸을 해칠 자입니다. 동방(東方)으로써 본다면 수 천년동안 예의(禮義)의 나라였고, 국조(國朝)로써 본다면 오백년 동안 배양된 선비들인데 대저 누가 나라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해치는 것으로 마음을 삼겠습니까. 그렇다면 변고에 대처하는데 절로 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나라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난한 선비라도 상소를 올리고 궐문 밖에서 외치는 것이 허락됩니다. 이것은 이전 왕조로부터 이미 관례적인 일로 나무꾼에게도 묻는 성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명을 가탁한 자들은 온 나라를 들어 이적(夷狄)과 금수(禽獸)가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동방(東方) 천지에 막대한 변고(變故)인데일찍이 한 사람도 대궐문 밖에서 도끼를 가지고 명을 청한 자가 없었으니 선대의 조정에서 부식(扶植)한 뜻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듣건대, 유생(儒生)과 서리(胥吏), 부인과 어린이와 하층민이 모두 바다를 밟고 자진(蹈海自盡)하는 것을 궁극의 결과로 여기는 것이 똑같이 떳떳한 본성에서 나왔으니,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는 이치가 혹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구독(溝瀆)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이라도 주광(賙纊)의 아래에서 애통한 심정을 하소연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요행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고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성군의 교화를 노래할 것이니, 사나 죽으나 운결(隕結)의 심정이 만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록 머리를 맞대고 통곡하며 선왕의 종묘(宗廟) 아래에서 죽더라도 오히려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뜻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소천(疎賤)함을 헤아리지 않고 여러 읍에 통고(通告)하니 통고문이 도착한 후에 작은 읍은 5일, 큰 읍은 7일 내로 일제히 군정(郡庭)에 나아가 명을 청하기 전에 미리 머물러 독촉하도록 해주시고, 다만 각 읍에서 충분히 상의하기를 기다린 후에 날을정하며 회의하고 일제히 하소연할 장소를 정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일은 또한 마음에서 겁을 내거나 연약한 자는 처음부터 병정(兵丁)의 시살(廝殺)을 우려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일은 그렇지 않으니, 대개 우리 병사가 삭발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서는 통곡소리가 성에 가득하니, 그 가운데 삭발되지 않는 이들도 절로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루아침에 장발(長髮)

을 하고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다시 볼 것을 생각하니, 이 거사는 아마도 듣기를 원하는 바이니 어찌 서로 해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왜인(倭人)으로써 말하자면, 그 처음 삭발을 당하여 죽은 자가 수 만 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마도 그들이 남몰래 비웃으며 또한 본국의 신하들이 모두 그 군주에게 하소연해도 마땅히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똑같은 죽음이니, 그 칼끝에 죽어도 또한 핑계 대는 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학(東學)의 소요를 겪어서, 겨우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변(異變)이 있을까 의심하니, 대개 이 거소(擧訴)는 근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 해와 별처럼 밝으니, 하늘의 해가 밝게 비추고 있는데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다만 한자리에 모였을 때 비록 패도(佩刀)라도 또한 모두 풀어 없애서 참인(讒人)의 입을 막는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출전 : 조일형, 「역주 『송사집』」,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0~292쪽

伏以陳恒弑君。孔子沐浴請討。斁倫之變。在鄰國猶爾。矧今母后之讎。是臣子嘗膽之秋。而無一人沐浴而請者。是豈可曰國有人乎。繼又脅迫之變。起於蕭牆。是主辱臣死之日。而內臣無禦侮折衝而死者。外臣胥承矯制以行督削。是豈可曰國有人乎。無人如此。所以蹄跡日交。變華作夷也。嗚呼痛矣。國不能無亡。與其斷髮而存。寧保髮而亡。人不能無死。與其斷髮而生。寧保髮而死。之死也爲聖人而死。爲先王而死。爲祖先而死。自非倭肚洋腸者。莫不以所辱爲甚於亡。所惡爲甚於死。此固民彝之未泯者也。第觀皇明之末。闔家自盡。指不勝僂者。爲無地可訴。今聖主在上。好惡與民。挽近督令。皆出於矯制。嗚呼。知其爲矯制而奉行者。納君於過。自賊其身者也。以東方則數千年禮義之邦。以國朝則五百年培養之士。夫孰以負國自賊爲心。然則處變自有其道。蓋國有不便。則許令韋布之士抗章叫閽。是先王朝已例。而詢蕘之盛意也。見今矯制者。擧國而爲夷狄禽獸。此實東方天壤莫大變故。而曾無一人持斧請命於闕門之外者。先朝扶植之意。果安在哉。今聞八域儒生胥吏婦孺下賤。擧以蹈海自盡。爲究竟結果。同出於彝性。碩果不食。理或在是歟。雖然與其自經於溝瀆。無寧一者哀籲於魁纊之下。幸而得請。則鼓舞還鄉。歌詠聖化。生死隕結。萬有一不入。則雖駢首痛哭死於先王宗廟之下。猶不失爲扶植綱常也。玆以不揆疎賤。通告列邑。通到後小邑五日。大邑七日。齊進郡庭。乞令請命前駐督。而第待各其邑爛商後。定日定所會議齊籲之地。幸甚。

此亦中怯軟者。未始不以兵丁之厭殺爲慮。而此有不然者。蓋聞我兵之被削也。號哭滿城。則其中之不削自在焉。擧思夫一朝長髮。復覩漢官威儀。玆擧也蓋其所願聞。豈有相害之理也。以倭人言之。厥初見削死者累萬。我國無人。蓋其竊笑。且本國臣子擧訴於其君。宜無相干。設有不然。均是死也。死於其鋒。亦不爲無辭也。我國自經東擾。才見聚會。徑疑有異。而蓋此擧訴出於憂愛。昭如日星。天日照臨。有何趑趄。但聚會時。雖佩刀亦皆解去。以塞讒人之口。幸甚。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12 잡저, 「윤고열읍문」 을미년 12월

1896년 음력 정월 「격문」(檄文)

통곡만 할 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군부(君父)가 바야흐로 별관(別館)으로 옮기셨다. 분박(忿迫)하여 차라리 죽고자 하니 신하들이 어찌 편안히 누워 침상에 있겠는가. 쓸개를 맛보며 국모의 원수를 설욕하지 못하였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자들은 군주의 치욕에 죽지 못하였다. 현재 난을 일으킨 섬 오랑캐는 예로부터 조선 백성들의 똑같은 원수이다. 어찌 차마 임진왜란을 말하겠는가. 이전의귀감이 멀지 않고, 여전히 효경(梟獍)의 본성을 보존하였으니 후환(後患)을 징계할 만하다.

수호(守護)를 의탁하여 은미한 기운을 엿봄이 마치 간과 폐를 보듯 뻔하고 마침내 반역자를 보호하여 전도(前導)를 삼으니 진실로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 오직 구적(仇賊)이 시랑(豺狼)이 될 뿐만이 아니며 또한 간흉(奸凶)이 응견(鷹犬)이 되었다. 부강(富强)은 군주를 속이는 깊은 곳의 벌레가 되고 개화(開化)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척후병[前茅]이 되었다. 국모를 시해하고 군주를 협박하며 온갖 짓을 다하여 강상(綱常)이 끊어졌고, 의복을 훼손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서도 염려하고 꺼림이 없어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이 나누어졌다.

내사(內司)의 여러 신하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맞서 싸우는 것이 부족하니 조정에 신하가 없는 것이요, 외번(外蕃)의 부백(府伯)들은 거짓 왕명을 받들어 체발을 독촉하니 나라에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물며 지금 군주를 배반하고 적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옛날 난신적자(亂臣賊子)에게서 찾아봐도 더욱 심하다. 사천년 예의의 나라에서 생장하며 오백년 휴양(休養)의 은혜를 입고서 차마 조종(祖宗) 부모의 나라로 하여금 이적과 금수의 구역으로 빠지게 하였다. 거짓으로 피발좌임(被髮左衽)한 자에게 제도를 바꾸게 하니 이른바 아버지도 없고 군주도 없는 것이요, 임금이 탄 가마를 협박하여 궁을 나가게 하니 이것은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춘추(春秋)》를 읽을 곳이 없으니 어찌 이때를 원통해하지 않겠으며 난신적자들이 천자를 끼는 때를 당하여 지난날에 은인(隱忍)을 이루었다. 우러러 살리기를 좋아하는 큰 덕을 입어 삭발(削髮)을 철회하라는 따뜻한 윤음을 선포하셨다. 역적의 괴수는 이미 항복하여 섬멸되었고 성군의 뜻이 혁노하였음을 보았다. 이전의 박식(薄蝕)이 일월(日月)의 밝음에 무슨 해가 될 것이며 지금의 대양(對揚)은 천지의 큼에 유감이 없다.

개화당의 교활한 마음은 뉘우치지 않아 궁어(宮御)가 궁궐을 비우고 떠나감에 이르렀고 적개(敵愾)하는 호신(虎臣)은 듣지 못하였으니 필위(蹕衛 벽제하여 호위함)의 소루(疎漏)함을 상상할 수 있겠다.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심이 무엇인들 왕령(王靈) 아님이 없는데 위태로운데도 잡아주지 못하고 넘어지는데도 붙들지 못하니 장차 저 재상을 어디에 쓰겠는가.

살게 해주심을 죽음으로써 보답하는 것[報生以死]이 마땅한 의리이니 죽어도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역적을 토벌하는 것이 충(忠)이니 때를 잃으면 충(忠)도 또한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온 나라는 삼백 개의 군(郡)이요 전성(全省)은 오십 여개의 주(州)이다. 누군들 국가 대대로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대소 신서(臣庶 신하와 서민)들을 논할 것이 없다. 즐겨 당(堂)에 사는 제비 참새와 같이 한다면 나라를 잊는 것이니 자신을 잊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일찍이 취사(取舍)의 웅어(熊魚)를 마련하여 군주를 위해 죽는 것이 의(義)를 위해 죽는 것이다.

우만(宇萬)은 군대의 일은 배우지 않아서 다만 가죽나무나 상수리나무처럼 쓸모없는 재목임이 부끄럽다. 똑같이 떳떳한 본성을 받고 태어났으나 오히려 기우는 태양 앞의 해바라기와 같다. 감히 소천(疎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첨존(僉尊) 및 이교(吏校)와 서민(庶民)들 또 공상(工商)과 하천민(下賤民)에게 두루 고한다. 일심(一心)이면 적을 멸망시킬 수 있고 천리의 국가로 남을 두려워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지존(至尊)이 몽진(蒙塵 아관파천)을 하셨으니 이날에 놀면서 허송세월[玩愒]해서는 안 될 것이요 역적의 무리는 도망갔으나 뿌리와 줄기를 호미로 다 쳐내지 못했다. 전하의 한줄기 눈물의 흔적은 천만 신하들이 뇌(腦)를 땅에 바르더라도 속죄(贖罪)할 수 없으며 전하의 발걸음은 억조의 백성들이 뼈를 가루로 만들더라도 쫓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거사한 이래로 적의 동정은 과연 헤아릴 수 있으니 진영(陣營)을 엄히 하여 기다리면 군무(軍務)가 보전되어 기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삭직된 수재(守宰)의 패악이 여전하다고 아뢰고 또 개화당이 악을 쫓는 것이 옛날과 같다고 들으니 신과 사람이 함께 분개할 바인데 충신과 역적이 함께 나란히 설 수 있겠는가. 공(功)을 방해하고 바름을 해치는 참소는 절로 당역(黨逆)으로 귀결되었고 복수토적의 의리는 이미 계장(啓章)에 개진하였다.

통문이 이른 즉시 마땅히 날짜를 지정하여 각각 소관 주군(州郡)에서는 의를 향한 민병(民兵)을 소집하라. 유사(儒士)는 그 풍재(風裁)를 받들고 이교(吏校)는 그 두령(頭領)을 추대하라. 지휘와 절제(節制)는 절로 시행하여 경륜(經綸)이 있게 하고 궁시(弓矢)와 과모(戈矛)로 앉고 서며 치고 찌르는 것을 돕도록 하라. 난리를 일으킨 자는 주벌하고 포악한 자는 제거하여 매우 위태로운 데서 내란(內難)을 안정시키고, 왜구는 주멸하고 서양 세력은 몰아내어 영원히 외침을 끊는다면 우만(宇萬)이 비록 재주가 없어 하진(下陣)에 있으나 채찍을 잡고 앞장서서 수레를 몰겠다. 이와 같이 통지하여 보내고 삼가 회답을 기다리겠다.

통문이 이른 후에 대읍(大邑)은 7일, 소읍(小邑)은 5일 안에 경내(境內)에서 돌아가며 보이고 각각 다 알게 하라. 응당 근만(勤慢)을 일으켜 각각 본 읍의 풍의(風義)가 있게 하라. 두령의 성함과 시설(施設)과 방략(方略)을 각각 갖추어 보이도록 하라. 교임(校任) 및 공형(公兄)도 또한 이름을 적어 후일 문부(文簿 문서와 장부)의 고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문 내 유사(儒士)와 이향(吏鄕 아전과 향관)들은 각자 회집(會集)하여 내외가 서로 호응하고 주선을 함께 하여 서로 규각(圭角)이 없다면 함께 대사(大事)를 이룰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주상이 몽진(蒙塵)하시고 국사(國事)가 혼란하여 의병이 메아리처럼 일어났는데도 호남은 오래도록 적막하였다. 의기(義氣)가 유독 뒤쳐져 그런 것이 아니라 동학란 이후

에 백성들의 힘이 소생하지 못하여 시일을 미룬 것이다. 충신(忠臣)과 의사(義士)가 아침저녁으로 부심(腐心)하여 지금에야 이렇게 통문을 보내 울결(鬱結)된 여론을 거두니 오랫동안 쌓이면 반드시 펴게 되니 거의 만년(晩年)에 (공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收楡] 다만 각 읍의 군위(軍威)가 조금 진작되고 약속이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려 합력하여 근왕(勤王)하자는 뜻으로 마땅히 다시 통고함이 있을 것이다.

다시 통고하기 전 천의(天意)가 송(宋)나라에 복을 주어 대가(大駕)가 환궁하고 역당(逆黨)이 법에 굴복하며, 전장(典章)이 옛 것을 회복하고 외구(外寇)가 거두어 물러간다면 마땅히 소식을 빠르게 전하여 의병을 해산할 것이다. 그러나 해구(海寇)가 왕래하는 것이 섬홀(閃忽 매우 빠른 모양)하여 일정하지 않으니 임기응변의 절목을 별도로 규획(規畫)하여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安不忘危] 방편으로 삼으라.

출전 : 조일형, 「역주 『송사집』」,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3~298쪽

痛哭夫何言。君父方移臨于別館。忿迫寧欲死。臣子何息偃而在牀。嘗膽而莫雪於母讎。拊心者未死於主辱。見今島夷之爲亂。自古鮮民之同仇。尙忍言於龍蛇。前鑑不遠。猶存性於梟獍。後患足徵。託修好而伺秘機。如見肝肺。竟護逆而作前導。式究心腸。不惟仇賊之爲豺狼。亦有奸凶之作鷹犬。富強是欺君之深蠱。開化乃斁倫之前茅。弑母脅君。無所不爲而綱常絕矣。毁服薙髮。靡有顧忌而華夷判焉。內司宗工乏禦侮而折衝。廷無臣也。外藩府伯承矯制而督削。國有人乎。矧今叛君附賊之爲生。求古亂臣賊子而尤甚。生長四千年禮義之國。霑被五百載休養之恩。忍使祖宗父母之邦。淪爲夷狄禽獸之域。矯使髮衽易制。所謂無父無君。脅令車駕出宮。是爲不奪不饜。讀春秋無地。寧不痛寃於此時。當亂賊挾天。以致隱忍於曇日。仰荷好生之大德。渙發撤削之溫綸。逆魁已伏殲誅。聖意可見赫怒。向時薄蝕。何損於日月之明。及今對揚。無憾於天地之大。開黨之狼心未悛。以致宮御之曠旋。敵愾之虎臣無聞。可想蹕衛之疎漏。耕而食鑿而飮。何莫非王靈。危不持顚不扶。將焉用彼相。報生以死。當義則死且有辭。討逆爲忠。失時則忠亦何賴。擧國則三百惟郡。全省也五十餘州。孰非家國世讎。無論大小臣庶。肯如處堂之燕雀。忘國可謂忘身。早辨取舍之熊魚。死君便是死義。宇萬未學軍旅之事。顧慚樗櫟之散材。同得彝性之天。尙如葵藿之傾日。乃敢不揆疎賤。玆庸遍告僉尊。以及吏校庶民。亦粵工商下賤。一心可以滅賊。千里未聞畏人。至尊蒙塵。時日不可玩愒。逆黨逃命。根株未究鋤治。天顔一淚痕。千萬臣塗腦靡贖。玉趾數步武。億兆民粉骨莫追。更擧而來。賊情果有叵測。嚴陣而待。軍務保無失機。況復削宰之肆悖如前。又聞開黨之縱惡依舊。神人所共忿也。忠逆可與列乎。妨功害正之讒。自歸於黨逆。復讎討賊之義。已陳於啓章。通到卽時。亟宜指日。各在所管州郡。招集嚮義民兵。儒士奉其風裁。吏校推其頭領。指揮節制。自有施措經綸。弓矢戈矛。以資坐作擊刺。誅亂除暴。靖內難於方危。滅倭驅洋。絕外侮於永遠。宇萬雖不才而在下陣。願執鞭而爲前驅。通到如章。恭竢回報。

通到後。大邑七日小邑五日。輪示境內。俾各知悉。而應起勤慢。各在本邑風義。頭領姓銜。施設

方略。各具示來。而校任及公兄亦爲置名。以爲日後文簿考据。
通內儒士吏鄕。各自會集。而內外相應。周旋與偕。無相圭角。共濟大事。
方今主上蒙塵。國事搶攘。義兵如響。而湖南久寂。非義氣獨遜。東亂之後。民力未穌。遷稽時日。忠臣義士晝宵腐心。今玆發通。以收輿鬱。久鬱必伸。庶可收榆。第待各邑軍威稍振。約束稍定。以合力勤王之意。當有再通。
再通前天意祚宋。大駕還宮。逆黨伏法。典章復舊。外寇斂退。則當飛報釋兵。而海寇揭來。閃忽無常。應變之節。別有規畫。以爲安不忘危之道。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12 잡저, 「격문」 병신 정월

각 고을 공형소에 따로 고함(別告各邑公兄所)

위와 같이 돌아가며 통고할 일.

각 읍 이교병정(吏校兵丁)이 강제로 체발(剃髮)을 당한 것은 다만 수재(守宰)를 그 마땅한 인물을 얻지 못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가만히 듣건대, 삭발(削髮)을 당한 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외에도 비록 삭발을 당했지만 그 마음에 삭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절로 있었으니, 삭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헝클어진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그 분노와 원한을 격발시킴이 다른 사람에 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교(吏校)가 의기(義起)한 날에 만약 밖에서 삭발을 당한 자를 내삭(內削)과 섞이게 한다면 이것은 외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니 다만 선(善)으로 옮겨가는 한 길만을 허여하여 가계(假髻 가짜 상투)로 하여금 종사하게 하여 간격이 있지 않게 한다면 어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이에 차례로 통유(通諭)한다.

하나. 양향접궤(粮餉接饋)는 미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듣건대, 임진년 의병도 넉넉한 집에서 힘을 내어 앞을 다투어 실어 날랐으니 모두 떳떳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품부 받은 떳떳한 본성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다만 약속이 이미 안정되기를 기다린다면 절로 응당 출의(出義)하여 응용(應用)함이 있을 것이다. 일을 시작하는 날에 갑자기 책응(責應 책임지고 물품을 내어주는 것)이 어렵다면 방편을 조치하고 계획하는데 다만 회원의 처리에 맡긴다.

하나. 계기병장(械器兵仗)은 조치하여 규획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병장기는 흉기이므로 성인(聖人)은 부득이해서 사용한다. 기계가 날카롭지 않으면 병졸을 적에게 넘겨주어야 하니 방략을 조획(措畫)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맨 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강한 왜구를 응접함에 빈주먹으로 무슨 힘이 되겠는가. 화포(火砲)는 잘 수리하고 약환(藥丸)은 신칙하여 갖추어서 소루(疏漏)함이 없게 한다. 백죽(白竹)으로 만든 강궁(强弓)과 포거(礮車)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금일의 긴요한 쓰임이 되니 반드시 가족 중 행장을 꾸려 가는 사람[家裝

人]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떠나는 자는 빈주먹의 탄식이 없게 하고 머무는 자는 도적을 대비하는 쓰임이 있게 한다면 마땅히 절로 회원의 별칙(別勅)이 될 것이다.

하나. 연해 각 읍에서는 방곡(防穀)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쌀 사들이는 것을 막는 것은 오패(五覇)의 죄인이다. 평상시에도 서로 막는 것은 야박한 풍속으로 미워할 만하다. 가만히 듣건대 섬 오랑캐의 무명[布]과 적미(糴米)가 낭자하다고 하니 우리 백성들의 음식을 내어 그 군량을 풍족하게 한 것이 폐와 간을 보듯 뻔하다. 옛날에 이른바 도둑에게 병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니 반드시 별칙(別勅)으로 금단(禁斷)해야 한다.

하나. 자원해서 모병(募兵)에 나가는 것은 규례(規例)가 없어서는 안 된다. 무릇 유사(儒士)와 서리(胥吏)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충의(忠義)가 격발하여 자원해서 모병에 나가는 자는 논하지 않는 바이다. 그 나머지 모병으로는 산포수(山砲手) 1명, 유수한량(遊手閒良) 1명, 근무(根無) 1명, 무부(巫夫) 1명, 도포(屠庖) 1명, 승도(僧徒) 1명으로 농공(農工)과 상고(商賈)는 동요(動撓)해서는 안 된다. 대개 둔전이 군량을 풍족하게 함은 아득한 옛날부터 남아있는 규범이니, 자신과 자식을 보전함은 물론 차치하고 농사를 지어 군량을 잇는 것은 또한 둔전의 남긴 뜻이다. 상인들은 있고 없는 것을 교역하고 또한 군대의 행차에 물자가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민간에 회유하여 각각 생업에 안정하게 하고 길을 떠난 후에는 의례토적(土賊)들이 번갈아 막을 것이니 무릇 농호(農戶)에서 각각 죽궁(竹弓), 시창(矢槍), 목추(木椎) 등의 병장기를 갖추고 이웃마을에서 서로 도와서 방어하여 보존한다. 그리고 다른 복장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며 수상(殊常)한 무리들도 또한 아울러 몰아내어 경내에서 자취를 잇게 하지 않는다. 이 뜻도 또한 회원에게 돌아가며 보인다.

하나. 각 읍의 수령들은 신칙(申勅)의 일이 없을 수 없다. 대개 이 의거(義擧)는 가계(家計)도 아니고 읍계(邑計)도 아니다. 국가의 형세가 위급하고 군부(君父)가 몽진하니 근왕(勤王)이 급선무라 시일을 늦추기 어렵다. 그리고 해구(海寇)들이 섬광(閃光)처럼 홀연 나타났다 사라지니 이박(異舶)들이 날마다 기회를 틈타 은밀하게 도발하여 그 반드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들었다. 반드시 각 읍의 수령들에게 신칙하여 먼저 범하지 말고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게 하라. 한 읍이 피습되면 열읍이 함께 구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개 이 열읍은 지형의 경계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군주께서 보시면 균등히 신민(臣民)인데 편안하게 보면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군주가 백성을 사랑함에 다친 사람 보듯 가엽게 여기는 도리를 체득한 것이겠는가. 방수(防守)가 이미 엄중하니 근왕의 군사들은 마땅히 각 읍에서 정예를 선발하여 데리고 갈것. 다만 회소(會所)에서 마땅히 통문을 잘 살펴야 한다.

하나. 간첩(間牒)을 토색(討索)하는 일은 신칙하여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침략(侵掠)을 금할 수 없음은 의병이 할 수 없다. 이것은 엄중히 약조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또한 연전(年前)에 동학의 무리들이 안면을 바꾸어 와서 그 혁심(革心)을 보전하지 못하니 이리 새끼

의 야심(野心)은 형세를 틈타 은밀히 도발하니 마땅히 곱절을 헤아릴 만하다. 회원들이 별도로 향금(鄕禁), 면금(面禁), 이금(里禁)을 정하여 별도로 신칙하여 금할 길 없이 생기는 난을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출전 : 조일형, 「역주 『송사집』」,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8~300쪽

右輪通事。各邑吏校兵丁之勒被剃削。特緣守宰之不得其人。竊聞被削之日。號哭徹天。其外雖削。其心之不削自在。以不削之心。撫摩鬈鬆。其忿冤激發。一倍餘人。吏校義起之日。若以見削於外者。得混於內削。則是絕物也。特許遷善一路。使之假髻從事。靡有間隔。豈不盡心盡力。克圖自新乎。玆以鱗次通諭。

一。粮餉接饋。不可無預筭事。竊聞壬辰義旅。饒戶出力。委輸爭先。皆出於彝性。蓋彝性之天。亘古亘今。第待約束已定。自應有出義應用。而始事之日。遽難責應。措畫方便。祇賴會員幹辦。

一。械器兵仗。不可無措畫事。兵者凶器。聖人不得已而用之。而器械不利。以其卒予敵。不可無措畫方略。徒手不可以搏虎。况強寇應接。空拳何賴。火砲繕葺。藥丸勑備。不可疎漏。而白竹強弓。礮車發石。爲今日緊用。須令家裝人習。行者無空拳之歎。而居者有備賊之用。當自會員別勑。

一。沿海各邑。不可無防穀事。遏糴爲五霸之罪人。平時相遏。薄俗可惡。而竊聞島夷布糴狼藉。其絀我民食而足其軍餉。肺肝如見。古所謂藉寇兵而齎盜粮。必須別勑禁斷。

一。願赴募兵。不可無規例事。凡儒士胥吏。以至凡民。忠義激發。自願赴募者。在所勿說。其餘募兵。山砲手一項。遊手閒良一項。根無一項。巫夫一項。屠庖一項。僧徒一項。而農工商賈。不可動撓。蓋屯田足食。遵古遺規。全軀保子。且置勿論。作農繼食。亦屯田之遺意。商賈之貿遷有無。亦軍行之不容無資。以此意回諭民閒。各使安業。而啓行之後。例有土賊迭梗。凡厥農戶各備竹弓矢槍木椎等械。隣里相助。以相禦保。而異服異言殊常之輩。亦并驅逐。無使接跡於境內。此意亦自會員輪示。

一。各邑城守。不可無申勑事。蓋此義舉。非家計也邑計也。國勢危急。君父蒙塵。勤王爲急。時日難緩。而海寇閃忽。異舶日聞乘機竊發。不可保其必無。須自各邑申勑城守。先爲不可犯。以待不虞。一邑被襲。列邑共救可也。蓋此列邑地界各殊。而以吾君上視之。則均是臣民。恬視不救。豈體吾君上愛民如傷之道哉。防守旣嚴。勤王之師。當自各邑選精領去。第自會所當有照通矣。

一。奸細討索。不可無勑禁事。蓋侵掠不禁。不可爲義兵。此不可不嚴立約條。而况又年前東徒換面而來。未保其革心。狼子野心。乘勢竊發。當一倍叵測。自會員別定鄕禁面禁里禁。別般申勑。保無緣禁生亂可也。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12 잡저, 「별고각읍공형소」

1896년 음력 정월 여러 읍에 다시 고하는 문(再告列邑文)

위와 같이 통고하는 일.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것[親上死長]은 떳떳한 본성으로 같은 바이다. 원수를 갚고 적을 토벌하는 것은 신민(臣民)의 당연한 직분이다. 오늘날의 일에서 군상(君上)은 어디에 있으며 수적(讎賊)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가. 통문이 도착한지 날이 오래되었는데 묘연히 동정(動靜)이 없으니 어찌 떳떳한 본성이 적은 바이며 당연한 직분이 어두운 바여서 그러하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군주와 백성은 수족, 두목과 같아서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무관심하여 느긋이 아프고 가려운 것을 관여치 않는 듯하다. 밭 갈고 우물을 파며 따뜻하고 배부름은 제왕의 힘이 미친 것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저 외구(外寇)와 난적(亂賊)의 창궐은 오히려 책망할 수 없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아픈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아, 군주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 소리가 없는 데서 듣고 형체가 없는 데서 본다면 괜찮을 것이다. 궁어(宮御)가 여러 달 동안 돌아오지 않는데 이것은 소리와 형체가 이미 드러난 것으로 거짓 명령에 의혹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저지하는 의론이 있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살피지 않음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에 다시 통문을 보내니, 통문이 도착한 날 즉시 각각 두렵게 생각하여 의병을 모으고 병장기를 거듭 단속하여 날짜를 정해 근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다시 관망(觀望)하며 태만히 하여 사기(士氣)를 막는다면 군주를 잊고 역적과 무리지은 책임을 장차 무슨 말로 면할 수 있겠는가. 행차 중에 나주(羅州)로 남하하는 것은 대개 하읍(下邑)에서 소집해서 응하지 않는 자들을 성토하기 위한 일이니, 반드시 각각 회시(回示)해준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나. 통문이 도착한 후 기일을 정하여 조례(條例)로 조처하여 마련하고 형지(形止 사실의 전말)를 베풀어서 회시할 것.

하나. 연변의 방곡을 신속히 신칙할 것.

하나. 병기와 약환은 있는 것에 따라 더욱 신칙할 것.

하나. 출의하여 곡식을 실어 나르는 것은 성책하고 회시하여 일후의 준칙으로 삼을 것.

하나. 군사 기밀을 저요하는 자는 지명 회시하여 징계로 삼을 것.

하나. 강제로 삭발을 당한 자는 긍휼히 여기고 노여워 할 만하지 않으니, 이 거의의 날을 당하여 더욱 더 거두고 구휼하여 각자 힘을 다하게 할 것.

출전 : 조일형, 「역주 『송사집』」,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307~308쪽

右通告事。親上死長。彝性攸同。復讎討賊。臣民當職。今日事。君上在何地。讎賊作何狀。而通到日久。杳無動靜。豈彝性所少而當職所昧乎。第念君民如手足頭目。不可一日無資。而伈泄若痛痒不關。耕鑿溫飽。帝力所被而猶如此。彼外寇與亂賊之猖蹶。猶不足責也。言之至此。不勝痛心。嗚呼。事君如事父。聽於無聲。視於無形可也。宮御之曠月不還。此聲形已著而致惑於矯令。有此沮撓之論。不明不審。一至於此乎。玆以更通。通到日卽各惕念。聚會義兵。申束械仗。刻日勤王可也。若復觀望玩愒。沮撓士氣。則忘君黨逆之責。將何辭可免。行中南下羅州。蓋爲收召下邑。聲討

不應之機也。須各回示幸甚。

一。通到後刻期措辦。條例施設形止回示。

一。沿邊防穀。斯速申飭。

一。兵器藥丸。隨存修飭。

一。出義輸穀。成册回示。以爲日後準考。

一。沮撓軍機者。指名回示。以爲懲勵。

一。勒被削剝者。可矜而不足怒。當此義擧之日。益加收恤。俾各盡力。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12 잡저, 「재고열읍문」

1896년 음력 정월이후 세번째 여러 읍에 고하는 문(三告列邑文)

위와 같이 통고하는 일.

자기 집을 지으면서 길 가는 사람과 모의하는 것은 시인(詩人)이 한탄한 바였고, 여러 사람이 주관하면 공효가 없다고 《주역》〈상전(象傳)〉에서 경계하였다. 통고를 그저 문장으로만 보고 분문(奔問)651)에 모두 기강(經紀)이 없다면 모두 중주(衆主)의 도모(道謀)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찌 근왕(勤王)의 군사로서 앉아서 성을 지킬 계획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세 번째 명령이다. 명령이 이른 즉시 각각 척념(惕念 두려워하는 마음)하여 이번 달 그믐에 일제히 광주(光州)에 모여서 기율(紀律)을 세우고 날을 정하여 길에 오르라. 어긴 자는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이 가운데 또한 군량의 접응(接應)은 각 읍에서 제공할 것이다. 사졸(士卒)은 반드시 용감한 자를 쓰고, 기계(器械)는 반드시 정밀하고 날카로운 것을 써서 일에 임하여 일을 그르치는 폐단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선비와 아전이 서로 돕기를 입술과 치아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이 하여 반드시 주선을 더불어 함께하라.

출전 : 조일형, 「역주 『송사집』」,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309~310쪽

右通告事。築室道謀。詩人所歎。衆主無功。易象垂戒。通告視爲文具。奔問都無經紀。皆由衆主而道謀也。豈以勤王之師。坐作守城之計。此是三令。令到卽時。其各惕念。以今月晦日。齊會于光州。以立紀律。刻日登道。違者有律。

此亦中粮餉接應。各其邑支供。

士卒必用勇敢。器械必用精銳。保無臨機僨事之弊。

儒吏相資。如脣齒之不可相無。必須周旋與偕。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12 잡저, 「삼고열읍문」

연해 여섯 읍에 영시하다(令示沿海六邑)

목포(木浦) 주변은 연해(沿海)의 요충지로 이국의 배들이 정박하니 방수(防守)의 절차(節次)

를 한 읍에만 오로지 맡겨둘 수 없다. 연해의 여섯 읍에서 합심하여 방어한 이후에 은밀히 도발하는 염려가 없게 될 것이다. 나주(羅州) · 무안(務安) · 함평(咸平)에서 목포진(木浦鎭)을 방수(防守)하고, 영암(靈巖) · 해남(海南) · 진도(珍島)에서 고화도(古花島)를 방수하여 병기와 군량을 각자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읍(名邑)에 소속된 여러 섬들은 수련군(水鍊軍), 산포수(山砲手) 및 무사(武士)로 쓸 만한 사람이 없지 않다. 대도(大島)와 중소 섬에서 참작하여 정예병을 뽑고 그 지방 읍에서 따로 군관(軍官)을 정하여 성군(城軍) 약간 인을 거느리고 포(砲)를 묻어 나누어 지키고, 혹 섬 가운데서 폐단을 불러 온다면 마땅히 군율로써 다스릴 것이다.

이 가운데 또한 총과 활, 창과 검은 그 섬에서 갖추어 오고 군수(軍需) 또한 각자 갖추어야 한다. 선척(船隻)은 또한 대도(大島)는 세 척, 중도(中島)는 두 척, 소도(小島)는 한 척을 항상 항구에 배치해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 한다. 봉수(烽燧)의 절차는 별도로 칙령(飭令)할 일. 두 곳 방수(防守)의 읍에서 근왕 출군(出軍)하는 날 마땅히 재감(裁減 줄어드는 것을 짐작하는 것)하여 마련(磨鍊)할 일. 모병(募兵)할 때는 농민들을 침범하여 소란하게 하지 말고 한가하게 노는 일손만을 택하여 쓸 일.

출전 : 조일형, 「역주 『송사집』」,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311쪽

木浦左右沿海要衝。異舶注泊。防守之節。不可專委於一邑。沿海六邑。合心防禦而後。俾無竊發之慮。羅州，務安，咸平。防守木浦鎭。靈巖，海南，珍島。防守古花島。兵器粮餉。各自辦備。諸島之屬於名邑者。水鍊軍山砲手及武士不爲無人。大島中小參酌抄精。自其地方邑。別定軍官。率城軍若干人。埋砲分守。而或致島中作弊則當論律事。

此亦中銃弓槍劒。自其島備來。而軍需亦各自備。船隻亦大島三中島二小島一。常置港口。以備不虞。烽燧之節。亦爲別飭事。

兩處防守之邑。勤王出軍之日。當裁減磨鍊事。

募兵之際。農民勿爲侵撓。而閒散遊手擇用事。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12 잡저, 「영시연해6읍」

나주에 주둔하며 건재 김천일 선생 사당터에서 올린 제문(「駐陣錦城祭健齋金先生文」)

유세차 병신년 2월 병인삭 18일 계미에 후학 기우만 임기락 기동삼 기재 이승학 등은 삼가 본주의 의로운 선비들의 뒤를 좇아 술 한잔을 더해 올리며 고하나이다.

금일의 재앙은 임진년의 왜란보다 심한데, 후인들의 지혜가 선생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재주로 더욱 심한 재앙을 구제하고자 하니, 이는 마치 모기가 산을 짊어지려는 꼴이자 노래기가 바다를 건너는 꼴이나이다. 그러나 선생의 의리를 의리로 삼고 선생의 죽음으로 죽으려고 한다면, 재주의 유무를 따질 것도 없나이다.

저승에서 살아 나와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키셨다면, 마땅히 오늘의 재앙이 생기기도 전에 경

륜을 펼치셨을 것이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명령을 청하고자 해도 청할 곳이 없으니, 다만 시대가 다르다는 탄식만 보탤 따름이나이다. 그렇지만 의로움에 처함이 명백하다면 선생의 무리가 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나이다. 간난을 널리 구제하고 조정을 깨끗이 하고자 하오니, 선생께서 도와주소서.

출전 : 『송사집』 9,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한국전문화연구원, 흐름출판사, 2020, 236~237쪽

維歲次丙申二月丙寅朔十八日癸未。後學奇宇萬，林基洛，奇東參，奇宰，李承鶴等。謹隨本州義儒之後。加酌一盞而告之曰。今日之禍。有浮壬辰。後人之智。不及先生。以不及之才。欲救有浮之禍。如蝱蚊負山。商蚷越海。而義先生之義。死先生之死。不可以才不才而有閒也。九原可作。先生之擧。宜不待今日。施措經綸。請命無地。祇增異世之歎。而但處義明白。則無愧爲先生之徒也歟。弘濟艱難。肅淸朝著。惟先生其佑之。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 23, 「제문」

금성산 금성당에 올린 제문(「祭錦城山文」)

엄숙하게 빛나는 신령의 궁이여 금성산의 산중이로다. 나라 안에서 차례로 제사 올리니 은혜 도타워서 제례 융숭하도다. 신령이 언뜻언뜻 오르내리시는 듯하나니 계수나무 깃발와서 허공에 날려 펄럭이는도다. 신령이시여 향기롭고 깨끗한 제수 즐기시라. 시절 이미 화평하고 풍년 들었나이다. 사악함이 엿보지 못하고 가까이하지 못하나니 높고 높은 담장을 엿보시라. 깨끗한 정성에 답해 이미 흠향하셨나니 우리들을 강녕케 하고 공으로 삼아 주시라. 나라의 앞길이 이에 어려움이여 짐승의 발자국만이 날뛰는도다. 돼지가 날뛰고 드렁허리가 일어나니 호랑이가 떠나가고 용이 사라졌도다. 궁궐의 수레가 별관에 멈췄으니 신민들은 애가 타고 미치는 듯하나이다. 어찌하여 존령은 캄캄해서 내버린 양 잊으신 양 하시나이까. 내가 신령을 위해 좋은 꾀 내놓으니 그 꾀 참으로 훌륭하도다. 바닷바람 몰아다가 요사한 서양 배 부수시면 우리들은 힘입고 신령함 날리게 되리라. 그 소굴 불태워 그 족속들 귀신 만들어 동방에 그들의 자취 멸절시키면 현자가 벼슬하고 사악한 이 물러나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 편안하리로다. 마른 육포에 아름다운 과일에 내 말씀 고운 데다 내 술 향그럽나이다.

출전 : 『송사집』 9,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한국전문화연구원, 흐름출판사, 2020, 238~239쪽

儼奕奕兮神之宮。錦之山兮山之中。國內兮秩祀。恩摯兮禮隆。靈閃閃兮陟降。桂旗來兮飄空揚。靈兮樂芳潔。時旣和兮歲且豐。邪不窺兮莫近。眄言言兮崇墉。答潔禋兮旣享。俾我康兮爲功。國步兮斯艱。蹄跡兮橫縱。豨突兮鱔黿。虎逝兮龍藏。駐宮車兮別館。臣民兮如焚如狂。何尊靈兮昧昧。若相遺兮相忘。我爲靈兮嘉謀。謀猷兮允臧。駕海風兮折妖舶。卬已賴兮靈之揚。火其窟兮鬼其族。滅其跡兮東方。賢進兮邪退。國泰兮民康。乾豆兮嘉果。我辭豔兮我酒香。

출전 : 『송사선생문집』 권 23, 「제문」

2) 1896년 나주의병의 주도인물

남로선유사 신기선의 1896년 나주의병 주도인물 인식

– 金秉旭抵羅州則稅務視察官朴準成先已周旋設計。召聚守城匪徒。宣讀諭文。多方曉譬。匪類等且悔且懼。或逃或散而無餘矣。官軍兵不血刃而入羅州。金秉旭遣兵捉致海南郡守鄭錫珍。亦卽梟首。蓋傳聞其主張羅州之凶謀。有司令官之令故也。

출전 : 신기선, 「봉사일기」, 『양원유집–신기선전집』 하, 아세아문화사, 1981, 301쪽

– 羅州前注書李鶴相等六人。而皆在蕩釋之中。羅州匪魁則金蒼均, 金晳鉉, 朴根郁, 金錫均, 朴化實五漢及懲役徒三名與靈光吏丁相燮也。相燮及懲役三漢則金秉旭已爲捕殺於羅州。金蒼均及其子晳鉉則金秉旭回軍之路。捉得砲殺。但二朴及金錫均在逃未獲。殊爲憤歎。而朴元泳則宜與奇宇萬並在赦列。而倉卒梟首。海南郡守鄭錫珍。雖云陰主羅州之謀。罪狀未章。而徑先梟斃。是可恨也。

출전 : 신기선, 「봉사일기」, 『양원유집–신기선전집』 하, 아세아문화사, 1981, 312–313쪽

– 號外 訓令

卽到付南路宣諭使關內卽接 全州鎭隊中隊長報告 則羅州匪魁在逃發捕者 金蒼均 金哲鉉(金晳鉉의 오기–작성자) 朴根郁 金錫均 朴化實 及前注書 李鶴相 六人而已.

출전 : 『隨錄』,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5

김윤식의 1896년 호남의병 주도인물 인식

– (3월) 三十日 (중략) 湖南·長城等十三邑皆動, 奇宇萬爲魁.

출전 : 김윤식, 『續陰晴史』 上, 국사편찬위원회, 1960, 396쪽

황현의 1896년 호남의병을 주도한 기우만 정석진 인식

– 及海南郡守鄭錫振(鄭錫珍–오기)爲李謙濟所殺

출전 : 황현, 매천야록 권2, 국사편찬위원회, 1955, 198쪽

– 李謙濟入羅州, 殺海南郡守鄭錫振(鄭錫珍–오기, 이하 바로잡음), 奇宇萬逃走, 潭陽郡守閔種烈被逮, 錫珍者羅州吏也, 東匪時翼種烈守城錄功, 爲海南守, 其赴任也, 群吏餞之, 入而殺安宗洙, 故人謂錫珍授旨云, 宗洙弟定洙, 隨謙濟, 謀復兄讐, 或勸錫珍浮海, 錫珍笑曰, 死固命耳, 奚避爲, 安坐受縛, 謙濟索厚賄, 不應曰, 賄之亦死, 徒爲奴輩賣耳, 遂死, 錫珍膂力絕人, 饒籌略, 能識大義, 湖南人無不悲之, 宇萬見錫珍死, 自光州散衆跳去, 時申箕善在湖南, 袒護之甚力, 故得不窮捕, (중략) 及義兵四起, 皆以討復爲辭, 上甚喜幸之, 故授旨出征將士, 得首領, 毋專殺, 由是致之京獄者, 率從末減, 或者謂宇萬雖自首, 必不死, 而錫珍之死, 專由

安宗洙私讐云.

출전 : 황현, 매천야록 권2, 국사편찬위원회, 1955, 200–201쪽

1896년 나주의병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 본부(本府) 관하 장성(長城)에서 체포하여 압송한 비적 무리 한윤화(韓允化), 승려 응운(應雲)과, 진위대(鎭衛隊)에서 체포하여 압송한 비적 무리 금구(金溝)의 김순여(金順汝) · 황준삼(黃俊三) · 백낙중(白樂中) · 이경태(李敬泰) 등 여섯 놈을 재판소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윤화가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비적 무리의 거괴(巨魁)로 옛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민간에 출몰하여 총을 들고 약탈하다가 지금 체포당하였으니 죽더라도 애석할 만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승려 응운이 진술하기를,

"저는 비적의 우두머리 전봉준(全琫準)의 무리로 진실로 여러 곳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체포에서 벗어났다가 오늘날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저의 명이 다한 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 등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비적 무리의 우두머리로 흔적을 숨기고 모습을 감추어서 이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올봄 나주(羅州)의 소요 때에 다시 옛 습관에 따라 사발에 물을 떠서 하늘에 축원하고 머리를 모으고 주문을 외우다가 실상과 자취가 드러났으니 죄가 없음을 밝힐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섯 죄인이 범한 사실을 모두 자백받아 잠시도 살려 둘 수 없기에, 이번 달 8일에 경무관보(警務官補) 이종덕(李種悳)으로 하여금 위의 죄인 한윤화, 승려 응운,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 등을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전주부재판소 판사 이병훈 보고서(1896년 8월 18일 제4호), 『사법품보』 제12책.

출전 : 『별계–사법품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225~226쪽

2. 을사늑약 이후 나주의병

1) 나주의병의 격문과 통문[2)]

2) 여기서 통문 및 격문이라 함은 나주 출신 의병장 혹은 그 의진의 이름으로 게시되거나 발송된 자료로서 일본 군경이 수습하여 그들의 문헌에 실린 자료를 총칭한다. 의병장별 시기순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

김준 의병장이 호남의소의 이름으로 보낸 글

- 別紙(一)

令各洞民人號

狗雖曰備盜之物在此衛生極爲欠害者頃於靈光等地倭砲吠狗之誤中一幼兒則殺此兒者非倭卽狗也況吾義旅之行或有現露未遂之事玆令飭從玆如復有一種吠犬至登義廉該洞斷未免屠蕩矣十分惕念各人家狗種一一滅無之無使夜吠爲可爲可

戊申 正月 一日

湖 南 義 所

- 別紙(二)

告示削髮諸人

削髮之人豈非我先王之民赤豈無秉彝之本性哉噫彼惑世之徒誘之陷之於忘君背父殞身之不義今爲倭賊之奴隸可勝歎哉近聞元州義兵所事由則那地事務所削人徐崔氏斬獲倭之首西個卽納示義所義將賞施以四千金揭號以忠臣此是今古罕事也其在削人爲之則非難也奈之如南土削人此之不義反有附倭害義之習云聞極痛慨世或有激切之諭削於義兵必不相容云我義所處置不敎而刑之謂之罔民也玆先告諭從今於不忘父母之國長髮歸義反有貴乎有髮赴義之人士矣深其諒算取舍無致後悔至可至可

戊申 正月 一月

湖 南 義 所

- 別紙(三)

傳令外南面面長及大小民人處

夫結稅國之大政而民之所當納者也今吾國運暫滯臣謀不誠結錢與戶布投諸倭賊之私庫者專由於領受及任員之不良也苟非領受任員之刷帳豈能以賊徒家刷之戶督哉從玆如或有該所任圖帝擧行者斷未梟首矣十分惕念警告勿犯適科無致後悔至可至可

戊申 正月 一日

湖 南 義 所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 267~268쪽

호남의장 김준이 장성군수에게 보낸 글과 고시문

敬啓者，今此義務，亶出於復國權保民命，而斷斷無他旨也，金準，素以魯鈍之質，敢有是擧，

거나 비슷한 내용은 대표적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표시는 원 자료에서 해독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激於一般之義者. 亦因化育之物故耳, 第伏念, 令監, 以其世忠良, 永保國祿, 憂在進退, 愛君忠國, 切非生等可此之忱, 然而愛民待義之澤, 倍深於他之守宰, 義兵之或有稱罪就捕之民, 隨現曲庇, 一無傷害之人命云, 聳賀萬萬, 趁未得鳴謝, 悚悶悚悶, 且伏聞宣諭委員趙鐵九, 權重彬, 紹介於令監, 以義兵歸順之事, 互相强勸, 以致李哲衡之納兵歸順云, 果然耶, 李哲衡之資寇兵而桀虐之罪, 必有數討之日也, 令監之在中强勉, 抑或有功於歸順, 而爭要歟, 爲生靈之欠縮而然歟, 何其苦心, 使之納兵也, 若是之迅遠耶, 切爲善政, 令監大失德之羞也, 以生靈欠縮言之, 以吾一人, 伐賊一簡, 吾有三四餘矣, 不足爲慮, 則望須以理, 庸及於趙·權兩氏, 俾爲屏跡, 至禱.

戊申 二月 二十日

湖南義將 金 準 謹上

– 告 示

國家가 있은 然後에 君이 있고 君이 있은 뒤에 民이 있다. 稅가 있음은 自然의 定數이다. 그런데 現今 倭奴는 我國 五百年來의 根基를 紊亂하여 我君母를 戮하고 我皇土를 勒하고 我太子를 奪하며 我民稅를 勒奪하기에 이르렀다. 거의 國家는 있으되 그 實은 없는 것과 같다. 君上에 正稅를 捧納함은 곧 由來 國民의 義務이다. 어찌 倭奴에 終歲勞動의 實을 보낼 理가 있는가. 我 秉彝의 同胞는 모두 誓心의 義를 擧하여 모름지기 國賊을 掃退하여서 皇治를 바르게 하고 國本을 安全하게 할지어다. 나라를 다스려야 法을 펴고 稅를 負荷시킴은 正理이며 違法이 아니다. 自今 正稅를 納入하여서 倭奴의 몸을 살찌게 하는 者는 이는 곧 賊에게 糧食을 가져다 주어 寇兵에 資하는 자이다. 故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같이 斬刑에 處한다 一을 懲하여 百을 勵하는 것이다. 이에 大小人民에 痛告하노니 切願컨대 人民은 이에 李朝를 復國한 뒤를 기다려 指揮을 받을지어다.

湖 南 義 所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1, 649–650쪽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 522쪽

김준 의병장이 호남의소의 이름으로 배포한 고시문

– (寫本) 告 示

方今 倭奴가 와서 我 五百年來의 純良한 民俗을 紊亂하고 禍를 남기게 이르렀다 이 禍根을 끊지 않으면 國亂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本義所는 이에 大事를 唱道하여 盟誓코 無情한 良民을 火中에서 救出하고 我疆土를 安全히 光復하는데 있다. 피가 있고 뼈가 있는 人民은 各自 洗心從命하라 不然이면 本義所는 無餘의 形으로써 殺戮을 施行할 것이다. 무릇 小民은 細利를 노리고 國是를 理解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나라를 팔아 私利를 貪하려고 하는 者가 있다면 多大한 天誅를 加하여 戮殺이 妻子孫族에 미칠 것이다. 倭奴와 潛通하여 我의 內機를 漏泄함이 있

다면 죽여야 한다. 各郡의 正稅는 굳이 國庫에 納入하지 말라 이때에 當하여 納稅하는 者가 있다면 終歲勞動하여 얻은 果實을 賊虜에 바치는 者이다. 斯民은 先王의 遺民이다. 굳이 正稅를 倭奴에 捧上할 義務가 있을까보냐. 自今 稅金을 徵收하는 者가 있다면 該稅務의 主事와 徵收員은 모두 探捉하여 一一히 炮殺할 것이다. 自衛團은 所謂 本心의 良을 喪失하고 賣國의 擧를 하는 者이다. 이들에 應하는 者가 있다면 身首가 그 곳을 달리할 뿐 아니라 殺戮은 그 妻子親族에 미칠 것이다. 一進會의 入黨加盟은 어찌 그 本心이겠는가. 사람의 잘못을 깨닫고 前非를 悔改하고 적어도 革心하여 스스로 善良으로 돌아간다면 本義所는 舊惡을 생각치 않고 不問施善의 意로써 할 것이다. 改心하지 않으면 殺害할 것이니 後悔하지 말라 本告示를 揭示한 後 만약 撤去하는 者가 있다면 撤去者의 罪는 勿論 먼저 該店主에 嚴繩을 베풀 것이다. 不告先罰은 苛酷하다. 이미 告示한 뒤 만약 故犯者가 있다면 決코 容恕가 없을 것이다.

湖 南 義 所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 523~524쪽

김준 의병장이 제2순사대 지휘관 조의갑에게 보낸 편지

순사대 지휘관 조의갑 좌하(번역문)

순찰하시는 행군이 어찌 우리 선왕의 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행위를 보니 사람을 못살게 구는 행패가 외부의 적보다 심한 자들은 집집마다 수색하며 의병이든 거주민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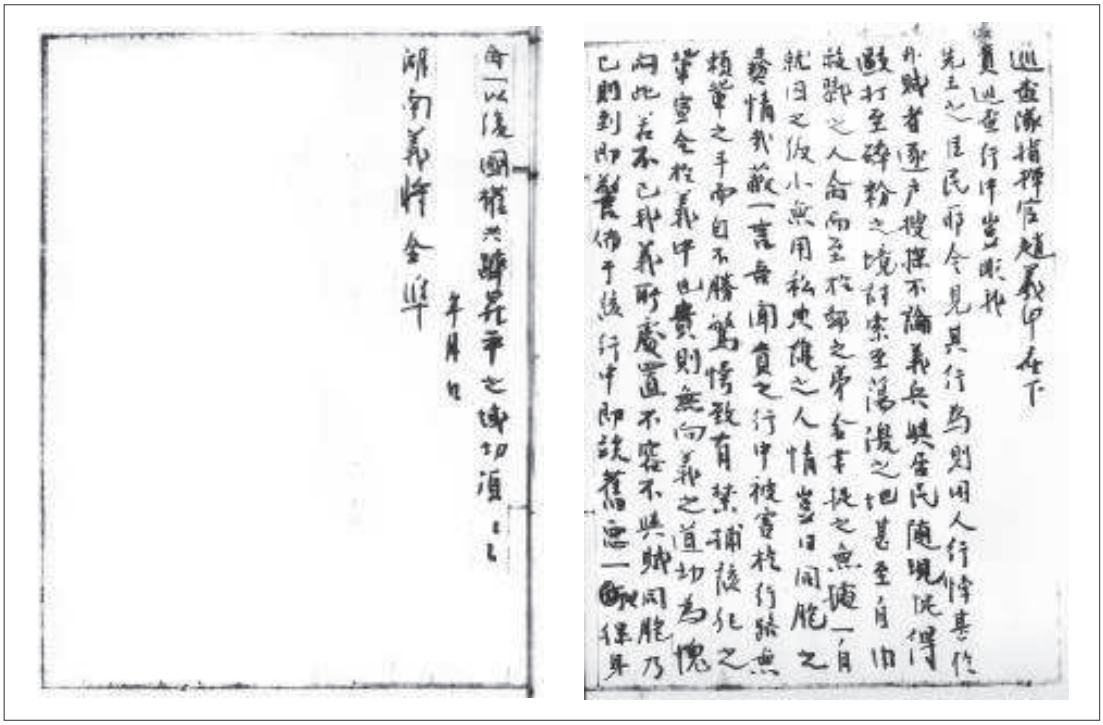

따지지 않고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 몸이 부서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구타하고 남김없이 토색질을 합니다. 심지어 제멋대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제 아우인 김율(金聿)은 이유도 없이 붙잡아 감옥에 가둔 뒤로 조금도 개인적으로 보호할 사람도 없으니, 어찌 동포로서 떳떳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 하겠습니까. 폐일언하고 제가 귀하의 행군이 거리의 무뢰배들 손에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놀라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당 백성들을 단속해서 체포하도록 의중(義中)에 명령을 내리셨다니 귀하에게는 정의를 향한 도리가 없어 매우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이것을 만약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의중의 처치는 적과 같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행군에 경고하여 즉시 오래된 악행을 끝내어 한편으로는 목숨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국권을 회복함으로써 태평성대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년 월 일

호남의장(湖南義將) 김준(金準)

출전 : 『제2순사대에 관한 편책』

김율 의병장이 나주군수 및 나주자위단장에게 보낸 글

- 回函

卽見來書痛嘆何極伏惟我東邦之禮義文明不下於殷周之禮樂連綿松鄒魯之遺風也故三千里疆土五百餘年之社稷莫疆于斯自甲牛之後國步丕塞獸蹄鳥跡交侵於東邦矣終至於奪我國權哀此臣民不勝梟毒而痛忿太息者此也方今不得已擧義之事憑喻於湖南諸郡大關之事都在於羅州一郡十分惕忿垂察焉方分倭賊則禽獸也禽獸之輩豈與細倫混雜乎到此羅州一擧義則在下官吏四境義士莫不翹首連望而各處義將將如水之注下如星傷孝以義害義乎哉嗚呼痛哉倭賊偏滿諸郡不可保存者卽大韓民也臣民之道理設使死於義豈能生於不義乎在野之愚夫愚婦痛忿之心不無況食祿之官員乎伏惟羅州公世世柱石之大家來守湖南之拇郡惠政猶邁施平原之伏湛氣節圖歸於蹈海之仲連也卽四境之義士晝宵所望如大旱之得雨如渴者之甘飮也則縱縱軫燭焉當今時虞倭賊之事勢羅州一擧討滅本郡之賊各郡之賊自各郡處斷矣此時卽天時也而未內不虞時機妄自義優極甚痛嘆更無軫念携貳之端千萬伏望之至

戊申 正月二十四日

湖 南 義 將 金 聿

羅州郡守 座下

- 羅州郡自衛團團長 羅主史 座下

都閣切惟我大韓三千里壇土內二千萬同胞莫非我列聖上半千年敎化中保生之物然則其德倘何如哉雖至滅身而報猶不足爲萬分之一也方今賊勢大熾上自皇上以下全國人民不勝梟毒燋爛之患立可見矣而邑中僉員若不知而曲參異端尙不返義以此淺量之所究亦覺於其中有深深之里然而燋

喉之渴切身而遙指海于萬里之外滔天之水己迫而方進舟於長洲之林未爲晩耶南道列邑尙今默然不起者都是望待於羅州之動靜如何矣惟願僉賢卽達通義同成大事之地千萬幸甚

戊申 正月二十四日

湖 南 義 將 金聿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 289~290쪽

김율 의병장이 나주군수에게 보낸 글

官民之情卽父子一體而尙不面先書雖曰非禮然綠於勢也非人也則勿致誚之地伏望謹未審新元政體于安重政務不有惱神者否伏溱區區不任下悰耳就白夫人之謂人不以形貌之與物殊異而爲人子弟可竭其力爲人臣民可盡其命上以順天心以定物情遠絕飛走之問而往處人域與天地叅同斥邪衛正然後可乎伏想以城主之能鑑逍遙之明達必不在人後而覺矣然而當此賊勢然以遇衷思索切城主羞之以若城主權炳革圖定策己至梢矣歎之奈何然自今爲始亦非晩也城主一動則湖義之士莫不響應而從之且旣爲各處義將等各引數百騎一易首事城主從後爲翼矣城主不勞而得功自在其中矣此豈非好種之際耶且聞金雖克木錘鑽不可伐鄧林水雖勝火升合不足救焚山以此揆之討賊之事無足憂也然此亦如是遐土恒格凡質之殘權纖力非所敢望也民本是以年淺昧事之人初不知如許等理亦不量資力之不及遽作擧事於國家無尺寸之効反遺害於堵民罪悚嘆悚夫何言哉民向自沙五見敗之後收率敗殘軍幾百名計窮力單六七陣中夜合晝分百度千科若不賴城主之權力難得如意故玆以泣懇伏願城主洞燭然後擧其有重之足特置至輕之地伏望餘姑閣不備伏惟

戊申 元月旬八日

湖 南 義 所 金聿 再拜

－ 答 函

今此來書ᄂᆞᆫ 披閱未半에 祇傀德薄政拙이오 不覺注然涕泗로라. 夫義者ᄂᆞᆫ 行而宜之之謂也라 欲保其義ᄃᆡᆫ 心先慘公德이오. 若無公德이면 反害其義니 可乎아 今君이 特擧義旗ᄒᆞ고 大發公憤ᄒᆞ야 寄生命於礮彈ᄒᆞ며 付身體於犧牲ᄒᆞ니 慷慨之志와 忠義之氣가 豈不壯哉리오마ᄂᆞᆫ 不度時機而妄動은 是智者之所不爲也라 夫公德者ᄂᆞᆫ 以我之盈으로 湯彼之虛ᄒᆞ며 以我所有로 補彼之無ᄒᆞ야 互相扶助ᄒᆞ고 互相愛護ᄒᆞᆷ이 是也라 今에 諸君은 以我所過론 燒彼村里ᄒᆞ며 以我所留론 殺彼同胞ᄒᆞ야 烟焰이 漲天ᄒᆞ고 腥血이 滿地ᄒᆞ니 聞猶不忍커든 況其可見乎아 嗚呼라 倡義一事ᄂᆞᆫ 雖因於忠憬所激나 結果ᄂᆞᆫ 無異於鴆救炳이오 風扇防火ᄒᆞ니 愛惜何喩아 以孝傷孝면 反爲不孝요 以義害義면 及是不義라. 未有義而後其君者어ᄂᆞᆯ 何不思皇上陛下之宸憂며 未有仁而遺其親子어ᄂᆞᆯ 豈忍使同胞兄弟之慘酷耶아 本職이 職在守土에 不善導率ᄒᆞ야 使我斯民으로 不能講明於公義公德ᄒᆞ야 以至於淪胥之境ᄒᆞ니 寫不內疚悚愧이리오. 現今 字內大勢가 優勝劣敗之時也라. 西勢東漸에 大局이 不穩ᄒᆞ니 惟我東洋이 互相維特ᄒᆞ야 以保全局이 第一勝算이

오 以我邦形便으로는 忍辱呑恨ᄒᆞ고 上下奮勵ᄒᆞ야 廣設學校에 敎養智識ᄒᆞ고 擴張實業ᄒᆞ야 扶植國力然後에 庶可以挽回獨立之權이오 不然이면 雖二千萬人이 同死於社稷이라도 何補於國이며 何賴於民이리오. 宣諭文一度를 膽本齎送ᄒᆞ노니 惟願諸君은 反本悔悟ᄒᆞ야 捨兵歸化 而順於大皇帝陛下之聖謨ᄒᆞ고 各自安堵ᄒᆞ야 使父母兄弟妻子로 毋致揍屑之境ᄒᆞ고 敎育을 是務ᄒᆞ며 智識을 發達ᄒᆞ며 殖産을 奬勵ᄒᆞ야 需供을 豊足이ᄒᆞᆫ 然後에 量力而後進ᄒᆞ고 慮勝而後會ᄒᆞ면 何事不成이며 何業不做이오 越王之十年練兵과 燕昭王之四十年敎民과 普露斯之六十年敎育으로 大業을 竟成ᄒᆞᆷ은 史乘에 昭載ᄒᆞ니 思而又思ᄒᆞᆯ지어다. 惟我皇上이 誤解ᄒᆞᆫ 赤子를 懇摯懷保ᄒᆞ시는 聖意로 悔悟歸順ᄒᆞᆫ 者에게 免罪文憑을 成給ᄒᆞ야 毋使疑懼彷徨케ᄒᆞ라ᄒᆞ시기로 本部에도 免罪文憑이 下來ᄒᆞ야 次次歸化請願者 多ᄒᆞᆫ故로 方行實施ᄒᆞ니 其於民國事에 豈非幸福이리오. 諸君이 今日歸順ᄒᆞ면 今日安堵ᄒᆞᆯ거시오. 若一向執迷妄率ᄒᆞ면 後悔莫及ᄒᆞᆯ터이니 此非本職遇妄之說也라. 實是數心衷曲之言이니 須各量悉을 幸甚幸甚.

隆熙二年 二月二十一日

羅州郡守 金聖基

湖南義所 金聿 座下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 299~301쪽

호남의장 김율의 통문과 격문

- 通文

右通喩事與學設校國家之根抵也殉郎守義士者之慷慨也方今我東邦不共戴天之讐豈能有如許禽獸之倭賊乎哉嗚呼痛哉往自甲午以後彼禽獸之輩橫行衝突而偏滿京鄕要害之處變夏用夷則列聖之綱紀淪胥於獸跡之境方命圮族則柱石之權柄透隨於無人之境悵嘆奈何究其國家事勢一則五百餘年社稷切逼於置身薪火之上其身難安豈能長久乎次則三千里彊土全沒於蚕食之中其土雖豈能保全乎刻骨之痛恨與水流同長也嗟夫不勝義氣一次擧義則軍律縣殊所謂代大匠斫鮮不傷乎者此也方今究其軍中之事機敵强義弱矣然而慮勝而後敵戰實非義氣之士也伏願本郡校宮僉賢齊聲赴義則非特義聲大振補國安堵自在其中而事半古人功必倍之矣說使死於義下以報列聖之神靈幸以生守於義則東方之體俗更見矣此時何時卽天時也然則士君子之慷慨節氣保護于國家之根抵果何如哉天時如是而若違天時則反必受禍深諒深諒焉到此各郡士者爲名而不爲齊力擧義之心背親忘君之像莫甚於此如是則與夷狹禽獸之類何殊茲以輪通伏請僉君子特激勵義氣而同心齊力補國守義之地幸甚

羅州鄕校 僉尊 座下

湖南義將 金聿

先鋒 文祥麟

後軍 尹東淳

戊申 正月二十六日

- 各郡面에 配布된 檄文

傳令各郡各面里大小民人等

卽聞各處無賴輩稱以義兵三一五作輩出沒閭里奪人廢午或碎人産物其寃則都歸義所萬萬痛駭從今以後如有此等弊端卽自洞中一拼結縛或押上于義所是去乃或捉上于本郡以爲處置是矣若不遵令者斷當軍律懲之矣十分惕念擧行無之後悔之地爲可事

戊申 二月初十日

義將 金聿

再飜耕在迴奪人農午者有之則必與倭賊同治矣莫抵後悔焉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9, 505~507쪽

김율 의병장이 나주의 군서기 및 자위단장과의 왕복문

- 郡書記에게 보낸 글

大抵吾郡羅州雖處遐土一方爲湖南之拇城也且以人材類出言之能敵人鄕而赤以古聖遺籤者之湖南人器半在羅州人器半在邑云此豈東方之甕牖耶所以湖南有大事則次邑誰某人士不圖自意先謀而惟望羅州之動靜如何然後其圖無事者卽是故然也今當討賊之目搜探人情則亦爲之不應豈不痛歎哉伏願僉公兄從速回議定策列邑有志人士許通約期時以某月某日各自其郡隨其所存賊數一齊捕殺以成上輔下安之功若何餘不多上

戊申 二月初九日 倡義生 金聿 敬請

且聞京之人傳說以移民之意通訓于各道列邑云豈非大急之際耶

- 書記의 同答文

今此 書意는 詳悉而 時局形便과 利害禍福을 旣自本官家로 奉承 勅論文ᄒᆞ와 己爲解理 書復이시견과 鄙等은 身在於命令之下ᄒᆞ야 聖上之宸憂와 府郡之曉訓이 未嘗不惕目警耳ᄒᆞ니 其所奉行을 不敢疎忽而 且度時機에 以是妄動이오 不如安案이라. 온 玆에 函復ᄒᆞ오 以量悉을 爲要

戊申 二月初十日

羅州郡公兄 敬復

湖南倡義所 座下

- 羅州 自衛團長에게 보낸 글

欽昻餘先承蕙函感頌伋審書來後體韻增慶仰賀區區恇誦生衣旅屑己耳就示意非不留念己久事係末遑矣所敎若是聚切揆以彼我問形勢計不出此外果是好莫階梯也別加周密秘無發機以俟期日千企萬望余從近相叙不備謝

二月十日 知名人拜謝

- 答 函

來書備悉, 而眞若有相和之心, 切勿參涉于我國政治財務, 但爲區域通商, 而亦禁買我田土之法, 各地散在兵弊, 一切收禁, 且旣爲捉去吾之軍, 一一放還, 然後, 彼此擇日相逢, 以結親誼之地爲望耳, 若不然, 則率我二千萬大兵及三國請兵十萬人, 合擊勦滅, 不餘一種矣, 無至後悔之地爲宜.

戊申 二月 十四日

中夏大韓國湖南倡義大將 金 聿 印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1, 649쪽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9, 506~507쪽

김율 의병장이 광주부 순사대장에게 보낸 편지(1908)

김율이 순사대장에게 보낸 편지(번역문)

비록 교분은 없지만 훌륭한 명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삼가 여쭈오니 화창한 봄날에 체도가 좋으시고 군무(軍務)를 보시는데 고달프지는 않으십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 우러러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나고 둔한 저의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우러러 아뢸 것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왕명을 받들어 군사를 통솔하여 호남의 병사들을 다스리고 계시므로 저 개 같은 왜놈들이 감히 짖어대지 못하니, 사람들이 이 의병들 때문에 또한 치고 싸우느라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위로는 조금이나마 군부(君父)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구제할 수 있으니, 덕망(德望)은 옛날 어질고 명철한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으며 훌륭한 명성은 절로 오늘날의 으뜸이 되니, 백성들이 너무도 찬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글로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본래 먼 지역에 사는 선비로 보잘것없는 자질에 나이도 어려 일에 어둡다 보니 변통의 이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마음과 혈기라면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고 흉악한 왜적이 한 짓을 따져보니 소름이 돋아 간이 떨어질 정도이니 통탄스러움으로 뼈가 으스러질 지경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이 부족한 줄은 알지만 분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감히 대인께서 하기 어려운 일을 들자니 마치 모기가 태산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 임무를 이기기 어려우니, 통솔이 많이 잘못되고 신중히 베는 대장장이도 베다가 손을 다치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그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때에 귀하의 훌륭한 명성이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것을 듣게 되어 꼭 뵙고 싶은 마음[3]이 간절하여 곧바로 허둥지둥 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을

3) 뵙고……마음: 원문의 '식형지원(識荊之願)'을 번역한 말이다. '서로 인사를 나누어 면식(面識)을 갖고 싶은 바람'이란 뜻으로, 아직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상대에 대한 경사(敬辭)이다. 당나라 때 이백(李白)이 형주자

빼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기는 했지만, 이곳에 올 길이 없으니 혹여 용서하고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하의 고명하고 뛰어난 절개는 또한 동지 몇 사람에 해당할 정도이니, 만약 일찌감치 계책을 도모했다면 이미 저 흉악한 왜적을 소탕하여 거의 우리나라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국운이 아직은 막혀 왕성하지 못하니, 인력으로는 도모하기 어렵지만 절로 때를 놓친 것에 대해 탄식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뵙고 심력을 바치고 싶은데 혹여 제가 하찮다고 여기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귀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서로들 귀하는 본래 개 같은 왜적의 심복으로 뇌물을 많이 받아 권세 있는 관리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죽여 없애 왜적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 호남을 순찰하러 온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는 웃다가 입술이 찢어지기까지 하였는데 그 말을 한 자를 추궁하니, "배은망덕한 짓은 금수도 차마 하지 않는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또한 반드시 나와 같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면서 만약 개처럼 짖고 돼지처럼 시끄럽게 감히 입 밖으로 내어 사람들의 귀를 더럽힌다면 신령이 어찌 그대를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2천만 동포가 누군들 우리 성상의 5백여 년 성대한 덕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덕에 대해 아무리 자신을 희생해서 보답하더라도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하늘이 불공대천의 원수와 부화뇌동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 환란으로 은덕에 보답한 자들에게 반대로 화를 내릴까 두렵습니다. 비록 저 금수와 같은 자들일지라도 이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 이미 이름 있는 사람의 반열에 있으니 능히 하늘과 사람에 대해 잘 알아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니, 이치를 체득할 자의 체득에 대해 또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이러한 말을 내지 말고 즉시 쫓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혹여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거나 치마폭의 벌을 잡는다[4]는 유언비어에 빠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귀하의 옥 같은 자질로 비단에 있는 하나의 흠을 문제로 여기면서 그 명성을 온전하게 구제하지 못하고, 하나의 부류를 본래의 값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시니, 오직 귀하께서 다시 숙고하시어 속히 남쪽으로의 행군을 이루시고 북쪽으로의 행군을 늦추지 말고 털끝의 흠과

사(荊州刺史) 한조종(韓朝宗)에게 주는 편지인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서 "생전에 만호후에 봉해질 필요 없고, 오직 한 번 한 형주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하였다.

4) 시장에……잡는다: 터무니없는 모함을 말한다.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건마는 세 사람이 잇달아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누구나 그 말에 현혹되어 믿게 되고 만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고사가 전한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의 신하 윤길보(尹吉甫)의 아들 백기(伯奇)가 계모를 지성으로 섬기었는데, 계모는 벌의 독을 제거하여 자기 옷에 붙게 하고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백기가 자기를 유혹한다며 길보에게 모함한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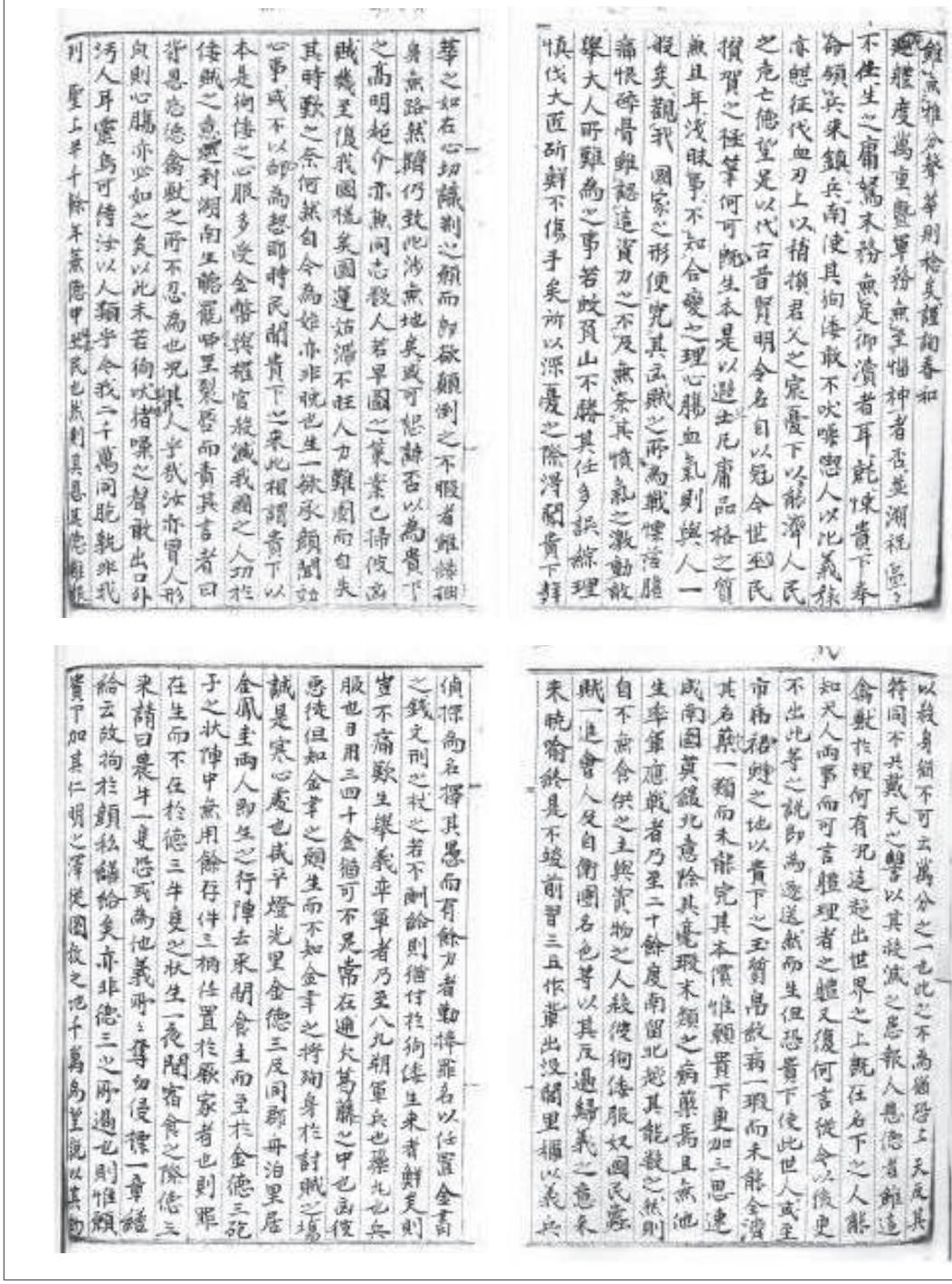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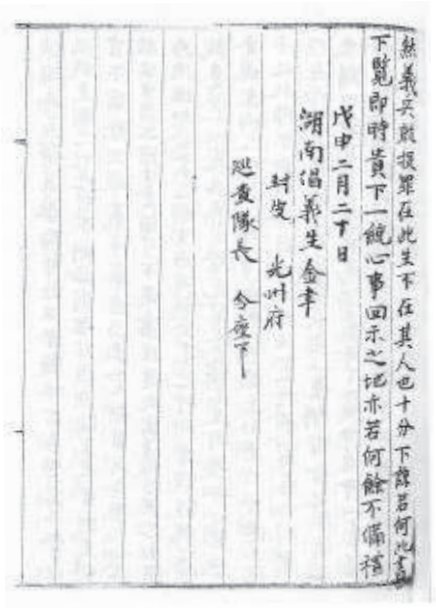

말류의 병폐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응한 것이 20여 차례에 이릅니다. 남쪽에 체류하거나 북쪽으로 넘어가서 싸웠던 것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로 음식을 제공한 주인과 물자를 댄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복종시켜 노예로 만든 저 개 같은 왜구들을 죽이고 좀 같은 왜적들이 한꺼번에 나와 자위단(自衛團)의 이름 등은 과오를 반성하여 의로 돌아가는 뜻으로 와서 깨우치되, 끝내 이전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삼삼오오 떼를 지어 마을에 출몰하여 의병이라고 하면서 정탐을 명분으로 내세워 어리석되 여력이 있는 자를 골라 죄명을 억지로 씌운 뒤에 돈을 임시로 부과하여 형벌을 내리고 매를 칩니다. 만약 갚지 않으면 오히려 개 같은 왜적에게 보내어 살아 돌아온 자가 드무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병을 일으켜 군사를 거느린 지 8~9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군사와 탄환, 병사들의 의복 등 날마다 들어가는 돈이 3~4천금인데 오히려 부족하고 늘 부족함으로 갈등하는 중에 있습니다. 흉포한 저 악당들은 제가 살기를 바란다는 것만 알지 제가 적을 토벌하는 전장에서 몸을 바치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한 바입니다. 함평(咸平) 등광리(燈光里) 김덕삼(金德三)과 같은 군 주박리(舟泊里)에 사는 김봉규(金鳳圭) 두 사람은 바로 저의 진영에서 거래하는 식주(食主)입니다. 김덕삼의 경우는 포탄과 진중에 쓸모없이 남아 있던 세 자루의 총을 그 집에 임의로 둔 것이니, 죄가 저에게 있지 덕삼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의 경우는 제가 하룻밤 숙식할 때 덕삼이 와서 청하기를, "농사용 소 한 마리를 혹 다른 의소에게 뺏길까 두려우니 물침표(勿侵標) 1장을 손질해 주십시오." 하였기 때문에 안면에 치여 손질해 주었으니 이 또한 덕삼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귀하께서 어질고 명철한

은택을 더하시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분명하지만 의병을 붙잡은 죄는 저에게 있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으니 십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편지를 보시고 즉시 귀하께서 마음을 모아 회답해 주시는 것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사연은 예를 갖추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무신년(1908) 2월 20일

호남창의생 김율

봉피(封皮) 광주부 순사대장 영좌하

출전 : 『제2순사대에 관한 편책』

호남장의도회소 대장 권택의 광고문

호남장의도회소 대장 권담(권택의 오기)의 광고(번역문)

이 글은 융희(隆熙) 2년(1908) 12월 2일 밤에 전남 광주군 방동면(方洞面) 서창(西倉) 주막 앞 빈집 벽면에 붙인 것이다.

근래 왜적과 순사대가 흑석(黑石) 석문(石門)[광주로부터 3리 흑석면 석문]에서 접전한 뒤로 무고한 평민을 무수히 난타하고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며 더구나 의병의 집이라고 하면서 불을 지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까지 없애니, 이 무슨 이유인가? 참으로 이른바 옥석이 다 불탄다[玉石俱焚][5]는 것이다. 이에 갈수록 의병을 일으키니, 이 또한 하늘이 우리 병사를 돕는 것이다. 아, 너희들도 한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머리를 자르고 모양을 바꾸어 의를 굽힌단 말인가. 비록 이익이 생기고 이익을 내며 목숨을 구하고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라고 하며 왜적을 속이고 의인을 보호하여 몰래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보호하여 지난날 형제와 붕우의 죄를 고친다고 하면 괜찮다. 어리석은 순사대는 오로지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게 바뀌었으니, 어찌 형제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는가. 왜적에게 붙어 왜국을 섬기는 충성은 쓸모가 없다. 의로운 일을 부탁하여 한국을 섬기는 충성심은 비록 살거나 죽더라도 우리 군대가 대포를 쏘아 공중을 맞출 것이니, 너희들은 혹 살 것이다. 만약 우리 군대를 표적하여 맞추어 대포로 죽일 수 있다면 비록 당시 살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죽여 하늘이 명한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만 마땅할 일이다.

무신년(1908) 10월 12일

호남장의도회소(湖南壯義都會所) 대장(大將) 권택(權澤)

---

5) 옥석이……불탄다: 『서경(書經)』「윤정(胤征)」에 "불이 곤륜산을 태우면 옥과 돌이 모두 탄다.[火炎崑岡 玉石俱焚]" 하였는데, 선악(善惡)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마구 해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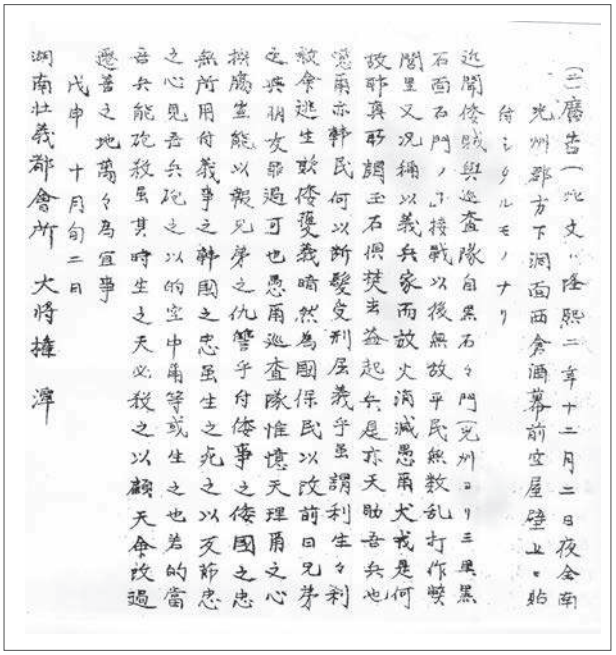

출전 : 『한말의병전쟁자료집-폭도격문』, 481~482쪽

호남장의도회소 대장 권택 광고(1908)

호남장의도회소 대장 권택 광고(번역문)

근래 장사치들이 걸인들과 헌병 보발 전자 마을에서 차행(次行)을 수소문한다고 하니, 참으로 이른바 죄인의 옆에서 참된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비록 참된 장사치라도 가짜 행세를 하여 마치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시장에서 도매하는 것이다. 마을을 암행하여 탐문해서 의를 해치지 말고 만약 영훈(令訓)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붙잡아 먼저 군율에 따라 칼로 벨 것이다.

무신년(1908) 10월 12일

호남장의도회소 대장 권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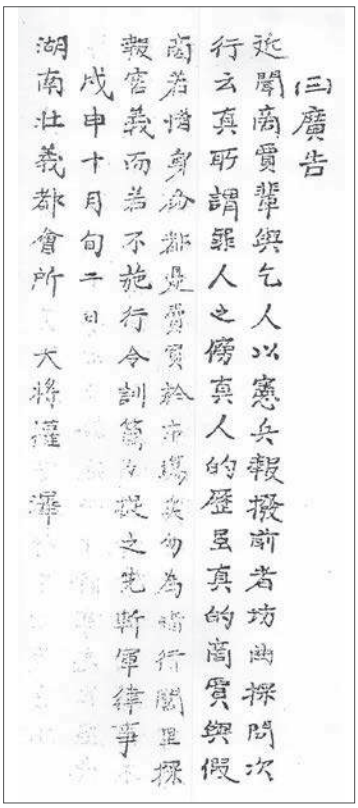

출전 : 『한말의병전쟁자료집-폭도격문』, 484~485쪽

마을의 사민에게 훈고함(1908)

마을의 사민에게 훈고함(번역문)

무릇 우리 군대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국가의 권세가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우리의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섬나라 오랑캐의 손에 빼앗기고 저들 나라에 항복하여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신(逆臣)이 권력을 잡아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여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지도 못하고 자리에 편안히 앉지도 못하며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정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다. 근 20여 년 동안 충신은 간악한 놈들의 손에 허망하게 죽었으니, 이른바 아래에 있는 신민(臣民)이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이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이익을 도모하며 충성을 모른 채 조그마한 충성심도 없으니, 탄식스럽고 답답한 심경이로다. 작은 배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 땅을 두드리고 하늘을 부르짖지만 운명이니 어찌하겠으며, 운수이니 어찌하겠는가.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대하여 시냇물을 막는 것보다 심하다. 지난해 봄 석달 동안 최(이름은 益鉉) 선생이 암장(菴丈)을 권면하여 왜놈을 치도록 선동하다가 일본 오사카(大阪 : 對馬島의 오기-작성자)에서 사망하였으니 당당한 충의는 바닷물이 끓어 넘치듯 하였다. 해와 달은 빛이 변하였으며 상서로운 무지개가 상여에 내렸지만 당시 의병장들은 대부분 해도에 숨어있고 더러는 개 같은 감옥에 갇혀 장례를 치루지 못했다. 다행히 김 공(이름은 泰元) 참봉 준(準) 씨와 율(聿, 성은 金) 형제가 돌연 분연하게 의병을 일으켜 저들을 수천여 명 죽였고, 성공한 뒤에는 기삼현(奇參鉉 : 奇參衍의 오기), 고광순(高光順 : 高光洵의 오기), 양해심(梁海心 : 梁會一의 호)이 절의에 죽었다. 이처럼 충신들이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의리에 보답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조 장(이름은 京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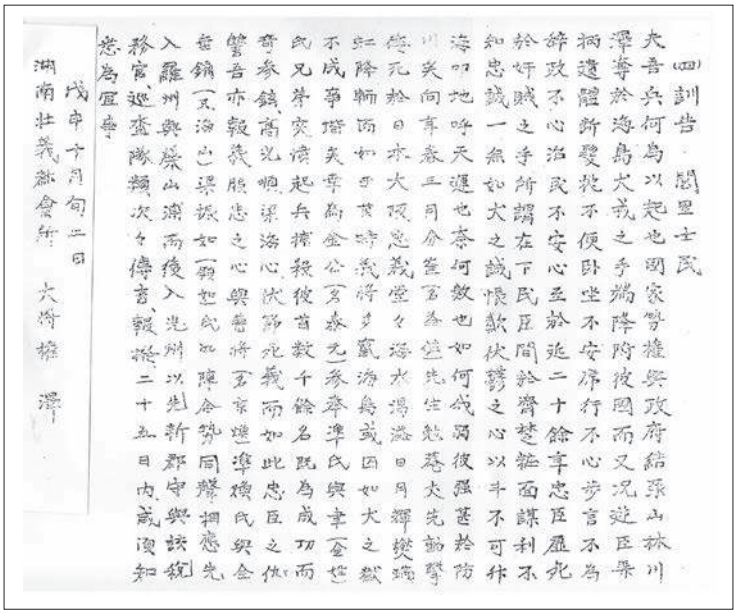

; 京煥의 오기) 준환(準煥) 씨, 또 해산 전수용(全垂鏞), 양진여(梁振如 : 梁振汝의 오기) 씨의 네 개 군진이 합세해서 한 목소리로 호응하여 먼저 나주에 들어가 영산포(榮山浦)에서 참전하였고 뒤에 광주에 들어가 먼저 군수와 해당 세무관(稅務官), 순사대의 무리들을 베고 차차 내용을 전하고 파발로 보고하였다. 25일 안에 모두 다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무신년(1908) 10월 12일　호남장의도회소 대장 권택

출전 : 『한말의병전쟁자료집-폭도격문』, 486~488쪽

호남의소 도통대장 박용식의 광고문

각도, 각군, 각면, 각리의 백성들에게 광고함(번역문)

이 글은 두루 통지하는 일이다. 오늘의 사건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군부(君父)께서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국세는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5백년 종사가 존재하는가? 망하였는가? 수천만 백성들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오호라, 망해가는 나라를 붙잡아 살리고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맹렬히 떨쳐일어나 왜적을 토벌하는데 달려 있다. 그런데 이른바 공경대부라는 사람들이 제일 꼭대기는 5적, 7적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등 온갖 짓을 해대고, 그다음은 모두 그 무리들의 개가 되어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여기고 재앙을 이롭게 여겨 망하는 것을 즐기며 그대로 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다음은 오랜 명문사족으로 습관처럼 구습을 따라 고식적으로 행하여 자신과 처자식을 보존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긴다. 돈 많고 힘 있는 아전들이 도리어 왜적의 권세를 믿고 편안하게 여기며 점거하고 적을 도우며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선조 가운데 임진정유년(壬丁年)의 칼날에 피 흘리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되던가? 원수도 잊고 치욕도 참는 것이야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비굴하게 아첨하여 빌붙어 그들이 베푼 혜택을 덕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타고난 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망국의 시절에 백성을 옮기고 종자 바꾸기를 마침내 재주 부리듯 하니, 백성과 종자가 바뀐 날에 오늘날의 은혜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설사 그들의 종으로 우리나라를 섬겨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가지고 임금이 죽었는데 홀로 세상에 사는 것은 개돼지만도 못하다. 희종(僖宗)의 말과 소종(昭宗)의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만 듣지 못한 것인가? 오호라,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의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망해도 망하지 않은 것이요, 사람이 비록 죽더라도 의가 죽지 않았다면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저 사대부들은 망해도 망하지 않은 것과 죽어도 죽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죽지 않은 자가 오직 망하기만을 스스로 재촉하고 죽기만을 재촉하는 것은 도대체 또 어째서란 말인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백

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따라주게 마련이니, 만약 지금처럼 소매를 떨쳐[6]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디에 이를지 아무도 모를까 두렵다. 이에 피를 토하며 고지하니, 부디 사람이 미천하다고 해서 그 말을 버리지 말고 이익을 보고 그 의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기유년(1909) 윤2월 일　도통대장(都統大將) 박용식(朴鏞植)

廣告 各道各郡各面各里大少民處

右文爲通諭事今日事不在多言君父今在何地國勢今至何境五百年宗社存耶亾耶數千里生靈生耶死耶嗚呼扶亾圖存起死還生惟在於上自公卿大夫下至士庶一心殉國奮身討賊而所謂公卿大夫則首爲五賊七賊販君賣國無所不爲其次皆其黨與鷹犬安其危而利其灾樂其所以亾置之勿說其次古家士族因循姑息以全軀保妻子爲上計而豪富權吏反倚恃倭勢以爲安入據賊翼以遣時日乃先祖不血肉於壬丁鋒鏑者有幾人哉忘讎忍恥猶或可說也奴顔姦附德其煦噓粗有秉彝之天者能如是乎況國亾之日移民易種乃其伎倆移易之日今日之煦噓有足恃乎設以其奴事於我而得免於死亾國破君亾而獨生於世曾狗彘之不若獨不聞僖宗之馬昭宗之猿乎嗚呼國雖亾而義不亡則亾而不亡人雖死而義不死則死而不死凡厥士大夫不思所以亡而不亡死而不死者而惟自促其亡自促其死抑又何哉見今此彊儞界義旅蜂趕足見秉彝之所同而民之所欲天必從之若不及今投袂同心合力則恐是稅駕無地玆以瀝血奉告幸以人微而棄其言見利而忘其義.

己酉 閏 月 日　都統大將 朴鏞植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169~170쪽

도통대장 박용식의 광고문 및 조경환 의병장 제문

– 광고(번역문)

이 글은 금단하는 일이다. 지금 의병이 일어나는 것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계책인가? 일신을 위한 계책인가? 만약 일신을 위한 계책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재산을 토색질하여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음식을 풍족하게 먹더라도 오히려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는 하루치 계책이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대한 생각이 아니므로 화적(火賊)의 무리나 동비(東匪)의 무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살이 찌기도 전에 죽음이 따를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한심스러움을 누를 길 없다. 명분이나 실제가 다 의에 맞아야 할 것이니, 위로는 이미 망한 종사를 붙들고 아래

---

6) 소매를 떨쳐 : 원문의 '投袂'는 옷소매를 떨친다는 말로,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춘추시대 초 장왕(楚莊王)이 자기의 사신을 송(宋)나라에서 죽였다는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 달려나가느라 신발은 궁전 앞 토방에서 신고, 칼은 침문 밖에서 허리에 차고, 수레는 포서라는 시가지에서 올라탔다.〔投袂而起 屨及於窒皇 劍及於寢門之外 車及於蒲胥之市〕"라는 '초자투메(楚子投袂)'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左氏傳』「宣公14年」.

로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해야 살아도 의롭고 죽어도 의롭게 되어 천하 만세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라에 보답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삼삼오오 마을에 난입하여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노소도 구분하지 않고 남녀도 구별하지 않으니 이는 화적과 동비의 습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체로 군대의 행진에는 비용이 없을 수 없다. 의식이 풍족해서 쓸모없이 쌓이는 것들을 국가의 위급함에 소용되게 한다면 좋은 일들이 좋은 일이 아님이 없으니, 돕기를 청해도 되고 주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 대개 머물고 있는 곳에는 창고가 있고 행군하는 곳에서는 식량을 휴대하지만 뒤의 큰일에 작은 힘을 모아 내어 큰일을 이룰 수 있으니, 머물거나 행군하는 것이나 그 공은 같다. 더구나 힘 없고 가난한 마을은 한 끼 밥도 오히려 고마우니 도울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사람 마음이겠는가. 소를 끌고 가는 것으로 말하자면 울타리를 직접 철거한다고 할 수 있으니, 머물고 있는 자들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은 뒤에야 행군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소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고기 한 점 맛있는 줄만 알았지 앞으로의 굶주림도 영영 생각해야 할 것이다. 조금이나마 한두 명이라도 반드시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모두 의병이라는 이름을 빌려 적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필경에는 못의 고기들이 서로 뒤섞이고 옥석을 구분되지 않게 될 것이다. 거대 진영의 선행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아, 의병과 거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환란을 서로 구제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기를 허물없는 부자와 형제간처럼 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환란을 막아 손발이 머리와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저 의병을 가탁한 포학한 사람들로 인해 마침내 서로 원수 보듯 한다면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폐단을 금하지 않는다면 의병이 제대로 된 의병이 될 수 없고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백성이 될 수 없다. 강한 왜국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 나라도 뒤따라 망할 것이다. 앞으로 의병이라고 하면서 마을을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의병으로 대우하지 말고 결박하여 대진으로 보내 대진에서 심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혹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경우 세밀하게 대진에 통보한다면 마땅히 체포하여 논단할 것이다. 금지 조항은 가장 심한 경우는 명분을 어지럽혀 상하 구별이 없게 한 것이고, 그다음은 인가를 수색하되 내외 구분이 없는 것이며, 그다음은 몽둥이를 휘두르되 노소를 가리지 않은 것이다. 그다음은 과부를 끌고 가서 정절을 잃게 만든 것이며, 그다음은 농사용 소를 끌고 가서 농사철을 잃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조목도 많지만 이것이 특히 큰 죄목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나열하여 게시한다.

기유년(1909, 隆熙3) 윤2월 일 도통대장 박용식(朴鏞植) 도장[印]

– 廣告

爲晝一禁斷事見今義旅之興爲民國計乎爲一身計乎若曰爲一身計則討索民財侈其衣而豊其食猶無足怪者而是一日之計非遠長之慮不見火賊之黨東匪之徒乎肥巳未及死亾隨之言念及此不勝寒心顧此義旅名與實皆義耳上以扶旣亾之宗社下以救方死之生民生義死義將有辭於天下萬世而

罔念保國安民之道三三五五攔入里落紂緞亂捧老少不分男女無別此不過火賊之續東匪之習耳大抵軍行不可無費衣食而有餘積於無用者需用於國家之急好事非不好事請助亦可許給亦可盖居者有積倉行者有裹粮也而後大事可集出些力而集大事居與行其功惟均況夫殘戶窮蔀一飯猶德而不思所以斗護之者是豈人心乎至於牛隻之牽去可謂藩籬自撤居者不失於農而後行者糧餉可須而無牛何以爲農但知一臠之滋味而不念向後之飢困粗知一二者必不如此此皆假義兵而懷賊心竟使澤魚相混玉石不分其爲大陣之善不輕而重嗚呼義兵與居民首尾相接患難相恤相恃相恃倚當如父子兄弟之無間而後防難捍患可如手足頭目之赴救而由彼假義之虐猛遂使相視猶敵讎言之痛心此而不禁則義兵不得爲義兵生民不得爲生民見笑於强寇而國隨而亡矣自今以後稱義兵而濁亂里落者勿復以義兵待之縛致大陣使大陣甚焉其或力有所不及則密通于大陣則當捕致論斷而禁條則乖亂名分上下無別其次搜索人家不分內外其次紂綴亂捧不分老少其次牽去寡婦勒之失節其次牽去農牛使之失時其餘條目猥多而此特其大者故條列而揭示焉.

己酉 閏二月 日 都統大將 朴鏞植

– 조경환 의병장 제문(번역문)

유세차 기유년 월 일 초하루에 도통대장(都統大將) 박용식(朴鏞植)은 변변찮은 제물로 대장 조공 경환(曺公京煥)의 영전에 제사를 올립니다. 아 슬픕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게 마련이니, 죽음은 한 번 죽기 어렵지만 죽으면 편안합니다. 더구나 또 한 번의 죽음이 백만 군대보다 강한 것은 성패와 이둔(利鈍)을 미리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니, 무후(武侯)[7]도 오히려 그와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는 것[8]은 추성(鄒聖: 맹자)께서도 가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옛날부터 호남은 의로운 명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충성과 용맹이 강성해서 제봉(霽峰)[9]과 중봉(重峰)[10]이 금산에서 절개를 세우고 또 세 굳센 선비가 촉석(矗石)에서 순절하여 우리 영토를 회복하여 기본을 세웠습니다. 기강과 윤리를 세웠으니 성패를 어찌 논하겠습니까. 옛날과 지금은 너무나도 닮았으니 인간의 떳떳한 본성은 바로 하늘이 내려준 것이어서 내가 선창하면 자식이 화답하는 법입니다. 성재

---

7) 무후(武侯) : 무후는 중국 삼국 시대에 촉한(蜀漢)의 유비(劉備)를 보필하여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던 제갈량(諸葛亮)의 시호이다. 제갈량이 일찍이 후주(後主)에게 올린 「후출사표(後出師表)」에 "모든 일은 이처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신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서 죽은 뒤에 그만둘 것이요, 성패와 이해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凡事如是難可逆見. 臣鞠躬盡瘁, 死而後已. 至於成敗利鈍, 非臣之明所能逆睹也.]"라고 하였다.『古文眞寶』 後集 卷1 「後出師表」.

8) 물고기를……것 :『맹자(孟子)』에 "어(魚)도 내가 먹고 싶고 웅장(熊掌)도 내가 먹고 싶지만 어(魚)를 버리고 웅장을 취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취한다는 비유이다.

9) 제봉(霽峰) :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이른다.

10) 중봉(重峰) : 조헌(趙憲, 1544~1592)을 이른다.

(省齋)[11]와 녹천(鹿川)[12]은 옛 사람의 의로움을 의롭게 여기고 옛 사람의 죽음을 제대로 된 죽음으로 여겨 적을 섬멸함에 있어 결과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체득하였으며 장군은 한 번은 남쪽으로, 한 번은 서쪽으로 행군하여 간절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여 오로지 나라에 보답하기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여 거의 대단한 공을 세울 뻔하였는데, 남쪽 지방이 놀라 진동하는 것이 마치 우레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듯 하였습니다. 명령은 행해지고 금지하면 그쳐 어질다는 명성이 멀리까지 퍼지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천신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재주도 없는 제가 공에게 의탁하여 군진에 내려가 힘을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니 군대의 정밀함이 이에 진작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공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공은 남쪽 지방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신이 돕지 않았고 어등산에 감응이 있었지만 조산(祚山)에서 등불 심지가 떨어졌습니다. 무겁게 군진을 돌렸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아 있는 어린 자식들은 공을 따라 행군하였으니 외롭게 가는 길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나라를 우선하고 가정을 뒷전으로 여겨 국가에 대해 뜨거운 마음으로 뒷일을 염려하였습니다. 하늘의 달이 다시 어슴푸레해지니 역귀가 왜적을 다 죽였고. 옛날의 공적인 마음을 다 알게 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운 혼백이 되었습니다. 섬나라 오랑캐를 다 없애지 못하고 오직 공의 혼백만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니 공께서 죽은 뒤로 마치 의지할 이가 없는 듯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누군들 남은 슬픔을 알겠는가. 감히 변변찮은 제물을 올려 남은 슬픔을 바치니 공께서 영령이 있으시거든 오시어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 祭文

維歲次己酉 月 朔 日 都統將朴鏞植以菲薄之奠致祭于大將曺公京煥之靈曰嗚呼哀哉有生則死死死則難均於一死死死則安況又一死强於百萬所不逆覩敗成利鈍武侯猶爾況乎其他捨魚取熊鄒聖所嘉自古湖南義聲最高壬辰之燹忠勇蹻蹻霽峯重峯錦山立慤又三壯士矗石是殞彊域重恢此爲基本扶植綱倫成敗何論古今一轍秉彝有天我倡子和省齋鹿川義古人義死古人死於惟金將志二公志殲賊無筭竟致一躓一軆將軍一南一西懇懇憂愛一念報國衆望之歸庶幾奇功南徼震驚如雷如風令行禁止仁聲八人人心所注可感天神顧余不才托跡下陣或合或分軍容寔振適我分張公則南征神之不佑有憾魚登祚山燈落回谿翅重天不佑宋何嗟及之維余稚息從公于行孤駘之役汪踦不殤死而無憾先公後私如焚如惔言念後圖天月重蒼厲鬼殲賊古有睢陽余悉公心死猶毅魄不滅島夷惟魂不復自公之歿若無可依凡今之人孰知余悲敢將菲奠以洪余哀公其有靈尙其歆哉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170~171쪽

---

11) 성재(省齋) : 기삼연(奇參衍, 1851~1908)을 이른다.

12) 녹천(鹿川) : 고광순(高光洵, 1848~1907)을 이른다.

도통대장 박용식의 도포장 김원범 제문

김원범 도포장 제문(번역문)

유세차 기유년 월 일에 도통대장(都統大將) 박용식(朴鏞植)은 변변찮은 제물로 도포장(都砲將) 김공 원범(金公元範), 총독장(摠督將) 박공 규봉(朴公圭奉), 일초십장(一哨十將) 이공 동언(李公東彦), 삼초십장(三哨十將) 원공 재룡(元公在龍), 사초십장(四哨十將) 서공 경수(徐公景洙), 동몽집사(童蒙執事) 김복동(金福東)의 영전에 제사를 올립니다. 아 슬프도다. 옛날에 정의로운 선비가 있었으니 금산(錦山) 7백 명이라네. 중봉(重峰)이 이를 따라 같은 날 순절하니 중봉의 의로움을 의롭게 여기고 중봉의 죽음을 제대로 된 죽음으로 여기네. 바른 기운은 죽지 않아 광악(光岳)[13]이 더욱 빛나고 큰 절의는 늠름하여 백세에 할 말이 잇게 되었네. 죽음으로 주인에게 보답하니 열성들이 제사를 내려주시고 단서철권(丹書鐵券)[14]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니 아, 훌륭하지 않은가. 맹약은 어등(魚登)에서 대려(帶礪)[15]의 일이 있어야 하니 형편상 그칠 수 없다. 임진년의 살아남은 말종들이 저 흑치(黑齒)[16]를 준동하여 틈을 엿보아 창궐하니 종사는 그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 대부(大夫)와 삼사(三事; 三公)는 날로 오랑캐로 변하여 임금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왜적을 위해 매와 개가 되었으니 도적들에게 문을 지키게 한 격이다.

– 祭文

維歲次巳酉 月 朔 日 都統大將朴鏞植以菲薄之尊致祭于都炮將金公元範摠督府朴公圭奉一哨十將李公東彦三哨十將元公在龍四哨十將徐公景洙童蒙執事金福東之靈曰嗚呼哀哉古有義士錦山七百重峯是從同日殉節義重峯義死重峯死正氣不死光岳增彩六節凜凜有辭百世以死報生列聖賜祭丹書鐵券爰及苗裔於不休哉盟有帶礪魚登之役勢不可止壬辰遺種蠢彼黑齒伺隙猖獗宗社以危大夫三事日變於夷販君賣國爲賊鷹犬使盜守門面目有靦國將何恃所恃者民民有秉彝率土作臣一心思奮有死而已舍死向前生而死而賊衆我寡將殞卒隨錦山快死古不專美非戰之罪奈運斯否有將如此有卒如彼强於百萬有今一死天若祚宋熙運循環恢復彊土此爲基根爲李氏臣爲李氏鬼生鮮

---

13) 광악(光岳) : 삼광(三光; 일(日) · 월(月) · 성신(星辰))과 오악(五嶽; 중국의 다섯 영산(靈山)으로 태산(泰山) · 화산(華山) · 형산(衡山) · 항산(恒山) · 숭산(崇山))을 말한다.

14) 단서철권(丹書鐵券) : 옛날에 공신(功臣)에게 하사하여 대대로 전해 가면서 죄를 사면받게 한 공신녹권(功臣錄券)으로, 단사(丹沙)로 쓰고 철제(鐵製)로 권(券)을 맸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15) 대려(帶礪) : 대려는 산하대려(山河帶礪)의 준말로, 태산(泰山)이 닳아 숫돌이 되고 황하(黃河)가 말라 띠가 된다는 뜻이다. 한 고조가 공신(功臣)들에게 봉작(封爵)을 내리면서 맹세한 말에 "황하가 말라 띠만큼 좁아지고, 태산이 닳아 숫돌만큼 작아지도록 나라를 길이 보존하여 먼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자.[使黃河如帶 太山如礪 國以永存 爰及苗裔]"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三國志』 卷54 「吳書 周瑜」.

16) 흑치(黑齒) : 이빨을 검게 물들인 족속으로, 왜구(倭寇)를 가리킨다. 『산해경(山海經)』 「해외동경(海外東經)」에 "탕곡은 그 위에 부상이 있고 열 개의 해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데 흑치국(黑齒國)의 북쪽에 있다.〔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라고 하였다.

死鮮義節是偉我子與焉死亦有榮穉息何知壯士齊名我情如狂非私伊公伊後討復誰與成均我奠雖菲我淚如傾僉靈不昧庶其鑑誠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 171~172쪽

호남장의소 대장 박민홍의 광고문

– 廣告

天生萬民에 各受其職하니 士農工商이 是也라 惟我同胞는 勿以時搔로 等棄天職하고 士者士焉하여 以明忠孝하고 農者農焉하여 以資生活하며 工者工焉하여 以贍器用하고 商者商焉하여 以通有無면 民固國寧을 可指日而見이니 勤勤孜孜하여 以安其職하라 將以靡才로 倡義起兵者는 先報國母之讎하고 又洗君父之辱이니 與我同志者는 勠力共討하고 有志未能者는 率意保後하라 嗟嗟補兵아 生此王國하여 奚助倭人고 雖緣生計나 義則不可하니 與言及此에 淚不可禁이라 書曰人孰無過리오 改則尤善이라 하니 倘不知此而意不歸本耶아 明受此言하여 無失天性하라 大抵 島夷는 徹天之讎요 坼地之仇라 夷頭는 何銕이랴 不受此快劍이며 夷身은 何石이랴 不受吾明砲리오 今日不行이면 明日行之하고 今年不誅면 明年誅之키로 誓死從事하노라 義不悛前習하고 一向侵瀆이면 自洞中으로 指名馳報于義所하여 痛斷其根하여 以杜後弊하고 閭里村落에 雖假貸土稅라도 各隨其力하여 報者報하고 捧者捧하여 分明與受에 勿動人心하라 愚夫蠢婦와 樵童牧竪라도 皆莫非王民이니 一遵我報讎之心하여 勿惰勿荒하고 熱心血誠을 小不離身하라 今當把筆에 不知所告하노라.

己酉 二月 日

湖南壯義所 大將 朴玟洪

출전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423~424쪽

호남의장소 박평남의 광고문

[農事時期에 倭奴에게 附同하는 者가 防築을 毁破하는 行爲에 是正을 强辯한 湖南義壯所의 廣告文]

廣告 惟我太祖大王刱業ᄒᆞ옵신五百餘年文明之氣의凶彼倭奴가何不量此ᄒᆞ고敢生不義之謀ᄒᆞ야名稱開化與保護ᄒᆞ고漸奪泮油紙幅ᄒᆞ야兵權與財政權法律을任奪ᄒᆞ야슨니萬國公眼所睹의衡其罪狀이면廣大難容쑤이아니라今聞則各面各處의防築은豊農之本이라韓民欺害韓民ᄒᆞ야與倭接耳付同ᄒᆞ야方今農務之時의各處防築을毁破ᄒᆞ다ᄒᆞ니是은所指韓人之凶計也라噫라我國生靈니不知我國生靈ᄒᆞ고但知財利ᄒᆞ야與倭付同暗指害韓을ᄒᆞ니痛哭無地라然自廣告卽日로온窮思不見得ᄒᆞ지若不遵令이면先卽韓人與倭付同者을與倭同斬矣리니以顧身命ᄒᆞ야勿犯軍律之地爲要.

崇禎後五回甲己酉三月 日

湖南義壯所 朴平南 印

출전 : 『통감부문서』 9, 폭도격문 제4집

2) 나주 출신 의병의 판결문[17]

조정인 심수근 판결문(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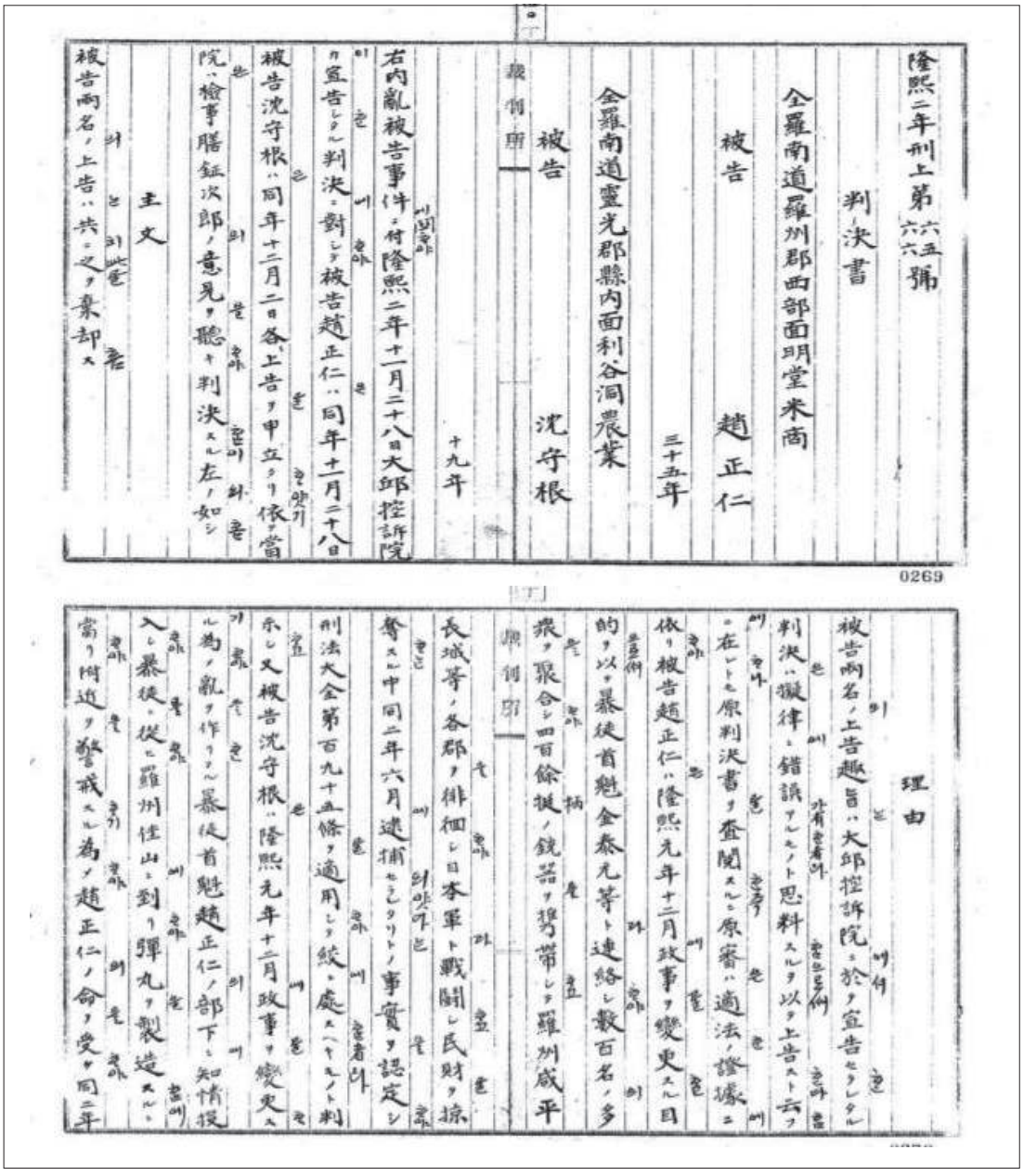

隆熙二年刑上第六五六六號

判決書

全羅南道羅州郡西部面明堂米商

被告 趙正仁 三十五年

全羅南道靈光郡縣內面利谷洞農業

被告 沈守根 十九年

右內亂被告事件ニ付隆熙二年十一月二十八日大邱控訴院ノ宣告シタル判決ニ對シテ被告趙正仁ハ同年十二月二十八日被告沈守根ハ同年十二月二日各上告ヲ申立タリ依テ當院檢事勝鉉次郎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左ノ如シ

主文

被告兩名ノ上告ハ共ニ之ヲ棄却ス

0269

理由

被告兩名ノ上告趣旨ハ大邱控訴院ニ於テ宣告セラレタル判決ハ擬律錯誤アリト思料スルヲ以テ上告ヲ爲シタリト雖モ記錄ニ在リテ原判決書ヲ查閱スルニ原審ハ適法ノ證據ニ依リ被告趙正仁ハ隆熙元年十二月政事ノ變更スルヤ的ヲ以テ暴徒首魁金泰元等ト連絡シ數百名ノ多衆ヲ聚合シ四百餘挺ノ銃器ヲ携帶シテ羅州咸平長城等各郡ヲ徘徊シ日本軍ト戰鬪シ民財ヲ掠奪スルヤ中同二年六月逮捕セラルルニ至リタルノ事實ヲ認定シ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ヲ適用シテ絞處スヘキモノト判示シ又被告沈守根ハ隆熙元年十二月政事ノ變更スルヤ暴徒ニ從ヒ羅州佳山ニ到リ彈丸ヲ製造シ為ノ亂ヲ作ス暴徒首魁趙正仁ノ部下ニ知情投入シ暴徒ニ從ヒ羅州佳山ニ到リ彈丸ヲ製造スルヤ常リ附近ヲ警戒スル為メ趙正仁ノ命ヲ受ケ同二年

17) 판결문과 국역본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받아 全載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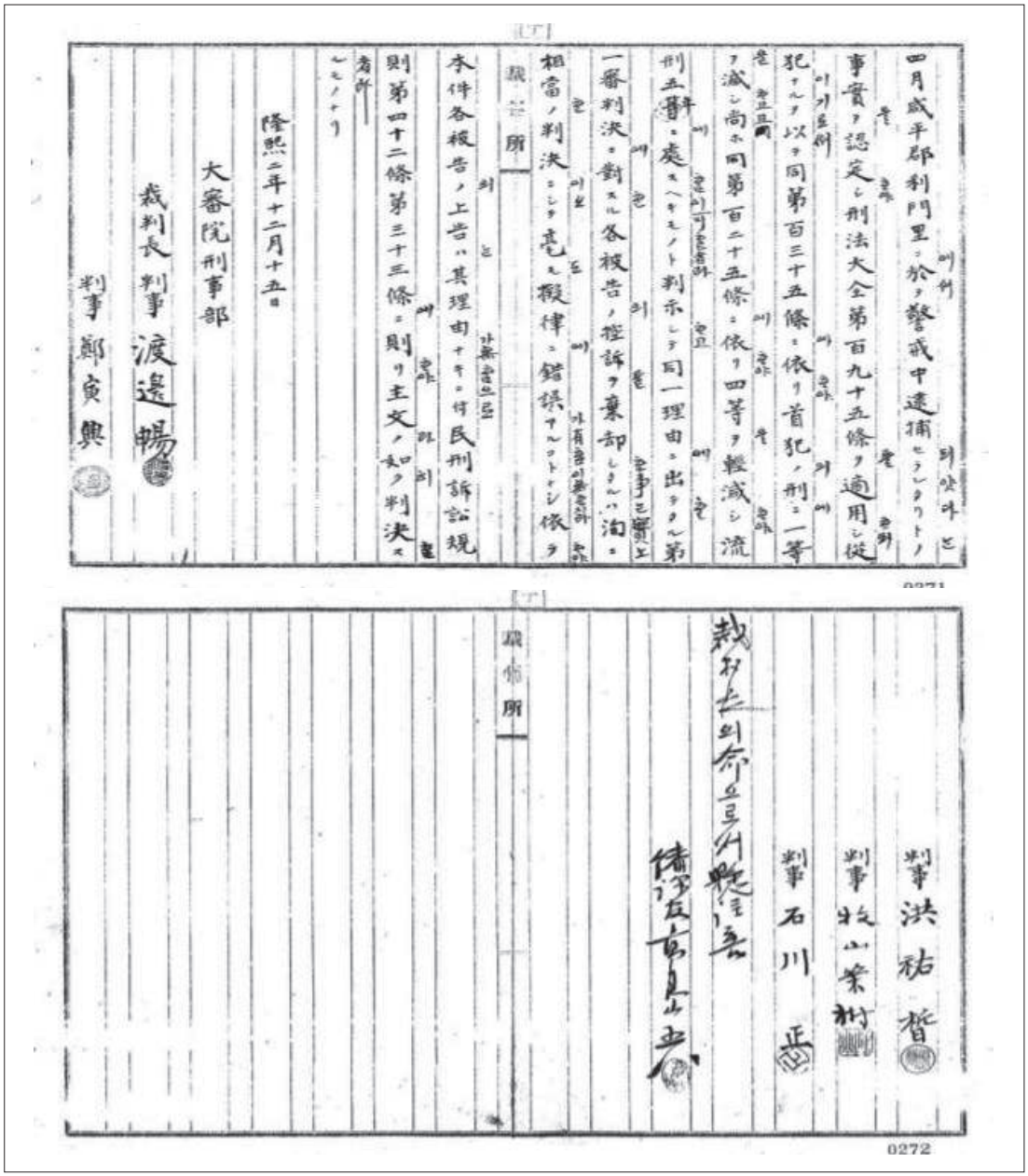

四月咸平郡利門里ニ於テ警戒中逮捕セラレタルトノ
事實ヲ認定シ刑法大全第百九十五條ヲ適用シ從
犯ナルヲ以テ同第百三十五條ニ依リ首犯ノ刑ニ一等
ヲ減シ尚ホ同第百二十五條ニ依リ四等ヲ輕減シ流
刑五年ニ處スヘキモノト判示シタル同一理由ニ出テタル第
一番判決ニ對スル各被告ノ控訴ヲ棄却シタルハ洵ニ
相當ノ判決ニシテ毫モ擬律ニ錯誤アルコトナシ依テ
裁定如
本件各被告ノ上告ハ其理由ナキニ付民刑訴訟規
則第四十二條第三十三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ヘキモノトス
隆熙二年十二月十五日
大審院刑事部
裁判長判事 渡邊暢
判事 鄭良輿
判事 洪祐晳
判事 牧山榮村
判事 石川正
裁判長判事 渡邊暢
判事 鄭良輿

0271
0272

관리번호 : CJA0000454 문서번호 : 840001 성명 : 조정인 외 1인 쪽번호 : 269-272

전라남도 나주군 서부면 명당 미곡상 조정인 35세
전라남도 영광군 현내면 이곡동 농업 심수근 19세

위 내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융희 2년(1908년) 11월 28일 대구공소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 조정인(趙正仁)은 동년 11월 28일에, 피고 심수근(沈守根)은 동년 12월 2일에 각각 상고를 신청하였으므로 본 법원은 검사 선정차랑(鮮鉦次郎)의 의견을 듣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두 명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두 명의 상고 취지는 대구공소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사료되어 상고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원 판결서를 사열한 즉,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해 피고 조정인(趙正仁)은 융희 원년(1907년) 12월에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폭도 수괴 김태원(金泰元) 등과 연락하여 수백 명의 많은 무리를 모아 400여 자루의 총기를 휴대하고 나주(羅州), 함평(咸平), 장성(長城) 등의 각 군을 배회하며 일본군과 전투하고 민간인 재물을 약탈하던 중 동 2년(1908년) 6월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대전 제195조를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한다고 판시하고, 또 피고 심수근(沈守根)은 융희 원년(1907년) 12월에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폭도 수괴 조정인(趙正仁)의 부하로 사정을 알고 가입하여 폭도를 따라 나주 가산에 가서 탄환을 제조함에 있어 부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조정인(趙正仁)의 명을 받아 융희 2년(1908년) 4월 함평군(咸平郡) 이문리(利門里)에서 경계하던 중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대전 제195조를 적용하되 종범이므로 동 제135조에 의해 수범의 형에서 1등급을 감하고, 또한 동 제125조에 의해 4등급을 경감하여 유배형 5년에 처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제1심 판결에 대한 각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진실로 타당한 판결로 추호도 법률 적용에 착오가 없다.
따라서 본 건 각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 제42조, 제33조에 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2년(1908) 12월 15일
대심원 형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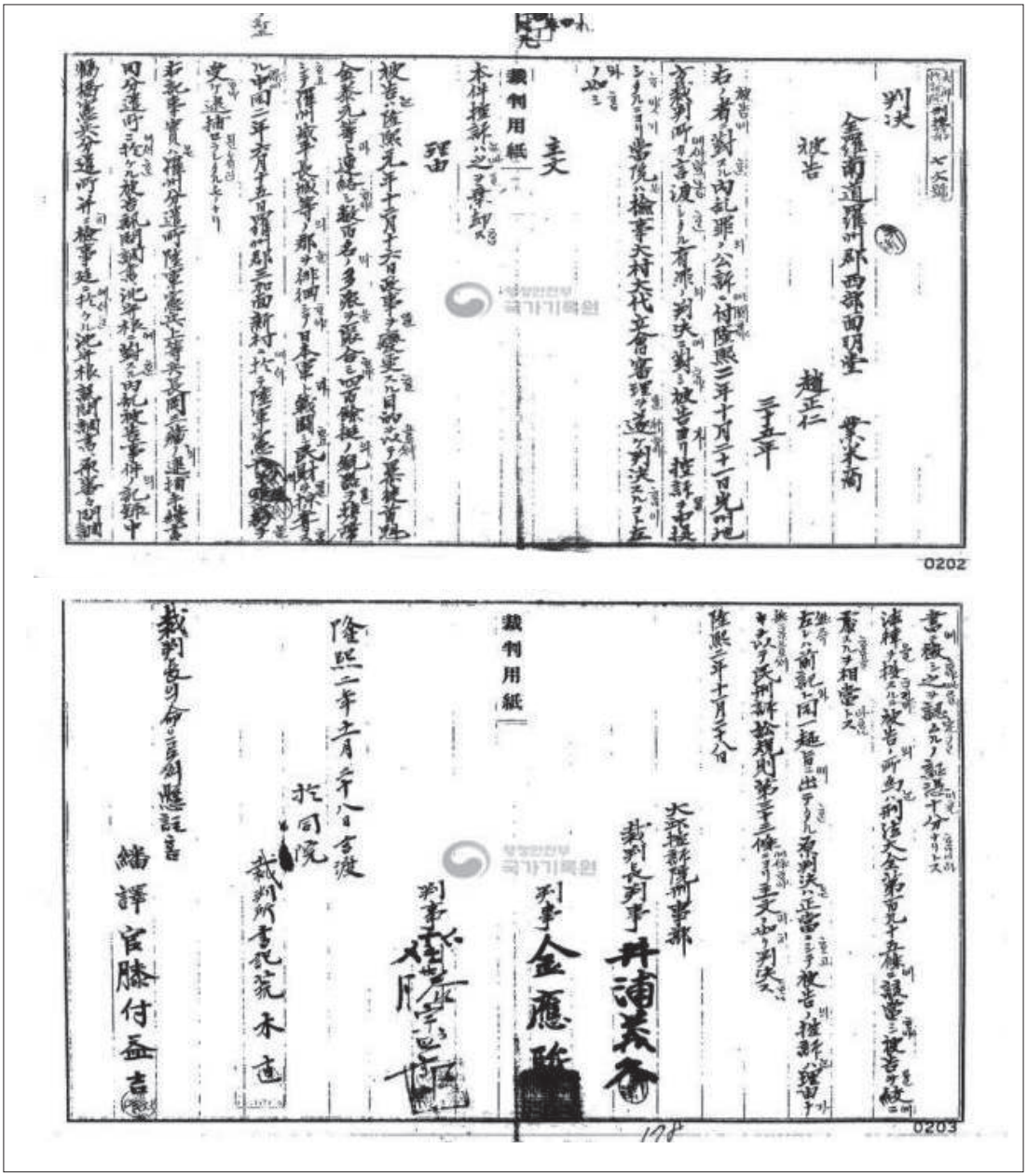

判決

全羅南道羅州郡西面明堂 農業商

被告 趙正仁 三十五年

右ノ者ニ對スル內亂罪ノ公訴ニ付隆熙三年十月二十一日光州地方裁判所ノ言渡シタル有罪ノ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ヲ提起シタルニ因リ當院檢事大村大代立會審理ノ上左ノ判決ヲ爲ス

主文

本件控訴ヲ棄却ス

理由

被告ハ隆熙元年十二月十六日最初ノ檄文ヲ發シ同月二十八日ヨリ蜂起シ其後光州ニ於テ金養元等ト連絡シ數百名ノ多衆ヲ糾合シ四箇條ノ綱領ヲ標榜シ羅州警察署長槇等ノ邦人ヲ日本軍ト誤認シ民財ヲ奪ヒ官衙ヲ焚燒シ中略同二年六月十五日羅州郡三和面新村ニ於テ陸軍憲兵上等兵長岡三藏ヲ捕縛シ

0202

裁判用紙

更ニ退捕シタル上

和根ヲ捕縛シ光州分遣所ニ於テ陸軍憲兵上等兵長岡三藏ヲ捕縛シ

同分遣所ニ於テ被告ヲ訊問シ沈平根ヲ對決シ內亂犯事件ニ關シ

被告ハ隆熙二年十月二十八日

大邱控訴院刑事部

裁判長判事 井浦芳信

判事 金應昶

判事 [illegible]

裁判長ノ命ニ依リ謄本ト認證ス

隆熙二年十月二十八日言渡

於同院

裁判所書記 [illegible]

通譯官勝付孟吉

0203

관리번호 : CJA0000691 문서번호 : 771750 성명 : 조정인 쪽번호 : 202-203

전라남도 나주군 서부면 명당 미곡상 조정인 35세

위 피고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에 관하여 융희 2년(1908년) 10월 21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본 법원은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가 입회하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 원년(1907년) 12월 16일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폭도 수괴 김태원(金泰元) 등과 연락하여 수백 명의 많은 무리를 모아 400여 자루의 총기를 휴대하고 나주, 함평, 장성 등의 군을 배회하며 일본군과 교전하고 민간인 재물을 약탈하던 중 융희 2년(1908년) 6월 15일 나주군 삼가면 신촌에서 육군헌병의 검문을 받아 체포된 자이다
위 기재 사실은 나주분견소 육군헌병 상등병장 강삼장(岡三藏)의 체포수속서, 동 분견소에서의 피고 신문조서, 심수근(沈守根)에 대한 내란 피고사건 기록 중 학교 헌병분견소 검사정에서 한 심수근(沈守根)의 신문조서, 원심 심문조서에 의거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
법률을 살펴보건대 피고의 소행은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고, 피고를 교수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그런즉 위 기재와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원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2년(1908) 11월 28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임영화 임도돌 박인찬 판결문(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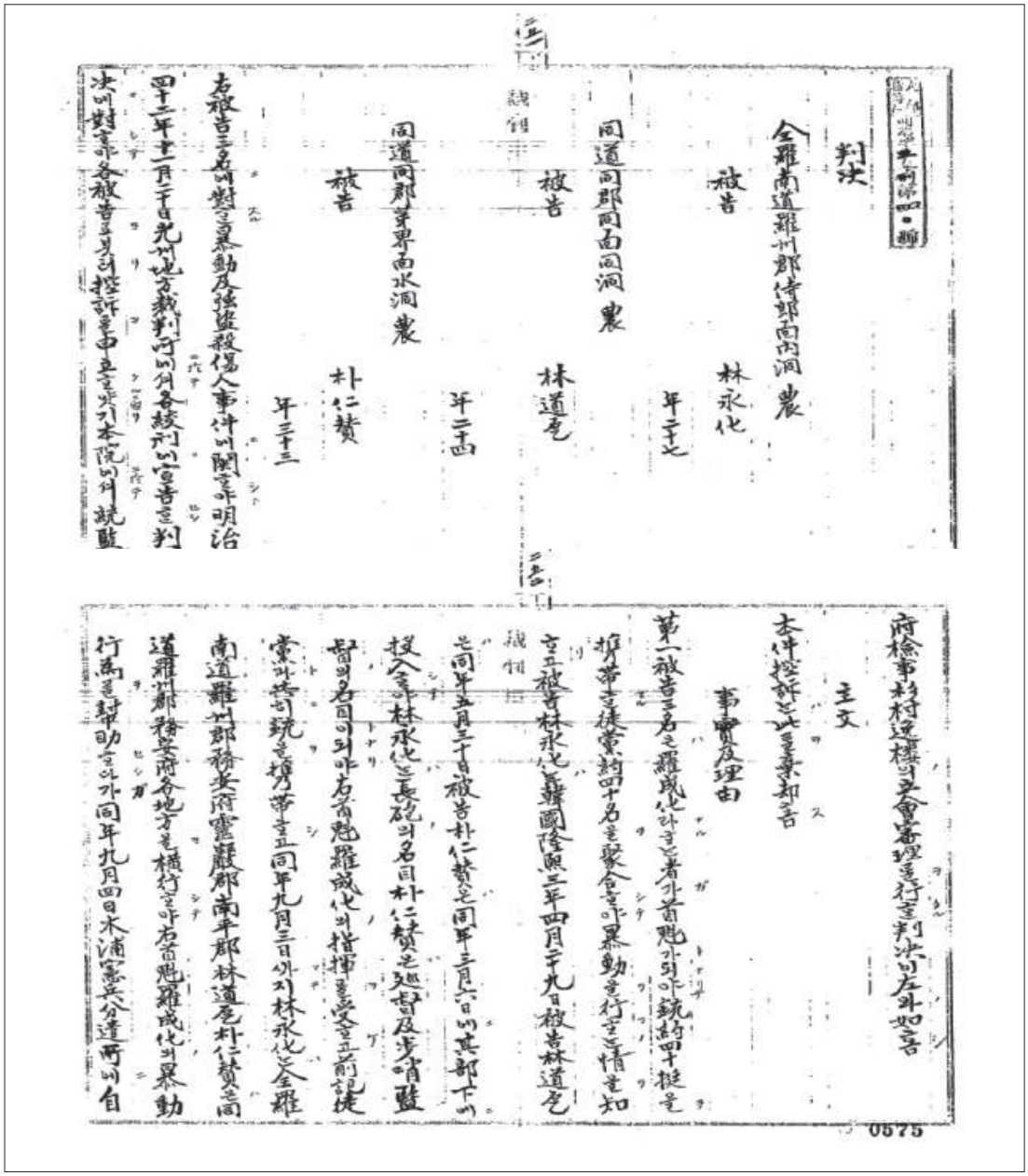

判決

全羅南道羅州郡待部面內洞 農

被告 林永化 年二十七

同道同郡同面同洞 農

被告 林道乭 年二十

同道同郡茅亭面水洞 農

被告 朴仁贊 年三十三

右被告三名에對ᄒᆞᆫ暴動及强盜殺傷人事件에關ᄒᆞ야明治四十二年十二月二十日光州地方裁判所에서各該刑에宣告ᄒᆞᆫ判決에對ᄒᆞ야各被告ᄂᆞᆫ各自控訴ᄒᆞᆷ으로ᄉᆞᆫ기本院에서覆審

府檢事朴村逸樣의出席ᄒᆞ야審理進行ᄒᆞᆫ判決ᄒᆞ야左와如ᄒᆞᆷ

主文

本件控訴ᄂᆞᆫ此ᄅᆞᆯ棄却ᄒᆞᆷ

事實及理由

第一被告三名ᄂᆞᆫ羅成化라ᄒᆞᄂᆞᆫ者가首魁가되야銃砲四十挺ᄅᆞᆯ指揮ᄒᆞᆫ徒黨約四十名ᄋᆞᆯ聚合ᄒᆞ야暴動ᄒᆞᆫ行爲ᄒᆞᆫ情ᄉᆞᆯ知ᄒᆞᆫ被告林永化ᄂᆞᆫ韓國隆熙三年四月二十九日被告林道乭

裁判

ᄒᆞᆫ同年五月二十日被告朴仁贊ᄂᆞᆫ同年三月六日에其部下에投入ᄒᆞᆫ林永化ᄒᆞᆫ長砲의名目과朴仁贊ᄒᆞᆫ又ᄂᆞᆫ及步哨ᄅᆞᆯ監督ᄒᆞᆫ名目으로ᄒᆞ야ᄂᆞᆫ右首魁羅成化의指揮ᄅᆞᆯ受ᄒᆞᆫ前記徒黨과共ᄒᆞ야統率ᄒᆞᆫ바ᄃᆞᆫ로ᄒᆞᆫ同年九月三日에ᄂᆞᆫ林永化ᄂᆞᆫ全羅南道羅州郡務安府靈巖郡南平郡林道乭朴仁贊ᄂᆞᆫ同道羅州郡務安府各地方ᄋᆞᆯ橫行ᄒᆞᆫ바首魁羅成化의暴動行爲ᄂᆞᆫ幇助ᄒᆞᆫ바로同年九月四日木浦憲兵分遣所에自

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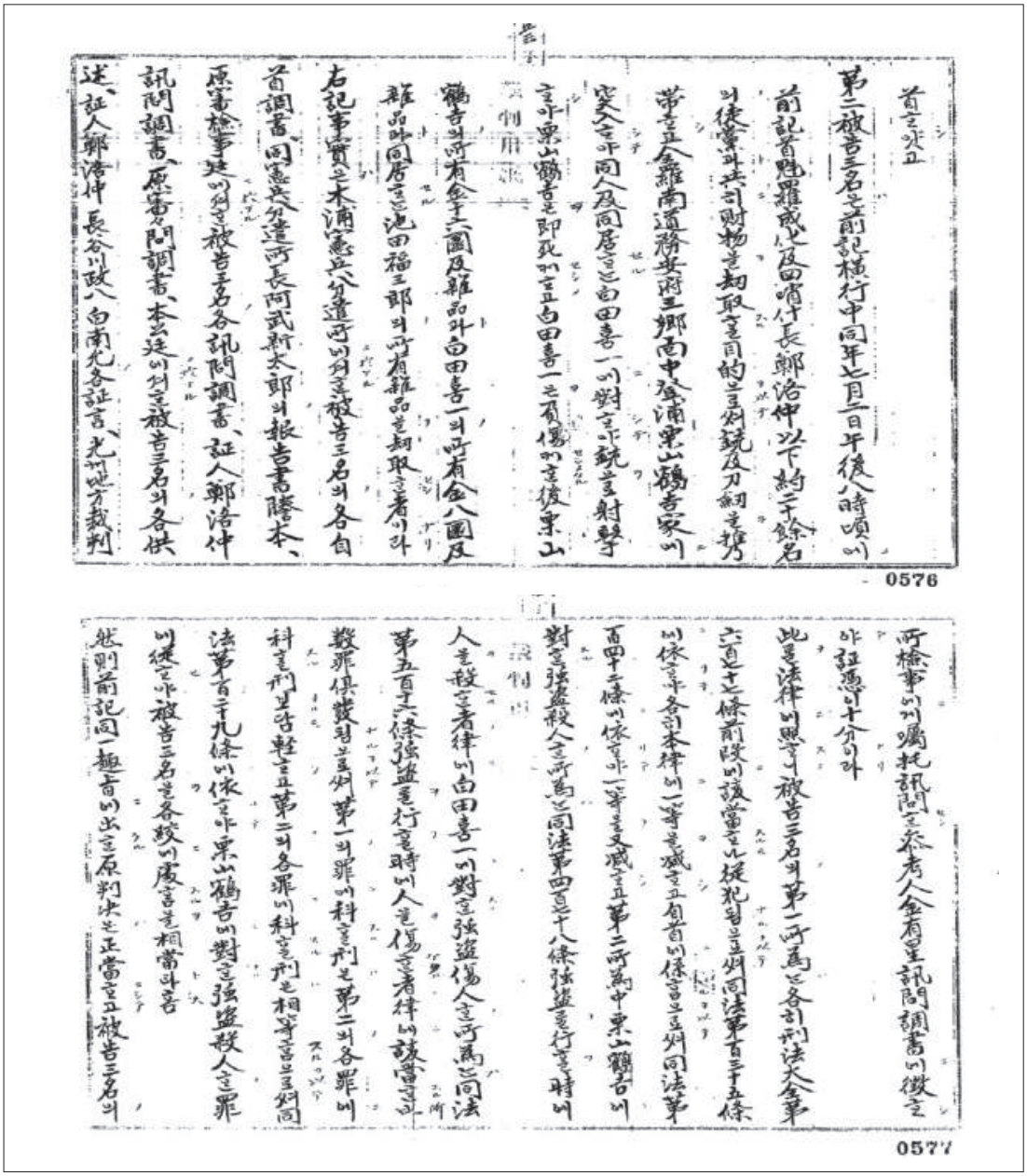

0576

0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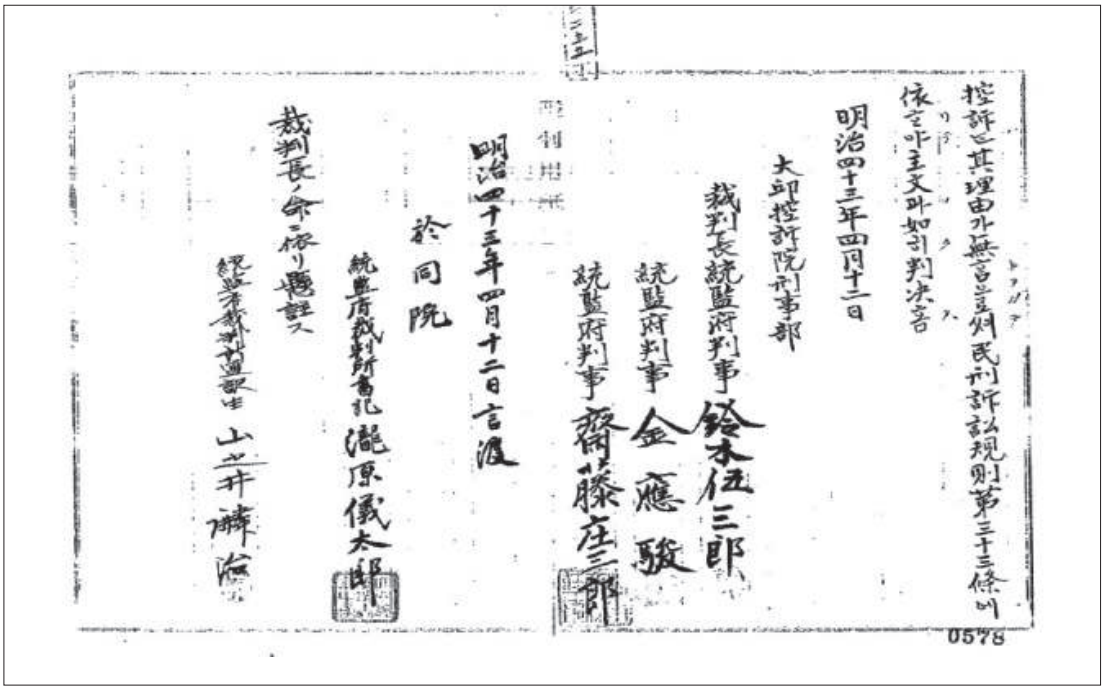

관리번호 : CJA0000695　문서번호 : 771754　성명 : 임영화 외 2인　쪽번호 : 574-578

위 피고 3명에 대한 폭동 및 강도 살·상인 사건에 관해 명치 42년(1909) 11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각 교(絞)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각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본원에서 통감부 검사 삼촌일루(杉村逸櫻)가 입회 심리를 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 임영화(林永化), 임도돌(林道乭), 박인찬(朴仁贊) 등 3명은 나성화(羅成化)라는 자가 수괴가 되어 총 약 40정을 휴대한 도당 약 40명을 모아 폭동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임영화(林永化)는 한국 융희 3년(1909) 4월 29일, 임도돌(林道乭)은 동년(同年) 5월 30일, 피고 박인찬(朴仁贊)은 동년 3월 6일에 그 부하로 들어가 임영화

(林永化)는 장포, 박인찬(朴仁贊)은 순독 및 보초감독이 되어 위 수괴 나성화(羅成化)의 지휘를 받아 도당과 함께 총을 휴대하고 동년 9월 3일까지 임영화(林永化)는 전라남도 나주군, 무안부, 영암군, 남평군, 임도돌(林道乭), 박인찬(朴仁贊)은 동도(同道) 나주군, 무안부 각 지방을 횡행하여 수괴 나성화(羅成化)의 폭동행위를 방조하다가 동년 9월 4일 목포 헌병분견소에 자수하였다.

제2. 피고 3인은 위 지역을 횡행하던 중 동년 7월 2일 오후 8시경에 위 수괴 나성화(羅成化) 및 4초십장(四哨什長) 정낙중(鄭洛仲) 이하 약 20여 명의 도당과 함께 재물을 겁취할 목적으로 총 및 칼을 휴대하고, 전라남도 무안부 삼향면(三鄕面) 중등포(中登浦) 율산학길(栗山鶴吉) 집으로 돌입하여 동인 및 동거하는 백전희일(白田喜一)에게 총으로 사격하여 율산학길(栗山鶴吉)은 즉사하고 백전희일(白田喜一)을 부상케 한 뒤에 율산학길(栗山鶴吉)이 소유한 돈 16원 및 잡품과 백전희일(白田喜一)이 소유한 돈 8원 및 잡품과 동거한 지전복삼랑(池田福三郎)이 소유한 잡품을 겁취한 자다.

위에 기록된 사실은 목포 헌병분견소에서 한 피고 3명의 각 자수조서, 동 헌병분견소장 아부신태랑(阿武新太郎)의 보고서 등본, 원심 검사정에서 한 피고 3명의 각 신문조서, 증인 정낙중(鄭洛仲)의 신문조서, 원심 심문조서, 본 공정에서 한 피고 3명의 각 공술, 증인 정낙중(鄭洛仲), 장곡천정팔(長谷川政八), 백남윤(白南允)의 각 증언, 광주지방재판소 검사에게 촉탁 신문한 참고인 김유성(金有星)의 신문조서에 의하여 증빙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 3명의 제1 소행은 각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에 해당하나 종범으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각각 본 율에서 1등을 감하고, 자수하였으므로 동법 제142조에 의하여 1등을 또 감하고, 제2의 소위 중 율산학길(栗山鶴吉)에게 강도 살인을 한 소행은 동법 제478조 강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의 율에, 백전희일(白田喜一)에게 강도 상해를 입힌 소행은 동법 제516조 강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상해 입힌 자의 율에 해당한 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므로 제1의 죄에 과할 형은 제2의 각 죄에 과할 형보다 가볍고, 제2의 각 죄에 과할 형은 상등하므로 동법 제 129조에 의하여 율산학길(栗山鶴吉)에 대한 강도 살인한 죄에 따라 피고 3명을 각 교수형에 처함을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다투어진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3명의 공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 43년(1910) 4월 12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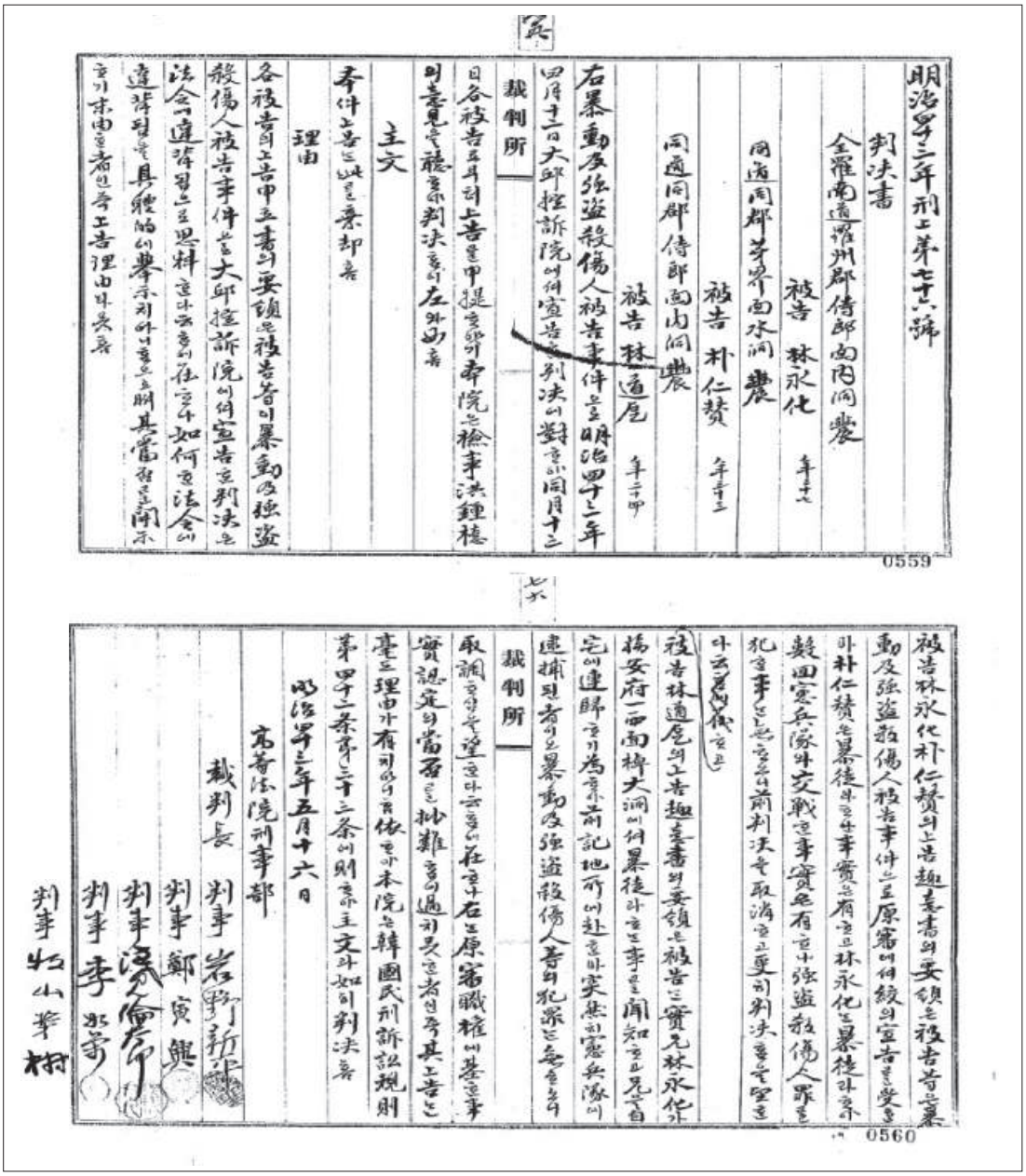

明治四十二年刑上第七十六號

判決書

全羅南道 [illegible] 州郡 倭館面內洞 農

被告 林永化 年十七

同道同郡 茅峴面水洞 農

被告 朴仁贊 年十三

同道同郡 倭館面內洞 農

被告 林通尼 年二十四

右暴動及強盜殺傷人被告事件ニ付キ明治四十二年四月十二日大邱控訴院ニ於テ宣告シタル判決ニ對シ同月十三日各被告ヨリ上告ヲ申立テタルニ因リ本院ハ檢事 [illegible] 鍾穆ノ意見ヲ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0559

主文

本件上告ハ之ヲ棄却ス

理由

各被告ノ上告申立書ノ要領ハ被告等ノ暴動及強盜殺傷人被告事件ニ付キ大邱控訴院ニ於テ宣告シタル判決ハ法令ニ違背シタル點アリトノ趣旨ニ在ルヤニ見エルモ具體的ニ擧示スルトコロナキヲ以テ其當否ヲ調スルヲ得ス

0560

被告林永化朴仁贊ノ上告趣意書ノ要領ハ被告等ハ暴動及強盜殺傷人被告事件ニ付キ原審ニ於テ絞首ノ宣告ヲ受ケタル朴仁贊ハ暴徒ノ一人ニシテ其實ハ有罪ナルヲ以テ林永化ハ暴徒ノ一人トシテ官兵ト交戰シタル事實ハ有ルモ強盜殺傷人罪ヲ犯シタル事ハ無キヲ以テ前判決ヲ取消シ更ニ判決ヲ望ムト云フニ在リ

被告林通尼ノ上告趣意書ノ要領ハ被告ハ實ニ林永化カ楊平府ニ面將タル間ニ於テ暴徒ノ一人トシテ事ヲ聞知シ自宅ニ逗歸シタルヲ為メ止ムヲ得ス記地方ニ赴キ官兵ト交戰シ遂ニ捕ヘラレタル者ニシテ暴動及強盜殺傷人ノ犯罪ヲ為シタル事實ナキヲ以テ前判決ヲ取消シ更ニ寬大ナル判決ヲ望ムト云フニ在リ

裁判所

取調ノ結果ニ依リ上告ハ理由アリト認メ原審職權ニ基キ事實調査ノ必要アリト認メタル點ニ付キ原審ニ於テ更ニ辯論ヲ為サシムルヲ相當ト認メ刑事訴訟規則第四十二條第二項ニ依リ主文ノ如ク判決ス

明治四十二年五月十六日

高等法院刑事部

裁判長 判事 岩 [illegible]

判事 鄭寅興

判事 [illegible]

判事 李 [illegible]

判事 牧山 [illegible]

관리번호 : CJA0000462　문서번호 : 840009　성명 : 임영화 외 2인　쪽번호 : 559-561

위 폭동 및 강도 살·상인 피고사건으로 명치 43년(1910) 4월 12일 대구공소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해 동월 13일 각 피고가 상고를 신청하였으므로 본원은 검사 홍종억(洪鍾檍)의 의견을 듣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각 피고의 상고 신청서의 요령은 피고 등이 폭동 및 강도 살·상인 피고사건으로 대구 공소원에서 선고한 판결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령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거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부(當否)를 보여줄 방법이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가 없다.
피고 임영화(林永化), 박인찬(朴仁贊)의 상고 취의서의 요령은 피고 등은 폭동 및 강도 살·상인 피고사건으로 원심에서 교수형 선고를 받은바, 박인찬(朴仁贊)은 폭도라 하는 사실은 있고, 임영화(林永化)는 폭도라 하여 수 차례 헌병대와 교전 한 사실이 있으나 강도 살·상인 죄를 범한 일은 없으니 앞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피고 임도돌(林道乭)의 상고 취의서 요령은 피고는 친형 임영화(林永化)가 무안부(務安府) 일서면(一西面) 도대동(棹大洞)에서 폭도라는 사실을 듣고 형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전기 장소에 다다른바, 갑자기 헌병대에 체포된 것이다. 폭동 및 강도 살·상인 등의 범죄는 없었으니 다시 취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는 원심 직권에 근거한 사실 인정의 당부(當否)를 비난함에 지나지 않은 것인즉, 그 상고는 추호도 이유가 있지 않으므로 본원은 한국 민형소송규칙 제42조,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 43년(1910) 5월 16일
고등법원 형사부

이민영 판결문(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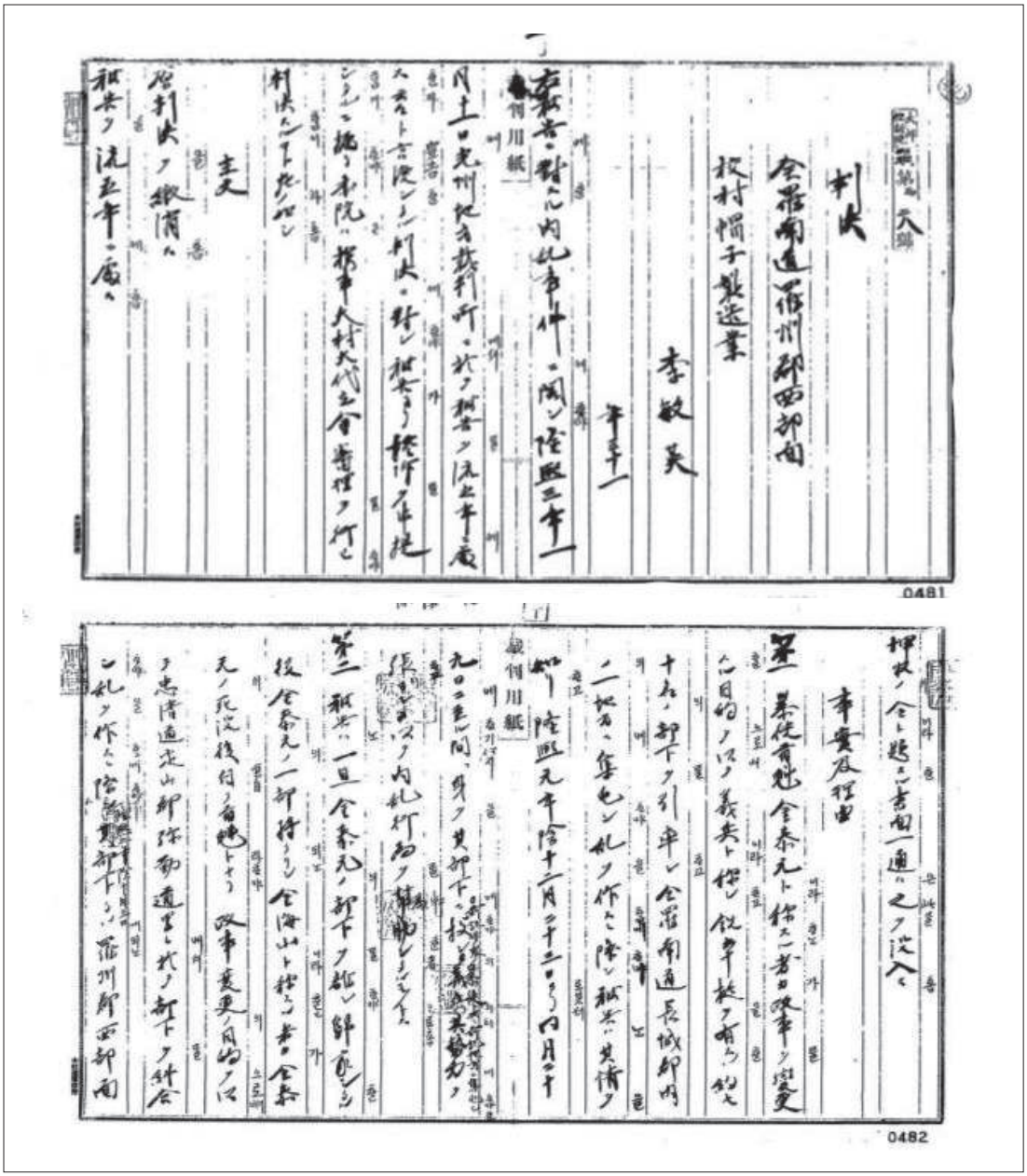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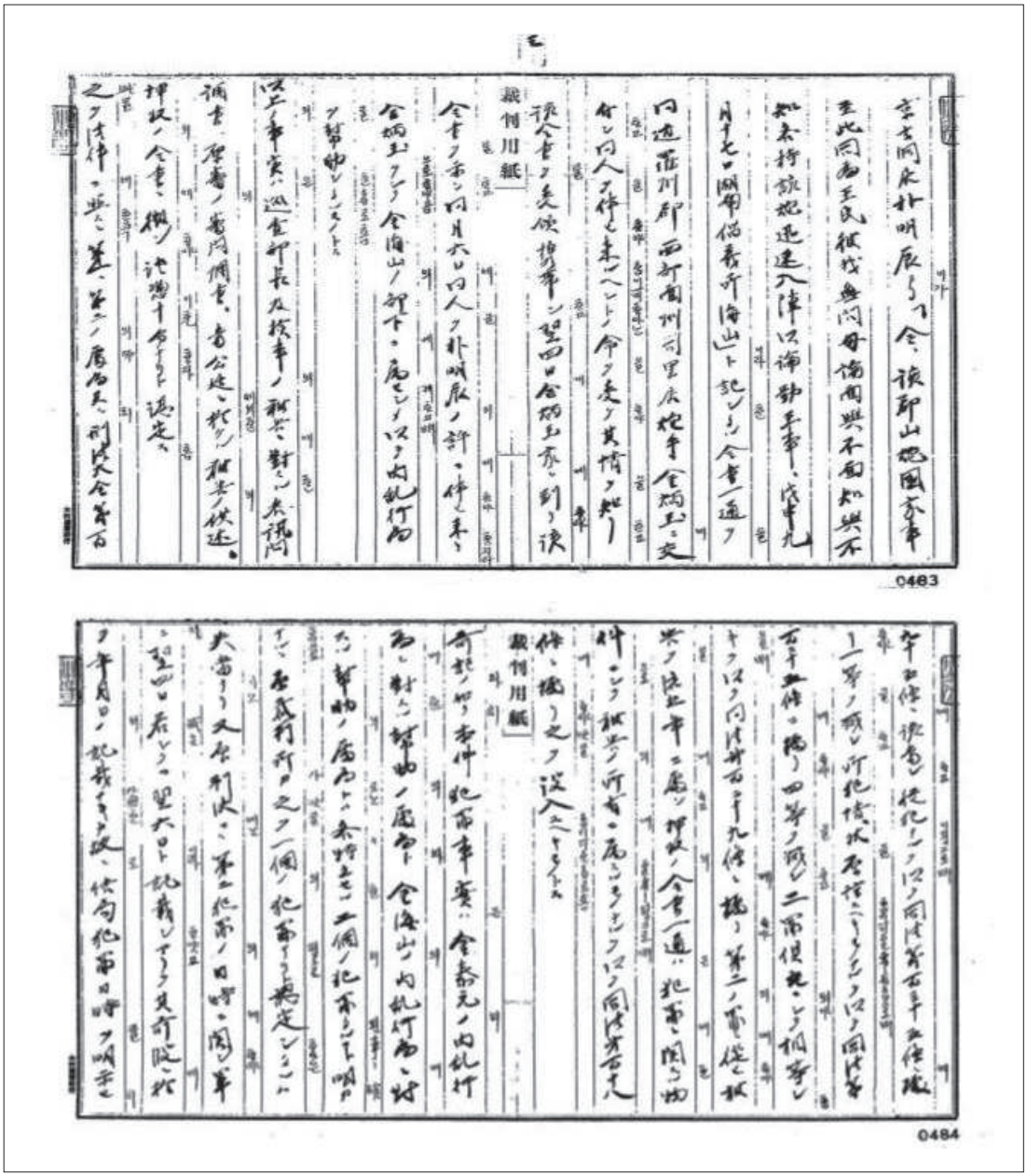

0483

0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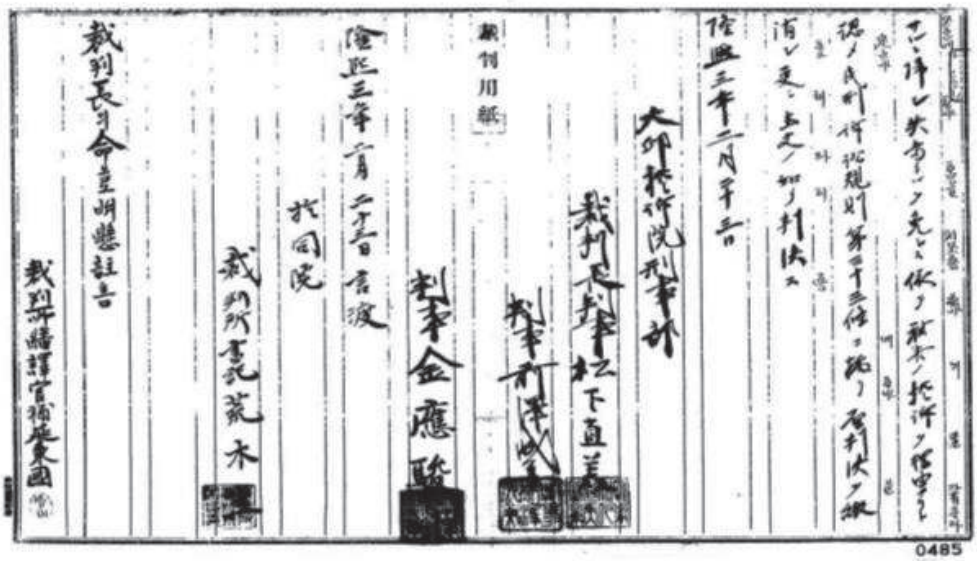

관리번호 : CJA0000692　문서번호 : 771751　성명 : 이민영　쪽번호 : 481-485

위 피고에 대한 내란사건에 관하여 융희 3년 1월 11일 광주 지방재판소에서 피고를 유(流) 5년에 처한다고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본 원은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가 입회 심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작소(撤消)한다.

피고를 유(流) 5년에 처한다.

압수한 영(令)이란 제목의 서면 1통은 이를 몰수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폭도의 우두머리 김태원(金泰元)이라는 자가 정사(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의병이라 칭하고, 총 50자루를 가진 약 70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전라남도(全羅南道) 장성군(長城郡) 내의 한 지역에 집둔(集屯)하여 난을 일으킬 때 피고는 그 사정을 알고, 융희 원년 음력 12월 23일부터 동월 29일까지 그의 부하로 위의 다수의 폭도와 함께 위의 지역에 집둔(集屯)하여 그 세력을 넓혀 내란 행위를 한 것이다.

제2. 피고는 일단 김태원의 부하에서 벗어나 귀가한 후, 김태원의 부장(部將)인

전해산(全海山)이라는 자가 김태원이 죽은 후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어 정사(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충청도(忠淸道) 정산군(定山郡) 비룡도리(飛龍道里)에서 부하를 규합하여 난을 일으킬 때, 융희 2년 음력 10월 3일에 그의 부하인 나주군(羅州郡) 서부면(西部面) 경현동(京玄洞)에 거주하는 박명진(朴明辰)에게서 「지금 이 군(郡)의 산포(山砲)에 국가의 일로 이와 같이 되었으니 다 같은 백성으로 너와 나를 물을 것도 없음은 물론이고, 앞거나 모르던 간에 각 총포를 가지고 빨리 부대로 들어와 나랏일을 논하자. 무신(戊申) 9월 17일 호남창의소 해산(海山)」이라고 쓴 영서(令書) 1통을 동도(同道) 나주군(羅州郡) 서부면(西部面) 주사리(州司里)에 사는 포수 김병옥(金炳玉)에게 교부하고 동인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 사정을 알면서 이 영서(令書)를 수령하여 휴대하고 다음 날 4일 김병옥의 집에 가서 이 영서(令書)를 보이고, 동월 6일 동인을 박명진의 아래로 데리고 와서 김병옥으로 하여금 김해산의 부하가 되게 하여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순사부장 및 검사의 피고에 대한 각 신문조서, 원심의 심문조서 당 공정에서 한 피고의 공술, 압수한 영서(令書)에 비추어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니, 제1, 제2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고, 종범(從犯)이므로 동법 제135조에 의하여 1등급을 감하고, 범죄의 정상(情狀)에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동법 제125조에 의하여 4등급을 감하고, 두 가지 범죄가 함께 일어나 서로 비슷하므로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제2의 죄에 따라 피고를 유(流) 5년에 처하고, 압수한 영서(令書) 1통은 범죄에 관계된 물건으로 피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김태원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의 소위와 전해산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의 소위는 각 2개의 범죄가 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원 재판소가 이를 1개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실책이고, 또한 원판결은 제2의 범죄 일시에 관하여 단지 다음 날 4일이라거나, 다음 날 6일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전단(前段)에서 연월일의 기재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 일시를 명시하지 않은 실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민형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해 원판결을 작소(撤消)하고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3년(1909) 2월 23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장용삼 판결문(190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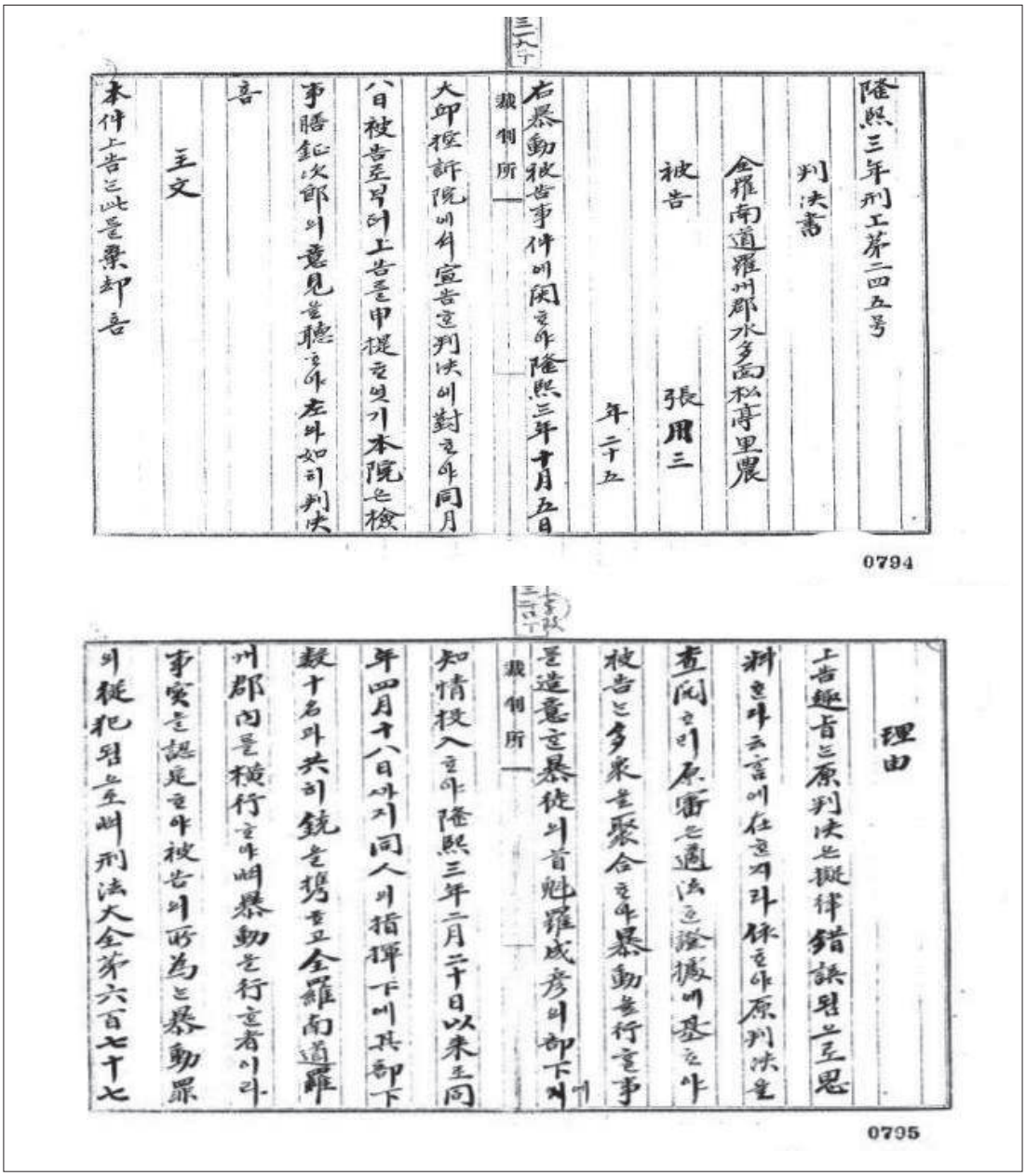

隆熙三年刑工第二四五号

判決書

全羅南道羅州郡水多面松亭里農

被告 張用三 年二十五

右暴動被告事件에 関ᄒᆞ야 隆熙三年十月五日 裁判所

大邱控訴院에서 宣告ᄒᆞᆫ 判決에 對ᄒᆞ야 同月 八日 被告로부터 上告를 申提ᄒᆞ얏기 本院은 檢事 勝鉉次郎의 意見을 聽ᄒᆞ고 左와 如히 判決ᄒᆞᆷ

主文

本件上告ᄂᆞᆫ 此를 棄却ᄒᆞᆷ

0794

理由

上告趣旨ᄂᆞᆫ 原判決이 擬律錯誤됨으로 思料ᄒᆞ옵ᄂᆞᆫ 바에 在ᄒᆞ지라 休ᄒᆞ야 原判決을 査閱ᄒᆞ건ᄃᆡ 原審은 適法ᄒᆞᆫ 證據에 基ᄒᆞ야 被告ᄂᆞᆫ 多衆을 聚合ᄒᆞ야 暴動을 行ᄒᆞᆫ 事實을 認定ᄒᆞ고 造意ᄒᆞᆫ 暴徒의 首魁로 罪成ᄒᆞᆷ에 在ᄒᆞ야 裁判所

知情投入ᄒᆞ야 隆熙三年二月二十日以來로 同年四月十八日까지 同人의 指揮下에 其部下 數十名과 共히 銃을 携ᄒᆞ고 全羅南道 羅州郡內를 橫行ᄒᆞ야 暴動을 行ᄒᆞᆫ 者이라 事實을 認定ᄒᆞ야 被告의 所爲ᄂᆞᆫ 暴動罪의 擬犯됨으로 此 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

0795

18) 대구공소원 판결문의 번역문에서 장용삼을 장갑삼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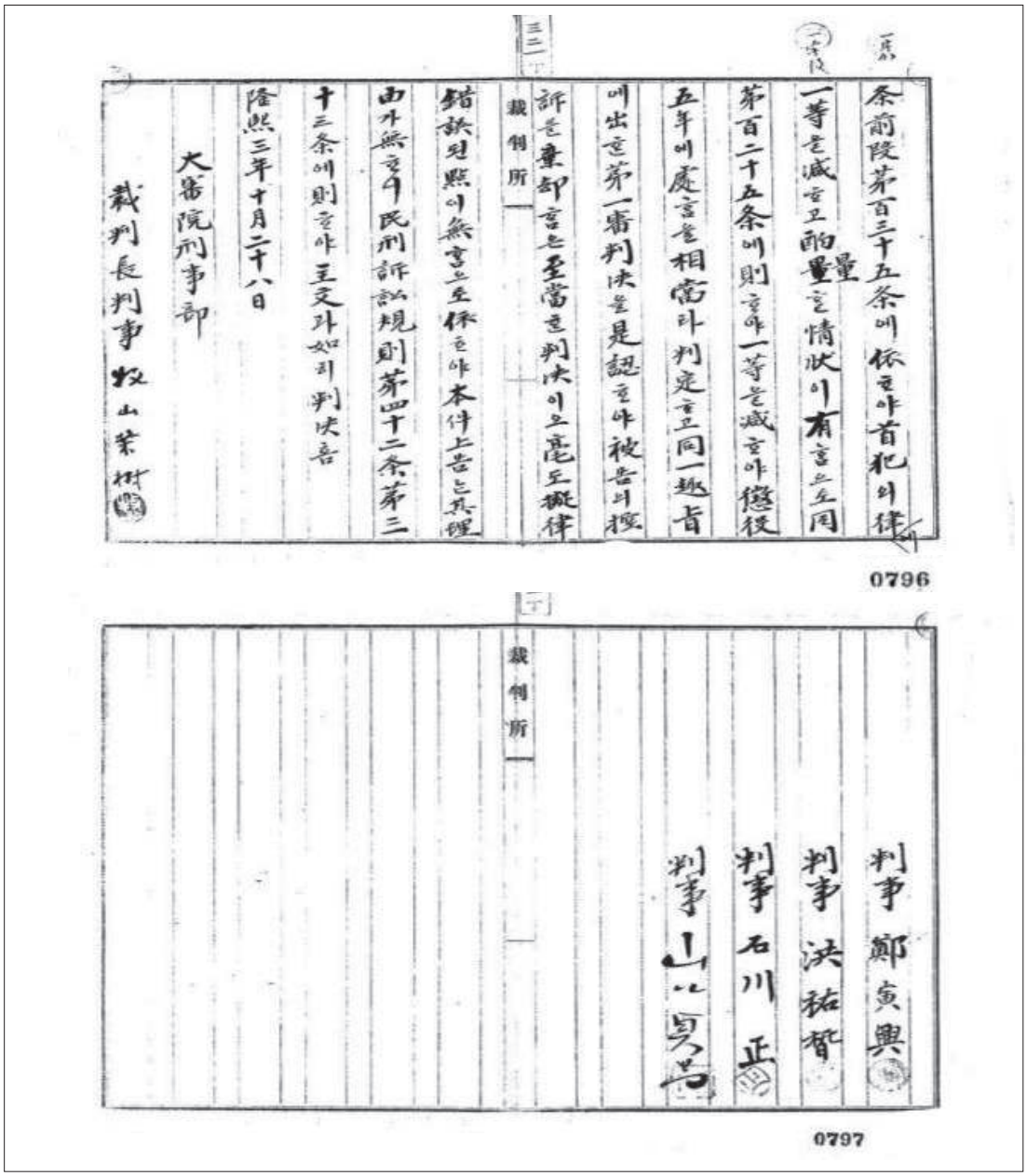

第百三十五条前段에 依ᄒᆞ야 首犯의 律
一等을 減ᄒᆞ고 酌量ᄒᆞᆫ 情狀이 有ᄒᆞᆫ 者로 同
第百二十五条에 則ᄒᆞ야 一等을 減ᄒᆞ야 懲役
五年에 處ᄒᆞᆫ 者를 相當타 判定ᄒᆞᆫ 同一趣旨
에 出ᄒᆞᆫ 第一審判決을 是認ᄒᆞ야 被告의 控
訴를 棄却ᄒᆞᆫ 者는 至當ᄒᆞᆫ 判決이오 毫도 擬律
錯誤된 點이 無ᄒᆞᆫ지라 本件上告는 其理
由가 無ᄒᆞᆫ즉 民刑訴訟規則 第四十二条 第三
十三条에 則ᄒᆞ야 主文과 如히 判決ᄒᆞᆷ

隆熙三年十月二十八日

大審院刑事部

裁判長判事 牧山榮樹

裁判所

0796

判事 鄭寅興

判事 洪祐晳

判事 石川正

裁判所

0797

관리번호 : CJA0000457　문서번호 : 840004　성명 : 장용삼　쪽번호 : 794-797

위 폭동 피고사건에 관해 융희 3년(1909) 10월 5일 대구공소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해 동월 8일 피고가 상고를 신청하여 본원은 검사 선정차랑(膳鉦次郎)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취지는 원판결은 법 적용에 착오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판결을 사열한즉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 장용삼(張用三)은 많은 사람을 모아 폭동을 일으킬 것을 조의한 폭도 괴수 나성언(羅成彦)의 부하에 들어가 융희 3년(1909) 2월 20일 이래로 동년 4월 18일까지 동인의 지휘 하에 그 부하 수십명과 함께 총을 가지고 전라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내를 횡행하면서 폭동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소위는 폭동죄의 종범으로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 제135조에 의하여 수범의 율에서 1등급을 감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제125조에 따라 1등급을 감하여 징역 5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고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을 인정하여 피고의 공소를 기각함은 지당한 판결이요, 추호도 법 적용에 착오된 점이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니 민형소송규칙 제42조, 제3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3년(1909) 10월 28일
대심원 형사부

장갑삼 판결문(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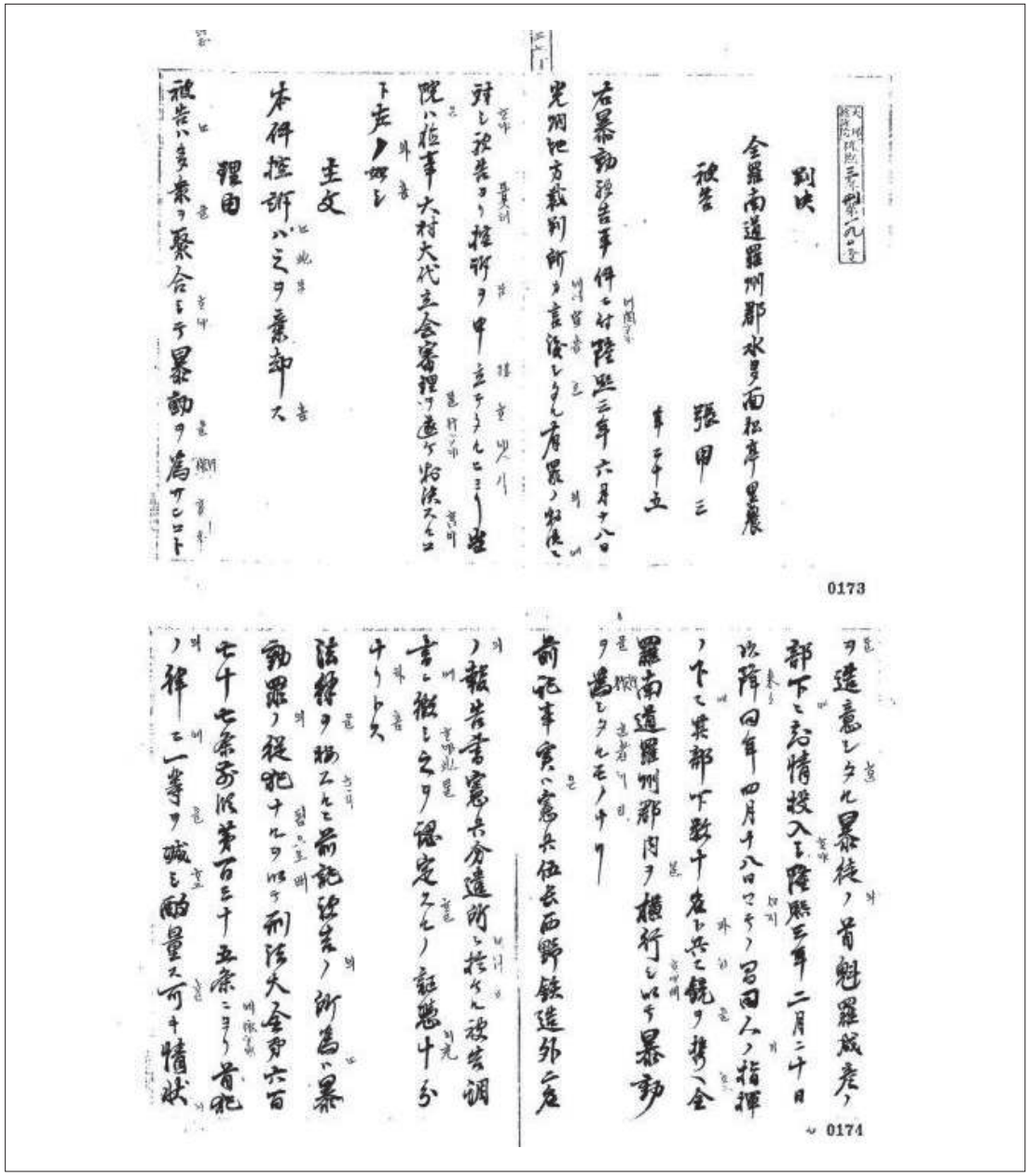

判決

全羅南道羅州郡水多面松亭里農

被告　張甲三

年三十五

右暴動被告事件ニ付隆熙三年六月十八日光州地方裁判所ヲ言渡シタル原裁判ニ対シ被告ヨリ控訴ヲ申立テタルニヨリ当院ハ控事大村大代立会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0173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理由

被告ハ多衆ヲ聚合シテ暴動ヲ為サントノ謀議ニ参加シ暴徒ノ首魁羅成彦ノ部下ニ在リ情投入シ隆熙三年二月二十日以降同年四月十八日ニ至ル迄ノ間同人ノ指揮ノ下ニ其部下数十名ト共ニ銃ヲ携ヘ全羅南道羅州郡内ヲ横行シテ暴動ヲ為シタルモノナリ

前記事実ハ憲兵伍長西野鉄造外二名ノ報告書憲兵分遣所ニ於ケル被告訊書ニ徴シテ之ヲ認定スルノ証憑十分ナリトス

法律ヲ按スルニ前記被告ノ所為ハ暴動罪ノ従犯ナルヲ以テ刑法大全第六百七十七条第百二十五条ニヨリ首犯ノ律ニ一等ヲ減シ酌量スヘキ情状

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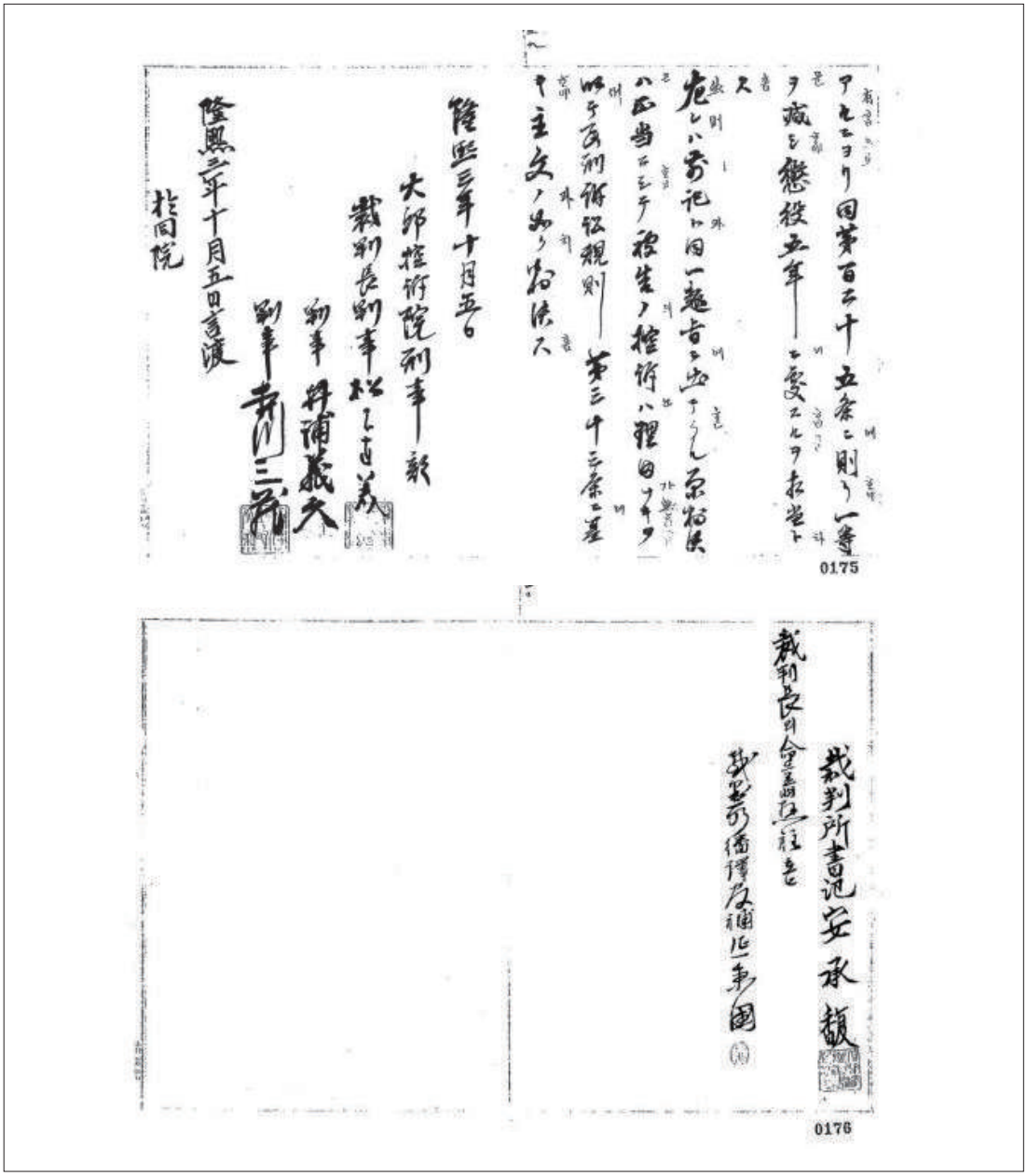

0175

0176

관리번호 : CJA0000694　문서번호 : 771753　성명 : 장갑삼　쪽번호 : 173-176

위 폭동 피고사건에 관하여 융희 3년 6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가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당 법원은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의 입회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건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다중을 모아 폭동을 할 것을 조의(造意)한 폭도의 우두머리 나성언(羅成彦)의 부하에 사정을 알면서 가입하여 융희 3년 2월 20일 이후 동년 4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동인의 지휘 하에 그의 부하 수십 명과 함께 총을 휴대하고 전라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내를 횡행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이다.
위의 사실은 헌병오장(伍長) 서야철조(西野鐵造) 외 2명의 보고서, 헌병분견소에서 한 피고조서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을 살펴보니 위 피고의 소위는 폭동죄의 종범(從犯)이므로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 제135조에 의해 수범(首犯)의 율에서 1등급을 감하고, 헤아릴 만한 정상(情狀)이 있으므로 동(同) 제125조에 따라 1등급을 감하여 징역 5년에 처함이 타당하다.
그런즉,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 없음으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융희 3년(1909) 10월 5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3) 나주의병 관련 신문기사[19)]

1896. 7. 18. (독립신문)

전주 중대장 김병욱씨가 나주 비도들을 칠 땅에 인민들이 손상함이 조금치도 없거니와 김병욱씨가 위국 지심과 군제가 지극히 도저 하여 비록 난민들이라도 귀화를 많이 시키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완한 일이 많아 나주부에 송덕비가 거리거리 섰다더라.

1906. 6. 29. (皇城新聞)

南道日兵 本月19日에 日本陸軍步兵大尉 增村嘉吉이 中尉一人 小尉二人 軍醫一人 正校二人 兵卒一百二十六人을 率하고 自木浦로 下陸於羅州榮浦하여 20日에 抵到羅州府하여 尉官四員과 正校二人은 書記廳에 入處하고 軍醫一人과 火兵 等은 西門外 本願寺에 駐接이고 兵卒一百二十六人은 各書記廳에 分處하였다고 該道 觀察使가 內部에 報告하였더라.

1907. 5. 23. (황성신문)

羅匪猖獗

全南來人의 傳說을 聞한 則 羅州 等地에 匪徒가 大熾하여 人命殺害와 財産奪去가 非止一再인 故로 該郡人民들이 言하되 當此農節하여 一時를 難保라고 方今 嗷嗷中이라더라.

1907. 9. 26. (황성신문)

羅州義徒

나주세무관 洪鼎厚씨가 탁지부에 보고하되 卽接靈光郡 稅務主事 崔炳奎 報告內에 本月 19일 하오3시에 의병이라 칭하는 자 幾百名이 삽시간에 嘯聚於本郡城內 하여 分派所巡檢이 砲放交戰하여 勢危甚急이기 本分署文簿는 他處로 移置하고 罔夜避走하여 목포세무분서에 逗留라 하였더라.

1907. 10. 4. (황성신문)

全南參書電報

全南裁判所 檢事署理 參書官 金聲韓씨가 法部로 전보하되 本月 2일에 羅州郡警務分派所로서 暴徒 37명을 押到라 하였더라.

---

19) 박찬승 편, 『羅州近代百年史-신문자료집성(1887~1960)-』(목포대박물관, 나주시, 1997, 24~36쪽)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했음을 밝힌다.

1907. 10. 4. (大韓每日申報)

暴徒押到

再昨日 전남재판소 검사가 법부에 전보하되 暴徒38명을 당일에 自羅州分署로 押到라 하였더라.

1908. 2. 9.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佛甲山 及 咸平 靈光 長城 諸郡을 義兵이 根據地로 삼고 佛甲山 山麓 義兵將 奇參衍 部下 五百名은 銃器 百五拾柄이 有하고 金泰元部下 四百名은 銃器百柄以上과 舊式野砲 五六門이 有하고 李進士部下 二百名은 銃器五六拾柄 以上이 有히다더라.

1908. 2. 14. (대한매일신보)

義將脫去 全羅南道 光州郡義兵將 奇三衍氏가 義兵 五百名을 領率ᄒᆞ고 該郡 何許寺刹에셔 逗留하다가 日憲兵의 襲擊을 因ᄒᆞ야 被縛入邑ᄒᆞᄂᆞᆫ대 中路애셔 義兵이 突出 交戰ᄒᆞ야 日憲兵 二名이 被害하고 奇三衍氏ᄂᆞᆫ 還爲脫去ᄒᆞ얏다ᄂᆞᆫ 電信이 日前 內部에 到達하얏다더라.

1908. 2. 16. (대한매일신보)

▶佛甲山及함平靈光長城諸郡은 義兵이 根據地로 삼고 佛甲山 山麓 義兵將 奇叅衍部下 五百名은 銃器百五拾柄이 有ᄒᆞ고 金泰元部下 四百名은 銃器百柄以上과 舊式野砲五六門이 有ᄒᆞ고 李近士(進士) 部下 二百名은 銃器 五六拾柄以上이 有ᄒᆞ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2. 27.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全羅道 義兵은 元來 金有成 奇三衍 김大元 三派에 分ᄒᆞ야 其近據地ᄂᆞᆫ 무쟝 長城 淳昌 咸平 靈光 附近인대 右三派 義兵이 氣脈을 相連ᄒᆞ야 同地에 橫行ᄒᆞᆫ다 ᄒᆞ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3. 1.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羅州방면으로 來하는 商人의 말을 듣고 日兵이 前進한즉 義兵은 東方山中으로 退去하였다가 更히 日兵과 40분간 交戰하였다 하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3. 1.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本月十六日에 日兵이 光州에서 發行하여 十七日에 石洞에 到着하여 羅州來人의 所報를 聞한 則 義徒七十名이 方今 磨谷에 在하다하는 故로 急行前進한 則 該徒가 東方山地로 逃走하는지라 即時 攻擊하여 四十分間 戰鬪後에 該徒를 潰亂케 하였다더라.

1908. 3. 14.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日騎兵討伐隊는 三月九日 羅州 北方 約四里 竹山附近에서 義兵六拾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8. 3. 14.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本月九日에 日兵이 羅州 北方 竹山附近에서 義徒六十名을 襲擊하였다 하고.

1908. 3. 20. (대한매일신보)

果則善政

羅州郡守 金聖基 씨가 該郡警察署와 日兵에게 被害한 義兵을 善爲交涉하여 生還한 자가 1000여명에 달하였더니 日前에 受由上京함에 該郡人民등이 恐爲永遞하여 수백명이 脫衣遮道하여 수일을 相持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4. 9. (황성신문)

▷同福郡에 在ᄒᆞᆫ 第二巡査隊ᄂᆞᆫ 去月 十九日에 義魁 金泰元을 爲ᄒᆞ야 軍糧米 百五十石 藏置ᄒᆞᆫ 者 一名을 逮捕ᄒᆞ고 日本中隊 中尉에 屬ᄒᆞᆫ 巡査隊ᄂᆞᆫ 本月 三十一日에 靈光郡 廣谷에 集會ᄒᆞᆫ 義徒를 攻擊ᄒᆞ얏다 ᄒᆞ고.

1908. 4. 24.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光州電을 據한 則 光州地에 第二巡査隊가 義魁 金泰元等 六名을 牛擒하고 糧食米 百卄石을 押收하였다 하고.

1908. 4. 26.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本月二十二日에 全州守備隊日兵이 羅州西方에서 義徒二十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8. 4. 28.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日本騎兵隊와 巡査隊가 本月二十五日에 光州郡 龜頭山(魚登山의 착오)에서 集合한 義徒를 包圍攻擊하여 全南義魁 金泰元以下를 多數히 捕縛하였다 하고.

1908. 4. 30.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二十八日 夜八時에 羅州郡 竹浦에서 十五名의 義徒가 襲擊하여 日本人 一名을 殺害한 結果로 해地 警察所에서 憲兵 幾名을 出張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4. 30.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本月二十九日에 義徒 約十五名이 羅州升浦에 來襲하여 日本人 一名이 被殺하였다 하고.

1908. 5. 1. (경향신문)

○쟝셩쇼식

음력 이월이십ᄉᆞ일(양 3.26 ; 편자주)에 의병ᄃᆡ쟝 김참봉ᄐᆡ원씨가 포군 칠십명을 거ᄂᆞ리고 쟝셩군 토물 뒷봉에 복병ᄒᆞ고 일병과 싸호ᄂᆞᆫᄃᆡ 처음에는 일병 삼명이 죽고 일명은 도망ᄒᆞ야 각쳐 슈비ᄃᆡ에 청병ᄒᆞ야 일병 륙십여명이 와셔 오전 여ᄃᆞᆯ시브터 오후열두시ᄭᆞ지 졉젼ᄒᆞ엿ᄂᆞᆫᄃᆡ 일병은 삼십여명이 죽고 의병도 십여명이 죽엇고 의병ᄃᆡ쟝 김ᄐᆡ원의 아오 박ᄉᆞ 김율씨도 그 형으로 더부러 훔씌 챵의ᄒᆞ야 졉젼도 여러번ᄒᆞ고 광쥬군 손머리라 ᄒᆞᄂᆞᆫ 동ᄂᆡ에 류련ᄒᆞᄂᆞᆫᄎᆞ에 그 동리 박가가 본군 일병텽에 긔별ᄒᆞ야 일병이 나와 박ᄉᆞ를 잡아 즉시 포살ᄒᆞ려 ᄒᆞ더니 별안간에 풍우대작ᄒᆞ며 벽력이 요란ᄒᆞ거늘 박ᄉᆞ말이 너희들은 보아라 나는 텬츌지츙신(天出之忠臣)이라 ᄒᆞ니 일병들이 우스며 대쟝소로 ᄃᆞ려다가 관찰ᄉᆞ와 일병대쟝이 문쵸ᄒᆞᄂᆞᆫᄃᆡ 혼마ᄃᆡ 말도 굴치 아니ᄒᆞ니 대쇼관리들이 다 말ᄒᆞ기ᄃᆡ 춤 호남에 긔남ᄌᆞ라 닐ᄋᆞ고

젼라북도 고챵군 셰무관 셔상팔씨는 고챵 무쟝 흥덕 고부 ᄉᆞ읍 결젼을 슈쇄ᄒᆞᄂᆞᆫᄃᆡ 셩졍이 밍렬ᄒᆞ야 빅셩을 포편으로 치며 악ᄒᆞ게 말을 훔으로 빅셩의 원셩이 쟈쟈ᄒᆞ더니 음력 이월십칠일 밤즁에 부지하허인 수십여명이 고챵읍에로 돌녀드러 몽농이로 타살ᄒᆞ고 방포오셩ᄒᆞ고 나갓ᄂᆞᆫᄃᆡ 엇던 사ᄅᆞᆷ인 줄을 모른다 ᄒᆞ고

음력 삼월 초칠일(양 4. 7 ; 편자주)에 호남챵의 김참봉ᄐᆡ원씨가 포군 몃십명을 거ᄂᆞ리고 령

광군 삼남면 싱골이라 ᄒᆞᄂᆞᆫ 동닉에 류련ᄒᆞᄂᆞᆫ ᄎᆞ에 리웃마을 한실이라 ᄒᆞᄂᆞᆫ 동닉 사ᄅᆞᆷ 라동슈의 해를 닙어 일병이 온단 말을 듯고 싱골 뒤 테메봉에로 피신ᄒᆞ니 이ᄯᅢ에 슈죵ᄒᆞᆫ 군ᄉᆞ는 다만 이십ᄉᆞ명ᄲᅮᆫ이라 황황ᄒᆞᆯ 즈음에 발셔 일병이 젼후를 에워쌋거ᄂᆞᆯ 부득이 싸화 죵일 미결ᄒᆞᄂᆞᆫᄃᆡ 마츰 의병의 류진ᄒᆞᆫ 곳이 디형이 됴하셔 대단ᄒᆞᆫ 패를 보지 아니ᄒᆞ엿ᄂᆞᆫᄃᆡ 일병의 ᄉᆞ샹은 혹 십팔명이라도 ᄒᆞ고 혹 이십이명이라도 ᄒᆞ며 의병의 ᄉᆞ샹은 혹 삼명이라도 ᄒᆞ고 혹 오명이라도 ᄒᆞᄋᆞᆸ데다

四月二十二日 쟝셩 본사통신원

1908. 5. 2. (대한매일신보)

湖南風塵

京鄕新聞을 據ᄒᆞᆫ즉 陰二月貳拾四日에 義兵대將 김參奉泰元씨가 砲軍七拾名을 領率하고 長城郡 土物里 後峯에 伏兵하고 日兵과 戰鬪하는데 初次에는 日兵 三兵이 被殺하고 日兵이 逃走하여 各處 守備隊에 請兵하여 日兵 六拾餘名이 來到하여 午前 八時부터 午後 1時까지 交戰하였는데 日兵은 三拾餘名이 被殺하고 義兵도 三拾餘名이 被死하였고 義將 金태원氏의 弟氏博士 金氏聿도 與其兄으로 同爲唱義하여 交戰도 屢次하였고 光州郡 素村에 留連하는데 該村居 朴哥가 該郡駐在日兵의 □□□□□ 日兵이 來到하여 김율氏를 捕縛하여 砲殺하려 할 際에 별眼間에 風雨가 大作하며 霹靂聲이 震動하거늘 김율氏가 聲言하기를 汝輩는 見하라 我는 天出之忠臣이라 하니 日兵이 鼻笑하며 守備隊로 押去하여 觀察使와 日兵隊長이 問招하는데 一言도 屈치 아니하니 大小官吏들이 稱贊하기를 湖南에 奇男子라 稱하였고,

陰三月初七日에 김泰元씨가 砲軍幾拾名을 領率하고 靈光郡 三남 明生洞이라 하는 동네에 留連하는데 隣동 寒實이라 하는 동네人 羅同壽의 害를 被하여 日兵이 來到한다는 報道를 聞하고 生谷 後峯으로 避身하니 此時에 隨從하는 義兵은 十四名뿐이라 遑遑할 際에 日兵이 前後로 包圍하거늘 不得已接戰하여 終日토록 未決하는데 適其時 義兵의 留陣處가 地利를 得하여 大敗는 無하고 日兵의 死傷은 或十八名이라 하며 或二十名이라 하고 義兵의 死傷은 或三名이라 하며 或 五名이라 하였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5. 7.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二十八日 午後九時頃에 約拾五名의 義徒는 羅州郡 竹浦에 襲來하여 在留日人 高田密藏의 가를 砲擊하였는데 伊時에 該人은 左胸部를 中丸하여 卽死하였고 家族은 僅僅히 避亂한 同時에 該家屋은 燒却하였다 하고.

1908. 5. 9.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去月二十八日에 羅州郡 竹浦□池洞에 義徒十餘名이 來襲하여 該郡居日人 高田密藏을 殺害하고 錢二百圜과 其他商品衣服等物을 奪去하였다 하고.

1908. 5. 10.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 28일에 羅州郡 竹浦面 池洞에 義兵 10여명이 來襲하여 該郡居 日人 高田密藏을 殺害하고 錢 200元과 其他商品衣服 等物을 奪去하였다 하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5. 10. (황성신문)

▷去月 二十八日에는 巡査隊가 全羅南道에셔 義魁 金泰元이 掠奪貯蓄ᄒᆞᆫ 米 六十石과 銃 一柄을 押取ᄒᆞ고 又 咸平郡 大化面 新亭里에셔 義徒의 銃改造所『 包圍ᄒᆞ야 義徒 一名을 逮捕ᄒᆞ고 銃 十柄을 押收ᄒᆞ얏다 ᄒᆞ고.

1908. 5. 16.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全羅南道 羅州守備隊 上等兵以下 七名이 本月十日夜에 同地 東北 約一里地에서 暴徒 十餘名과 衝突하였다 하고.

1908. 5. 19.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 15일 羅州郡에서 義兵 80명이 全羅南道分遣所 憲兵 10명과 交戰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5. 19.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本月十五日에 全羅南道 鶴橋憲兵分遣所憲兵이 羅州郡內에서 義徒 八十名과 交戰하였다고 하고.

1908. 5. 27. (대한매일신보)

奸狀現露

羅州郡 榮山浦에 사는 리유선이가 自衛團장으로 義兵을 偵察한다 칭하고 남평군 郁谷面 禮洞에 사는 權召史를 强奸하고 權明善 씨의 葉錢150兩을 討索한 일이 綻露되어 該道裁判所에 拿致되여 方今審査中이라더라.

1908. 5. 28.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十貳日 羅州面 北方 約十五里地에서 義兵二十名이 全羅南道 伏岩日憲兵臨時派遣所上等兵 2名 及 補助員 5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8. 7. 7.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去月二十二日에 咸悅分遣隊 日兵이 羅州東北方에서 暴徒 5명을 殺하였다 하고.

1908. 8. 29.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 20일 全羅南道 羅州郡 鳳鶴洞에서 義兵 40여명이 日憲兵7명 및 巡査隊와 交戰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10. 17. (대한매일신보)

本月 30일 羅州郡 北方4里地에서 義兵 150여명이 榮山浦駐在 日憲兵 및 補助員과 交戰하였는데 補助員 2명은 卽死하였다 하고.

1908. 10. 27.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榮山浦憲兵分遣隊에서 組織한 討伐隊가 本月二拾二日에 羅州北方에서 暴徒 百五拾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8. 10. 27.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三拾日 羅州郡 北方 四里地에서 義兵 百五十餘名이 榮山浦駐在 日憲兵及補助員과 交戰하였는데 補助員 1名은 卽死하였다 하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10. 29.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 17일 羅州北方 約4里地에서 義兵 약 120명이 咸平郡 내에서 日憲兵下士 2명과 韓國將校 1명과 補助員 15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8. 10. 29.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本月拾七日에 憲兵曹長以下搜索隊가 羅州北方에서 暴徒百二拾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8. 11. 7.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榮山浦分隊管內에 賊警은 從來로 鎭靜치못한 故로 長城 潭陽 靈光 羅州 綾州 靈岩 長興 寶城 谷城 順天 等郡 地方은 尙今 暴徒가 出沒하고 其他 咸平郡 地方에도 不穩한 狀態가 有하다 하고.

1908. 11. 8.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榮山浦管內에는 長城 潭陽 靈光 羅州 綾州 靈巖 長興 寶城 谷城及順天 咸平 等郡 各地方에 義兵이 出沒不絕한다 하였고.

▲靈光 咸平 羅州 等郡 地方에는 약100명式으로 壹隊를 組成한 義兵이 日憲兵隊와 衝突하였다 하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11. 28. (대한매일신보)

義兵熾盛의 內容

羅州郡에는 義兵이 更起熾盛하다는데 그 내용을 得聞한즉 義兵과 日兵에게 殺戮을 當치아닌 洞里가 없고 日兵들의 所爲는 但히 백성에게 敗害만하니 義兵鎭壓은 姑舍하고 反히 의병을 激起케 함이라 日兵에게 財産家屋을 見失하고 多數한 人命이 料生할 수 없어 義兵에게 投入함이니 일본인의 開化法은 如此한가 하고 民怨이 大端하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11. 28. (황성신문)

羅州民情

羅州郡에서는 暴徒가 更起하여 大段蔓延한데 夜夜로 村里에 橫行하여 人民을 곤란케 하고 山

谷小村落은 賊漢 등에게 見害逢辱하고 또 日兵에 곤란을 被하여 難保之境에 이르렀다더라.

1908. 11. 29.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靈光 羅州 咸平郡 地方에도 多數의 義兵이 日本討伐隊와 交戰하였다 하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12. 13.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 15일 羅州郡 北方 약 40里地에서 義兵 80여 명이 該郡駐在 日憲兵 및 補助員과 交戰하였다 하고. / 국문판 12/15일 같은 기사

1908. 12. 16.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全羅南道 榮山浦 分遣隊憲兵과 補助員 3명이 去月 4일에 羅州 北方 약 4里되는 靈光郡 郎月山에서 約 60명의 暴徒와 交戰하였다 하고.

1908. 12. 23. (대한매일신보)

良民何罪

去月 29일에 羅州郡 居平面等地에서 義兵400여명이 榮浦駐在憲兵 및 補助員과 咸平郡分派所憲兵補助員 合100여명이 相互衝突하여 補助員1명이 卽死한지라 義兵은 靈光방면으로 向去하였는데 日兵이 該附近村家40여戶를 燒燼하고 無罪良民 拾十名을 砲殺하였다는 說이 있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12. 23. (대한매일신보)

南郡風雲

南平郡 猪浦面 槎山里에 義兵100여명이 隱伏하였다가 綾州郡 駐在日騎兵10명이 過去할 際에 衝突交戰하여 日兵1명은 卽死하고 2명은 負傷하였는데 義兵은 卽時該郡茶所面으로 退向한지라 翌日에 光州和順綾州該郡榮浦 各駐在 日憲兵 및 補助員5~60명이 來到該面하여 村村家家에 無罪平民을 侵掠毆打하여 怨聲이 載路하다더라.

1909. 1. 7. (황성신문)

地方消息一通

△全羅南道 光州守備隊에서 出한 小尉가 去月 20일에 羅州北方 略5里地에서 60여명의 暴徒를 討伐하였다 하고.

△全羅南道 古幕院憲兵分遣所員은 本月 1일에 暴徒100여명이 來襲함을 預知하고 迎擊하여 그 3명을 殺하고 銃 2柄을 鹵獲하였는데 헌병보조원 2명이 戰死하였다더라.

1909. 1. 7.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貳拾日에 羅州 北方 五十里地에서 少數의 義兵이 該郡守備隊와 交戰하였다 하고.

▲本月壹日에 義兵百餘名이 全羅道古幕院憲兵分遣所를 來襲하였는데 補助員□名이 戰死하였다더라.

1909. 1. 14.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 5일에 羅州郡 西南方에서 義兵 40여명이 該郡 古幕院分遣所에 日憲兵 및 補助員과 交戰하였다 하고. / 국문판 1/15일 같은 기사

1909. 1. 14. (황성신문)

全羅南道 古幕院憲兵分遣所 憲兵2명과 補助員5명이 本月 5일에 羅州西南方 略1里地에서 略 40명의 暴徒를 討伐潰走케 하였는데 보조원1명이 戰死하였다 하고.

1909. 1. 16. (대한매일신보)

日兵被殺

全南 古幕院 日憲兵分遣所 헌병이 今月 1일에 의병100여명과 壹大交戰하였는데 日兵2명이 被殺하였다더라.

1909. 1. 26.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 11일의 羅州西方 約10里에서 義兵 25명이 同郡憲兵分遣所 上等兵 2명 補助員 4명과 交戰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2. 2.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 19일 古幕院 約 10里地에서 의병 150명이 榮山浦 日本討伐隊와 上等日憲兵 및 補助員 5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9. 2. 9. (대한매일신보)

남평의병 본월이십일 정오에 남평군 욱곡면에 의병장 박사화씨와 박민홍씨의 거느린 의병 250명이 나주경찰서 일순사와 일헌병으로 더불어 접전하였는데 의병은 높은 산을 등지고 돌격하며 강경히 대적하여 세 시간을 서로 충돌하였는데 그때에 의병장 박민홍씨의 아우 박세완씨가 피해하였다더라.

1909. 2. 13.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榮山浦附近各地方에는 從來로 不穩하여 尙今騷擾中이라 하고.

▲光州 羅州 咸平 昌平附近 等地에는 日憲兵 및 守備隊의 屯在所에서 10里 혹 20里에는 地方義兵이 數次徘徊하였다 하고.

▲榮山浦 등地에서는 去冬期間에 義兵이 日憲과 五回을 衝突하였다더라.

1909. 2. 13. (대한매일신보)

榮山浦等地에서는 去冬期間에 義兵이 日憲과 5회를 衝突하였다더라.

1909. 2. 13. (황성신문)

地方動靜

榮山浦所管內에는 暴魁 沈南一 全海山 等의 徒黨이 200명이니 人民에 대하여 納稅가 不可하다고 通文을 發하고 또 同胞相殺이 不可한 意로 當局官吏에게 致하였는데 日憲兵이 暴徒를 5차 擊退하여 그 세력이 頓挫하였으나 更히 集合하라는 模樣이 있다 하고 昌平邑에서는 去月 4일에 暴徒10여명이 該郡에 侵入하여 住民을 捉去하였더라.

1909. 2. 17. (대한매일신보)

本月 6일 全南 榮山浦 西北方 약 20리에서 義兵 약 100명이 榮山浦分遣所 日憲兵 5명 및 補助員 8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9. 2. 18. (대한매일신보)

光羅風塵

陰本月 22일경에 전남 光州 羅州 兩郡接境에서 義兵 수백명이 日守備隊兵 幾十名과 猛烈交戰하여 兩陣死傷이 不少하다는 傳說이 있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2. 26. (대한매일신보)

全南義兵

現今 全羅南道에 出沒하는 義兵大將은 全海山 秦南越(沈南一의 착오) 朴仁守(吳仁洙의 착오) 數人인데 全海山氏는 韓國軍隊解散時에 正尉오 심남일氏는 其時 特務正校오 오인수氏는 地方有力者인데 以上 諸氏가 義兵을 組織하여 全氏는 總大將이 되고 三團體가 合 六百餘名에 達하였는데 現今 木浦近傍에 出沒하고 오인수氏의 副將 朴士化氏는 部下 百餘名을 率하고 羅州 光州 等地로 橫行한다더라.

1909. 2. 27. (황성신문)

全南暴起

近頃에 전라남도에 暴徒가 再히 蜂起하여 지난 25일에 南平郡 郁太面에 暴徒의 세력이 頗히 猖獗한고로 나주경찰서에서 日本人巡査3명과 我國人巡査4명을 急派하여 약100명의 暴徒와 衝突하여 이를 潰走케 하였는데 그때 日本人巡査1명이 右腎部에 貫通한 銃을 受하여 榮山浦에서 治療한다더라.

1909. 2. 28. (대한매일신보)

南平의 大風雲

本月 26일 正午 南平面 郁谷面에 義兵將 朴士化 朴珉洪 兩씨의 率한 義兵 250명이 羅州警察署 日巡査 및 憲兵과 交戰했는데 의병은 背後高山을 據하여 突擊하여 强硬히 抵抗하여 3시간을 互相衝突하였다더라.

1909. 3. 3.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 25일 南平郡內에서 義兵 250명이 羅州警察署 巡査 10명과 交戰하였는데 巡査 1명이 負傷하였고 其翌 26일에 再次交戰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3. 4. (대한매일신보)

去月 26일에 南平郡內에서 義兵 25명이 光州郡 日守備隊大尉以下 15명과 中尉以下 10명의 討伐隊와 交戰하였다 하고.

1909. 3. 14. (대한매일신보)

羅郡風塵

本月 10일경에 全羅南道 羅州郡邑 距20里地에서 義兵80여 명이 日本守備隊兵과 交戰하여 日兵 1명이 卽死하고 良民 2명이 負傷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8. 3. 14. (대한매일신보)

지방정형

구일에 나주군 죽산 근처에서 의병 60명이 일병과 접전하였다 하며.

1908. 3. 17. (신한민보)

라주 영산포 등디는 의병쟝 심남일 전해산 씨등이 횡행ᄒᆞ는 디뎜인대 그 결당이 二百명이상에 달ᄒᆞ얏고 세랍을 밧치지 말라는 말로 격문을 돌니며 또는 동포를 서로 해흠이 참아 못흘이라고 권유ᄒᆞ며 혹 디방관에게 긔셔ᄒᆞ야 의병의 셰력을 발뎐ᄒᆞ도록 힘쓰라 ᄒᆞ는대 목하 의병듕에 뎨일 셰력을 가진 것은 이 남일파와 해산파의 두단테라더라.

1909. 3. 24. (대한매일신보)

本月 13일 全南 南平郡 西北方 約 10里地에서 의병 60여명이 同郡分遣所 日憲兵 2명 및 補助員 3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9. 3. 24. (대한매일신보)

本月 10일 全羅南道 九幕院 東北方 約 10里되는 山中에서 의병 12명이 該院分遣所 日憲兵 1명 및 補助員 1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9. 4. 2.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 19일 全南 羅州郡 東南方 約 15里 國士峰 東北方高地에서 義兵 50명이 同地 日守備隊上等兵 3명과 衝突할 際에 他處로 從來하는 日守備隊上等兵以下 8명이 來援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4. 21. (대한매일신보)

全南義勢

全羅南道의 義兵形勢는 依然히 熾盛하여 그 小部隊가 各處에서 出沒橫行하는데 就中에 光州 長城 靈光 等郡은 最히 不穩하여 義兵의 橫行이 頻繁한 地點이오 그 義兵將은 全海山 鄭太洪 鄭大仁 梁相基 氏等 壹派이오 羅州 榮山浦 附近의 義兵將은 姜鉉秀 安桂洪(안규홍의 착오) 氏等 壹派인데 彼義兵將은 國家思想이 熱中하여 湖南義兵大將이라 稱하고 憲兵補助員 및 各地方에 檄文을 屢屢이 散佈하여 民心을 煽動하며 日兵官吏를 捷敵할 뿐 아니라 快히 罵倒하는 고로 居民은 義兵을 환영하며 그 행동을 秘匿하매 의병의 出沒은 去益穩全自在하며 의병은 東閃西忽에 出沒無常하여 그 행동 頗히 巧妙한데 居民들도 의병에 漸益投入한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4. 21. (대한매일신보)

本月 18일 전라남도 古幕院南方 約10里地에서 의병80여명이 該院分遣所 日憲兵 4명 및 補助員 6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9. 4. 22. (황성신문)

전라남도 古幕院分遣所憲兵 몇 명과 補助員6명이 本月 18일에 同地 略1里에서 暴徒8명과 衝突하여 3명을 捕獲하였으며 銃14柄과 軍刀 몇介를 鹵獲하였다더라.

1905. 5. 14. (황성신문)

전라남도 榮山浦分遣所憲兵5명과 補助員11명이 本月 5일에 同地 略2里地에서 暴徒80여명과 衝突潰走케 하였다더라.

1909. 5. 16. (황성신문)

전라남도 羅州守備隊上等兵以下7명이 本月 10일 밤에 同地 東北 略1里에서 暴徒10여명과 衝突하였다 하고.

1909. 5. 19. (대한매일신보)

羅州義兵

木浦港來人의 傳說을 據한즉 羅州郡 三陽面 等地에 의병이 多數來到하여 該地에 居留하는 日人男女數三人을 殺害하였고 장차 목포항을 衝突襲擊한다고 聲言하는 故로 該港民情이 大端恐懼中이라더라.

1909. 5. 21. (황성신문)

朴參領上京期

軍司令部在勤軍部參領 朴榮喆氏가 全羅南北道에 暴徒의 出沒함을 視察하기 爲하여 去頃에 羅州 榮山浦 方面으로 出張하였다 함은 已報어니와 更聞한 즉 來二十七八日頃에 上京한다더라.

1909. 5. 27. (대한매일신보)

全南義兵 全羅남道에는 義兵 百餘名이 團合되여 徘徊하는 地方은 榮山浦와 羅州 남平 장城 靈光 法聖浦 古幕院 等地라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5. 28. (대한매일신보)

本月 12일 羅州 西北方 約15里地에서 義兵 20명이 全羅南道 伏岩 日憲兵臨時派遣所上等兵2명 및 補助員5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 국문판 5/29일 같은 기사

1909. 7. 27. (대한매일신보)

本月 4일 羅州郡 西北方 約50里地에서 의병50여명이 全南 三巨里日憲兵派遣所 上等兵1명 및 補助員7명과 衝突하였다 하고.

1909. 7. 27.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 5일 羅州郡 東北方 約70여里地에서 의병30여명이 全南 三巨里日憲兵派遣所 上等兵1명 및 補助員4명과 衝突하였다 하고.

1909. 7. 29.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本月八日 全南 羅州 東북方 約六십里地에서 義兵三拾名이 三巨里憲兵派遣所上等兵二名及補助員四名과 衝突하였다 하고.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8. 18. (대한매일신보)

地方消息

▲去月 30일 전라남도 羅州北方 約70里地에서 義兵 20명이 任谷臨時憲兵分遣所上等兵 2명 및 補助員 4명과 衝突하였다 하고. / 국문판 8/19일 자 같은 기사

▲羅州郡 北方 約30里 宮동 等地에서 義兵 약100여 명이 日憲兵20명과 接戰하였다 하고.

▲本月 16일 羅州 靈岩 南平 三郡 接境 龍頭 등지에서 義兵 數百名이 會集하여 何等事件을 協議할 時에 日憲兵 및 補助員 50여 명이 來襲하여 一晝夜間 砲聲이 不絕하였다더라.

1909. 8. 26. (대한매일신보)

本月 14일 전남 南平 雲谷地方에서 의병100여명이 日憲兵수십명과 交戰하였다 하고.

1909. 10. 1. (황성신문)

固其稱頌

羅州郡 榮山浦憲兵隊長 大原壽四郎 씨는 暴徒를 鎭撫하고 平民을 愛護함에 孜孜勤務하고 該隊通譯 金顯圭 씨도 同隊長의 意를 將順하여 誤解한 同胞를 提醒하며 無辜한 良善을 奠安케 함으로 附近人民들이 稱訟不已한다더라.

1909. 10. 7. (대한매일신보)

義將逮捕

去月三十日에 全남羅州郡伊老面奉仝里에서 義兵將 尹相馨씨가 日憲兵派遣所 憲兵에게 逮捕되였는데 씨는 已往 咸平 羅州 等地에셔 橫行하며 咸平 松溪里에 大砲와 銃彈等 兵器를 多數藏置하였더니 今番에 並히 押收되였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09. 10. 19. (대한매일신보)

兩義將被捉

本月 10일에 義將 朴永根 씨가 羅州 三加面 平村에 潛伏하였다가 任石日憲兵分派所 上等兵 3명과 補助員 7명에게 被捉되어 그 山中에 藏置하였던 多數兵器도 並히 押收되었고 本月 12일에 義將 羅聖化 씨는 羅州郡 郁谷面 九川里에 潛伏하였다가 榮山浦分遣隊 日下士 2명, 上等兵 3명, 補助員 4명에게 被捉하여 그 兵器 및 金品 等屬도 並히 押收되었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10. 1. 22. (대한매일신보)

義將被捉

去十六日 羅州 馬山면 朴浦里에셔 義兵將 朴民洪氏의 副將 김致洪氏가 榮山浦日憲兵分遣所에 被捉하였는데 其所有 洋銃1挺 刀1個 眼鏡1個 韓洋刀 1個도 併히 押收되었다더라. / 국문판 같은 기사

1910. 2. 4. (대한매일신보)

全將絕筆

全南 榮山浦分遣所 日憲兵에게 被捉하여 目下 光州地方裁判所에 滯囚한 義兵將 全海山 씨가 就捕한 後 律詩1首를 賦하여 憲兵을 與하여 曰, 此는 我絕筆也라 하였는데 그 時 曰, 書生誤着戰征衣 太息空囚素志違 痛哭朝廷臣作孽 忍論海外賊侵圍 白日呑聲江水逝 靑天咽淚兩絲飛 從今別却榮山路 化作啼鵑帶血歸

* 書生曾着戰征衣 事不成來志不違 痛哭朝廷臣作孽 忍論海外賊侵圍 白日呑聲江水逝 靑天咽淚兩絲飛 從今別後榮山路 化與啼鵑帶血歸(『海山倡義錄』 권1, 獄中絕筆詩)

1920. 5. 22. (독립신문, 상해)

金泰元은 部下 四百餘人을 率하엿는대 舊式 野砲五十門과 銃器 數百柄이 有하고 靈光 長城 等地를 策源地로 하야 非常出沒하다.(뒤바보, 「義兵傳」)

4) 나주 출신 의병장의 사형집행

조정인 의병장

○司 法

隆熙三年 一月十八日에 內亂罪人 趙正仁을 絞에 處ᄒᆞ올 意로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와 可라 ᄒᆞ신 旨를 奉홈.

출전 : 『구한국관보』 1909년 2월 7일, 호외

박사화 의병장

內閣告示 第六十八號

內亂 强盜 强盜殺傷人 殺人及罪囚逃走犯 朴士化 本月十一日 大邱監獄에셔 絞刑의 執行을 了ᄒᆞᆫ 事 右 告示홈.

隆熙四年六月十六日

內閣總理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 朴 齊 純

출전 : 『구한국관보』 1910년 6월 17일, 제4707호

권영회 의병장

內閣告示第七十八號

强盜及强盜殺傷人犯 林翊相, 暴動及謀殺犯 金善汝, 謀殺犯 朴成道, 暴動及强盜殺人犯 權寧

會 本月一日 大邱監獄에셔 絞刑의 執行을 了ᄒᆞᆫ 事
右告示ᄒᆞᆷ.
隆熙四年七月七日
內閣總理大臣 李 完 用

출전 : 『구한국관보』 1910년 7월 8일, 제4725호

5) 나주 출신 의병장 『金準傳』[20]

(1) 기우만, 「김준」(번역문)

김준은 자가 태원(泰元)이고, 호는 죽봉(竹峰)이며, 사람들이 김참봉(金參奉)이라 불렀다.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으며 글과 글씨를 다 잘하였다. 국가의 형세가 위태한 것을 보고 일찍부터 적을 물리칠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술꾼이나 백정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때를 만나지 못한 기특한 절개 있는 선비들이 이런 데에 많이 숨어있다." 하며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하였다.

이때 성재 기삼연이 왜적을 토벌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군문으로 달려가서 선봉장이 되기를 자원하니, 장하게 여겨 허락하고 그의 계책을 많이 썼다. 문수사(文殊寺), 모양읍(牟陽邑 : 고창읍), 법성포(法聖浦) 전투에서 모두 선봉장으로 앞장섰다. 뒤에 의진(義陣)을 나누어 적의 뒤를 밟아 창평(昌平) 무동촌(茂洞村)에 이르렀다. 왜장 요시다〔吉田〕는 용맹이 있고 싸움을 잘하여 여러 왜놈들이 믿고 의지하였는데, 교묘한 술책으로 꼬여 잡아 수십 발의 총탄을 쏘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칼과 돌로 함께 내려치자 죽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군대를 이끌고 12개국을 두루 다니며 백전백승(百戰百勝)하였는데,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왜놈들이 모두 낙담하여 적의 주검들이 들을 덮었다. 출병한 뒤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샛길로 행군하다가 성재가 잡혔다는 것을 듣고 의병 30명을 뽑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경양역(景陽驛)에 이르렀으나 이미 지나간 뒤였다. 의병을 돌려 통곡하고 상복을 입게 하며 반드시 원수를 갚기로 작정하였다. 남쪽 고을로 돌면서 의병을 모으고 무기를 거두면서 적을 만나면 쳐서 물리치니 적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

석문(石門) 전투에서 죽은 적이 셀 수 없었다. 무령(武靈 : 영광)의 고성봉(古城峰)에 진(陣)

---

20) 해방 이전에 저술된 나주 출신의 「의병전」은 김준이 유일하다. 이에 『김준전』을 소개하며, 아래의 글은 홍영기 외 3인, 『노사학파가 기록한 호남의병열전』(상상창작소 봄, 2019, 73~86쪽)에 실린 「김준」 항목의 본문을 발췌한 것이다.

을 치고 머물렀다. 적이 여러 병참(兵站)에 주재하는 군사들을 불러 모아 사방을 포위하여 가두고 비 오듯 총탄을 어지럽게 발사했는데, 참모(參謀)로 믿던 자가 총탄에 맞아 죽으니 좌우의 손을 잃은 것처럼 포위를 풀고 황룡강을 건너갔다. 적의 뒤를 밟아 청량산(淸凉山)에 이르러 총살한 적이 매우 많았으나 의병 또한 많이 죽었다. 의병을 이끌고 어등산에 도착하였다. 대개 이 산은 조 의병장(趙將)이 먼저 순국한 장소로 군인들이 모두 꺼려하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적의 추격으로 쫓기게 되자 그것이 부담이 되어 싸울 계책이 한 번 잘못되어 갑자기 운명하였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숨기고 말하지 않으니, 대개 (김준에 대한) 신의(信義)가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깊이 배여 애석히 여기는 지극한 정이었다.

모든 의진이 행군하다가 적을 만나 '김태원 의병이다'라고 선언하면 모든 적이 돌아가거나 물러나 피했다. 사람들이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달아나게 했네."라고 말하였다. 대개 그의 의기와 계책은 충분히 제(齊)나라를 회복하였던 전단(田單)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운명은 어찌 할 도리가 없으니 하늘이 빨리 빼앗아갔다. 아! 아깝도다. 모사〔謀士〕 전수용(全垂鏞)이 흩어진 의병을 거두어 모아 넉넉히 그의 의진의 명성을 계승할 만하다.

金準 字泰元 號竹峰 人稱金叅奉 貌美秀 文筆皆佳 見國勢岌嶪 早有敵愾之意 嘗遊歷酒屠間 日不遇奇節之士 多隱於此 爲延攬計 今聞奇省齋討復興師 即日馳詣軍門 自當爲先鋒 壯以許之 多用其籌策 文殊牟邑法浦之役 皆以先鋒在前軍 于後分陣躡賊 至昌平之舞意村 倭將吉田 善戰有勇 群倭之所倚重 說奇致之 數十砲猶不死 劒石俱下乃死曰 吾挈兵周行十二國 百戰百勝 而死於此 天亡我 群倭皆落膽 群□蔽野 出兵後初得意 間道行軍 聞省齋見逮 選兵三十 倍日追之 至景陽驛 已無及矣 還軍痛哭縞素 爲必報計 巡南群 聚軍人 收兵器 遇賊擊却 賊不敢近 石門之戰 殺賊無算 駐陣於武靈之古城峰 賊招集諸站駐在兵 囚圍而進亂丸如雨 參謀所恃者 中丸而死 如失左右手 其解圍 渡黃龍江 躡賊至淸凉山中 砲殺賊甚衆 而軍亦多物故 引兵至魚登山 山盖趙將先殉之地 而軍人皆忌之 不欲進而爲賊追所迫 爲負溤計一跲而遽殞 山下人皆諱言其死 盖信義孚人心目 愛惜之至情 諸陣之遇賊者 宣言金泰元軍 則賊皆返巡退避 人稱死諸葛 走生仲達 盖其氣義籌略 足可爲復齊之田單 無奈氣數 天奪之速 嗚呼惜哉 謀士全垂鏞 收聚散卒 優能繼其軍聲.

출전 : 『松沙先生文集拾遺』 권 3, 「湖南義士列傳」

(2) 오준선, 「의사 김준 · 전수용 합전」(義士金準全垂鏞合傳)

김준은 선대가 경주인으로 자가 태원(泰元)이고, 죽봉(竹峯)은 그의 호이다. 대대로 벼슬한 이를 배출하였다. 그 아버지 대부터 동복(同福)에 거주하였다가 뒤에 나주(羅州)의 거평방(居平坊)으로 옮겼다. 문장과 덕행이 있어 고을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준은 가정에서 학문을 배웠고, 문예(文藝)를 일찍 성취하였다. 어릴 적부터 뜻과 기상이 원대하여 자유분방하여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으로 자질구레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다. 항상 분연히 몸을 돌아

보지 않고 국가가 위급한 때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평소 마음속에 쌓아 둔 생각이었다.

갑오년(1894)에 동학당가 처음 일어났을 때 일본과 서양을 배척한다고 성언(聲言)하므로 준이 시험 삼아 가서 보니 실제로는 적을 토벌할 뜻이 없고 오로지 약탈만 일삼으니 마침내 돌아와서 아우 율(聿)과 함께 수원(水原)으로 피난하였다. 국가의 일이 날로 어그러지는 것을 보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방임(坊任)이란 자가 아전들의 권력을 끼고서 백성들을 해치니 준이 곧 그 폐단의 심한 것을 열거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호소하여 기필코 바로잡았다. 간당(奸黨)들은 모두 그를 미워하였으나 평민들은 칭송해 마지아니하였다.

을사년(1905)에 이르러 적신(賊臣)들이 외국의 힘을 끼고 나라를 망치고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조종(祖宗)의 강토는 왜적의 소굴이 되고, 조종의 백성은 모두 왜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 이에 상국(相國) 조병세(趙秉世) 이하 네 분이 목숨을 바쳐 순국하고, 면암 최익현 선생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다가 힘이 다하여 붙잡혀 대마도(對馬島)에서 숨을 거두었다. 준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장차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종인(宗人) 김돈(金燉)과 함께 힘을 합해 의병 모집에 협력하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앞을 향해 거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성재 기삼연이 장성에 먼저 일어나고 녹천 고광순이 창평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의로운 기세가 대단히 성하였다. 김돈이 김준에게 이르기를 "세력이 고립되면 저 적을 부수기 어렵고, 힘이 합하여지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들으니 성재 기삼연은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어 의지할 만하다 한다. 옛사람이 이르길 '우리가 명족(名族)에 의탁하면 진(秦)나라를 틀림없이 격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공(奇公)은 곧 노사(蘆沙) 선생의 조카이니 지금의 명족이 아니겠는가."하고 그리로 나아가도록 권하였다.

드디어 모집한 의사들을 거느리고 총과 창 등 무기를 준비하여 고창 문수사에 가서 만나니 성재가 보고 크게 기뻐하여 함께 의병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밤이 깊어 삼경(三更)쯤 되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숲은 깊었다. 길이 험한데도 적병이 뒤밟아 와 총소리가 우레와 같이 들리더니 곧바로 절 문에까지 날아들어 창과 벽이 모두 부서졌다. 깊은 밤에 급작스러운 일이고, 또 적병이 많은지 적은지 알지 못하니 대부분의 의병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려 하였다. 준이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의병이라고 이름한 병사들이 적을 만나 도피하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 또 가파르고 험한 길에서 살아나갈 방도가 없으니 기왕 죽을진대 싸우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하고, 곧 포사(砲士)들을 시켜 석벽에 몸을 기대고 연달아 총을 쏘며 한바탕 크게 격전을 벌이니 적의 부대가 도망하여 물러갔다.

성재가 여러 차례 칭찬하기를 "그대가 장수의 재주가 있으니 우리 일이 이루어지겠다."하고 곧 준을 선봉장으로 삼고 군무를 모두 맡겼다. 이에 부대를 정돈하고 군령을 하달한 후 무장(茂長)의 적을 붙잡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곧 고창성 안으로 향하여 갔는데, 어두운 밤이라 대오(隊伍)를 분별할 수도 없었다. 적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참모장(參謀將) 김익중(金

翼中)과 이남규(李南圭)가 총에 맞아 죽었다. 흩어진 의병을 수합하여 장성 백양사(白羊寺)로 들어갔더니, 적이 사방을 포위하여 이들을 공격하자 드디어 맞서 싸우니 포성이 하늘에 진동하고 적병은 사상자가 많아 달아났다.

성재가 준과 상의하기를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 지 여러 달이 되도록 서로 호응하는 자가 오히려 매우 드무니 그대는 부하 의병을 거느리고 영광·나주·함평·무안 등 여러 곳의 사림(士林)에게 두루 알려 그들로 하여금 고동(鼓動)시켜 의병의 세력을 성하게 하라. 나는 장성·순창 등지로 가서 의병을 모집하여 성세로 삼아 서로 호응하면 적을 반드시 쳐부술 수 있으리라." 하였다. 준은 그렇게 여겨서 바로 그날 의병을 나누어 유림(儒林)에서 덕망이 높은 이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함께 나라의 치욕을 씻기를 바라니, 이로부터 응모자가 날로 많아졌다. 아우 율(聿)을 시켜 따로 한 부대를 거느리게 하여 세력을 도우니 의병의 위엄을 차츰 떨치게 되고 무기도 또한 갖추어졌다.

성재와 더불어 회합하여 장차 영광부(靈光府)에 있는 적의 소굴을 소탕하고자 하였는데 방비가 있는 줄을 알고 곧장 법성포로 향해 가서 적의 소굴에 불을 질러 공격하니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또 성재와 의병을 나누어 성재는 장성으로 돌아가고, 준은 광주·나주 등지로 향하였다. 이때 율의 부대가 사호(沙湖)에 머물러 있었는데, 적이 불시에 사면을 포위하여 공격하여 오니 의병이 혹은 죽거나 혹은 흩어졌다. 준이 듣고 적병을 당할 수 없음을 알고 방어벽을 견고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적이 방비가 있음을 알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봉장 조경환(曺京煥), 도포장(都砲將) 최동학(崔東鶴)과 상의하기를 "김율 의진이 최근에 패했으니 나는 동복·창평 등 여러 고을로 가서 충의지사(忠義之士)를 모집해서 힘을 합하여 적을 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드디어 정예한 포수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장차 떠나려 하는데 율이 의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따랐다.

곧바로 창평 지곡(芝谷)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고 이날 밤에 고개 하나를 넘어서 무동촌으로 진군하니 이날은 무신년(1908) 정월 초하루였다. 적장 요시다 카츠사부로〔吉田勝三郎〕란 놈이 기병을 거느리고 쫓아왔다. 다만 군인의 수효가 중과부적(衆寡不敵)일 뿐만 아니라 기병이 매우 정예하였고, 또 요시다〔吉田-가와미츠-작성자〕는 일본의 육군대장으로 키가 10척이나 되고 용력이 뛰어났다. 날랜 말 위에 앉아서 칼을 휘두르며 곧장 진격하니 눈 아래 의병이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쳐다만 보며 감히 나가지 못하였다. 준이 칼을 들고 진(陣)에 나와서 강개히 말하기를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남아가 죽을지언정 불의에 굴하여서는 안 된다. 또 적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총을 쏘는데 어찌 도망할 길이 있겠는가."하였다. 의병들로 하여금 담 밑에 몸을 숨겨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고, 또 정예한 포수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돌담 사이에 잠복하여 내 말을 기다려 쏘아라."라고 약속을 정하였다. 요시다가 날랜 기운으로 곧장 담 바깥에 이르렀다. 준이 (잠복한 포수에게) 눈짓을 하자 천보총(千步銃)

을 연달아 쏘아 이 적들을 정확히 맞추자 몸이 엎어져 말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아직 죽지 않자 준이 그놈의 보검을 빼앗아 찔러 죽이고, 망원경과 육혈포(六穴砲)를 획득하였다. 좌우에서 복병이 모두 총을 쏘니 총소리가 천둥치듯 진동하였다.

적들이 대장의 죽음을 분하게 여겨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의사 강길환(姜吉煥)·조덕관(趙德寬)이 죽게 되고, 상황이 매우 위급했는데 김율 의진이 마침 가까운 곳에 있어 호응해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니 적이 마침내 도망갔고 사상자가 있었다. 이로부터 의병의 기세가 더욱 장하였다. 그 산중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장성 월평(月坪)으로 가서 며칠 머물렀다. 이때 성재가 의병을 거느리고 담양〔潭州〕 추월산성(秋月山城)으로 들어갔는데 적이 사면으로 포위하니 의병이 흩어지고 성재는 순창 하조(下槽)로 피신하였다. 적이 성재를 추격하여 결국 체포되어 광주(光州)에서 처형당하였다.

준이 이 소식을 듣고 설위(設位)하여 통곡하고 군중(軍中)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게 하였다. 토천(土泉) 뒷산에 올라가 돌을 모아 성을 쌓고 총을 발사하여 적을 유인하니 적이 과연 많이 왔다. 적장 철도삼전(鐵道三田)을 총으로 쏴 죽이니 남은 무리가 퇴각해 도망하였다. 이날 밤에 영광으로 향하여 며칠 동안 유진하였다. 낭월산(朗月山)에서 적을 만나 도포장(都砲將) 최동학(崔東鶴)이 죽자 마침내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났다. 얼마 안 되어 대곡(大谷) 뒷산에 올랐는데 적의 기병과 갑자기 충돌하여 중과부적으로 의병들이 죽고 다쳤다. 아마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왜적들의 세작(細作; 간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의병의 기세가 크게 꺾이었다. 그러나 준의 의기는 더욱 장하여 군중을 향해 말하기를 "승패(勝敗)는 항상 있는 일이다. 오직 마땅히 충의를 격려하여 큰 승리를 도모함이 늦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종사(從事) 여러 사람을 나누어 보내 흩어졌던 의병들을 불러모았다. 또 도내(道內) 사림(士林)을 고동(鼓動)시켜 계획을 크게 하고 기세를 돋아서 여러 왜적의 두목을 초멸하기로 기약하고, 으진을 광주·나주 여러 곳에 옮겼다.

어등산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요통을 앓아 치료하려고 했는데, 적의 보병 및 기병과 순사대(巡査隊) 등 수백 명이 함께 불의에 뒤를 밟아 왔다. 의병들이 모두 놀라고 겁내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즉시 들어와 고하기를 "주장(主將)의 병세가 이러하고 적의 기세가 심히 성하니 장차 어찌합니까." 하였다. 준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을 것은 의병을 일으키는 날에 이미 결심하였다. 다만 이 적을 멸하지 못하고 장차 왜놈의 칼날에 피를 흘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한이로다."하였다. 이 날 누런 안개가 사방을 가득 메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의병들이 함께 부축하며 드디어 산에 올랐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의병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급히 달아나 화를 면하라. 나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으니 반드시 여기에서 죽겠노라." 하였다. 의병들이 서로 쳐다보며 차마 버리고 가지 못하자 손을 저어 물리치면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힘써서 뒷일을 도모함이 옳다." 하니 여러 의병들이 모두 눈물을

뿌리며 갔다. 김해도(金海道)란 사람이 있어 홀로 머물고 가지 않으며 "어찌 차마 주장(主將)을 홀로 죽게 하겠습니까."하였다. 조금 뒤에 적이 사방을 포위하였다. 준은 안색을 변치 않고 돌 위에 단정히 앉아서 적의 총탄에 맞고 절명하였다. 김해도는 그의 죽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였다. 적은 이미 요시다(가와미츠-작성자)가 휴대한 보검과 망원경 등의 물건을 획득하고 고무되어 날뛰며 그날 광주로 들어갔다. 광주에 주둔한 적이 김준의 죽음을 듣고 연회를 베풀어 서로 축하하며, 각 병참과 저들 나라의 정부에 보고하여 "의병을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하였다 한다.

이보다 먼저 김율 의진을 박사진(博士陣)이라 부르고, 광주 소지방(所旨坊)에 주둔한 지 여러 날이었다. 적이 광주로부터 밤을 타서 엄습하여 붙잡혀 광주의 감옥에 갇혔다. 이날 밤에 크게 벼락과 번개가 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다.

문초를 받을 때에 율이 먼저 소위 관찰사를 꾸짖으며 말하길 "너는 누가 임명한 관찰사냐? 너는 왜놈의 창귀로서 무슨 낯짝으로 백성의 위에 있느냐. 나는 왜적을 평정하는 날에 너희들도 아울러 주살하여 국가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내가 이에 적에게 사로잡혔으니 하늘의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비록 죽어도 충의로운 귀신이나 되지마는 너희들은 살아서 역적이 되었으니 너도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 생각해 보라. 부끄러움 없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관찰사는 말없이 피하였다.

왜놈 대장(隊長)이 조사하며 묻기를 "너는 왜 난을 일으켰는가?" 하니, 율이 눈을 부릅뜨고 분하여 꾸짖기를 "나는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적을 토멸하고 복수한 것이다. 너를 만 갈래로 베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지금 너에게 패배를 당하였는데 어찌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느냐." 하였다. 적이 감옥에 가두어 두고 감히 형벌을 가하지 못하였다. 마침 준이 해침을 당한 다음날 옥문(獄門)에서 끌어내어 마침내 죽였다. (율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의기가 당당하여 가을서리〔秋霜〕와 여름햇빛〔烈日〕과 같으니, 보는 이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준이 이미 죽어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었는데, 전 참봉(前 參奉) 김돈(金燉)이 관과 수의를 장만하여 빈렴(殯斂)하고 장사지냈다. 그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며 살도록 하니 후사(後事) 또한 장차 의탁할 데가 있겠다.

金準者 其先慶州人 字泰元 竹峯其號也 世有衣冠 自其父寓居于同福 後又移于羅州之居平坊 有文行 鄕黨稱之 準學于家庭 文藝夙就 自少志氣遠大 跅弛不羈 不拘拘於細節 而常欲憤不顧身 以殉國家之急者 其素所蓄積也 甲午東匪之初起 聲言斥日洋 準試往觀之 實無意討賊 專行刼掠 遂去之 與弟聿 避地水原閒 見國事日非卷而還鄕 鄕有坊任者 挾吏胥之權 剝殘害民 準即擧幣瘼之甚者 訴于道司 期於歸正 奸黨皆惡之 而常民則稱頌之不已 及至乙巳 賊臣挾越援誤國 至有勒約之擧 祖宗之彊土 淪爲賊藪 祖宗之赤子 盡爲左衽於是 趙相國秉世以下四賢 以身殉國 勉菴崔先

生 倡義討賊 力屈被執 成仁于對馬島 準不勝悲憤 將欲擧義討復 與其宗人金燉 協力共事 收募義士 以爲捨死向前之擧 時奇省齋參衍 首倡於長城 高鹿泉光洵 募兵於昌平 義聲張甚 燉謂準曰 力孤則伊賊難破 勢合則大事可成 聞奇省齋忠信可仗 古人云 我倚名族 破秦必矣 奇公即蘆沙先生從父子也 非今之名族耶 勸之使赴 遂率所募義士 備砲戈等物 往從之 遇於高敞之文殊寺 省齋見之大悅 與之談兵事 當夜三更 雨色霏微 林深路險 賊兵跟隨 砲聲如雷 直抵寺門 牕壁破碎 深夜倉猝 又不知賊兵多寡 衆皆驚駭欲散 準慨然曰 兵以義名 遇賊逃避非計 且崎嶇險逕 無以圖生等死耳 不如合戰而死 即命所率砲士 倚身石壁 連放砲丸 大鏖一場 賊隊逃去 省齋亟加稱詡曰 君有將帥才 吾事濟矣 即以準爲先鋒將 悉以軍務委焉 於是 整部伍 申約束 往捕茂長之賊 砲殺之 即向高敞城中 昏夜不分隊伍 賊從東門而入 叅謀將金翼中李南圭中丸死 收合散卒 入長城之白羊寺 賊環而攻之 遂應戰 砲聲震天 賊兵多死傷遁去 省齋與準議曰 吾倡義數月 同聲而應者 尙寥寥 君率所部軍 遍諭靈羅咸務等諸處士林 使之鼓動 以壯軍勢 吾則住於長淳之地 召募義旅 以爲聲勢相應 破賊必矣 準然之 即日分軍 歷訪儒林宿德 願與共雪國恥 自是應募者日益衆 使弟聿別領一軍 以助其勢 軍威稍振 器械亦辦 與省齋會合 將剿蕩靈光府賊藪 而知有備 直向法聖浦 火攻賊巢 殺傷甚多 又與省齋分軍 省齋回長城 準向光羅等地 時聿軍 住沙湖 賊出其不意 四面圍攻 義兵或散或死 準聞之 度賊兵不可當 堅壁不動 賊知有備 亦不敢近 乃與先鋒將曺敬煥 都砲將崔東鶴議曰 聿兵新敗 吾欲向福昌諸郡 收召忠義之士 合力討賊可也 遂率精砲數十名 將發 聿率軍數十人隨之 直抵昌平芝谷 留一日 是夜 踰一嶺 進軍於舞童村 是日即戊申元朝也 賊將吉田勝三郎者 率騎兵趕來 不但衆寡不敵 騎兵之精銳甚盛 且吉田 彼國之陸軍大將也 身長十尺 勇力絕倫 坐下快馬 揮劒直進 眼下無義兵矣 衆皆面面相睎 不敢出 準仗劒出陣 慷慨而言曰 公等畏死乎 男兒死耳 不可爲不義屈 且伊賊 四圍放砲 容有逃生之路乎 乃使軍人隱身墻下 以待將令 又謂精砲二人曰 潛伏石墻間 待吾言以發 約束已定 吉田乘銳直至墻外 準目之遂放千步銃 正中伊賊 連發皆中 翻身落馬 而猶不死 準直奪其寶劒 擊殺之 收其遠鏡及六穴砲 左右伏兵皆發砲聲如雷震 賊債其主將之亡 冒死以至 義士姜煥吉趙德寬死之 勢甚危急 聿軍適在隣近 應砲翼擊 賊遂逃去 而或死或傷 自是 義兵聲勢益壯 以其山中 不可久留 轉向長城之月坪留數日 是時 省齋領軍入潭州秋月山城 賊四面圍住 義兵分散 省齋 避身淳昌之下槽 賊追之 遂就擒 至光州而遇害 準聞之 設位痛哭 令軍中掛孝 進至土泉後山 聚石爲城 放砲誘賊 賊果大至 砲殺其大將鐵道三田 餘衆退遁 是夜 向靈光地 留軍幾日 遇賊於朗月山 都砲將崔東鶴死之 遂領軍而退居 無何登大谷後山 賊騎兵猝然衝突 衆寡不敵 折傷軍人 蓋其近地人 爲伊賊細作故也云 自是軍勢頓挫 然準義氣益壯 顧謂軍中曰 勝敗常事也 惟當激厲忠義 以圖大捷未晩也 於是分遣從事諸人 募聚散兵 又欲鼓動道內士林 以壯謀猷 以助聲勢 期以剿滅群酋 移軍光羅諸處 入魚登山中 而適患腰疼 方欲調治 賊步騎與巡查隊數百 不意跟隨而至 軍皆驚惶 不知所爲 即入告曰 主將病勢如此 而賊勢甚盛 將何爲之 準笑曰 我死固決於起義之日 但未滅此賊 而將爲倭鋒之血刎 是可恨也 是日黃霧四塞 咫

尺莫辨 軍人輩 共挾扶 遂登山 自度不能脫 謂同義士曰 君輩可急走免患 吾則寸步不能 必死於此 軍人面面相顧 不忍捨去 揮手卻之曰 俱死無益 勉力圖後可也 衆皆揮泪而去 有金海道者 獨留不去曰 豈忍使主將獨死乎 俄而賊四面圍之 準顔色不變 趺坐石上 中丸而絕 金海道 見其死 仰天大哭 同時被殺 賊旣得吉田之所佩寶劒及其遠鏡等物 鼓舞踊躍 即日入光州 光州所留賊聞金準之死 設宴相賀 走奇于各兵站及彼國政府 以爲義兵無憂云 先是 聿軍號曰 博士陣 逗遛于光州所旨坊者累日 賊自光州 乘夜掩襲 而就捕光獄 是夜 大雷電 村閭皆驚恐 不知所爲 人皆異之 及質問 聿先罵所謂觀察使曰 汝是誰所命之道司耶 汝乃倭奴之倀鬼者 尙何顔在民上也 吾擬平倭之日 併汝曹誅殺 以雪國家之恥矣 我乃爲賊所擒 天也 然我雖死 不失爲忠義鬼 汝輩則生而爲逆賊 汝亦有人心 試思之 能無愧乎 觀察無言而避 倭隊長査問曰 汝何爲亂 聿瞋目張膽 憤發罵曰 我非爲亂 乃爲國討賊復讐也 恨不斬汝萬段 今爲汝所敗 何不速殺我 賊使囚監獄 不敢加刑 及準之被害翌日 引出獄門 竟殺之 至死 義氣勃勃 如秋霜烈日 見者皆嘖嘖焉 準旣死 無人收屍 前叅奉金燉 爲棺槨衣衾 殯斂而葬之 迎其妻子 爲之營產而居之 後事亦將有託云.

출전 : 『후석유고』 권 24, 의사 김준 전수용합전

4장 일본 문헌에 보이는 나주의병

1.『暴徒에 관한 編冊』[21]에 보이는 나주의병

1)『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 의병편 I

10. 光秘收 第二七六號
작성일 : 隆熙 元年(一九〇七) 十二月 二十六日
光州警務署 警視 宮川武行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出沒의 件
昨 二十二日 午後 六時 羅州郡 伏岩面 浦上農場으로부터의 急報에 의하면 同所에서 北方 二里되는 羅州郡 平里面 附近에 暴徒가 出沒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 數 따위도 判明되지 않았다. 特히 韓人의 報告이므로 信僞는 判然하지 않으나 偵察上 參考의 資에 供한다. 云云.
當署로부터는 곧 韓服의 巡檢 二名을 派遣하여 오로지 搜索 中이다.(十二月 二十二日 羅州分署 報告)
右 報告함.

29. 光秘收 第三三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十七日

---

21)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홈페이지에서 나주의병 관련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정리한 것이며, 그것을 번역하여 간행한『한국독립운동사』자료 8~19(의병편)를 저본으로 삼아 오류를 수정하였다. 번역본의 목차에 제시된 '문서번호'를 해당 자료의 제목으로 삼았다.

光州警察署長
警視 坂東榮次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狀況
所轄 羅州分署 管內에 있어서의 暴徒의 狀況에 대해 同分署長 川騎警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報告가 있었다.
一. 羅州郡
本月 三日 隣接한 咸平郡 邑內에 暴徒가 襲來後 여러 方面으로 風說이 喧傳되어 지금도 數百의 暴徒가 羅州邑內를 습격하려고 計劃 中이라고 하며 日韓民이 모두다 不安한 情態에 빠지고 있다. 本月 十日과 같은 날은 現實로 約 三十有餘名의 暴徒가 當郡 內 伊弓面(當署所在地에서 西方 約 二里)에 出現하여 同地 淪土宗 敎徒 數名을 捕縛하고 畜牛를 掠奪하고 또 本郡 居千面(署 所在地에서 西方 約 二里)에는 本月 十一日 밤 暴徒 約 四十名이 出現하여 이 또한 韓人 酒幕 또는 富豪家에 闖入하여 財貨를 强奪해 갔다고 한다. 如斯한 情態이므로 部民은 더한층 不安한 念을 품고 民心이 매우 恟恟하다. 이에 대해 當 署에 있어서는 日夜 警戒를 게을리 함이 없다. (중략)
四. 南平郡
當署 管內 中 지금까지 比較的 平穩하였던 것은 本郡이라 하겠다. 그러나 時節上 例의 風聲鶴唳는 同 邑內 日本在留民 間에 盛行하여 그것 때문에 榮山浦憲兵分隊에서 目下 三名의 憲兵을 特派하고 同地 駐在所 巡査는 同 憲兵과 같이 不斷 警戒 中이다.

43. 羅秘發 第五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二十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관한 部內情況 報告
一. 本月 十四日 밤 羅州郡 侍郎面 會津村(當署에서 三里) 韓人 林某 宅에 暴徒 約 二十名이 來襲하여 家財를 掠奪 逃走하고 그 翌 十五日 午後 十時 暴徒 約 七十名이 모두 銃器를 携帶하고 再次 同面에 襲來하였다. 때마침 木浦에서 榮山浦로 向해 航行하는 汽船이 있음을 보자 暴徒는 모두 銃口를 갖추어 該 汽船을 向해 發砲하려 하였으나 同村 韓民으로 부터 制止 당해 射擊을 中止하였다고 한다.
以上은 榮山浦 日本在留民 間에서 唱道한 바였으므로 當署에서는 卽時 眞實 內偵에 從事하였

으나 確實한 事實을 認定하지 못했다. 架空의 捏說에 不過할 것이다.

50. 羅秘發 第七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二十一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警務局長 松井茂 앞
靈光郡과 그 附近에 있어서의 暴徒에 관한 情況 報告
一. 靈光郡 內와 그 附近 長城 咸平 羅州의 各部에서 더 나아가 全北 茂長 高敞의 各 郡內를 橫行하고 있는 暴徒의 首魁 金有成 李大克 李進士의 一派는 本月 十九日 靈光郡 黃良面 蟬峙(靈光邑內에서 約 五里이며 羅州郡으로 連하는 山野)를 거쳐 靈光郡 三南面(靈光邑內에서 約 六里)方面에 나타나 同方面에서 끊임없이 銃器와 砲手를 募集하였다고 한다. 그 募集의 結果는 判明되지 않았으나 風說에 의하면 暴徒의 數는 約 二百名에 미치고 携帶한 銃器도 또한 約 一百挺이었다고 한다. 目下 靈光駐在所 巡査가 事實을 偵隊中이다. (중략)
三. 一進會員의 報告에 의하면 靈光 咸平 長城 羅州의 各郡을 橫行한 暴徒의 主力은 靈光郡 社倉市에 集合하고 있다. 그리고 그 目的으로 하는 바는 首魁 金有成이 이끄는 一隊도 奇三鉉 金太元 및 金律이 이끄는 各隊도 이에 合同一致(合同一致하면 其數가 約 五百 有餘일 것이라고 思料된다)하여서 靈光邑內에 駐屯한 守備隊를 습격하고 나아가 羅州邑內를 습격하고 다시 나아가 榮山浦 駐在의 憲兵隊도 衝擊하려는 計劃이다 云云한다. 當署에 있어서는 密偵을 派送하여 事實은 오로지 精探 中이다.
右 報告함.

53. 羅秘發 第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二十二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警務局長 松井茂 앞
部內暴徒에 관한 情況 報告
一. 本月 十七日 午前 三時 務安郡 下幕院(鶴橋駐在所에서 約 一里)에 暴徒 約 三十名이 來襲하여 同所 在留日本人 鎌田某(農事經營者로서 現今 同地를 撤收하고 있던 者) 所有 家屋 一戶와 同所 韓人 家屋 二戶(報告書中 姓名의 記載가 없음)을 燒却한 끝에 咸平郡 平陵面(咸平邑內에서 約三里) 方面으로 向해 撤退하였다고 한다. 擔當한 鶴橋駐在所에 있어서는 翌 十八日

에 이르러 如上의 始末을 探知하였으므로 곧 現場으로 出張 調査하였더니 家屋 燒却件에 있어서는 前記한 事實에 틀림이 없었으나 別途의 損害는 없고 또 同所 附近 土人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暴徒는 앞서도 咸平邑內를 襲擊한 首魁 金太元이 이끄는 賊徒의 一部이며 銃器는 三十名 中 約 十挺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다.

二. 本月 三日 咸平駐在所와 咸平 郵便取扱所를 襲擊한 暴徒의 大部分은 爾來 偵察한 結果에 의하면 咸平郡 平陵面에서 海保 赤良 章本의 三面(가까운 곳은 咸平邑內에서 約 三里 먼곳은 約 九里) 地方을 徘徊하며 그 數는 金太元이 이끄는 者가 約 一百名 金太元의 實弟 金律이 이끄는 者가 約 一百名(金太元 金律의 身分 其他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詳細報告畢)으로 銳利한 武器를 갖지 못하고 모두 火繩銃이며 그 數는 總計 約 八十挺 內外인 것 같다.

三. 本月 十七日 밤 咸平郡 平陵面 附近에서 銃聲이 끊이지 않고 일어남으로 咸平 駐在巡査 二名(日人)이 그 翌 十八日 同面에 出張하여 偵察을 遂行한즉 同夜 午後 十一時 平陵面 花山里(咸平邑 內에서 約 二里 半)에 金太元이 이끄는 暴徒 約 二十名이 나타나 同里에서는 富豪의 所聞이 있는 金先達 집에 闖入하여 同人을 銃火下에 脅迫한 끝에 韓錢 一千貫文(新貨 二百五十圓에 相當함)을 掠奪 逃走한 形跡이 있었다.

四. 本月 十八日 午後 二時頃 平陵面 江亭里(咸平邑內에서 約 三里) 方面에 金太元이 이끄는 暴徒 約 五十名이 그 太半은 銃器를 携帶하고 徘徊한다는 所聞이 있으므로 咸平駐在所에서는 日本 巡査 二名이 同地에 出張 中인 憲兵 二名과 같이 同日 午後 五時 偵察을 위해 同地에 出張하였더니 暴徒는 이미 平陵面 羅山市場에서 靈光郡 社倉里(靈光邑內에서 社倉市까지는 約 四里) 方面으로 向해 사라진 뒤라 다만 그 附近에는 暴徒의 形跡조차 認見하지 못하고 撤收하였다.

五. 當 所在地 羅州邑 附近 土人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前記 金太元 金律이 이끄는 一黨의 暴徒는 그 數가 五百名에 達하면 곧 羅州邑을 습격할 目的이다. 그런데 過日 咸平邑內 襲擊後는 갑자기 그 徒黨도 增加하여 지금은 거의 그 實數가 五百名에 가까우므로 不遠 羅州邑內를 來襲할 것이 틀림없다고 云云하였다. 그 때문에 當地 在留日本人 따위는 在留日本人會의 名義下에 守備隊의 特派請願을 하게 된 모양이다. 當署에 있어서는 日夜 오로지 警戒 中이다.

右 報告함.

54. 羅秘發 第八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二十二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告示에 관한 報告

當署 管內 靈光 咸平 및 羅州의 各郡에 있어서는 各面 各處의 酒幕 또는 路傍의 竹柵 等에 湖西義所 名義下에 別紙 意味의 告示文을 貼付하여 陰으로 陽으로 部民을 煽動하고 있다. 이는 元來 暴徒의 所爲에서 나온 것에 不過할 것이라 思料되므로 譯文 寫本을 添付하여 이에 報告함.

(寫本) 告示

國家가 있은 然後에 君이 있고 君이 있은 뒤에 民이 있다. 稅가 있음은 自然의 定數이다. 그런데 現今 倭奴는 我國 五百年來의 根基를 紊亂하여 我君母를 戮하고 我皇土를 勒하고 我太子를 奪하며 我民稅를 勒奪하기에 이르다. 거의 國家는 있으되 그 實은 없는 것과 같다. 君上에 正稅를 捧納함은 곧 由來 國民의 義務이다. 어찌 倭奴에 終歲勞動의 實을 보낼 理가 있는가 我 秉彝의 同胞는 모두 誓心의 義를 擧하여 모름지기 國賊을 掃退하여서 皇治를 바르게 하고 國本을 安全하게 할지어다. 나라를 다스려야 法을 펴고 稅를 負荷시킴은 正理이며 違法이 아니다. 自今 正稅를 納入하여 서 倭奴의 몸을 살찌게 하는 者는 이는 곧 賊에게 糧食을 가져다 주어 寇兵에 資하는 者이다. 故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같이 斬刑에 處한다. 一을 懲하여 百을 勵하는 것이다. 이에 大小人民에 痛告하노니 切願컨대 人民은 이에 李朝를 復國한 뒤를 기다려 指揮를 받을지어다.

湖南義所

(寫本) 告示

方今 倭奴가 와서 我 五百年 來의 純良한 民俗을 紊亂하고 禍를 남기게 이르렀다. 이 禍根을 끊지 않으면 國亂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本義所는 이에 大事를 唱道하여 盟誓코 無辜한 良民을 火中에서 救出하고 我 疆土를 安全히 光復하는데 있다. 피가 있고 뼈가 있는 人民은 各自洗心從命하라 不然이면 本義所는 無餘의 刑으로써 殺戮을 施行할 것이다. 무릇 小民은 細利를 노리고 國是를 理解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나라를 팔아 私利를 貪하려고 하는 者가 있다면 多大한 天誅를 加하여 戮殺이 妻子孫族에 미칠 것이다. 倭奴와 潛通하여 我의 內機를 漏泄함이 있다면 죽여야 한다. 各郡의 正稅는 굳이 國庫에 納入하지 말라 이 때에 當하여 納稅하는 者가 있다면 終歲勞動하여 얻은 果實을 賊虜에 바치는 者이다. 斯民은 先王의 遺民이다. 굳이 正稅를 倭奴에 捧上할 義務가 있을까보냐 自今 稅金을 徵收하는 者가 있다면 該 稅務의 主事와 徵收員은 모두 探捉하여 一一히 炮殺할 것이다. 自衛團은 所謂 本心의 良을 喪失하고 賣國의 擧를 하는 者이다. 이들에 應하는 者가 있다면 身首가 그 곳을 달리할 뿐 아니라 殺戮은 그 妻子親族에 미칠 것이다. 一進會의 入黨加盟은 어찌 그 本心이겠는가 사람의 잘못을 깨닫고 前非를 悔改하고 적어도 革心하여 스스로 善良으로 돌아간다면 本義所는 舊惡을 생각지

않고 不問施善의 意로써 할 것이다. 改心하지 않으면 殺害할 것이니 後悔하지 말라 本告示를 揭示한 後 만약 撤去하는 者가 있다면 撤去者의 罪는 勿論 먼저 該 店主에 嚴繩을 베풀 것이다.

不告先罰은 苛酷하다. 이미 告示한 뒤 만약 故犯者가 있다면 決코 容恕가 없을 것이다.

湖南義所

55. 羅秘發 第一〇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二十二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警務局長 松井茂 앞

(중략)

二. 榮山浦憲兵分隊

羅州郡 榮山浦의 憲兵分隊는 이제 까지 별로 自進하여 偵察 討伐 等에 (暴徒襲來의 경우는 格別) 從事한 形跡이 없었으나 數日前에 馬匹이 到着(馬匹의 數는 二十四餘라고 한다) 后는 자주 分隊所在地 附近에 있어서의 乘馬偵察을 試圖하고 있다. 大原分隊長은 數日前 羅州 咸平 靈光의 各郡을 巡視하고 昨 二十一日 歸隊하였다.

三. 羅州憲兵分遣所

當署 協同下에 日夜 警戒의 任務에 從事하면서 곁들여 自衛團員을 指揮 監督하며 오로지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四. 羅州郡 伏岩面의 守備

羅州郡 伏岩面(當署에서 約 一里)에 있어서는 福岡縣人 浦上正孝 以下 十數名의 實業經營者가 있고 目下의 情態가 甚히 危險하였으므로 光州守備隊에서는 數日 前 特務曹長 以下 九名의 兵員을 特派하여 暫時 駐屯할 目的으로 警戒 中

64. 長秘收 第一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一九〇八) 一月 二十四日

長興分署長

警部 坂根利貞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관한 件

本日 部內 靈岩郡 駐在 巡査로부터 到着한 報告書의 要旨를 約言하면

一. 지난 二十二日 靈岩郡 一進會長의 報告에 의하면 二十一日 밤 上 務安郡 方面에서 約 二百名의 暴徒가 배 七艘에 分乘하고 羅州郡 潘南面으로 건너와 牛 二頭를 徵發하여 屠食하고 또 同夜 暴徒 三十名 가량이 同面에 왔다고 한다.
一. 二十三日 靈岩 市日에 모인 商人 등이 말하는 바를 傳聞한 즉 當日 羅州風市에서 當市로 오는 途中 一人의 男子가 商人을 誰何하고 身體를 檢査하며(頭髮의 有無를 보다) 靈岩에 居留하는 日本人의 數를 묻고 他言을 禁하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脅喝하였다고 한다. 其他 羅州郡 內에 暴徒가 出沒한다는 風聞이 차차 傳來하므로 或은 暴徒의 襲來를 두려워하여 靈岩城 內에서는 人心이 恟恟하며 或은 日本人과 接近하는 것을 避하고 또 그中에는 避難할 準備를 하는 者도 있어 不穩하다. 또 羅州郡 潘南面은 靈岩城 內에서 約 四里에 不過하므로 만약 同地에 暴徒가 集合했다는 說이 事實이라면 가장 警戒를 要하므로 目下 偵探 警戒 中이라고 하다.
右에 대해서는 當署에서도 偵察을 위해 巡査를 派遣하였다.
(木浦警察署에는 報告畢)

2)『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 의병편 Ⅱ

3. 光秘發 第六七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一月 二十五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坂東榮次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의 狀況 및 討伐에 관한 件 順次 報告한 바와 같이 當 地方에 있어서의 暴徒의 狀況은 漸次 勢力을 더하여 當署直轄의 一部 및 羅州分署 管內의 大部分 즉 長城 靈光 咸平 羅州 昌平 潭陽의 六郡 및 光州郡의 一郡 等이라 하였다.
이 方面에 있어서의 暴徒의 首魁는 故崔益鉉의 一派 門下인 長城郡 西二面 松溪洞 居住 奇三衍 父子, 羅州郡 居平面 葛馬池 居住 金大鉉 光州郡 古龍面 長橋 朴處仁 兄弟 等이며 本據는 一定하지 않으나 全羅北道에 境界하는 長城郡의 山脈內 或은 長城 咸平 羅州 光州 等의 郡界에 있는 山脈 內를 徘徊 出沒하며 많을 때는 一二百名 적을 때는 或 三十名의 團體가 되어 橫行한다.
그들이 目的으로 하는 바는 日本人을 殺滅하고 日本人을 信賴하는 一進會員 및 警察 官吏를 殺害하는데 있음은 勿論 한편으로는 各郡 各面에 있어서의 租稅徵收員을 脅迫하여 徵稅를 禁하고 이미 徵收한 金額을 掠奪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各郡에 點點히 在留하는 日本人의 恐怖는 勿論 徵稅上 一大 障害가 되어 該 暴徒가 徘徊하는 地方의 各郡은 租稅의 納付가 皆無한 狀況이다. 그런데 該 暴徒의 討伐에 關해 警察은 各地에 分屯하는 守備隊와 連絡을 取하여 偵

察討伐을 게을리하지 않으나 當 全羅南道는 從來 比較的 平穩하였기 때문에 京城 忠淸 等의 各道보다 軍隊의 駐屯數가 적고 거기다가 交通機關의 不備로 日常 隔靴搔痒의 歎이 있어 軍隊 警察 다같이 勞苦에 대한 效果를 거둘 수 없는 狀況이라 하겠다.
一暴徒의 徘徊地는 前陳한 대로 長城 靈光 咸平 羅州의 各郡이 가장 甚하므로 當光州守備大隊長 吉田少佐와 協商하여 警察에서 오로지 賊狀偵察의 任務를 執行하고 大略 그 賊狀을 얻었으므로 同大隊는 靈光에 駐屯하는 一小隊와 合併하여 十隊로 分編하고 이 一隊에 二名 또는 三名씩의 巡査와 警部 林和一을 附隨시켜 明二十六日부터 一大包圍 討伐을 實行하기로 되었다. 이 行動은 果然 暴徒를 滅盡하는 效果를 奏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賊勢에 大打擊을 加하고 秩序 回復에 不勘한 效果가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以上의 狀況이므로 此際 軍隊의 增加와 當署에 十名 羅州分署에 十名 都合 二十名의 巡査를 臨時特派된다면 暴徒討伐上 日韓民 保護上 遺憾이 없을 것이니 特히 詮議하여 주기 바람.
右 報告함.

13. 羅秘發 第一三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一月 二十七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大討伐에 관한 報告
現時 全南 靈光 咸平 羅州 長城의 各郡 內에 橫行하는 暴徒에 대해 이번 大討伐을 擧行할 豫定으로 光州守備大隊長의 總指揮 下에 十一個 部隊로 編成(其 實數는 百五十名 有餘라 한다)된 大討伐隊는 昨二十六日부터 各 部署로 나아가고 그 本隊(大隊長도)는 昨夜 午後七時 當 羅州에 到着하여 本日 午前九時 咸平郡 咸平邑內로 向해 出發하였다. 지금 이에 大討伐의 計劃이라 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西北部隊는 全北 茂長 淳昌 및 全南 長城 靈光의 各郡으로부터하고 東南部隊는 南平 羅州로부터 하여 自然히 咸平郡에 沿한 海岸으로 壓迫하려는 方略이라 하며 그리고 討伐隊의 各 部隊는 本月 二十九日 一旦 咸平 邑內에 集合하여 同地에서 戰鬪演習을 行한다고 하다.
討伐의 結果는 隨時 報告할 것이나 우선 이에 報告함.

17. 光秘收 第七四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一月 二十八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坂東榮次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討伐에 관한 件
本月 二十六日부터 所轄 羅州 咸平 靈光의 各部 方面에 걸쳐 軍隊와 警察로 編成한 暴徒討伐中의 巡査 崔一相 外 一名으로부터 다음 報告에 接하였다.
二十六日 午後八時頃 羅州部內 島峴에서 若干의 暴徒와 交戰하여 約 一時間에 暴徒는 死屍二十餘를 遺棄하고 四散逃去였다. 지금 追躡 搜索中이다.
右 報告함.

2. 羅秘發 第二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一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加盟名簿에 관한 報告
光州守備隊에서 暴徒 討伐時 捕獲한 雜品 中에 暴徒에 관한 加盟名簿 一册을 發見하여 調査한 즉 別紙 寫本과 같으며 그 加盟者의 多數는 當署 管內者에 屬하므로 目下 當地 憲兵隊와 協同하여 오로지 逮捕 搜索에 着手中에 있으므로 이에 報告함.

暴徒加盟者 名簿

(※나주 출신만 발췌)

住 所	姓 名	年 齡
羅州郡 居平面 上荷里	金 聿	二十七
錦城郡 居平面 上荷	朴采弘	三十二
錦城郡 道林面 軍平	吳在化	五十
同	秋明煥	二十六
羅州郡 居平面 竹谷	宋泳浩	二十
羅州郡 道林面	秋洛凡	二十八
羅州郡 居平面 松林	羅昌俊	二十七
羅州郡 居平面 上荷	李福奎	二十八
羅州郡 伊光面 石亭	李敏尙	四十八
羅州郡 道林面 石菴	金敎澧	五十
羅州郡 田洋	林孟玉	二十四

住 所	姓 名	年 齡
同 三加里	金敬泡	二十九
同 同	金啓化	三十五
同 同	尹德信	不詳
羅州郡 三加面 廣山	吳貞圭	三十二
羅州郡 余皇面 北昌	金在洙	四十一
同 三加面 道林	申景光	二十三
羅州郡 三加面 宋洞	吳一先	二十四
羅州郡 道林面 佳山	柳正烈	二十
羅州 金海人	金華白	六十五
羅州郡 伊老面 長嶝	李鳳順	四十一
同 羅洞面 花洞	林長澤	二十七
同 龍門面 月溪	李應元	三十
羅州郡 伊老面 德林	安長元	二十二
同 同 同	薛在根	三十四
羅州郡 三加面 仙岩	劉德一	四十三
羅州郡 道林面 方洞	金永口	三十七
羅州郡 赤良面 漠常	元在允	十六
同 伊老面 不材	金鳳玉	十八
同 三和面 平林	金玉玄	三十一
羅州郡 水田面 草洞	宋昌三	三十一
同 同 同	朴雲起	二十七
同 同 同	李在允	二十九
羅州郡 居平面 渴馬	申在化	二十九
同 同 同	李兌京	二十九
羅州郡 道林	金奇俊	二十六

12. 羅秘發 第二七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五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관한 情況 報告

本日 當署 管內 綾州駐在所로부터 다음의 報告에 接하였다.
本月 二日 밤 暴徒 約 四百五十名이 光州郡 無等山 無等里(光州署 管轄)에 集合하였는데 暴徒는 同福 和順(以上은 光州署 管轄) 및 綾州(當署에서 東南 約 六里)를 습격할 計劃이다. 暴徒가 携帶한 銃器는 砲 三門 火繩銃 約 二百挺 內外에 騎銃 五挺이며 賊勢는 깔보기 어렵다. 云云
要컨대 過般來 當署 管內 羅州 咸平 靈光 等의 各 郡內를 橫行하고 있던 暴徒가 大討伐 때문에 그 方面으로 轉向한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며 目下 羅州 咸平 靈光의 各 方面에는 賊의 形迹을 認見하지 못했다. 綾州에 대해서는 오로지 警戒中에 있다.
右 報告함.

24. 羅秘發 第二九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七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관한 件
過般 當管內에서의 暴徒 討伐에 즈음하여 光州守備隊에서 暴徒加盟名簿 一册을 鹵獲하였으므로 그 名簿에 의해 오로지 搜索中이던 일은 앞서 이미 報告해 두었던 바 本月 二日은 때 마침 陰曆 一月 元旦에 相當하여 韓國의 慣習上 暴徒 따위도 自然 歸家하는 者가 많이 있을 것으로 想察되었으므로 이 機會를 利用하여 特히 搜索隊를 編成하여 各 方面으로 分派하여 周到히 이의 搜索의 方法을 講究하였으나 그 結果는 不良으로 단지 左記 겨우 一名의 逮捕를 보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同人은 金泰元의 部下에 屬하는 者로서 그 陳述에 의하면 곧 다음과 같다.
自己는 同村의 사람으로서 安長元이라는 者로부터 억지로 暴徒에 加入하라고 勸誘받고 本年 一月 二十日 즉 咸平邑內를 습격하기 前前日에 安長元의 案內로 靈光郡 森南面 弘亭이라는 곳(靈光에서 東南 約 四里)으로 갔다. 그 곳에는 金泰元이라는 首魁와 그의 아우 金律이라는 者가 있어 二十二日 咸平邑內를 습격하는 일에 대해 熱心히 協議하고 있었으나 自己는 新入者이므로 어떠한 일을 議論하고 있는지는 仔細히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의 暴徒의 數는 約 三百名으로 日本의 獵銃 二挺과 朝鮮銃 百三十八挺 外에 日本의 軍刀 一 韓國軍刀 二를 携帶하고 二十一日 森南面을 出發하여 咸平郡 尙用村(平陵面일 것이다. 咸平邑內에서 約 四里에 있다)에서 一泊하고 翌二十二日 未明에 同所를 出發하여 午前十時頃 一同이 咸平邑內에 到着하여 곧 四方으로 散開하여 同所의 郵便所 巡査駐在所를 目標로 하여 發砲하였다. 그리고 그

때 日本巡査 一名을 쓰러뜨린 者는 靈光郡 佛甲面 佛甲里에 居住하는 者로서 曹某라고 부르며 年齡은 約 四十歲이고 砲手 中 가장 有名한 者였다. 黑服에 赤袴를 입고 日本軍刀를 가지고 指揮하고 있던 者는 金泰元의 아우 金律이라는 者로서 그때의 計劃은 咸平邑內의 日本人을 모두 殺戮할 作定이었다.

暴徒에 加入하고 있는 者는 主로 無資無産의 農民이며 조금도 勢力이 있는 者가 아니다. 咸平 습격 때 暴徒의 卽死者는 三名이고 그 外에 負傷한 者가 四名 있었다. 그러나 負傷은 모두 輕微하여 步行에도 支障이 없었고 다같이 撤收하였다. 撤收한 當夜는 다시 尙用村으로 되돌아가 同處에서 一泊하고 翌二三日 同處를 出發하여 咸平郡 海保面 外峙(咸平邑內에서 北方 約 四里)에서 一泊하고 二四日 同所를 出發하여 靈光郡 森南面 登光里(靈光邑內에서 東南으로 約 五里)에서 宿泊하고 翌二五日 同所를 出發하여 咸平郡 鳥山面 沙湖(咸平邑內에서 東北 約 六里)에서 宿泊 滯在中 뜻밖에 日本警察의 습격을 받아 散散히 敗走하였으므로 自己는 暴徒가 어떠한 損害를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곳을 逃走하여 그대로 自宅에 물러가 있다가 本月 五日 逮捕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暴徒가 그 後 如何한 計劃을 했는지 尙且 首魁가 어느 方面으로 撤退했는지 그 後의 消息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바라고 云云하다.

如上의 陳述로 한다면 客月 二十二日 咸平邑內 來襲의 暴徒는 곧 金泰元과 金律이 領率하는 一派에 不過하며 金有成 李進士 李大局 等의 一派가 合同하였다. 云云의 推測은 事實과 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波多野巡査를 砲殺하였다고 하는 靈光郡 佛甲里 曹某에 대한 搜索은 目下 嚴重히 手配中에 있다.

右 報告함.

左記

羅州郡 伊良面 德村洞 居住 農業 薛在根 三十四歲

附箋 羅州 川崎警部 報告 二月 七日字

一. 앞서 報告한 暴徒人名簿에 의해 搜索하였더니 그 結果는 不良으로 金泰元의 部下 一名을 捕獲하였다.

그런데 當人의 陳述에 의해 살피건대 客月 二十二日 咸平邑內에 來襲한 暴徒 金泰元과 金律이 이끄는 一派에 不過하며 金有成 李進士 李大局 等의 一派가 合同하였다. 云云의 推測은 틀리는 것이라 思料된다.

28. 羅秘發 第三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九日

羅州警察署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搜索 檢擧에 관한 件

當署 管內 咸平駐在所에서는 陰曆 一月 元旦을 期해 同地 守備隊 五名과 같이 暴徒加盟者 總計 七十二名(咸平郡 內만)에 대한 搜索에 着手하였는데 本月 四日에 이르러 郡內 大也面과 月岳面(咸平邑內에서 어느 곳이나 約 四里)에서 左記 二名을 逮捕하였다. 其他의 大部分은 이미 家族財産 等에 이르기까지 各其 處分하고 空戶만이었다고 한다. 逮捕한 暴徒에 대해서는 目下 咸平守備隊에서 審問中이다. 右 報告함.

左記

咸平郡 大也面 春府洞 朴文京(三十七歲)

咸平郡 月岳面 卜萬洞 鄭樂俊(六十六歲)

附箋 羅州 川崎警部 二月 九日字

暴徒 搜索 檢擧에 관한 件

一. 當署管內 咸平駐在所에서는 暴徒加盟者 總計 七十二名에 대해 搜索 檢擧하였는데 郡內 大也 및 月岳 兩面에서 그 二名을 逮捕하였을 뿐으로 다른 大部分은 家族財産에 이르기까지 各其 處分하고 空戶만이었다고 한다.

30. 警發 第四六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九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道野能邇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중략)

一. 一月 二十四日 長興分署로부터의 報告에 의하면 同月 二十一日 밤 務安郡 方面으로부터 約 二百名의 暴徒가 배 七隻에 分乘하고 羅州郡 潘南面으로 襲來하여 村民으로부터 生牛 二頭를 徵發屠食하고 一韓人을 잡고 身體를 檢查한 後 靈岩에 居住하는 日本人의 數를 묻고는 他言을 禁하고 말하면 죽인다고 脅喝하고 사라졌다.

二. 同月 二十二日 밤 暴徒 數十名이 務安으로부터 榮山江을 건너 羅州郡 潘南面에 上陸하였다. (중략)

四. 本月 五日 長興郡 有治面에 暴徒 四十餘名이 各其 火繩銃을 携帶하고 들어와서 同郡 新德里를 지나 羅州郡으로 向하였다. 云云

以上의 急報를 얻은 長興分署長은 곧 巡查를 各處로 派遣하여 內偵케 하였으나 村民들은 後難을 두려워하였는지 詳細한 事情을 말하지 않았으나 偵察한 結果 앞서 咸平郡과 靈光郡 方面에

集團했던 賊徒의 一部分이 앞서 大討伐을 받은 以來 그 根據를 잃고 徐徐히 各地로 散亂逃走한 餘黨이 아닐까 앞의 數項 中 가장 事實에 가까운 것은 第一項과 末項뿐인 것 같다.
그리고 本月 六日에 이르러 또 다음 事件이 생겼다. (중략)
一. 一月 二十四日 長興分署로부터의 報告에 의하면 同月 二十一日 務安郡 方面으로부터 約 二百名의 暴徒가 羅州郡 各處에 걸쳐 暴行 徘徊한다는 報를 얻고 同署에서 各地로 出張 搜索케 하였더니 人民 等은 後難을 두려워하여 詳細히 말하지 않았다.

41. 羅秘發 第三十八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十二日
羅州警察分署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관한 情況 報告
一. 本月 六日부터 九日에 걸쳐 當署 管內 羅州郡 官洞面과 平里面(當署에서 모두 東北으로 約 三里)으로부터 光州郡 柳林村(光州署所轄) 附近에 出沒(當時 報告畢)한 暴徒 約 五十名은 當地 騎兵隊 追擊의 功도 없이 完全히 逃走하여 지금은 同 地方에는 그 片影조차 남기지 않았다. 偵察한 結果에 의하면 長城郡 內로 逃亡한 것 같다. 이 暴徒는 勿論 金泰元의 部下에 屬하는 者에 틀림없다고 인정된다. (중략)
四. 昨十一日 午後二時 當署 管內 南平郡 郡內面 大門里(駐在所 所在地)에 倡義所의 名義로 「我軍은 本月 十一日 行軍할 것이므로 鞋 三百介를 準備하고 또 邑內에는 私砲(各自가 携帶할 銃砲를 뜻한 것이리라)를 悉皆 査收積置하라」 云云의 文意를 記載한 文書를 揭示하였다고 南平駐在所로부터 昨夜(十一日夜) 午後十時 急報에 接하였으므로 當署는 곧 當地 騎兵隊와 協議하여 下士 以下 騎兵 四名이 同地로 急行하였다. 그 結果는 아직 報告에 接하지 못했다.
右 報告함.附箋
羅州 川崎警部 二月 十二日字
一. 光州郡 柳林村 附近에 出沒하던 暴徒 約 五十名은 騎兵이 追擊하였으나 그 踪跡을 認見하지 못했다.
該 暴徒는 金泰元의 部下로서 目下 長城郡 內로 逃走한 것 같다.

42. 羅秘發 第三九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十二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當地 騎兵隊의 討伐執行에 관한 報告
當署 所在地에 騎兵中隊本部가 設置되었다. 同 中隊에서는(長城 以西의 地區에 配置한 兵力은 現在대로 하고) 羅州 附近에 있는 者만을 集結하여 明十三日 討伐行動을 開始하여 南平郡 日封寺(南平邑內에서 東南 約 二里) 附近의 討伐을 行한 後 本月 二十五日頃까지 谷城 光州 以南 地區에서의 討伐을 實施할 豫定이다.
右 報告함.附箋
羅州 川崎警部 二月 十二日字

57. 羅秘收 第一一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十六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騎兵隊 討伐에 관한 情況 報告
本日 午前八時 當地 羅州邑內 駐屯 德永騎兵中隊長으로부터 暴徒 討伐에 관해 다음 通報를 接受하였다.
一. 一進會員과 間諜의 말에 의하면 金泰元 奇宇一(奇宇一이란 者는 奇三衍의 親戚으로 奇三衍의 死後 이를 代身한 者) 等의 集團은 目下 長城 附近으로 集合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三. 昨十五日 午前六時 南平郡 日封寺 附近의 討伐을 行하였으나 별로 얻은 바가 없다.
四. 中隊는 前 計劃을 變更하여 各 分進隊의 集合을 기다려 十八日 羅州 出發 長城 附近의 賊情偵察에 從事한다.
五. 오는 二十二, 三日頃 各 分進隊는 任實 泰仁 및 興德의 線에서 羅州로 向해 南下할 豫定이다.
六. 二十六, 七日頃에 이르면 壓迫 때문에 羅州 東西의 線에 暴徒가 現出할지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南平 羅州 榮山浦 鷄橋의 線은 十分 注意하기 바란다.
以上의 通報에서 의하면 賊은 長城郡 方面에 그 主力을 集中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當署는 如上의 注意에 의하여 卽時 榮山浦 鶴橋 咸平의 各駐在所에 대해 警戒할 것을 注意시키다.
右 報告함.附箋
羅州 川崎警部 二月 十六日字

騎兵의 討伐에 관한 情況

一. 通知에 의하면 匪魁 金泰元 奇宇一(奇三衍의 死後 이를 代身함) 等의 集團은 目下 長城 附近으로 集合하고 있다고 하다.

一. 昨十五日 南平郡 日封寺 附近의 討伐을 行하였으나 얻은 바가 없다.

一. 오는 二十二 三日頃 各分進隊는 任實 泰仁 및 興德 方向에서 羅州로 向해 南下할 豫定이다.

64. 光秘收 第一三九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十八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坂東榮次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搜索狀況 報告

本月 十五日字 電報로 報告한 長城 方面의 暴徒 搜索狀況을 林警部로부터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一. 昨夜(十六日) 光州를 出發한 我警察隊와 吉田小隊는 翌十七日 午前五時 目的地인 長城郡 南二面 土泉에 到達하여 偵察한 結果 金泰元이 領率하는 暴徒 約 五十名이 十六日 夕食後 日沒에 便乘하여 土泉의 後方인 고개를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情報를 얻었다.

二. 一行은 이를 追跡하여 今 十七日 午前七時 土人의 말에 의해 暴徒는 지금 咸平郡 鳥山面 廣谷에서 朝食을 하고 있으며 同村 兩端에 前哨를 配置하고 警戒가 嚴重하다는 確報를 얻었다.

三. 그래서 我警察隊는 吉田小隊와 二隊로 나누어 吉田小隊는 右翼으로 迫進하고 警察隊는 山上으로 向해 急行하여 廣谷의 村端 山上에 올라 展望한즉 이제 막 廣谷에서 前方 山上으로 約 五十人의 暴徒가 逃走한 것을 認見하고(距離는 約 一五〇〇미터) 遠距離였으나 暫時 追擊하였더니 賊은 狼狽하여 山陰으로 逃走하여 드디어 그 모습을 逸失하였다. 이 追擊에서 賊의 死傷은 不明이나 다음 物件을 遺棄하고 사라졌음을 發見하였다.

一. 負袋 二(在中品은 三十年式 彈藥筴 一 火藥 若干 스나이틀 彈丸 五 其他雜品 數點)

一. 火繩銃 一(破損된 것)

一. 暴徒의 帽子 一

四. 이로부터는 吉田小隊와 같이 賊에 追及하려고 約 二千미터를 追跡하였으나 遺憾이나마 드디어 그 踪跡을 逸失하였다.

五. 그래도 繼續 끝까지 賊을 追擊하고 一旦 廣谷으로 되돌아 와서 調査한 즉 賊은 十六日 夕

食後 鳥山面 方面으로부터 와서 廣谷에서 一泊하고 今十七日 朝食 後 出發하려고 하던 참에 山上의 展望哨로부터 日本軍이 온다는 報知로 倉皇히 逃走한 것이라고 하여 그 數는 五十名으로 洋銃을 携帶한 者 二名 日本刀 一(巡査의 劍과 同樣하다고 하는데 或은 波多野巡査의 帶劍일 것이다) 其他는 火繩銃을 携帶하였다고 하다.

또 그 首領은 金泰元이며 그의 服裝은 普通韓人의 白衣를 입고 徒步로 逃走하였다고 하다.

六. 이에 있어 賊의 逃走 方向은 廣谷의 西北方의 鞍部를 潛行한 것으로 判斷하고 그 方向으로 進行하여 山上에 올라갔는데 午後一時三十分 前方 山上에 約 五十名의 暴徒가 나타나 我方을 向해 盛大히 發砲하였으므로 곧 散開하여 이와 對戰하였는데 매우 頑强한 抵抗을 하였으나 드디어 同山을 占領하고 賊을 擊退하였다. 賊은 四散潰亂하여 逃走하였는데 賊의 死體 三 負傷은 적어도 十二 三 戰利品으로는 負袋 一 馬 二 彈藥 若干이며 我에는 死傷이 없었다.

七. 이 戰鬪 中 巡査 中野廣彦은 携帶한 銃把에 賊彈이 命中하여 破損 全然 銃의 效用을 잃게 되었다. 또 着用한 外套에 彈丸 二發이 左臀部 洋服바지 外部에 彈丸 一發이 貫通하였으나 多幸히 身體에는 異狀이 없었다.

巡査 德田忠의 外套에도 彈丸 一發이 貫通하였으나 이 또한 身體에는 異狀이 없었음은 幸福이었다.

八. 我警察隊는 今夜 吉田小隊와 같이 光州郡 召古龍面 新村에서 一泊하고 더욱 偵察하면서 明日 一旦 歸署할 豫定이다.

九. 吉田小隊는 近日 實行할 大討伐까지 繼續 附近의 偵察에 從事할 作定이다.

十. 이번 討伐 中 警察官은 모두 잘 그 任務에 服務하고 가장 勇敢하게 動作하였음을 認定한다. 그리고 이번 討伐에서 賊魁 金泰元이 스스로 指揮하고 있음을 確認하였으나 이를 놓쳤음은 가장 遺憾이라고 하다.

右 報告함.

追而 林警部의 一行은 今日 午後四時五十分 歸署하였음.附箋

光州署長 二月 十八日字

光州守備 吉田小隊와 警察隊는 十七日 咸平郡 鳥山面 廣谷에서 金泰元이 이끄는 約 五十名의 賊을 만나 遠距離였으나 射擊하여 四散 潰走시키다. 賊의 死傷은 不明이다. 追跡하였으나 드디어 逸失하였다. 그래서 賊의 退却 方面으로 進行하여 西北方의 山間에서 賊의 射擊을 받고 交戰한 지 暫時에 그 三名을 쓰러뜨리고 潰走시키다.

86. 光秘發 第一五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二十二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坂東榮次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檄文 貼付의 件
別紙 三葉의 檄文은 二月 二日 同福郡 內를 暴徒가 通過할 제 貼付한 것으로 延引되었으나 參考로 右 報告함.
別紙 (一)
令各洞民人處
狗雖曰備盜之物在此衛生極爲欠害者頃於靈光等地倭砲吠狗之誤中一幼兒則殺此兒者非倭卽狗也況吾義旅之行或有現露未遂之事玆令飭從玆如復有一種吠犬至登義廉該洞斷未免屠蕩矣十分惕念各人家狗種一一滅無之無使夜吠爲可爲可
戊申 正月 一日 湖南義所

別紙 (二)
告示削髮諸人
削髮之人豈非我先王之民亦豈無秉彝之本性哉噫彼惑世之徒誘之陷之於忘君背父殞身之不義今爲倭賊之奴隸可勝歎哉近聞元州義兵所事由則那地事務所削人徐崔氏斬獲倭之首四個卽納示義所義將賞施以四千金揭號以忠臣此是今古罕事也其在削人爲之則非難也奈之如南土削人此之不義反有附倭害義之習云聞極痛慨世或有激切之論削於義兵必不相容云我義所處置不敎而刑之謂之罔民也玆先告諭從今於不忘父母之國長髮歸義反有貴乎有髮赴義之人士矣深其諒算取舍無致後悔至可至可
戊申 正月 一日 湖南義所

別紙 (三)
傳令外南面面長及大小民人處
夫結稅國之大政而民之所當納者也今吾國運暫滯臣謀不誠結錢與戶布投諸倭賊之私庫者專由於領受及任員之不良也苟非領受任員之刷帳豈能以賊徒家刷之戶督哉從玆如或有該所任圖帝擧行者斷未免梟首矣十分惕念警告勿犯適科無致後悔至可至可
戊申 正月 一日 湖南義所
附箋 光州署長 二月 二十二日字
二月 二日 暴徒의 一團이 同福郡 內에 왔을 때 殘存한 檄文 三通은 다음과 같다.
一. 은 畜犬은 妨害가 되니 죽일 것 云云
一. 은 斷髮은 先王의 法이 아니다. 모름지기 蓄髮하라. 그리고 日人을 죽일 것 云云

一. 은 結稅는 쓸데 없이 日人에 阿附하는 무리의 行爲일 뿐 上納하지 말 것 云云

107. 羅秘發 第五二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二月 二十七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魁 投狀에 관한 報告

暴徒의 首魁인 金聿이 當羅州郡守에게 援助를 請願한 意味로 酒幕便에 의해 書狀을 보내고 郡守는 이에 대해 書狀으로 歸順을 勸誘한 件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報告해 두었는 바 金聿은 昨二十六日 또다시 酒幕便에 의해 別紙寫本과 같은 書狀을 郡守 또는 當地 自衛團長에게 보냈다고 한다. 當署는 이 酒幕便을 利用하여 오로지 所在를 搜索 中에 있다.

右 報告함.

別紙

回函

卽見來書痛嘆何極伏惟我東邦之禮義文明不下於殷周之禮樂連綿松鄒魯之遺風也故三千里疆土五百餘年之社稷莫疆于斯自甲午之後國步丕塞獸蹄鳥跡交侵於東邦矣終至於奪我國權哀此臣民不勝梟毒而痛忿太息者此也方今不得已擧義之事憑喻於湖南諸郡大關之事都在於羅州一郡十分惕忿垂察焉方分倭賊則禽獸也禽獸之輩豈與細倫混雜乎到此羅州一擧義則在下官吏四境義士莫不翹首連望而各處義將將如水之注下如星之拱斗必也大成功事半百之人切必信之卽此時也豈至於以孝傷孝以義害義乎哉嗚呼痛哉倭賊偏滿諸郡不可保存者卽大韓民也臣民之道理設使死於義豈能生於不義乎在野之愚夫愚婦痛忿之心不無況食祿之官員乎伏惟羅州公世世柱石之大家來守湖南之拇郡惠政猶邁施平原之伏湛氣節圖歸於蹈海之仲連也卽四境之義士晝宵所望如大旱之得雨如渴者之甘飮也則縱縱軫燭焉當今時虞倭賊之事勢羅州一擧討滅本郡之賊則各郡之賊自各郡處斷矣此時卽天時也而未內不虞時機妄自義擾極甚痛嘆更無軫念携貳之端千萬伏望之

戊申 正月 二十四日 湖南義將 金聿

羅州郡守 座下

羅州郡自衛團團長 羅主事 座下

都閣切惟我大韓三千里壇土內二千萬同胞莫非我列聖上半千年敎化中保生之物然則其恩其德倘何如哉雖至滅身而報猶不足爲萬分之一也方今賊勢大熾上自皇上 以下全國人民不勝梟毒燋爛之患立可見矣而邑中僉員若不知而曲參異端尙不返義以此淺量之所究亦覺於其中有深深之理然而

燋喉之渴切身而遙指海于萬里之外滔天之水已迫而方進舟於長洲之林未爲晩耶南道列邑尙今默然不起者都是望待於羅州之動靜如何矣惟願僉賢卽達通義同成大事之地千萬幸甚

戊申 正月 二十四日 湖南義將 金聿

附箋 全南 羅州分署長 二月 二十七日字

一. 本月 二十六日 暴徒 首魁 金聿은 當郡守와 當地 自衛團長에 別紙 寫本과 같은 書狀을 送達하였다. 그래서 이를 添付한다. (義兵에 加擔하라는 勸告者이며 先報來 郡守의 歸順 勸告에 答한 것)

116. 羅州憲兵分遣所長 藤井特務曹長 報告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二月 二十九日

管內狀況

一. 對暴徒 爾後의 狀況

一時 頗히 優勢를 示하던 賊徒도 各 方面에서 婁次 討伐에 遭遇하여 屛息의 狀態로 百名 以上의 賊團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賊魁의 被殪者가 少數이므로 今後 大擧를 計劃할 虞慮가 없다고 할 수 없다.

一. 賊魁 金聿로부터 二月 十九日 以來 再次 羅州郡守에게 보내온 別紙寫本과 如한 勸誘文에 依하여 보아도 또한 써 窘窮의 狀을 推察함에 足하다. 그리고 該書翰送達의 方法으로는 封筒에 假名字로써 本書를 速히 傳達치 않은 者는 嚴罰에 處한다는 意味를 附記하여 遞送시켜왔다.

三. 住民은 賊徒가 勢力이 없어서 非運에 陷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對하여 若干 事實을 告하는 色이 있다. 한번 脅迫에 應하여 加盟한 賊徒와 如함은 討伐을 當함을 오히려 기뻐서 其機에 乘하여 脫走歸村하는 者가 續出하는 것 같다.

(別紙)

官民之情 卽父子一體而尙不面先書雖曰非禮然緣於勢也非人也則勿致誚之地伏望謹未審新元. 政體于安重政務不有惱神者否伏溱區區不任下悰耳就白夫人之謂人不以形貌之與物殊異而爲人子弟可竭其力爲人臣民可盡其命上以順天心以定物情遠絕飛走之間而往處人域與天地參同斥邪衛正然後可乎伏想以城主之能鑑逍遙之明達必不在人後而覺矣然而當此賊勢然以遇衷思索切城主羞之以若城主權柄革圖定策己至梢矣歎之奈何然自今爲始亦非晩也城主一動則湖義之士莫不響應而從之且旣爲各處義將等各引數百騎一易首事城主從後爲翼矣城主不勞而得功自在其中矣此豈非好種之際耶且聞金雖克木錘鑽不可伐鄧林水雖勝火升合不足救焚山以此揆之討賊之事無足憂也然此亦如是遐土恒格凡質之殘權纖力非所敢望也民本是以年淺昧事之人初不知如許等理亦不量資力之不及遽作擧事於國家無尺寸之效反遺害於堵民罪悚嘆悚夫何言哉民向自沙五見敗

之後收率敗殘軍幾百名計窮力單六七陣中夜合晝分百度千料若不賴城主之權力難得如意故玆以泣懇伏願城主洞燭然後擧其有重之足特置至輕之地伏望餘姑閣不備伏惟

戊申 元月 旬八日 湖南義所 金聿 再拜

答 函

今此來書는 披閱未半에 祇傀德薄政拙이오 不覺汪然涕泗로라. 夫義者는 行而宜之之謂也라 欲保其義된 心先慘公德이오. 若無公德이면 反害其義니 可乎아 今君이 特擧義旗ᄒᆞ고 大發公檄ᄒᆞ야 寄生命於礮彈ᄒᆞ며 付身體於犧牲ᄒᆞ니 慷慨之志와 忠義之氣가 豈不壯哉리오마는 不度時機而妄動은 是智者之所不爲也라 夫公德者는 以我之盈으로 湯彼之虛ᄒᆞ며 以我所有로 補彼之無ᄒᆞ야 互相扶助ᄒᆞ고 互相愛護ᄒᆞᆷ이 是也라 今에 諸君은 以我所過론 燒彼村里ᄒᆞ며 以我所留론 殺彼同胞ᄒᆞ야 烟焰이 漲天ᄒᆞ고 腥血이 滿地ᄒᆞ니 聞猶不忍커든 況其可見乎아 嗚呼라 倡義一事는 雖因於忠憤所激나 結果는 無異於鴆救炳이오 風扇防火ᄒᆞ니 愛惜何喻아 以孝傷孝면 反爲不孝요 以義害義면 及是不義라. 未有義而後其君者어ᄂᆞᆯ 何不思皇上陛下之宸憂며 未有仁而遺其親子어ᄂᆞᆯ 豈忍使同胞兄弟之慘酷耶아 本職이 職在守土에 不善導率ᄒᆞ야 使我斯民으로 不能講明於公義公德ᄒᆞ야 以至於淪胥之境ᄒᆞ니 寫不內疚悚惡이리오. 現今 字內大勢가 優勝劣敗之時也라. 西勢東漸에 大局이 不穩ᄒᆞ니 惟我東洋이 互相維特ᄒᆞ야 以保全局이 第一勝算이오 以我邦形便으로는 忍辱呑恨ᄒᆞ고 上下奮勵ᄒᆞ야 廣設擧校에 敎養智識ᄒᆞ고 擴張實業ᄒᆞ야 扶植國力然後에 庶可以挽回獨立之權이오 不然이면 雖二千萬人이 同死於社稷이라도 何補於國이며 何賴於民이리오. 宣諭文一度를 膽本齎送ᄒᆞ노니 惟願諸君은 反本悔悟ᄒᆞ야 捨兵歸化 而順於大皇帝陛下之聖謨ᄒᆞ고 各自安堵ᄒᆞ야 使父母兄弟妻子로 毋致捼屑之境ᄒᆞ고 敎育을 是務ᄒᆞ며 智識을 發達ᄒᆞ며 殖産을 奬勵ᄒᆞ야 需供을 豊足이ᄒᆞᆫ 然後에 量力而後進ᄒᆞ고 慮勝而後會ᄒᆞ면 何事不成이며 何業不做이오 越王之十年練兵과 燕昭王之四十年敎民과 普露斯之六十年敎育으로 大業을 竟成ᄒᆞᆷ은 史乘에 昭載ᄒᆞ니 思而又思ᄒᆞᆯ지어다. 惟我皇上이 誤解ᄒᆞᆫ 赤子를 懇摯懷保ᄒᆞ시는 聖意로 悔悟歸順ᄒᆞᆫ 者에게 免罪文憑을 成給ᄒᆞ야 毋使疑懼彷徨케ᄒᆞ라ᄒᆞ시기로 本部에도 免罪文憑이 下來ᄒᆞ야 次次歸化請願者 多ᄒᆞᆫ故로 方行實施ᄒᆞ니 其於民國事에 豈非幸福이리오. 諸君이 今日歸順ᄒᆞ면 今日安堵ᄒᆞᆯ거시오. 若一向執迷妄率ᄒᆞ면 後悔莫及ᄒᆞᆯ터이니 此非本職遇妄之說也라. 實是數心衷曲之言이니 須各量悉을 幸甚幸甚.

隆熙二年 二月二十一日

羅州郡守 金聖基

湖南義所 金聿座下

歸順方法

一은 歸順ᄒᆞᆯ 時에 該面 面長을 帶同請願ᄒᆞ면 免罪文憑을 頒給할 事

一은 契機를 收聚ᄒᆞ야 一團束裹ᄒᆞ야 一人에게 擔負ᄒᆞ고 白衣로 入來ᄒᆞ되 先受面長稟報ᄒᆞ야

使人來呈에 待回指入來할 事
一은 歸順ᄒᆞᆫ 後에 或 有後慮ᄒᆞ야 疑懼之心이 不無ᄒᆞ나 此ᄂᆞᆫ 聖意를 對揚ᄒᆞᆷ이니 萬無趑趄ᄒᆞᆯ 事

30. 步兵第一二旅團司令部守發 第八二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二十一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三月 九日 光州守備步一四 第八中隊
今村隊 朴山(光州 西方 約 四里) 附近 戰鬪詳報
一. 三月 八日 塔洞(光州 西北方 約 四里半) 附近 賊徒討伐을 爲하여 光州守備隊로부터 派遣한 今村中尉 以下 十名(그 外 巡査隊 九名)은 午後七時三十分 仙岩市場(光州 西方 約 三里半)에 到達 左의 情報를 得하였다.
約 二十名을 引率한 金泰元은 昨七日 綾州 方向으로부터 來하여 仙居에서 一泊하고 本八日 日沒頃 塔洞 方向으로 向하였다. 그리고 金은 雙眼鏡을 所持하고 있었다 한다.
二. 따라서 沿道 諸部落을 搜索하면서 三月 九日 午前一時 朴山에서 約 十名의 賊을 追及하여 擊破하고 急追 上朴山(朴山 北方 約 千미터)에 至하여 다시 逃走中의 約 二十名의 賊團에게 大打擊을 與하여 完全히 此를 潰亂에 陷케 하였다. 때는 午前二時
三. 此 戰鬪에서 賊의 死 五 捕虜 一 負傷 十을 不下한다.
我에 損害없다. 射耗彈 一四〇發
鹵獲品 火繩銃 二 彈藥 衣類 其他雜品 多數
賊魁 金泰元은 겨우 몸으로써 逃走 드디어 그 踪跡을 失하였다.
三月 九日 派遣騎兵第一中隊 管井隊 竹山(羅州 北方 約 四里) 附近 戰鬪 詳報
一. 三月 六日 金聿이 引率하는 約 六十의 賊徒는 咸平郡 月岳面 內洞(羅山 北方 二里强)에 宿營하고 있다는 一進會長으로부터의 報告에 接하고 七日朝 管井中尉는 兵卒 五名 及 一進會員 三名을 引率하고 靈光을 出發하였다. 途中 北澤上等兵 以下 七騎와 出會하여 共히 該地에 至하였으나 賊影을 볼 수 없었다. 土人에 對하여 賊은 六日夜 同地에서 宿營한 것은 確認할 수 있었으나 그 逃走 方向은 不明하다. 따라서 同夜 同地에서 宿營하였다.
二. 翌九日 北澤上等兵의 一隊로 하여금 內洞 東北地區 搜索에 任하고 中尉一隊는 內洞 東南地區搜索을 決定 共히 出發하였다.
三. 中尉一隊는 內洞 東南 約 一里 沙洞에서 若干 情報를 得하고 東奔西走 此의 追躡에 努力

하였으나 內洞 東南 約 一里半 巳龍에 達하여 드디어 그 踪跡을 失하였다. 午後五時 細洞(巳龍 東方 半里)에 至하여 土人을 尋問하였으나 要領不得 다시 細洞으로부터 北方으로 前進 中前方 約 千미터 東部竹山(細洞 北方 千五百미터)으로부터 數十名의 賊徒(主力)는 西部 竹山方向으로 一部는 朴山 方向으로 逃走 中임을 發見하고 卽時 此를 乘馬 攻擊하였다. 千미터가 넘는 水田 게다가 細流가 各處에 가로질러 襲步가 甚히 困難하였으나 多幸히 深田이 없어 竹山 西北 高地上에서 겨우 追及하여 북쪽 모퉁이를 쫓아 山이고 水田이고 할 것 없이 死屍를 散亂시켰으나 格鬪中 斷崖를 攀登逃走한 者 若干名이 있다. 이어 徒步追擊約 四十分에 及하였으나 드디어 踪跡을 失하였다.

四. 此 戰鬪에서 賊死 二十七 傷者 不明 鹵獲品 火繩銃 三 彈藥 火藥 若干 聖書 一 雜品 多數 我에 損害 없다. 射耗彈 八六發 奉銃彈 一七發

五. 午後七時 東部 竹山에 歸還하여 家宅 搜索을 하였으나 何等 得한 바 없다. 該村 土人의 言 左와 如하다.

(가) 主魁는 金聿이다.

(나) 昨夜 當地에 와서 宿營하고 只今까지 現在하였다. 暴徒에게 提供한 食類는 每食 五十九人式이다.

六. 此 戰鬪에서 中尉가 殪한 賊 中에 아마도 金聿이 있다. 그 顔面은 刀創이 縱橫으로 全然 不明하나 服裝은 틀림없이 金聿이다.(土人을 現場에 오게 하여 보게 하였다). 또 鬚毛 없는 點도 亦是 疑心할 바 없다. (終)

13. 韓憲警乙 第三三一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十九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暴徒의 狀況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榮山浦憲兵分隊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으므로 通報함.

隆熙 二年 三月 六日

鶴橋憲兵派遣所長 原田軍曹 報告

二月 二十七日 務安郡 一進會 評議員 梁在星 及 金斗鉉 其他 會員 五名은 當地에 滯在 暴徒首魁 金泰元 金聿의 所在 及 狀況을 偵察하기 爲하여 會員 五名을 出張시켰던 바 三月 五日 左의 情報를 得하였다.

一. 三月 二日 午前九時 會員 朴京先을 咸平郡 章本面 及 靈光郡 三南面의 一進會員 郭士彦이란 者에게 書面을 遣하여 金泰元 金聿의 所在 及 狀況을 照會하였던 바 金泰元은 古阜郡으로

去月 中 移轉하고 弟 金聿은 章本面 平申洞 金德三方에 同居하고 있음을 듣고 郭士彦은 朴京先과 같이 金聿 居宅에 이르러 보니 部下 約 四五十名으로 獵銃 八挺 火繩銃 二十餘挺이 있음을 現認하고 直時 咸平 一進會員 金斗鉉 及 守備隊長에게 通報하여 守備隊는 直時 金聿 逮捕의 目的으로써 當時 咸平에 滯在 中의 章本面長을 案內케 하여 出張途中 咸平郡 平申洞을 距한 半里의 地點에서 一泊하였던 바 翌朝에 이르러 面長은 便所에 간다고 속이고 逃走 守備隊의 옴을 金聿에게 告하여 金聿은 部下를 引率하고 逃走하여 逮捕의 目的을 達하지 못하였다. 章本面長의 身元을 取調한 바 金聿 部下 金君七의 親族인 것이 判明되었다 한다. 一進會員은 當地 及 咸平에 滯在 目下 附近의 暴徒 逮捕에 協力從事하고 있다.

18. 步兵第一二旅團司令部守發 第八四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二十三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一. 菊池大佐 報告 三月 二十二日 於大邱

1. 光州守備 今村中尉 電報報告

三月 二十二日 午前九時 光州局發

二十日 當地로부터 出한 中條討伐隊는 二十一日 長城騎兵隊와 協力하여 光州 西北 五里 廣谷에서 金泰元이가 指揮하는 約 八十의 賊과 對戰中이라고 한다. 따라서 吉田特務曹長 以下 十名을 同地에 急行시켰다. 我에 一名 左足下腿貴通銃創을 受하고 本二十二日 當地로부터 釜山病院으로 보내다.

2. 同 中尉 電報報告

三月 二十二日 午後五時 光州局發

只今 中條少尉의 報告에 依하면 交戰한 賊은 約 五十으로 그 四를 殪하고 銃四 其他雜品 若干을 鹵獲하였다. 第七中隊未延力藏 左腕에 散彈을 受하였다.

二. 德永騎兵大尉 電報報告

二月 二十二日 午後七時三十分 羅州局發

長城高松分屯隊는 步兵과 協力하여 二十一日 午後二時 長城 西南 二里 月岩에서 暴徒 五十을 攻擊하여 그 五를 죽이고 數名을 負傷시키다.

鹵獲品 火繩銃 四 我步兵 負傷 二

(旅團註 前二報告 中 交戰地 廣谷과 月岩은 約 二키로를 隔하였으나 아마도 同 地點을 가리키는 것 같다)

19. 韓憲警乙 第三四二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二十三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賊徒逮捕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榮山浦憲兵分隊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으므로 通報함.

榮山浦憲兵分隊長 大原大尉 報告

鶴橋憲兵派遣所長 原田軍曹 報告

(三月 十三日)

暴徒二名 逮捕

一. 三月 十二日 當地 滯在中의 一進會員으로부터 咸平郡 倉知面 石池에 暴徒 四 五十名이 宿營하고 있다는 通報를 得하고 上等兵 五名을 引率하고(鶴橋駐在所 巡査 一名 同伴) 出張한 狀況은 左와 如함.

一. 三月 十二日 午後四時 上等兵 四名 巡査 一名과 같이 出發 石池에 當到 附近 村民에게 對하여 狀況을 聞한바 昨夜 九時頃 當地를 撤收 靈光 方面을 向하여 出發하였다 한다. 따라서 該 村을 搜索하였던 바 殘黨 같은 者 三名이 우리 一行을 보자 直時 裏面山으로 逃走하므로 追擊하였으나 日沒에 至하여 드디어 踪跡을 失하였다.

一. 歸途 沿道村落을 偵察하였던 바 葛馬池에 暴徒 加擔者 一名이 潛伏하고 있음을 探知하고 이를 逮捕하였다. 또 居平面 竹谷에 一名이 潛伏하고 있음을 探知하고 該 家屋을 包圍하고 此를 逮捕하였다.

逮捕한 暴徒加擔者 姓名은 左와 如하다.

羅州郡 諭谷

卞洪基

羅州郡 葛馬池

曺應律 右 報告함.

22. 韓憲警乙 第三四五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二十四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管內狀況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榮山浦憲兵隊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으므로 通報함.

[隆熙 二年 三月 十七日]

榮山浦憲兵分隊長 大原大尉 報告

羅州憲兵分遣所長 藤井特務曹長 報告

三月 十六日

管內狀況

當管內에 跋扈한 暴徒도 이제 大打擊을 蒙하고 漸次 屛息하였다. 그래서 銳意 頹勢의 挽回에 努力하고 있다. 賊魁 金聿로부터 그 後 羅州鄕校 郡衙書記 自衛團長 및 各 郡面에 配布한 檄文 及 그 寫本은 別紙와 如하다. 在留官民은 暴徒 屛息의 結果 모두 그 堵安하여 近來 木浦 方面으로부터 入來하는 者가 많다.

通文

右通喩事興學設校國家之根抵也殉郎守義士者之慷慨也方今我東邦不共戴天之讐豈能有如許禽獸之倭賊乎哉嗚呼痛哉往自甲午以後彼禽獸之輩橫行衝突而徧滿京鄕要害之處變夏用夷則列聖之綱紀淪胥於獸跡之境方命圮族則柱石之權柄透隨於無人之境悵嘆奈何究其國家事勢一則五百餘年社稷切逼於置身薪火之上其身難安豈能長久乎次則三千里疆土全沒於蚕食之中其土雖廣豈能保全乎刻骨之痛恨與水流同長也嗟夫不勝義氣一次擧義則軍律懸殊所謂代大匠斫鮮不傷乎者此也方今究其軍中之事機敵强義弱矣然而慮勝而後敵戰實非義氣之士也伏願本郡校宮僉賢齊聲赴義則非特義聲大振補國安堵自在其中而事半古人功必倍之矣設使死於義下以報列聖之神靈幸以生守於義則東方之禮俗更見矣此時何時卽天時也然則士君子之慷慨節氣保護于國家之根抵果何如哉天時如是而若違天時則反必受禍深諒深諒焉到此各郡士者爲名而不爲齊力擧義之心背親忘君之像莫甚於此如是則與夷狹禽獸之類何殊茲以輪通伏請僉君子特激勵義氣而同心齊力補國守義之地幸甚

羅州鄕校 僉尊 座下

湖南義將 金聿 先鋒 文祥麟 後軍 尹東淳 戊申 正月 二十六日

(郡書記에게 送한 것)

大抵吾郡羅州雖處遐土一方爲湖南之拇城也且以人材類出言之能敵人鄕而亦以古聖遺籤者之湖南人器半在羅州人器半在邑云此豈東方之甕牖耶所以湖南有大事則次邑誰某人士不圖自意先謀而惟望羅州之動靜如何然後其圖無事者卽是故然也今當討賊之目搜探人情則亦爲之不應豈不痛歎哉伏願僉公兄從速回議定策列邑有志人士許通約期時以某月某日各自其郡隨其所存賊數一齊捕殺以成上輔下安之功若何餘不多上

戊申 二月 初九日 倡義生 金聿 敬請

且聞京之人傳說以移民之意通訓于各道列邑云豈非大急之際耶

(書記의 同答文)

今此 書意는 詳悉而 時局形便과 利害禍福을 旣自本官家로 奉承勅論文ᄒᆞ와 己爲解理 書復이시견과 鄙等은 身在於命令之下ᄒᆞ야 聖上之宸憂와 府郡之曉訓이 未嘗不惕目警耳ᄒᆞ니 其所奉行을 不敢疎忽而 且度時機에 似是妄動이오 不如安案이라온 玆에 函復ᄒᆞ오. 以量悉을 爲要

戊申 二月 初十日 羅州郡公兄 敬復

湖南倡義所 座下(各 郡面에 配布된 檄文)

傳令各郡各面里大小民人等

卽聞各處無賴輩稱以義兵三五作輩出沒閭里奪人廐牛或碎人産物其冤則都歸義所萬萬痛駭從今以後如有此等弊端卽自洞中一併結縛或押上于義所是去乃或提上于本郡以爲處置是矣若不遵令者斷當軍律懲之矣十分惕念擧行無至後悔之地爲可事

戊申 二月 初十日

義將 金聿

再飜耕在迴奪人農牛者有之則必與倭賊同治矣莫抵後悔焉

(羅州自衛團長에게 보낸 것)

欽昻餘先承惠函感頌仍審書來後體韵增慶仰賀區區恒誦生依旅屑己耳就示意非不留念己久事係未遑矣所敎若是緊切揆以彼我間形勢計不出此外果是好莫好階梯也別加周密秘無發機以俟期日千企萬望余從近相叙不備謝

二月 十日 知名人拜謝

憲兵隊長報告 三月 二十四日字

一. 暴徒書信出處不明의 것을 遞送하여 왔다. 따라서 搜査를 遂하여도 出處가 判明되지 않았다. 別紙 該 書信 添付한다.

(日人에게 解兵歸鄕을 勸誘하였다)

3)『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 의병편 Ⅲ

8. 步兵 第十二旅團司令部 守 發 第七一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十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2. 咸平守備 第八中隊 河間 特務曹長 報告
二月 二十四日 於咸平
가. 昨 二十三日 午前八時 出發 羅山 附近 偵察을 爲하여 派遣한 上等兵 以下 五名은 賊과 遭遇함이 없어 歸還하였다.
나. 昨 二十三日 木浦 發 同日 咸平 着의 郵便運送人(韓人) 午後六時頃 咸平 西南方 約 一里(羅州街道 三义點)의 地點에 達하였을 때 二名의 賊과 遭遇하여 郵便物을 掠奪 當하였다는 報에 接하고 上等兵 以下 二名을 現場에 派遣하였다. 該 郵便物은 其 附近에 散亂해 있었으나 賊의 踪跡은 不明 所長의 報告에 依하면 書留郵便物은 窃取 當한 것 같다고 한다.

1. 韓憲警乙 第二六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四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賊徒와 衝突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榮山浦憲兵分隊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으므로 通報함.
隆熙 二年 二月 二十六日
榮山浦憲兵分隊長 大原 大尉 報告
羅州憲兵分遣所長 藤井 特務曹長 報告
二月 二十六日
暴徒 討伐 狀況
隆熙 二年 二月 二十三日 午前十時 賊魁 金聿 部下 約 七十名을 引率하고 羅州 北方 約 六里 咸平郡 食知面 登江에 屯集한 旨 密偵의 報告를 受하고 羅州警察隊와 協同 夜襲의 目的으로 써 上等兵 十二名을 引率 午後十時 分遣所를 出發 二十四日 午前四時 目的地 附近에 達하였던 바 彼等은 二十三日 夜 이미 三巨里 西方 約 一里 同面 內 月葛(一名 月峴)村으로 移動하였음을 確認하고 直時 同 方面으로 行進 中 同日 午前八時 月葛 東方 約 三千미터를 距한 山中에 展望哨와 같은 것이 있어서 我 一行을 보자 逃去하였다. 따라서 同村을 搜索하였던 바 賊徒 約 五十名이 있어서 재빨리 同地의 山顚에 據하여 猛烈히 射擊하였다. 我는 三百미터의 距離에서 急射擊을 加하여 一部는 그 退路를 扼하고저 吶進하자 後方으로부터 轟然 砲 一發(空砲)을 放(退却의 信號이었던 模樣)함과 共히 賊徒는 唐慌 退却을 開始하므로 이를 追擊하여 四散

潰走시키고 賊 二名을 殪하여 드디어 踪跡을 失하였다. 二十五日 午後三時三十五分 歸隊, 我에게 損害 없다. 竹箇入 彈藥 五個 其他 雜品類 數點을 鹵獲하였다. 賊 約 四十名은 火繩銃 及 村田式獵에 類似한 것을 携帶하였다. 交戰 中 賊魁 金聿로 思料되는 者 黑色韓服을 纏하고 拔劍號令하는 것을 目擊하였다. 賊의 負傷者는 數名 있음을 目擊하였다. 死者 中 本年 二月 十二日 當所에 歸順 免罪憑 第一號를 下附한 羅州郡 道林面 石岩村 金敎豊(五十一年)이 加入하고 있었다. 本戰에 있어서의 費消彈藥 百二十發 警察隊 八十九發.

憲兵隊 報告(三月 四日字)

一. 二月 二十三日 金聿은 部下 七十名을 引率하고 咸平郡 食知面 登江에 屯集한 報가 있다. 따라서 該地 附近에서 賊狀을 偵察하건대 暴徒는 同面 月葛村 附近에서 集團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此와 交戰하여 四散敗走시켰다.

이 戰鬪에서 賊은 二名의 死者를 出하였다. 그 中 一名은 免罪文憑을 下附받고 있는 者이라 한다.

3. 步兵 第十二旅團司令部 守 發 第七二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十一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一. 片野 少佐 報告 三月 十日 於鳥致院

1. 第一中隊長 德永 大尉 報告

三月 一日 於羅州

當 中隊의 全羅 到着後 今日에 至하기까지 搜索 及 討伐上으로 得한 結果는 左와 如하다.

甲. 去月 二十九日 結了한 中隊의 討伐實施前 全州 古阜 以南의 地區에서 賊徒의 徘徊地 及 그 兵力 및 主된 賊魁는 左와 如하다.

A. 長城社倉 附近 百四, 五十의 一群을 第一로 四,五十의 賊群이 當地에 一, 二 있다.

金容球(奇三允의 死後 此에 代하다) 金準(金泰元事)

B. 泰仁 淳昌 間 五, 六十 乃至 二, 三十의 것 各處에 出沒

李哲衝(李進士 稱)

C. 靈光 咸平 間 五, 六十 乃至 二,三十의 것 一, 二

金聿 趙成仁

D. 茂長 二, 三十의 것 一

乙. 右中 中隊의 討伐할 수 있었던 것은 左와 如하다.

A. 二月 二十日 塔丁에서 金容球가 引率하는 百五十의 一群(金容球 死)大槪 殲滅.
B. 二月 二十四日 篤谷里에서 首魁 不明의 約 百 大槪 殲滅.
C. 二月 十八日 茂長에서 首魁不明의 三十四 殲滅.
D. 二月 二十三日 栗谷에서 首魁 不明의 五十中 五名을 殪하였다. 計 賊徒의 總數 三百八十四名.
殪한 總數 百五十六名
捕虜總數 十六名
右 外에 我 中隊에 討伐에 策應한 羅州의 憲兵 及 警察隊의 咸平 附近에서 擊退한 約 七十이 있다.
丙. 討伐 實施 後의 情況
A. 近來 頻繁히 羅州郡守에게 書狀을 보내어 暴徒 援助의 懇願을 하여 온 것과 같은 弱點을 表示하였다.
B. 社倉 南方地에는 夜間에 門札을 携歸하여 連名簿에 記入하고 翌日 此에 暴徒 加入을 强要하는 等 兵力 欠乏을 證明하고 있다.
C. 井邑 附近에는 近來 銃器의 蒐集에 腐心하고 있는 賊徒는 恒常 徘徊하여 그 抵抗力 없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D. 氣候의 溫暖을 待하여 海岸에 옮겨 海賊으로 變하고저 하려는 者가 있다는 風說이 있다.
2. 생각하건대 二十五日 白羊山 附近을 包圍한 菊池 大佐의 指揮한 十八縱隊의 討伐動作 及 十八日부터 二十九日에 亘한 二十日間 中隊의 行한 任實 泰仁 及 茂長 間에 있어서의 九分進隊의 南下行動 및 我 衝突 五回의 大打擊은 共히 全羅南北道의 境界地 附近에 있어서의 賊徒로 하여금 크게 其 志氣를 阻喪시킨 것 같아서 彼等은 벌서 昔日의 暴動을 敢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永久平穩을 爲하여서는 此期를 利用하여 어디까지나 金準 李哲衝의 徒를 搜索物色하여 아직 家屋 外에 宿營할 수 없는 餘寒中에 있어서 賊類討滅을 計劃함은 大槪 今日의 急務임을 確信한다.
3. 今後의 搜索 及 行動上 注意할 諸件은 左와 如하다.
A. 暴徒 中 歸順의 證을 携帶한 者가 있어서 萬一의 境遇 此를 利用하고저 企圖하는 者가 있다.
B. 耶蘇敎에 關한 書籍을 携帶하고 있어서 此를 口實로 前同稱의 處置로 나오려 하는 者가 있다.
C. 暴徒宿營時는 密告者 豫防으로 一村落 全部에 分宿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假令 搜索을 받는 家族의 一人같이 假裝하여 村民으로 하여금 實狀을 吐하는 餘地가 없을 것이다.
D. 暴徒를 包圍하여도 攻擊動作을 開始하기까지는 良民을 假裝하고 包圍者로 하여금 그 包圍

를 풀게 하는 일이 있다.

E. 宿營地 出發時 반드시 銃을 擬하고 出發 方向을 注目하는 者를 威嚇하는 風이 있다.

4. 三月 八日報 第六九號 第二項에 있는 首魁는 盧松庵으로 彼는 忠淸南道 公州의 者로 昨年 二月부터 暴徒가 되어 全羅北道, 忠淸南道 及 慶尙南道를 徘徊한 者이다.

二. 德永 大尉 電報報告

三月 十日 午後二時 羅州局 電

三月 九日 午後五時 菅井分屯隊는 羅州 北 約 四里 竹山에서 暴徒 六十을 襲擊하여 그 二十七을 殪하고 鹵獲品 銃外 數點 我에 損害 없다.

三. 片野 少佐 報告 三月 九日 於鳥致院

1. 第一中隊長 德永 大尉 報告

三月 四日 於羅州

가. 諸 情報를 綜合하건대 金泰元의 一派는 目下 泰仁 淳昌間에 있는 李進士 一派와 合하는 同地 附近에 간 것 같으며 金聿(金泰元의 弟) 趙成仁(一名 趙章勳이라 稱하고 羅州出身)의 一群은 數日前 靈光 茂長 方面으로 向한 것 같다.

2. 따라서 中隊는 討伐을 爲하여 今後 二週間의 豫定으로 長 以下 七騎로 된 左記 各 分屯隊를 本日 午前八時三十分 各頭書의 任地를 向하여 出發케 하였다.

靈光 菅井分屯隊

茂長 渡邊分屯隊

泰仁 小平分屯隊

潭陽 三澤分屯隊

長城 水野分屯隊

社倉 北澤分屯隊

3. 또 裝鐵이 끝나는대로 原澤分屯隊를 羅山 附近에 配置할 豫定임.

5. 韓憲警乙 第三〇七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十三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賊徒의 狀況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榮山浦憲兵分隊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으므로 通報함.

隆熙 二年 三月 七日

榮山浦憲兵分隊長 大原 大尉 報告
羅州憲兵分遣所長 藤井 特務曹長 報告
(三月 七日)
光州郡 東閣面 沈山村에 賊魁 趙正仁의 黨派가 侵入한 事件에 對하여 討伐을 爲하여 上等兵 七名 及 通譯 一名 自衛團員 五名을 引率하고 派遣騎兵中隊長 德永 大尉 以下 十名과 提携 七日 午前二時 羅州 出發 同 五時 目的地에 到着 包圍 새벽 攻擊準備를 하던 바 從是 이미 賊은 約 一千미터 北隣 基用村으로 移動하였음을 確認하고 繼續 該村을 包圍偵察을 遂行하였던 바 彼等은 이미 六日 夜 同村 李義春方에 侵入 家主를 捕縛 脅迫한 後 夜食을 하고 또 金錢, 衣類, 草鞋의 類 若干을 村民으로부터 掠奪 後 어디론가 逃走한 事實이 있음을 確認 嚴密히 附近 各方面을 偵察하였으나 드디어 그 行先이 不明으로 끝나 午後 二時 一旦 羅州로 撤收하였다. 賊은 竹筒彈藥盒 及 草鞋를 遺棄하고 軍銃 一, 二挺 獵銃 五, 六挺 刀劍을 携帶하였다 한다.
繼續 偵察中.
憲兵隊(三月 十二日字)
一. 光州郡 東閣面 沈山村에 賊魁 趙正仁의 黨派가 侵入하였다는 報가 있다. 따라서 討伐隊 一行은 該 村落에 이르러 偵察을 遂行하였던 바 賊은 이미 逃走 後이었다. 聞知하건대 該 暴徒團은 同 村民으로부터 金品을 掠奪하고 어디론가 逃走한 模樣 繼續 偵察中.

10. 步兵 第十二旅團司令部 守 發 第九二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三月 三十一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一. 菊池 大佐 報告 三月 三十一日 於大邱
1. 三十日 午前四十分 光州守備區司令官 吉田 少佐 電報報告
仙岩(光州 西方 三里)에 賊將 金聿이 引率하는 十數名이 集合하고 있다는 報告에 依하여 伊熊 中尉, 今村 中尉, 吉田 特務曹長을 昨 二十九日 午後一時 同地에 派遣하였던바 今村·吉田兩隊는 仙岩을 去하기 半里에서 交戰하여 首魁 金聿을 生擒하고 其 五를 殪한 後 若干을 負傷시켰다. 鹵獲品 多數, 伊熊 中尉는 아직 賊을 搜索中.

38. 步兵 第十二旅團司令部 守 發 第一二三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二十六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代理 菊池主殿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三. 德永 騎兵大尉 電報報告
四月 二十五日 午後八時四十五分 光州局 發
1. 二十五日 午後四時 我 分遣隊는 光州 西 三里半의 江洞에서 賊 六十을 攻擊하고 繼續 追擊中으로 드디어 賊魁 金泰元을 殪하였다.

1. 韓暴通 第二三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一日
韓國駐箚軍參謀長
牟田敬九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六. 光州守備隊의 伊熊 中尉, 今村 中尉 及 特務曹長이 引率하는 三部隊는 三月 二十九日 仙岩(光州 西方 三里)에서 全羅道 方面에서 가장 勢力이 있는 賊魁 金聿이 引率하는 數十의 賊과 交戰하여 金聿을 生擒하고 賊 五를 殪하고 若干을 負傷시켰다. 鹵獲品 多數 있다.

14. 羅州發 第八六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十三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魁 金太元 投狀에 關한 報告
暴徒의 首魁 金太元은 例의 酒幕便으로써 本月 八日 咸平郡 咸平邑 內 一進會支部 앞으로 書를 寄하였다. 그리고 그 文意에 依하면 一進會員도 韓國 同一國民이다. 國家에 다할 道民의 義務에 있어서는 吾等 義軍과 相撰할 바 없다. 湖南義軍은 憂國의 至情이 漲溢하여 玆에 大義를 唱하는 者이다. 그러므로 一進會員에 있어서도 國家安危에 關한 此秋를 當하여서는 大擧써 國家의 柱石을 鞏固히 하여 國民의 本義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則 其本分이다 義軍은 不幸하게도 倭賊에게 打破 當하였다. 그러나 一勝一敗는 亂世의 常 義軍은 假令 몸을 粉末로 한다

하더라도 敢히 前志를 覆치 아니할 것이다. 바라건대 義徒의 衷情을 洞察하여 自今 協同一致 大韓國을 爲하여 크게 盡力할 것을 伏望한다. 云云

賊魁 金太元은 本來 一進會員을 보기 거의 그 仇敵과 如하였다. 그런데 只今 此와 如한 關係를 有한 一進會員을 捉하여 前揭와 如한 書面을 寄하게 된 金太元의 窮策도 또한 極에 至하였다고 할 것이다. 써 彼等이 如何히 逆境에 陷하고 있는가를 豫測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思料된다.

右報告함.

隆熙二年 四月 二十一日

局長

統監 副統監 大將 總理大臣

內部大臣 內部次官 長官 隊長

參與官 北南部司令官 度支部次官

第六六五號

全羅南道 羅州警察分署長 報告 四月 十三日

暴徒의 首魁 金泰元은 酒幕便으로 四月 八日 咸平邑內 一進會支部에 如左의 意味로써 書面을 送付하였다. 同人 等의 一派는 從來 一進會員을 보기 仇敵보다도 더하였는데 이제 如此 書面을 發하게 된 것은 그 窮狀을 察知하기에 足하다.

一進會員 亦 韓國의 一國民이다. 國家에 다할 道義 我等 義軍과 撰할 바 없다. 湖南義軍은 憂國의 至情 漲溢하여 玆에 大義를 唱하는 者이다. 그러므로 一進會員에 있어서도 國家安危에 關한 此秋를 當하여서는 大擧 써 國家의 柱石을 鞏固히 하여 國民의 本義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則其本分이다. 義軍은 不幸하여 倭賊에게 打破 當하였다. 그러나 一勝一敗는 亂世의 常義軍은 假令 몸을 粉碎한다 하더라도 敢히 前志를 覆치 아니한다. 바라건대 義徒의 衷情을 洞察하여 自今 協同一致 大韓國을 爲하여 크게 盡力할 것을 伏望한다. 云云

右 報告(通報)함.

21. 報告書 第一五三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十六日

全羅南道觀察使

金奎昌

內部大臣 勳一等 任善準 閣下

歸順者에게 免罪文憑과 銘心書를 頒給한 郡報가 比至이기 另加監視하여 無或虛實相蒙之意로 指飭하고 該 各郡 歸順한 人民의 姓名을 左開 報告하니

査照하심을 爲望.

左開
羅州郡 羅明煥 羅華旭 李澤圭 張東文
(중략)
已上 三十七名

35. 步兵 第十二旅團司令部 守 發 第一二一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二十四日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恒吉忠道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一. 片野 騎兵少佐 電報報告
四月 二十三日 午前十一時四十五分 全州局 發
1. 第二中隊長 報告 二十二日 小官 以下 十五騎는 羅州 西 五키로의 山에서 賊 二十을 攻擊하여 三을 殪하고 二를 捕獲하였다.

47. 第六九一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二十九日
局長
統監 副統監 大將 內部大臣
內部次官 長官 參與官 隊長
北南部司令官 度支部次官
全羅南道 羅州警察分署長 電報
四月 二十九日 午前十一時二十五分 發 午後一時 着
昨夜 九時 暴徒 約 十五名이 羅州郡 竹浦를 襲擊 日人 一 殺害되었다.
當 署員 五 憲兵 三 討伐을 爲하여 出張하였음.
右 報告(通報)함.
『羅州郡 竹浦 暴徒 襲擊 報告 電報』

50. 長秘收 第八〇八一號中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三十日
長興警察分署長

警部 坂根利貞
警務局長 松井茂 앞
靈岩郡 暴徒 襲來의 狀況(第二)
一. 靈岩郡 郡終面 角洞에 暴徒가 襲來한 報에 接하고 駐在巡査 及 憲兵이 出張한 旨는 去二十六日字로써 報告한 바 그 搜査한 狀況은 左와 如하다.
一. 去 二十三日 夕刻 暴徒 十一人 角洞에 潛入한 것은 事實이나 旣報와 如히 村民 全部를 結縛 監禁하였다고 한 것은 無根이다. 그 滯留 中은 村民의 外出을 禁한 模樣인데 彼等은 村民에게 對하여 우리는 義兵으로 火賊과 如한 것이 아니라 하고 飯을 徵發하고 二十四日은 滯留하고 該 洞內의 酒幕에 別紙 譯文과 如한 揭示를 하고 二十五日 午前零時頃 同所를 發하여 同七時頃에는 同面 白馬山에 至하고 同 八時頃에는 福洞에 至하여 共히 飯을 徵發하여 食한 形跡이 있으나 爾後의 形跡은 分明치 않다. 때마침 後項의 通知에 接하여 金磨面 及 長興郡 有治面에 들러 搜查를 遂하였으나 踪跡을 得치 못하고 撤收하였다.
一. 靈岩憲兵은 二十五日 夜半 金磨面 龍盤 領收員 宅에 暴徒 十一名이 襲來하였다는 急訴를 受하고 出張한 模樣으로 그 搜查한 狀況은 左와 如하다.
一. 二十五日 午後十二時頃 十一名의 暴徒는 金磨面 龍盤 領收員 宅에 至하여 徵收稅金의 全部를 내놓으라고 强迫하였으나 應치 아니하므로 領收員을 毆打하려 創傷을 負케 하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은 事實과 같으나 드디어 踪跡을 得치 못하였다.
右 報告함.
(譯文)
一. 傳令
大抵 倭賊類가 本郡守 稅務官 等 及 各面 領收員과 符同하여 써 莫大한 國稅를 貰徵하여 倭賊의 軍需錢 及 軍粮에 充當한다 噫라 右等 賊習이 더욱 甚하다. 于先 令을 發하여 壁上에 揭付하므로써 日後는 全혀 此를 論치 않는다. 萬若 如此 弊가 있으면 倭와 同類也라 따라서 身命을 아끼어 改過하여 다시는 律을 犯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戊申 三月 日
湖南義所 南一
二. 廣告
듣건대 倭賊의 數 三名이 各自 軍器를 持하고 種痘라 稱하고 橫行坊曲하여 韓民을 無數히 殺害한다고 한다. 實로 痛歎의 極이다. 賊徒 到處의 洞民은 夜를 冒하여 急行 義所 來告하여 速히 此를 討滅하여 全然 萬民이 此로 因하여 動亂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戊申 三月 日
湖南義所 南一

三. 廣告

近聞에 依하면 雜輩 二, 三徒黨을 組하여 義兵이라 稱하고 閭里를 橫行하여 錢財를 强奪하기 非常이라 한다. 實로 可歎의 極이다. 幾何의 賊習으로써 國에 萬害를 及한다. 따라서 玆에 廣告하므로써 日後 萬若 此等 弊가 있다면 洞中에서 此를 結縛하여 義所에 押上하거나 本郡에 押上하여 律에 照하라.

戊申三月 日

湖南義所 南一

追而 本文 同樣 木浦署에는 報告 畢.

53. 羅秘發 第九五號

작성일 : 隆熙 二年 四月 三十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來襲에 關한 報告

當署 管內 羅州郡 竹浦 暴徒 來襲의 件에 對하여는 于先 電報로 報告하였던 바 暴徒來襲 當時 及 其後의 實況은 左와 如하다.

一. 暴徒來襲의 日時

暴徒가 同地를 來襲한 것은 일찌기 이미 報告한 것과 如히 本月 二十八日 午後九時頃이었다고 함은 事實에 相違가 없었음.

二. 暴徒의 實數

暴徒의 實數는 前報 約 十五名이라고 한 것과 如히 精査 結果 相違 없음.

三. 暴徒의 襲來한 方面

同地를 襲來한 暴徒는 咸平 及 羅州 附近에 出沒한 殘黨으로 咸平 方面으로부터 來襲한 것과 如히 思料된다.

四. 暴徒의 系統

暴徒의 系統은 詳細치 않으나 金泰元의 部下이었던 殘黨이 咸平 及 羅州 附近에 出沒하고 있었던 것에 相違 없었던 것으로 認定된다.

五. 暴徒 携帶 銃器의 實數

暴徒携帶 銃器의 實數는 確實히 調査할 수 없으나 土人의 言에 依하면 携帶銃器는 約 五挺 程度로 다 火繩銃이었다고 한다.

六. 暴徒 來襲 當時의 狀況

暴徒가 來襲하였을 時刻은 前陳과 如히 本月 二十八日 午後九時頃으로 同地 在留民 高田密藏은 同日 同家에 宿泊하였던 日人 三名 家族 二名과 共히 一室에서 談話中 突然 銃聲 一發을 듣자 一同은 크게 不審을 抱하고 或은 暴徒가 아니겠는가고 思料하고 家主 高田密藏은 直時 提灯을 携帶하고 屋外로 出한 一刹那 暴徒는 이를 보고 또 一發을 發射하여 同人은 無慘하게도 그 자리에서 卽死하였다. 이에 있어서 宿泊하였던 日人 二名은 榮山浦를 向하여 妻女는 乳兒를 抱하고 同家에 솟은 山의 後方 일찌기 親한 韓人家에 避難하고 또 宿泊人 中 一名은 其時 厠에 있었던 것으로 그대로 同 便所에 潛伏하고 있었다 함.

七. 暴徒 暴行의 現狀

暴徒는 前記와 如히 家主 一名을 斃하고 他는 各 方面으로 逃走한 此機에 乘하여 家屋 內에 闖入 賊等 携帶에 便한 諸品을 掠奪하고 其他는 悉皆 屋外에 持出 이를 燒却하였다.

八. 暴徒 逃走의 方面 及 時刻

暴徒逃走의 方面은 搜査結果에 依하면 咸平 方面으로 逃走한 形跡이 있다. 그리고 其 時刻은 同日 午後二十時頃이라고 思料된다.

九. 暴徒의 掠奪品

暴徒 來襲時 掠奪한 物品은 的確 判明되지 않으나 商品인 織物 毛布 帽子(韓人用) 拳銃 一挺(自己 護身用) 新俔 三百円 韓錢 五十貫 其他 衣類 器具 等 多數.

十. 死體의 狀況

死體의 狀況은 左胸部에 一個所의 散彈肓貫銃傷을 受하고 卽死한 者가 있었다.

十一. 死者의 本籍 姓名 年齡

和歌山縣 伊都郡 應其村 大字伏原 五四二番地

戶主 平民 儀右工門

　長男 高田密藏

明治 十年 六月 十三日 生

十二. 損害品의 見積額

暴徒의 橫行을 受하여 掠奪 又는 燒却된 在留民 高田密藏 損害價格은 約 六百円이다.

十三. 巡査 及 憲兵隊 搜索의 結果

前記와 如히 暴徒는 咸平 方面에 逃走한 形跡이 있으므로써 當署로부터 派遣한 巡査 五名 憲兵 三名은 嚴密히 搜査하였으나 조금도 그 踪跡을 얻지 못하였다. 昨 二十九日 午後八時 撤收하였다.

右 現在의 狀況을 具하여 報告함.

追而 同地는 在留民으로서 前記 罹災者 外에 他에 없는 곳으로서 玆에 申添함.

13. 第七二四號
작성일 : 隆熙 二年 五月 五日
局長
統監 副統監 大將 內部大臣
內部次官 長官 參與官 隊長
南北部司令官 度支部次官
全羅南道 羅州警察署長 報告
四月 三十日
(四月 二十九日 警秘 第六九一號 羅州郡 竹浦 賊襲 續報)
旣報와 如히 約 十五名의 暴徒가 四月 二十八日 午後九時頃 羅州郡 竹浦에 襲來하여 在留日本人 高田密藏(和歌山縣 平民)의 家宅을 砲擊하였다. 當時 同家에는 家族 二名 外 投宿 日人 三名이 있었다. 家主 密藏은 砲聲을 듣고 燈火를 携帶 屋外로 出하였던 바 이 瞬間 再次의 砲擊으로 左胸部을 貫通 旣死를 遂하였다. 따라서 同宿者 及 家族은 僅히 몸으로써 免하였으므로써 賊徒는 그 隙에 乘하여 屋內에 闖入하여 携帶에 便利한 物品은 이를 掠奪하고 他의 財物은 한데 모아 燒却하고 갔다. 損害高 約 六百圓에 及한다.
憲兵 及 巡査는 이 急報를 得하고 卽時 出張 賊跡을 追跡하였으나 얻는 바 없이 歸署하였다.
右 報告(通報)함.

4)『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 의병편 Ⅳ

5. 韓憲警乙 第五一七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五月 七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一. 四月 二十八日 午後 八時頃 羅州郡 竹浦面 竹池(榮山浦 討方 約 二里 半)에 賊 十數名이 來襲 同地 居住 和歌山縣 伊都郡 名倉村大字名倉 高田密莊 三十二年을 殺害하고 現金 二百餘圓 其他 商品 衣類 多濱를 掠奪하고 北方 古幕院 方向으로 逃走하였다 한다. 翌 二十九日 榮山浦 憲兵分隊 憲兵 三名 急行 搜索하였으나 踪跡을 得치 못하였다.

15. 羅秘收 第五六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六月 二十七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川峙猪鹿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歸順者 取扱에 關한 報告
全羅南道 羅州郡 羅州邑內 亭子洞
革鞋製造業
元 暴徒 金正泰 二十三年
前記者에 對하여 昨 二十六日 當 羅州憲兵分遣所에서 歸順 許可한 者 本日 通告에 接하였으므로 玆에 報告함.
追而 歸順者는 昨年 十二月 十五日 暴徒의 强募를 受하고 故 首魁 金泰元의 部下로 入하여 그 卒伍로 行動하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6. 羅秘收 第六〇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七月 十五日
羅州警察分署長
警部 川崎猪鹿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歸順者 取扱에 關한 件 報告
全羅南道 羅州郡 三加面 細洞 居 農 崔成辰 當 三十二年
前記者에 對하여 當 羅州憲兵分遣所에서 本月 十三日 免罪文憑을 執行하고 歸順을 許可한 旨 本日 通報에 接하였다.
右 報告함.
追而 歸順者는 元 暴徒 首魁 趙正仁의 部下로서 暴徒의 强募에 依하여 加擔 本年 一月 八日부터 六日間 暴徒와 行動을 같이 하고 그 卒伍에 있었던 者이라고 한다.

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 : 의병편 Ⅴ

3. 韓憲警乙 第一〇四八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九月 八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榮山浦憲兵分隊 管內 賊徒에 關한 一般槪況

一時 閉塞의 狀을 保持한 暴徒는 이제 農事의 閑散을 利用하여 于玆 再次 各 方面에 나타나 其 氣脈을 通하고 連合動作을 하는데 頗히 敏活 進步한 것과 같으며 또 我의 虛를 乘하여 良民을 裝하고 白晝 短刀類를 懷하고 我 宿舍를 侵入 또는 狙擊의 手段에 依하여 近來 屢次 守備隊를 괴롭히는 事實이 있고 其 徘徊區域과 如함도 元來 一定의 根據地가 없다고 하나 目下 大槪 第三十七管區(順天 樂安 寶城 康津 靈岩 長興 光陽 海南 地方)內는 平穩한 狀態에 있다. 左에 賊徒徘徊 方面 及 守備隊가 損害를 입은 地點 等을 揭記한다.

一. 第三十八 第三十九管區 內 榮山浦 靈岩 月亭場 寶城 鳥致院 筏橋 樂安 順天 光陽에 亘한 線

二. 寶城 福內城 廣川店 同福 玉果 潭陽 長城 社倉 靈光 咸平 古幕院 羅州에 亘한 線

優勢인 賊徒集團地域

三. 榮山浦 東南 約 三里 日封寺 雲興寺 佛興寺를 中心으로 한 其 周圍 約 一里 乃至 三里 南松半溪 同山을 經由 綾州 寶城街道 南北 一帶의 地

羅州 長城 靈光 咸平 古幕院 圈內 三巨里 佛甲山 附近의 山地

目下 徘徊한 賊魁의 比較的 優勢한 것 及 其 部下員數 및 携帶兵器의 種類 槪數 等

四. 賊魁 曺京煥 崔奉先의 二名은 各自 引率部下 約 五, 六十名 三十年式 騎銃 四 同 軍刀 六 其他 火繩銃 人員에 對한 約 三分의 二 携帶, 此等은 羅州 古幕院 咸平 靈光 長城 方面에 亘하여 徘徊하는 者 賊魁 南一 安進의 二名이 引率하는 部下 合計 約 百二, 三十名

賊魁 安濟元 李學士 金奉根의 三名이 引率하는 部下 合計 約 百七十名 三十年式 步兵銃 七 同 騎銃 二 韓國式 四連發銃 及 火繩銃 百餘挺 三十年式 步騎銃彈藥 六百發 四連發銃 及 火繩銃 彈藥 七負 此等은 寶城 樂安 同福 方面에 出沒 中의 것이라 한다.

10. 韓憲警乙 第一〇七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九月 十七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一. 九月 四日 全南 榮山浦 居 日本商人 二名은 同地 西南 三里 潘南市場에 왔다가 歸途 其 附近에서 賊 約 七名과 出會 一名은 無事 一名은 右肩에 銃創을 입었다.

1. 羅警秘收 第八四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十月 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歸順者에 關한 報告

全羅南道 羅州郡 官洞面 平里村 農 姜贊善 當 三十二年

右者 九月 三十日 當羅州憲兵隊에서 歸順을 許可한 旨 本日 同隊의 通牒에 接하였으므로 報告함. 追而 同人은 首魁 趙正仁의 部下였다고 한다.

11. 羅警秘收 第八九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十月 二十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羅州郡 地方의 一進會員 등이 主催가 되어 賊徒의 偵察隊를 만들어 自費로 이에 從事하기로 하고 憲兵隊의 認可를 받았다. 其 行動 注意 中)

憲兵隊에서 暴徒 火賊의 偵察隊 認可에 關한 件

當署 管內에 있어서의 一進會員은 近時 該 會의 頹衰를 우려하고 그 勢力 挽回에 苦慮하고 있었는데 今回 同 會員은 會員 外 數名의 사람과 相議하여 別冊 趣意者 및 規約에 의해 暴徒 火賊의 偵察隊란 것을 組織하고 그 本部를 榮山浦에 設置하여 오로지 憲兵隊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情報는 이를 同隊에 報告하여 分隊長의 指揮에 따라 活動할 것을 聲明하고 同隊長의 認可를 받았다고 하며 咸平邑 靈光邑 등에도 이미 그 支部를 設置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단지 그들 一進會員의 發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榮山浦憲兵分隊長 大原 大尉가 暗暗裡에 慫慂한 듯한 所聞도 있다. 그리고 그 經費는 會員 各自가 私財를 醵出하는 規定이나 隊員은 大槪 無資力하므로 到底히 그 負擔을 견디어낼 것이 아니다. 一說에 의하면 同隊 總務長의 任에 있는 梁在星 金斗鉉 兩人이 全部 負擔할 것이라고도 말하나 事實이 果然 그렇다고 한다면 永續할 可望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大槪는 이름을 同隊에 빌리고 自然 不正行爲로 나가는 것도 保障하기 어려움으로 目下 嚴重 注意 中에 있다.

追而 分課 職名 中 總務局總務長 警務局警務長 等 多少 不穩當한 點도 없지 않으나 憲兵分隊에서 이미 認可를 주었다고 한다.

右 報告함.

全羅南道偵察隊規則 (全)

偵察隊趣旨書

噫 彼暴徒의 蜂起蟻聚는 筆者 不佈로ᄃᆡ 洲洋이 共知언이와 諭而不應ᄒᆞ고 討而不解하야 國權焉墮地ᄒᆞ고 人族焉奴隸ᄒᆞ니 言念及此에 心寒者 一이요 骨冷者 二요 血淚者 三也라 憂國之血誠과 愛國之義務는 不能自已로ᄃᆡ 這量該徒之煽動ᄒᆞ니 坐視滅亡를 指日證明할지라 故로 四五同志가 徒에 鎭壓方針과 族의 治安秩序問題로 意見書를 駐劄榮山浦憲兵分隊長閣下後 右隊를 設立ᄒᆞ고 煽動者를 偵察ᄒᆞ야 討 伐上에 黑白之特色을 認케 홈.

警告

唯我同胞여 擧目詳視ᄒᆞ고 傾耳潛聽ᄒᆞ시압

隆熙 二年 十月分

勅令은 一般 同胞가 頓首拜見ᄒᆞ엿거니와 誤解入參된 人民은 本月 晦內로 自過을 不顧ᄒᆞ고 本隊에 來議ᄒᆞ시면 本隊에셔 媒介되야 軍警官憲에 申請ᄒᆞ야 免罪文憑歸順票(규순표)을 認蒙케ᄒᆞ것삽 歸化을 一體 同歸하면 昨日 匪徒가 今日 良民되야 上以奠國 國權於盤泰之固ᄒᆞ고 下以保種族於競爭之代일진져 一日忙之ᄒᆞ시와 來臨之地必要

注意則

第一節 一般偵察隊事機는 榮山浦駐箚憲兵分隊長閣下 認定한 命令 及 指揮을 承ᄒᆞ야 偵察上에 秘密히 處理홈을 注意일 事

第二節 民事 刑事上에난 切勿交涉處理일 事

第三節 隊員이 直父母兄弟間이라고 偵察上事機로 移轉홈을 不得일 事

總則

隊의 名稱 偵察隊라 稱홈.

隊의 目的 暴徒 鎭壓上에 偵察로 目的홈.

隊의 資格 一進會員으로 使用홈.

隊의 設立 隆熙 二年 十月 一日로 實施홈.

隊의 解散 略 隆熙 三年 三月間으로 定홈.

隊의 特權 暴徒 鎭壓上 討伐할 時에 軍警官憲으로 武器借用홈을 請求홈.

隊의 秘機 偵察隊는 有髮人이 必要홈.

隊의 團體 手無尺杖ᄒᆞ고 水火不避로 盟홈.

隊의 任科 總務局 警務局秘書課 接受課 財源課로 定홈.

隊의 本部 全羅南道 羅州郡 榮山浦로 定홈.

隊의 區別 羅州 綾州 南平 同福 玉果 谷城 長城 咸平 靈光 靈岩 海南 唐津 昌平 潭陽 光陽 順天 長興 寶城 樂安

本部任員定課表

一. 總務長 甲部 一人 乙部 一人

一. 警務長 一人

一. 全權警務委員 一人

一. 特務委員 一人

一. 秘書課 主任 一人

一. 接受課 主任 一人

一. 財源課 主任 一人

一. 表賞課 主任 一人

一. 偵察隊 十人

區別任員定科表

一. 主務長 一人

一. 偵察隊 四人 五人

一. 總務局總務長 甲部 乙部은 諸般偵察事機을 統擔ᄒᆞ야 憲兵隊에 報告 及 告撥을 ᄒᆞ며 各主務長 及 偵察隊을 指揮하야 軍隊行動을 便宜토록 ᄒᆞ고 駐箚憲兵分隊長閣下 及 總督 及 命令件을 注意順ᄒᆞ 處理홈.

但 出張則代理을 定홈.

一. 警務局警務長은 各 主務長의 品行을 巡視ᄒᆞ야 隊規에 犯科가 無토록 警務할 事

一. 秘書課 主任은 秘密한 事機을 擔ᄒᆞ야 總務長의 意見을 贊助할 事

一. 接受課 主任은 諸般 書類를 擔ᄒᆞ야 受付을 處理ᄒᆞ며 隊의 章이 有ᄒᆞᆯ 時난 章을 擔ᄒᆞᆯ 事

一. 財源課 主任은 財源 出納을 擔ᄒᆞ야 總務局 處理를 依ᄒᆞ야 整理ᄒᆞᆯ 事

一. 表賞課 主任은 一般 任員의 特等 勤勞的을 査實ᄒᆞ야 賞詞 與 償與金 出納을 擔ᄒᆞ야 總務長과 警務長의 意見과 一體로 할 事

一. 偵察隊는 總務長의 指揮 及 特務委員의 意見을 依ᄒᆞ야 暴徒의 偵察上에 精神을 潛ᄒᆞ며 軍隊行動을 贊助할 事

但 左肩上에 朱印肉으로 偵字을 書着할 事

犯科而罰則 第三條에 依ᄒᆞ야 照할 事

一. 各 主務長은 該 憲兵所長의 命令 及 指揮을 依ᄒᆞ야 偵察報明이되 暴徒의 行動이 至急한 時에만 該 主任長이 分遣所長에게 口頭告發ᄒᆞ야 鎭壓게 ᄒᆞ고 但 偵察隊 資格은 履歷이 正直ᄒᆞ고 文算이 有餘한 者中 有髮人이 必要홈.

一. 偵察隊本部區別地 諸般 用費額은 各自 辨用이되 各 主務長이 六個月 間 勤勞가 特等한 時에난 本部 財源課에셔 擔給할 事

一. 一般 任員이 偵察上에 特等한 勤勞가 有ᄒᆞᆫ 時난 本部表賞課 主任 及 總務長이 報告于榮山浦憲兵分隊長閣下ᄒᆞ야 賞詞를 支給해야 할 事

一. 暴徒를 捕捉 及 生擒한 境遇에난 急報于榮山浦憲兵分隊長閣下ᄒᆞ야 賞詞 及 償與金을 償與할 事

一. 總務長 以下 一般 任員이 民事 刑事를 干涉한 境遇에난 警務局警務長이 勸告于司法官憲ᄒᆞ야 嚴懲케 할 事

一. 警務長이 每月 二回로 各主務長에게 巡回ᄒᆞ난 旅費난 本部財源課에셔 支拂할 事

一. 各 主務長이 分遣所長의 命令 及 指揮을 違한 時난 自本部警務局全權委員을 派送ᄒᆞ야 罰則 第五條에 照할 事

一. 偵察上에 必要한 結果난 各 新聞上에 公佈할 事

一. 全羅南道 內 暴徒가 一無ᄒᆞ고 人民이 各歸其業ᄒᆞ야 皆願良民時代에난 自本部로 區別主務長이 偵察書類을 合符ᄒᆞ야 憲兵分隊 及 一進會本部로 上送ᄒᆞ고 隊員은 憲兵隊長意見에 依ᄒᆞ야 同時解散할 事

一. 光州 本浦난 自本部로 兼察ᄒᆞ되 全權警務委員이 每月 一次 巡回할 事

一. 古幕院 廣川店 烏城院은 該 區別主務長이 兼視할 事

一. 任員이 斷髮 有髮은 不計ᄒᆞ고 自由心盟을 依ᄒᆞ야 使用할 事

一. 暴徒의 巨魁 及 部下通信者 居住 姓名은 偵察則秘書課에 保存할 事

一. 隊(에)의 誠心으로 贊成ᄒᆞ기 爲ᄒᆞ야 寄付金을 寄付할 時에난 金額은 隊의 基本에 計用ᄒᆞ고 金之多少間에 寄付人 姓名을 廣佈新聞할 事

旅行證明書施行則

一. 偵察上 良民의 黑白을 確認ᄒᆞ기 爲ᄒᆞ야 旅行證明을 自本隊로 製造支給케 ᄒᆞ되 證明의 面積은 左와 如홈.

一. 各 憲兵所 所在地에난 該 區別主務長이 支給케 할 事

一. 旅行人員이 證明을 請求할 時에난 原籍 現住地統戶을 確的히 調査ᄒᆞ야 許給할 事

一. 何許人員ᄒᆞ고 隊의 證明이 無ᄒᆞ면 旅行權을 不得할 事

旅行許證明式

原籍

現住地 道 郡 面 里 統 戶

業

年

右은 自 至 旅行을 證明홈.

隆熙 二年 月 日

憲兵分隊附 偵察隊本部
憲兵分遣所附 偵察隊主務長
注意
五十里 未滿 一日半
百里 往還 二日間 定期에 過ᄒᆞ면 勿施事
二百里 三日半

偵察隊罰則
第一條 隊規에 犯ᄒᆞ면 先以免任ᄒᆞ고 一進會認定한 出會罰則에 照할 事
第二條 隊規를 紊亂케 ᄒᆞ고 非禮之物을 取할 時에난 物의 價格을 計ᄒᆞ야 取財律에 照홈.
第三條 總務長의 指揮 及 分隊의 命令을 違할 時에난 先以免任ᄒᆞ고 越境할 事
第四條 民財을 取ᄒᆞ거나 非常之物을 取ᄒᆞ야 民怨이 有한 時난 窃盜律에 處할 事
第五條 憲兵分隊長의 命令을 違할 時에난 先以免任ᄒᆞ고 嚴懲할 事
第六條 良民을 暴徒라 稱ᄒᆞ야 良民이 軍隊에 捕捉될 境遇에난 誣告律에 照할 事
第七條 各 主務長이 本部請牒을 接ᄒᆞ고 時期에 不參ᄒᆞ난 境遇에난 罰金 十里 五十錢式 計ᄒᆞ야
徵納于財源部할 事
第八條 偵察報告 及 書類을 依規報明이되 時期가 不合ᄒᆞ고 隱而有犯이면 僞造律에 照할 事
第九條 本規例난 自 隆熙 二年 十月 一日로 實施할 事
隆熙 二年 十月 日
本部圖章面積則
榮山浦 憲兵分隊 附偵察隊本部
全羅南道偵察隊本部
秘用 秘牒 時急
隆熙 年 月 日
全羅南道偵察隊規則終

13. 韓憲警乙 第一二五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月 三十一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賊情

全南 羅州郡 內의 賊情

十月 十五日 賊 約 六十이 羅州郡 石泉里에 來襲 日本人을 殺害하였다는 報告에 接하고 木浦憲兵分遣所 上等兵 二 補助員 六은 出張하였던 바 賊은 農事經營者 西見荒太를 銃殺하고 獵銃一 拳銃 一 刀 一 其他雜 品 數點을 奪取 逃走하였다. 屍體는 巡査가 此를 檢證하였다.

10. 韓憲警乙 第一一六三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月 七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榮山浦管區

管區 內 榮山浦 靈岩間 及 羅州 古幕院의 以北 山地에 李大國 曺京煥의 賊徒 百四, 五十名이 徘徊하고 있다.

18. 韓憲警乙 第一二〇二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月 十四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各 管區別 賊徒의 情況은 左와 如하다.

榮山浦管區

前期에 比하여 賊徒의 出沒이 少하다. 本期間 羅州郡 及 務安郡 地方에서 少數의 賊徒가 出沒하였다. 또 北部 靈光郡 地方은 아직 二十名 內外의 賊徒가 出沒하였다.

咸興分隊 管內(咸鏡道 及 江原道 內 歙谷郡)

一. 分隊 管內는 前期間과 大差 없고 靜穩하다. 本期間 四五回의 衝突이 있었으나 顯著한 活動을 보지 못하였다. 賊魁 洪範道 車道善 等의 徒도 其 勢力이 漸次 衰頹하여 歸順者가 續出하기에 至하였다. 歸順者는 我 監視下에 餘念 없이 各自 生業에 就하고 있다.

二. 目下 管內에 出沒하는 賊徒는 많이 殘徒로 오직 食餌에 窮하여 此種의 掠奪에 努力하고 있는 것 같다.

三. 各 管區別 賊徒의 情況은 左와 如하다.

(중략)

榮山浦管區

前期에 比하여 賊徒의 出沒이 少하다. 本期間 羅州郡 及 務安郡 地方에서 少數의 賊徒가 出沒하였다. 또 北部 靈光郡 地方은 아직 二十名 內外의 賊徒가 出沒하였다.

39. 韓暴通 第二二三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月 二十四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二. 全南 榮山浦憲兵分隊에서 組織한 下士 以下의 討伐隊는 十月 二十二日 羅州 北方 四里에서 約 百五十의 賊을 치고 其 十을 殪한 後 銃器 刀 其他 鹵獲品 多數 我 補助員 一名 卽死하였다.

5. 公文

작성일 : 隆熙 二年 十一月 十九日 起案 同日 執行

岩井警視

羅州署長 앞

拜啓 말씀드리자면 一進會員들이 組織한 偵察隊件에 대해 客月 二十六日字로 報告하신 事情도 있고 해서 憲兵隊本部에 內示한 바 右件에 대해 明石憲兵隊長에게 大原憲兵隊長으로부터 提出한 報告書는 別紙 寫本과 같으므로 參考로 回送합니다. 또 爾後의 經過 注意하시기를 바라오며 貴意를 얻고자 합니다.

拜具

삼가 말씀드리자면 全羅南道 偵察隊 組織의 件에 관해 先般 말씀해 주신 위에 別紙 보내주시어 拜見하였는바 本件에 관하여는 아직 何等의 報告(榮山浦分隊長으로부터)가 없고 또 本件과 같은 個人의 團隊的 編組를 官憲에서 認定하는 따위는 穩當하지 않을 뿐 아니라 害가 있는 것으로 思考하므로 이 意味를 加入하여 如何間의 報告를 要求하기로 相議해 두었으므로 그 동안에 어떻든 結末을 알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마음에 품어 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以上은 別紙를 返戾할 兼 간략하오나 書中으로 一應 말씀드려 두오니 諒察하여 주시기 奉願하나이다. 敬具

十一月 十四日 山形 少佐
松井 閣下 侍史
追而 明石隊長은 오는 十七日頃 歸任할 豫定이므로 歸任한 뒤 委曲報告할 것이옵기 添申함.

8. 高秘收 第六四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十一月 二十五日
局長
全南觀察使에게
十一月 十日付 全南觀發 第九九二號로써 免罪文憑 및 監視銘心書 送付의 件 內部大臣 앞으로 請求해 온 바 免罪文憑은 이미 當部에 餘部가 없어 送付할 수 없으므로 旣히 郡守 等으로부터 下付한 權定文憑을 그대로 所持케 하는 外에 道理가 없다. 銘心書는 別封 五十枚를 送付하였으니 最初 下付한 權定銘心書와 同一의 日付로써 交換 下付케 하도록 玆에 通牒함.
全南觀發 第九九二號
報告書
免罪文憑 及 監視銘心書 請求件
現接 管下 光陽郡守 徐相鵬 第一三五號 報告書內開에 道第八二〇號 訓令內槪에 歸順者에게 給與할 免罪文憑 及 監視銘心書는 現方請求于 內部하겠으니 姑竢下回가 可할 事인바 下送한 文憑 及 監視書 各 四枚와 曾前 郡存한 二枚는 旣盡發給하였으며 且 連續 歸順者가 多有하기로 不得已 郡守가 只捺章하여 正式文憑下來後 交換以給할 樣으로 申飭이나 前日梗化者 布喻詔飭後並自首 歸化하니 誠甚多幸한지라 免罪文憑發給이 時急하니 限三十枚 下送하시며 歸順者姓名 及 事由는 爲先別紙에 開列報告等因인바 曾往의 下送한 件은 盡給無餘이고 其外 各郡郡守도 往往히 請求를 하기에 玆에 報告하니
査照 後 免罪文憑과 監視銘心書를 五十枚 頒下하기를 伏望
隆熙 二年 十一月 十日
全羅南道觀察使 申應熙
內部大臣 宋秉畯 閣下

1. 韓憲警乙 第一二五五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一月 二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管內 情況(自 九月 三十日 至 十月 十六日)
(중략)
榮山浦分隊 管內(全羅南道)
一. 管內에 있어서의 賊情은 顯著한 消長을 認定치 않으나 從來 鎭定에 至치 않았었으므로 長城 潭陽 靈光 羅州 綾州 靈岩 長興 寶城 谷城 及 順天郡 地方은 只今 아직 賊의 出沒이 不絕하다. 其他 咸平郡도 不穩한 情態에 있다.
二. 各 管區의 賊情은 左와 如하다.
榮山浦管區
靈光 咸平 羅州郡 地方에는 約 百名으로 成한 賊徒가 出沒하여 我 憲兵과 衝突하였다. 其他는 大槪 平穩하나 아직도 少數의 賊徒가 出沒한다는 情報가 있다.

16. 韓憲警乙 第一三二三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一月 十八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管內 情況(自 十月 十七日 至 同 二十九日)
(중략)
二. 各 管區의 情況은 左와 如하다.
榮山浦分隊 管內(全羅南道)
一. 管內 靈光 羅州 咸平郡 地方에 出沒한 賊은 我 討伐隊의 大打擊을 受하고 四散分離하여 目下 踪跡을 감추었다. 然이나 潭陽 光州 昌平 綾州 康津 寶城 順天 興陽郡 地方에는 아직 賊의 出沒이 頻繁하여 一般으로 平穩의 域에 至치 못하여 日本人의 農事經營者는 非常한 打擊을 受하고 있다.
二. 農民은 一般으로 作物의 收穫 中으로 本年은 豊作이라고 기뻐하고 있다.
三. 各 管區의 情況은 左와 如하다.
(중략)
榮山浦管區
咸平 羅州 靈光郡 地方에서 三, 四名의 賊魁가 集合하여 約 二百五十名의 部下로써 徘徊하였었으므로 三回 大打擊을 與하여 其後 踪跡을 감추었다. 目下 偵察中 其他 地方에 있어서는 少數의 賊徒가 出沒하는데 不過하다.

33. 韓憲警乙 第一三三八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一月 二十八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全南 羅州郡 內에서 憲兵이 賊의 嫌疑者를 逮捕하였다.

十一月 十六日 羅州郡 竹谷(古幕院 北方 約 二十五丁)의 住民 二名이 賊에게 拉去 金 二百圓을 强請當하여 其中 一名은 此의 調金을 爲함이라 稱하고 歸宅 中 行商人을 假裝한 怪異한 韓人 三名이 來泊하였다. 榮山浦憲兵分隊 及 古幕院憲兵分遣所로부터 下士 一 上等兵 三 補助員 十이 出張 賊의 集合地인 同郡 不老峙(古幕院 東北 約 三里)의 山中에 이르러 搜索하였던 바 賊魁 金海山이가 引率하는 約 百五十의 賊은 北方을 向하여 逃走한 後였다. 歸途 竹谷에 이르러 前記의 怪異한 韓人 三을 引致하여 取調 中이다.(以上 三名은 調金의 模樣을 探知키 爲하여 온 者인 것 같다).

11. 韓憲警乙 第一三六六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四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賊魁 沈南一의 敎導長 高堅元(別名 高南太)를 逮捕

十一月 十九日 唐津憲兵分遣所 上等兵 三 補助員 六은 靈岩憲兵分遣所 上等兵 三 補助員 六의 援助를 得하여 全羅南道 靈岩郡 金磨面 寒大洞에서 賊魁 沈南一의 敎導長 高堅元을 逮捕하고 火繩銃 二를 押收하였다.

高堅元의 陳述要領

賊魁 沈南一의 部下 敎導長 高堅元 三十八年

一. 自己는 敎導長으로 部下 二十名을 가졌고 沈南一은 雲谷(長興郡 月亭場의 東北 約 三里半) 方面에 이르렀다. 自己는 部下를 蒐集한 後 出發 豫定이다.

一. 沈南一의 一隊는 羅州 南平 綾州 寶城郡 以南西를 行動區域으로 한다.

一. 沈南一은 部下 百七十名餘를 갖고 있다.

一. 銃器는 三十年式 步兵銃 三 騎兵銃 三(日本兵으로부터 奪取한 것으로 日本兵과 衝突하였

을 時 入手하였다) 千步銃 八 火繩銃 百二十七을 갖고 있다.
一. 彈藥은 鉛은 漁網의 碎 又는 鎭鍮茶碗細工人으로부터 徵收하고 火藥은 床下의 土로써 舊來의 製造方法에 依하여 製造한다. 또 外國人으로부터 買入하는 일도 있다.
一. 部下는 一人에 對하여 一日 葉錢 百式을 給한다. 이 돈은 地方의 富豪로부터 供給시키는 것이다. 食事는 行動 中은 民家로부터 供給시킨다.
一. 行動은 恒常 間道를 往復하므로써 比較的 安全하다. 然이나 오래 義徒에 加入하는 者는 生命에 關한 일이므로써 義團을 脫하여 生業에 復歸하고저 하는 者 甚히 많다. 然이나 如斯한 것을 말하는 者가 있으면 直時 銃殺當하므로 只今은 不得已 首領의 意思에 從하여 行動하고 있는 者 많다.
一. 隣境의 暴徒는 首領만 連絡을 通하고 部下는 關係 없다.
一. 義徒의 目的은 朝鮮國의 權利를 掠奪當하였으므로써 此를 回復하기 爲하여서이다. 然이나 今日에 至하여서는 到底히 目的을 達하기가 不可能하다고 諦念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云云.

12. 韓憲警乙 第一三六七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四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半月 管內의 情況
（自 十月 三十日 至 十一月 十六日）
(중략)
榮山浦分隊 管內(全羅南道)
一. 管內는 아직 平定에 至치 못하였다. 靈光 長城 羅州 咸平郡 地方에 出沒하는 二, 三의 賊魁는 時時로 連合하여 行動하고 良民을 苦勞피며 賊이 物件을 掠奪한다.
近來 其 黨與의 一部는 海南 康津郡 地方에 出沒하는 것으로 認定한다. 이로 因하여 日韓人의 被害가 不尠하다.
二. 各 管區의 情況은 左와 如하다.
(중략)
榮山浦管區
羅州郡 地方에는 아직 百五十名 可量의 賊徒가 出沒하는 일이 있다. 또 務安郡 地方에도 少數의 賊徒가 出沒不絕하다.

20. 韓暴通 第二六二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十一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全南 羅州憲兵分遣所의 下士 以下 三 補助員 五는 十一月 十五日 羅州 北方 約 四里의 地에서 約 八十의 賊을 치고 銃 一 彈藥 若干 陣中日誌 等을 鹵獲하였다.

26. 韓暴通 第二六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十四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全南 榮山浦憲兵分隊의 憲兵 一 補助員 三은 十二月 四日 羅州의 北方 約 六里 靈光郡 朗月山에서 約 六十의 賊을 치고 其 二를 殪하였다.

49. 韓憲警乙 第一四六三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二十六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情 彙報
全南 羅州郡 內의 賊情
十二月 十七日 羅州郡 西部 溪龍里(羅州 西方 約 一里)에 銃器 携帶의 賊 約 六十이 來襲 金品을 强要하여 不得 用文面 方向으로 갔다고 한다. 羅州分遣所 憲兵이 搜索 中.

6)『한국독립운동사』자료 13 : 의병편 Ⅵ

1. 警收 第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一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來襲의 件 報告
鶴橋駐在 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日 午前三時十分 約 十名의 暴徒가 羅州郡 古幕院憲兵分遣所에 來襲하여 交戰 約 三十分에 此를 擊退하였다. 我의 損害로는 憲兵補助員 卽死 二名이 있다.
一. 此報에 接한 鶴橋駐在 巡査는 直時 應援으로 赴하였다. 當署로부터 巡査部長 以下 二名을 急行시켰다.
右 報告함.

5. 羅警秘收 第一〇五五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十二月 三十一日 羅警秘收 第一〇五五號의 一 續報
十二月 二十九日夜 暴徒 三十名이 羅州郡 伊老面 新基村에 襲來하여 同村民 黃道玄을 拉去 銃殺한 件에 對하여 當署로부터 急派한 日·韓巡査 三名은 同 三十一日夕 現場에 到着하였으나 暴徒는 이미 長城郡 方面을 向하여 逃走後로 踪跡을 失하여 同日 午後十一時 歸署하였다.
該暴徒의 首魁는 全海山의 部下 吳某가 引率한 約 三十名의 一團으로 모두 黑衣를 着하고 白布로써 鉢卷을 하고 十五挺의 火繩銃을 携帶하고 있었다 한다.
被害者 黃道玄(四十五歲)은 일찌기 暴徒 金泰元의 部下로 其郡에 入하였던바 金泰元 死後 前記 新基村 自宅에 돌아와 附近 洞面에서 橫行 掠奪을 恣行한 旨 全海山의 들은바 되어 드디어 今回의 被害를 보기에 至하였다고 한다.
右 報告함.

12. 羅警秘發 第一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當署 管內 及 附近 接壤地에 있어서는 過般來 暴徒가 再焰 其被害 并 情報는 그때마다 報

告하였던바 近日 巷間에 傳하는바에 依하면 暴徒는 不日 大擧(六百名이라 하고 或은 八百名이라고도 傳한다)하여 當羅州邑을 襲擊하리라고 揚言하고 있었다고 한다. 元來 虛勢的揚言으로 믿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時節上 民心動搖의 傾向이 없지 아니하므로 當署에서는 綿密 嚴重히 警戒하고 있다.
右 報告함.

13. 羅警秘發 第二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月 二日 電報報告 續報
一月 一日 午前三時 首魁不明의 暴徒 約 一百名(前報 三百名은 誤聞)은 羅州郡 古幕院 憲兵分遣所를 襲擊 暫時 交戰끝에 賊은 多少의 損害를 蒙하고 直時 四散하고 憲兵補助員 二名 卽死한 旨 情報에 接하였으므로써 直時 偵察시켰으나 其 踪跡이 不明인 旨 報告에 接하였다.
該賊은 아마도 曺京煥의 一團일 것이다.
右 報告함.

18. 羅警秘發 第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去一日 古幕院 憲兵分遣所에서 戰死한 憲兵補助員의 屍體를 當 羅州에 護送하여 온 同所 憲兵上等兵 以下 七은 昨五日 午後五時半 古幕院에의 歸途 距 羅州一里弱 侍郎面 文岩里에서 突然 約 五十의 暴徒에게 狙擊되어 補助員 一이 下腹部에 貫通銃創을 受하고 同七時 羅州에 後送되어 왔으나 未久에 絕命하였다. 憲兵의 一行은 該 賊徒를 追擊하였으나 山中에 逃入하여 드디어 其 踪跡을 失하였다 한다.(중략)
三. 榮山浦在留 日本人 中野某는 昨五日 狩獵을 爲하여 前項 侍郎面 文岩里에 이르렀던바 一韓家 溫突內에 暴徒 約 二十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있으므로써 驚愕 直時 逃走時 所持의 二連發獵銃을 떨어뜨렸으나 此를 주을 짬이 없이 그대로 逃歸하였는데 暴徒가 追跡하여 왔으나 多幸히 追及을 免하였다 한다. 아마도 前項記載의 暴徒와 同一한 賊일 것이다.

三. 羅州郡 用文面 虫峰(距 羅州三里)에 暴徒 約 六百名이 塹壕를 設하고 集合하고 있었다는 風說이 있으므로 羅州憲兵分遣所 伍長 以下 十五名이 昨五日 當地發 討伐로 向하였던바 當署로부터도 日巡査 二 韓巡査 一을 同行시켰다.
四.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 在留 日本人으로부터 暴徒來襲의 虞慮가 있는 旨 急訴에 接하였으므로 去四日 日人巡査 二 韓人巡査 一을 同地에 急派하였다.
五. 以上의 狀況으로 頻繁히 被害情報에 接하나 人少 또 暴徒는 不日 大擧 羅州를 襲擊하리라는 風說이 盛하므로써 目下 嚴重警戒中으로 偵察 其他로 出張의 餘裕가 없는 것은 遺憾이다.
右 報告함.

32. 警收 第三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七日
(중략)
羅州 夢灘 方面 出張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一日 午後三時頃 羅州昌鷄洞에 約 三十名의 暴徒가 來襲하여 警戒를 嚴히 하고 食事의 準備를 命하여 喫食하고 夕刻에 至하여 靈岩方面 及 水門方面으로 分하여 去하였다. 그리고 其 半數는 火繩銃을 携帶하였다 한다.

38. 羅警秘發 第五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月 六日 羅警秘發 第四號의 續報
一. 羅州憲兵分遣所 憲兵의 一隊와 共히 羅州郡 用文面 虫峰 附近에 塹壕를 設하여 集合하고 있다는 風說이 있다. 暴徒偵察차 向한 當署 巡査 三名은 同地附近一帶의 地를 偵察하였으나 何等 得한바 없이 昨七日 歸署하였다.
一.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 在留 日本人의 急訴에 依하여 出張시킨 當署 巡査 三名은 何等 得한바 없이 本日 一旦 歸署하였으나 該地方은 大體로 不穩한 狀態에 있어서 保護官吏의 派出을 得치 못하여 二十餘名의 在留民을 疏開하지 않고서는 人心이 恟恟하여 本日 다시 營農者 및 在留民保護를 爲하여 日·韓 巡査 三名을 同地에 派遣하여 두게 되었다.
右 報告함.

46. 羅警秘收 第二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本月 六日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 在留의 日人 中雁丸喜壽가 密偵으로 放한 同郡曲江面永花村居 李判須는 七日 午後七時 同所南倉市場에서 銃器를 携帶한 約 四十五名의 暴徒와 마주쳐서 몹시 毆打當하였으나 겨우 遁歸하였다 한다.

二. 一月 七日 首魁 朴仁守가 引率하는 約 九十名의 暴徒는 各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豆洞面 本村 山中에 來하여 附近의 狀況을 偵察하고 同郡曲江面 方向으로 去하였다고 한다.

三.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를 距한 約 一里半 務安郡 石津面 茶山 及 九山村 等에는 首魁 全海山이 引率하는 一團이(古幕院 憲兵分遣所를 襲擊한 餘黨) 潛伏하고 있다는 風說이 높다.

四. 以上 各方面의 暴徒는 羅州郡 公水面 月尾村 附近에 其根據를 갖고 晝間은 山中에 潛伏 夜間은 一團이 되어 行動하고 있다고 한다.

五. 彼等은 今十一日을 期하여 羅州郡沙浦 及 夢灘浦의 日本人을 襲擊할 것이라고 揚言하고 있다고 한다.

六. 以上의 狀況이므로 本月 八日 羅警秘發 第五號 報告와 如히 當分間 日·韓 巡査 三名을 夢灘浦에 派遣하여 두었다.

右 報告함.

50. 羅警秘收 第二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十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若干 믿을 만한 密偵이 齎來한 情報에 依하면 賊魁 全海山은 本月 五日頃 管內 咸平郡 龍珍山 附近에서 其部下를 解散하고 어디론가 隱遁하였다고 한다. 彼는 解散에 臨하여 部下에게 告하여 曰 余는 若干 생각하는 바가 있다. 暫時 世上을 隱遁하여 幽棲하고 다시 來春을 俟하여 再會를 期할 것이다. 窃히 諸子의 健康과 成功을 빈다 云云. 그런데 部下 二·三의 者는 크게 忿激海山은 部下를 瞞着하고 몸을 온전히 하는 者라 하여 三度 射擊을 加하였으나 艱辛히 逃走를 遂한 爾來 行方不明이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로부터 全海山은 羅州郡 用文面 에서 賊魁 朴民洪과 意見의 衝突로 一場의 爭鬪를

하고 部下 三·四名과 共히 負傷을 受하고 海山은 右臂二個所 右腰部에 一個所의 銃創을 被하고 있다고 한다.
解散한 海山의 部下는 其幕僚였던 吳參奉이란 者가 約四十名을 引率하고 他는 十 或은 二十의 小部隊로 分離되어 各地로 出沒하고 있다고 한다.
右 報告함.

51. 羅警秘收 第二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十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本月 十四日 午後五時 當羅州邑北門內 南興七家에 別紙寫本과 如한 書簡을 步撥便으로 送附하여 온 旨 있다. 南興七은 邑內 屈指의 富豪로 目下 農工銀行의 幹事이다.
近來國步否塞 獸蹄鳥跡 犯我東土 所謂爲臣民道義 就無此心哉 一旦古壬丙義擧 待其國令 亦有各郡守宰助議軍器也 軍費也 不至窘乏之境矣 到此時勢不然 有此心者不然 時運也然也 欲奈何不得已 玆敢仰請持爲補惠大望二
戊申 十二月 十六日
湖南義軍所 海山義軍所 德山
軍用文 二千兩
白木 三百同
草履 五十竹

74. 羅警秘收 第三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十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月 十一日 羅警秘收 第二〇號의 一 續報
一.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 在留의 日本人并 同上營農者 保護次 本月 八日부터 日人巡査 二 韓人巡査 一을 同地에 派遣하여 두었던바 暴徒는 本月 十一日을 期하여 夢灘浦 及 沙浦 在留의 日本人을 一時에 襲擊할 것을 揚言하고 있었으므로 嚴重警戒하고 있었으나 本日까지 何等 異狀없다.

一. 出張中의 日·韓人巡査 三名은 日夜 附近 各方面의 偵察에 奔走하고 있으나 何等 得한바 없다. 要컨대 土民은 後難이 其身에 迫할 것을 두려워 賊徒出沒의 狀況을 告知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此를 庇隱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右 報告함.

77. 羅警秘發 第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十七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本月 十六日 正午頃 暴徒 約 百餘名이 當署部內 羅州郡 馬山面(當署를 去한 南方 約 二里半)에 侵入 該暴徒等의 內에 籾 四十石을 運來 同地 潮海倉(從來부터 財務署에 收納하는 米穀倉庫) 番人 梁有化를 促求 該籾을 同庫에 預置할 것을 强迫하므로 同番人은 不得已 同地收稅囑托員 李台仲에게 通知한 後 戶를 開하고 預入하였으므로 暴徒等은 其場을 退却 他에 進行한 旨 本日 午後四時 當 羅州財務署의 通報에 接하고 當署에서는 直時 日·韓巡査 五名을 偵察로 同地에 出張시켰다.
右 報告함.

92. 羅警秘發 第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月 十七日 羅警秘發 第七號의 續報
一. 本月 十六日 午前十時頃 朴珉珠가 引率하는 約 五十의 暴徒는 羅州郡 水多面(當面을 去한 南方 約 二里半)으로부터 同郡馬山面을 向하여 渡川時 同所航行中의 韓船一隻을 取押 積載의 籾 四十石을 掠奪하고 馬山面潮海倉에 搬入하여 再來의 期限까지 確保하도록 該倉庫看守人에게 嚴命하여 두고 同郡公水面南倉으로 去하였다 한다.
二. 當署 偵察巡査의 一行은 本月 十八日 午前七時 該倉庫에 對하여 調査를 遂한바 庫內의 一方에 籾 四十石이 現存하였으므로 此를 押收하고 安全한 地點인 同郡榮山浦에 搬送하였다. 目下 當署에서 保管하고 一面 被害者 取調中이다.
三. 右 暴徒 等은 本月 十八日 午後二時頃 再次 該倉庫에 來하였지만 同籾은 이미 偵察巡査의

一行이 押收하여 他에 搬送한 後의 事로 暴徒 等은 크게 憤慨한 끝에 羅州郡 水多面 方向으로 去하였다고 한다.
右 報告함.

97. 羅警秘發 第七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月 二十一日 羅警秘發 第七號의 一의 續報
一. 賊魁 朴珉珠가 引率하는 暴徒 一團의 偵察을 爲하여 羅州郡 馬山面에 日·韓 巡査 五名을 派遣한바 該暴徒가 韓船으로부터 籾四十俵를 掠奪하여 同面潮海倉의 財務署所屬 倉庫에 隱積하고 있음을 發見 押收하였음을 報告하였던바 當時 卽 一月 十九日은 또 二名의 日巡査를 增遣하고 押收한 籾 運搬의 傍 附近 警戒中 風體가 奇異한 一韓人의 通行을 認定하였으므로 直時 取押 審問한바 同人은 羅州郡 水多面令村居 金成君(二十七歲)으로 同面焦洞에 潛伏한 賊魁 朴珉珠로부터의 使로서 同郡郁谷面九川村에 潛伏中인 朴珉珠가 先鋒將 李太洙의 許에 書信을 持參하고 其返信을 得하여 歸還의 途中으로 別紙寫와 如한 書管을 携帶하고 있었다. 拿捕한 金成君은 目下 當署에서 取調中 右巡査의 一隊는 李太洙 生擒의 計劃으로 直時 其所在에 對하여 潛伏家屋을 包圍하였으나 不幸히도 드디어 彼를 逸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謹詢日寒甚劇
旅中侍棣體候萬旺仰傃且祝 弟痲疾大發出入末由故未得躬往甚悶悶中軍所 田大路 昇海龍 殿께서 大將所말씀하여서 지착이나 없도록 朴泳根께 하여 달라고 말씀하옵시고 있으면 明日躬往하여 措處之道以此下諒一夜間勿爲驚心何餘在續後不備候
弟 李太洙 拜 二十八日
拜啓 寒砌 益淸祥奉大賀 小生儀 麻病으로 外出도 못하고 躬往도 못하고 殘念이다. 中軍의 田大路 昇海龍 朴泳根으로부터 大將에게 上申하여 遲着無事하게 明日 措處토록 驚勿 餘는 後便에 匆匆
二十八日 李太洙 拜

98. 羅警秘發 第八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一月 十二日 午前三時 管內 靈光郡 陳良面 斗湖村에 銃器를 携帶한 暴徒 約 十名이 來襲하였는데 未久에 約 二十挺의 火繩銃을 携帶한 五十名의 暴徒가 同村에 來하여 最初 來襲한 暴徒를 逮捕하여 茂長郡 方面으로 退却하였다고 한다.
二. 賊魁 全海山은 近來 其 部下를 數隊로 分하여 一隊 約 十二名으로 各隊 모두 羅州 咸平 靈光 務安의 各郡間을 潛行시켜 守備兵 憲兵 巡査 等을 狙擊하고 銃器 彈藥의 奪取에 努力하고 있다. 그리고 全海山은 別途 스스로 四·五十名의 一隊를 引率 各處에 出沒하여 其 分隊를 指揮하고 있었다고 한다.
三. 聯隊本部에서 調査한 捕虜의 言에 依하면 全海山의 部下는 木浦在留의 日本人 某로부터 銃器 彈藥을 買入한 일이 있는 旨 陳述하고 있었다고 한다.
四. 一月 十三日 賊魁 朴民水(朴珉洙인 듯)가 引率한 暴徒 約 五十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居平面 道將谷의 富豪 金成基家에 襲來하여 同人을 拉去할 目的이었으나 逃亡 不在였으므로 이루지 못하고 夜에 同所에서 一泊하고 翌十四日 朝食을 喫하고 同郡 用文面 不老峙를 越하여 어디론가 去하였다 한다 云云.
五. 一月 十五日 咸平郡 葛洞面 店村에 賊 五名이 入來하였다고 한다.
六. 一月 十五日夜 咸平郡 平陵面 元山洞에 暴徒 約 二十名이 來襲하여 同所 崔民甫 金德洪이 飼農한 牛 各 一頭를 掠奪하여 갔다고 한다.
七. 一月 二十日 午後三時頃 賊魁 沈南一 同 朴珉洪이 引率하는 暴徒 約 百五十名이 羅州郡 水多面 草洞에 來하여 酒食을 恣行하고 金錢을 强徵하고 去하였다고 한다.
右 報告함.

103. 警收 第二七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七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出沒의 件 報告
鶴橋駐在 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十二日 羅州郡 島山面(沙浦를 距한 東南方 約 二十町) 池乃村에 火繩銃 十一挺을 携帶한 約 十七名의 匪徒가 來하여 宿泊하고 翌十三日 午後二時 羅州 方面으로 出發하였다. 또

沙浦在留民 岡部伊太郎의 言에 依하면 務安郡 及 羅州郡의 各 方面에 出沒 匪徒는 沙浦를 距한 約 一里 榮山江 下流에 있는「지키스」의 渡船場을 往復 氣脈을 通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104. 羅警秘發 第七號의 三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七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月 二十三日 羅警秘發 第七號의 二 續報

一. 賊魁 朴珉洙가 引率하는 暴徒의 一團은 韓船에 搭載한 籾 四十俵를 掠奪하고 羅州郡 馬山面 潮海倉의 財務署 所屬 倉庫에 隱積하고 있었음을 發見하고 當署의 손에서 押收한 旨 今回 該 籾의 被害者는 羅州郡 伏岩面 居 金明五 金仁權 兩人인 것이 判明되어 昨二十六日 現品을 還給하였다.

右 報告함.

105. 全南警秘發 第一五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八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鎭撫策에 對한 意思 具申

本道內의 暴徒는 屢屢히 報告한 바와 如히 光武十一年 北部에 蜂起한 以來 漸次 其 出沒 區域이 增大하여 昨隆熙 二年에 至하여서는 거의 全道에 彌蔓하여 近來는 莞島 珍島와 如한 島嶼에까지 出沒하기에 至하였다.

그런데 現今의 警察配置 守備隊 及 憲兵隊의 配備에 있어서는 匪徒의 橫行出沒이 甚히 巧妙하여 恒常 飯上의 蠅을 拂함과 같이 아직 遽히 此를 撲滅掃蕩할 수 없는 憾이 있다. 完全한 保護의 實을 擧할 수 없는 感이 있다. 良民으로 하여금 洽足히 王化에 沾케 할 수 없는 虞가 있다. 如斯함은 國家政策上 或은 策을 得한 것이 아님을 두려워한다. 特히 現今 出沒하는 暴徒는 全然 政治的 主義를 가진 者만이 아니다. 所謂 火賊 其他 衣食에 窮한 浮浪의 徒로 名을 義兵에 藉하고 良民을 迫害하여 金品을 掠奪하므로써 目的을 삼는 者가 있다. 往往 良民을 拉去하여 굳이 其徒에 加擔시키는 者가 있다. 此等 山賊的 匪類는 單純히 威壓만으로써 此를 鎭撫하기는 到底히 容易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勞多하고 功은 도리어 少한 感이있다.

萬若에 彼等을 驅하여 直時 良民으로 化케 함에는 從來의 經驗上 到底히 消極的 方針만으로서 目的을 達할 수 없다. 一面 彼等에게 衣食의 途를 授하고 漸次 正業에 就하는 良心을 喚起하며 또 警察上 戶口의 實査를 勵行하여 住民의 良否를 鑑別하여 匪徒에게 通하는 者와 眞正한 良民과를 視察 識別하여 適當한 方法을 講究하여 漸次 此를 誘導 感化시킨다면 頗히 効果가 있으리라고 思料한다. 그리고 彼等에게 衣食의 途를 授하는 方法은 當分間 다른 良法이 없다고 하겠으나 目下 韓國 到處에 最不便을 感하는 것은 交通機關의 一인 道路의 不完全에 있다. 通信機關의 不備에 在하여 只今 彼等 下層民에 對하여 收入을 得케 하는 一策으로서 國費로서 土工을 이르켜 于先 本道로써 말하면 暴徒가 가장 猖獗하는 光州를 中心으로 하여 潭陽으로부터 全羅北道 淳昌 任實을 經由 全州에 通하는 國道를 開通하고 또 一方은 光州로부터 和順 同福을 經由 順天에 至하여 慶尙南道 晋州로 通하는 國道를 開하고 此幹線에 伴하여 各郡間의 道路는 昨年 本道에서 觀察使의 訓令으로 郡道를 幅 二間으로 擴張修築케 한 것과 如히 地方의 經營으로 此를 實施시켜 其間 橋梁 又는 山路 等 器具도 없고 또 其 方法을 모르는 韓人만의 힘으로 到底히 適當하게 此를 開鑿 交通의 便을 開할 수 없는 難工事에 對하여는 國庫의 補助를 바라기로 하고 此를 實行하면 各 地方 共히 相當히 勞動者에게 收入을 得케 하여 自然 地方財界의 沾과 共히 其 發展을 促하고 또 一面 浮浪遊食의 徒로 하여금 就케 할 수 있을 것으로 漸次 匪徒에 投身함과 같은 惡徒를 化하여 良民으로 하는 方法도 講究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道路交通의 便을 開하면 따라서 通信의 便도 得할 것이고 一面 軍隊 警察 等의 討伐行動에 있어서도 크게 便利를 得하고 또 一般의 交通上 頗히 便益이 클 것은 言을 俟치 아니한다. 그리하여 一面 助長行政事務와 相俟하여 警察의 保護도 自然 實行의 時期에 入함을 得할 것이고 그 위에 軍隊에 있어서는 不逞의 徒에 對하여 痛劇한 威力을 加하여 恩威並行하는 方法을 取하면 兩兩相俟하여 오히려 効果가 클 것이라고 思料한다.

그러나 此의 實行에 就하려는 相當한 國庫의 支出을 바라지 않으면 안된다. 政府에 있어서는 各各 豫定의 計劃이 있을 것으로 믿으나 如何튼 全國中 國庫의 收入이 最多額이 될 本道와 如함은 暴徒로 因하여 恒常 蹂躪되어 國庫의 未收入欠損額이 가장 많다고 듣는다.

그러면 財政의 保護는 勿論 一般의 保護政策上 于先 匪徒가 最猖獗하는 本道에 此를 實行하여 其 効果를 試驗하는 것도 可할 것이고 假令 匪徒의 鎭撫上 効果를 顯著케 함도 國家의 施設上 決코 不得策이 아닐 것으로 믿는 바이다.

本件 國道開鑿案은 아직 具體的으로 線路의 實査 豫算 其他 詳細한 點은 調査한 바 없다고 하겠으나 大體에 있어서 現今 匪徒의 狀態에 徵하여 將來의 利害를 生覺하여 速히 道路開通의 有望함을 믿고 意見具申과 共히 多幸히 採用의 光榮을 得한다면 邦家를 爲하여 幸甚의 至極이라고 生覺한다.

追而 度支部에서도 匪徒에 對한 積極的 鎭撫策에 對하여 當財務官의 意見을 徵來한 旨로서 同官으로부터 本職에게 協議한바 있었다. 本職은 本件 道路開鑿案으로써 最適當한 것으로 思料한다는 旨를 述한바 同官에 있어서도 此에 贊成하고 同樣의 意見을 度支部를 向하여 具具할 豫定이므로 參考로 附記한다.

109. 高秘收 第四六〇號의 三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二十九日

局長

副統監(佐竹) 石塚參與官

度支部次官 大將 憲兵

隊長 內部大臣 同次官

羅州警察署長 報告

本月 十六日 首魁 朴珉珠가 引率하는 暴徒 約 五十名은 羅州郡 水多面에서 偶然 同地 河水를 航行中 一韓船을 取押 積載한 籾四十石을 掠奪하고 同郡馬山面潮海倉庫(從來財務署의 收納米格納庫)에 搬入하고 番人 梁有化에게 保管을 命한 것을 操節하고 直時 巡査를 派遣하여 此를 押收하고 安全을 圖謀하기 爲하여 榮山浦에 搬出保管하고 一面 被害先을 搜査中이다. 右 巡査 等의 一隊는 附近警戒中 怪異한 擧動의 通行人을 誰何하여 朴珉珠의 書面을 齎來한 使者를 發見하고 其自白에 依하여 朴珉珠의 潛伏地에 向하였으나 이미 逃走한 後였다고 한다.

右 報告(通報)함.

112. 全南에 있어서의 暴徒 被害 及 其 情況

木浦 日本人商業會議所

明治 四十二年 一月中 全南에 있어서의 暴徒 被害 及 其 狀況

(중략)

一八. 五日 羅州郡 侍郎面 文岩里에서 去一日 古幕院憲兵分遣所를 襲擊當하였을 時 戰死한 憲兵補助員 二名의 屍體를 羅州에 護送한 憲兵上等兵 以下 七名은 歸途 突然 約 五十名의 暴徒에게 狙擊되어 補助員 一名이 卽死하였다. 憲兵은 該暴徒와 交戰하였으나 賊은 山中으로 退却하여 其 踪跡을 失하였다.

一九. 同日 榮山浦在留 中野某는 侍郎面에 狩獵次 이르렀던바 文岩里의 一韓家에 約 二十名의 暴徒가 潛伏하고 있어 此等의 追擊을 受하여 逃走時 二連銃을 떨어뜨려 주을 餘暇없이 겨우 逃走하였다.

二〇. 同日 羅州郡 用文面 虫峰(邑內로부터 三里)에 暴徒 三百餘名이 塹壕를 設하고 集團하고

있다는 報告가 있었다. 羅州로부터 憲兵 十五名 巡査 四名이 討伐次 向하였다.
(중략)
二七. 同日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居 中雁丸壽喜가 密偵으로 使用한 韓人 李判須는 同面南倉市場에서 銃器를 携帶한 約 四十名의 暴徒와 마주쳐 지독히 毆打當하고 衣類를 掠奪當한 後 겨우 逃歸하였다.
二八. 同日 首魁 朴仁守가 引率하는 約 九十名의 暴徒는 各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豆洞面 本村에 來하여 附近의 情況을 偵察하고 同郡曲江面 方面으로 向하였다.
(중략)
四二. 同日 午後四時 羅州憲兵分遣所 上等兵 以下 六名은 羅州郡 用文面 文岩里에서 賊魁 朴民洪이 引率하는 約 十五名의 暴徒와 衝突하여 此를 北方 信傑山 方面으로 潰走시켰다.
(중략)
四七. 同日 羅州郡 鳥山面 池乃村에 火繩銃 十一挺을 携帶한 約 十七名의 暴徒가 來하여 一泊 後 翌十三日 羅州方面으로 去하였다.
(중략)
五二. 同十三日 賊魁 朴民水가 引率하는 暴徒 約 五十名이 各各 携銃하고 羅州 居平面 道收谷의 富豪 金成基家에 襲來 同人을 拉去할 目的이었으나 逃走 不在하였으므로 同夜 同所에서 一泊하고 翌十四日 朝食을 喫하고 同郡用文面不老峙를 넘어 어디론가 去하였다.
(중략)
六九. 十六日 正午頃 暴徒 百餘名이 羅州郡 高山面에 入來 籾 四十石을 運搬하여 와서 同地 潮海倉(財務署에 收納하는 米穀倉庫)의 番人 梁有化를 捉하여 該籾을 同庫에 預置할 것을 强迫 同 番人은 不得已 同地收稅囑托員 李台仲에게 通知하여 上方을 開하고 預入한 暴徒는 其地를 退却 他 方面으로 去하였다.
七〇. 十六日 午後十時頃 同 暴徒는 德安面丹桂里에 나타나 前同樣의 手段으로써 里民에게 領收員의 在否를 詰問하였으나 其 目的을 達치 못하고 어디론가 去하였다.
七一. 十六日 午前十時頃 朴民洪이 引率하는 約 五十餘名의 暴徒는 羅州郡 水多面으로부터 馬山面을 向하여 渡川時 同所航行中인 韓船一隻을 取押 積載의 籾 四十石을 强奪하였다.
(중략)
八三. 二十日 午後三時 賊魁 沈南一 同 朴民洪이 引率하는 約 百五十名의 暴徒가 羅州郡 水多面草洞에 來하여 酒食을 恣行하고 金錢을 强奪하여 갔다.
(중략)
八六. 二十三日 賊魁 全海山은 其 部下를 數隊에 分하여 一隊 約 十二名으로 各隊 모두 羅州 咸平 靈光 務安의 各 郡部를 潛行시켜 守備兵 憲兵 巡査 等을 狙擊하고 銃器 彈藥의 奪取에

努力하고 있다. 그리고 全海山은 別途로 스스로 四·五十名의 一隊를 引率하고 各處에 出沒하여 其 分隊를 指揮하고 있다는 報告에 接하고 此를 偵察中이다. 그래서 羅州警官이 出發하였다.
(중략)
九三. 三十日 午後十二時頃 首魁不明의 暴徒 十七·八名이 各 携銃하고 羅州郡 知良面 江京村에 來하였다. 同村居 全奉述 河致九 兩名을 拉去하였다.

1. 韓暴通 第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一月 四日
韓國駐箚軍 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五. 全南 古幕院憲兵分遣所員은 一月 一日 賊徒 約 百의 來襲을 豫知하고 迎擊 其 三을 殪하고 銃 二를 鹵獲하였다. 我憲兵補助員 二 戰死하였다.

11. 韓暴通 第六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一月 十二日
韓國駐箚軍 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二. 全南 古幕院憲兵分遣所의 上等兵 二 補助員 五는 一月 五日 羅州 西南 約 一里의 地에서 約 四十의 賊을 쳐서 此를 潰亂시키고 追擊中 補助員 一 戰死하였다.

15. 高秘發 第一八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一月 十七日
局長 名
統監(古谷) 副統監(佐竹) 石塚參與官
總理大臣 各部大臣 各部次官 大將(參謀長)
憲兵隊長 南部守備司令官 北部守備司令官
地方局長 警視總監

客年末에 있어서의 暴徒 首魁 其他 別表와 如하며 其 가장 많기는 全羅南道로 賊魁 二十五人 其 部下 一千六百六十名 그 다음은 黃海道 京畿道 全羅北道라 하겠다. 그리고 賊魁는 各道를 通하여 二百人 暴徒의 總數는 八千六百二十二人의 數에 達한다. 然이나 首魁者 中에는 近時 所在不明의 者가 있을 뿐아니라 他首魁에 附屬하여 部下十名 以上을 引率하면서 別個의 行動을 하는 者는 便宜上 此를 首魁로 하여 計上하였으므로써 比較的 多數를 表示하기에 至한 것이다.

右 報告(通報)함.

『賊徒首魁調』

22. 韓暴通 第一五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一月 二十二日

韓國駐箚軍 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앞

通報

(중략)

四. 全南 羅州憲兵分遣所의 上等兵 二 補助員 四는 一月 十一日 同地 西方 約 一里의 地에서 十五의 賊을 潰亂시키고 雜品 若干을 鹵獲하였다.

3. 羅警秘收 第九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一月 三十日 午後二時頃 首魁不明의 暴徒 十七·八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知良面 江京村(距榮山浦約 二十町)에 來하여 同村居 全奉述(二十八歲) 河致九(二十二歲) 兩名을 拉去하였다는 情報에 接하였다.

右에 對하여 榮山浦駐在 日·韓 巡査 各 一은 現場으로 急行하였다.

右 報告함.

9. 羅警秘收 第九八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一日 羅警秘收 第九五號의 一의 續報
一. 羅州郡 知良面 江京村에서 全奉述 外 一名을 拉去한 暴徒의 追跡을 爲하여 急行한 榮山浦 駐在 巡査는 賊의 踪跡을 失하고 于先 歸所하였다.
右 報告함.

19. 羅警秘收 第一一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二月 一日 午後十時頃 羅州郡 伏岩面 此內村 領收員 崔珉洪家에 暴徒 八名이 各 銃器를 携帶 來襲하여 同人을 拉去하고 羅州邑 西北方 錦城山 香器發이라고 하는 곳에 引行하였으나 同人은 無財力하여 金錢을 提供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未久에 放還되어 歸宅하였다 한다. 暴徒가 此內村에서 崔珉洪을 逮捕 金錢을 强請하고 있다는 情報에 接한 伏岩面浦上 農場의 雇傭人 日人 三名은 被害者 保護의 目的으로 此內村 附近에 이르러 威嚇的으로 三發의 發砲를 한 바 暴徒는 該銃聲에 놀라 倉皇히 崔珉洪을 拉去한 것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21. 羅警秘收 第一一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二日 羅警秘收 第九八號의 一 續報
一. 一月 三十日夜 暴徒에게 拉去當한 韓人 全奉述은 二月 一日 看守者의 隙을 窺하고 遁歸하였으나 河致九는 尙今 行方不明이다.
一. 全奉述 外 一名을 拉去한 暴徒는 朴士化의 部下로 拉去의 當夜 靈岩郡 金磨面 元適洞에 이르러 朴士化의 一團과 會合하여 翌三十一日 夜行으로 南方 三里 洞名未詳의 村落에 入하여 兩名 모두 看守者를 付하고 溫突內에 拘束되었는데 全奉述은 看守者에 對하여 金 六十圓을 贈賂하도록 密約하고 暴徒 睡眠中을 乘하여 脫走歸宅하였다 한다.

一. 全奉述이 這回 拉去當한 것은 客年 十二月中 當 羅州警察署에서 官印 僞造行使 詐欺取財 事件의 嫌疑者로 金殷植이란 者를 留置한 일이 있었는데 該被告 事件은 全奉述의 告訴에 基한 것이라 하여 金殷植이 其後 暴徒의 群에 投하여 朴士化의 中軍將으로써 此의 復讐를 하려 하는 意思에서 出한 것 같으며 河致九는 財産家이므로 金錢을 得키 爲해서일 것이다.
一. 朴士化는 羅州郡 技竹面 基洞의 者로서 當三十八歲 先鋒將 申某는 京城의 者로서 年齡未詳 中軍將 金殷植은 羅州郡 田旺面 申安里居 四十二歲로 元一進會員이다. 部下 總數 百餘名으로 軍銃 一 火繩銃 二十餘 外에 軍刀 二柄을 所持하고 茶褐色의 服裝을 하고 主로 夜間行動을 하고 있다고 한다. 該賊의 一團은 海南郡 方面으로 向한 形跡이 있다.
右 報告함.

22. 羅警秘發 第一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二月 四日 午後十二時頃 首魁不明의 暴徒(아마도 朴珉洪의 一團일듯) 約 五·六十名이 羅州郡 新村面 投珠洞에 來襲하여(距羅州邑 約 一里) 同所 孫洪奎를 銃殺하고 李云化란 者를 拉去하였다라는 情報에 接하고 日·韓巡査 三名을 急行시켰다.
右 報告함.

24. 羅警秘收 第一一六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五日 羅警秘收 第一一六號의 一 續報
一. 暴徒에게 拉去當한 榮山浦居 河致九는 尙今 歸來치 않았다. 該暴徒는 同人에 對하여 軍用金 四千圓을 强要하고 있다. 致九의 父 成淑은 相當한 資産을 갖고 있고 또 其子의 殺害될 것을 憂慮하여 本月 一日 以後 數回에 金 五百圓을 暴徒에게 贈與 放還을 哀乞하였으나 듣지 않고 被害者는 아직 贈金의 意思가 있는 것 같다.
該暴徒는 目下 靈岩郡 金磨面의 某村 靈岩邑의 東北 約二里의 山中에 集合하고 있었다고 한다.
右 報告함.

25. 羅警秘收 第一一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別紙寫本과 如한 書簡을 本日 午前七時 羅州憲兵分遣所에 遞傳으로써 送付하여 왔다는 旨

右 報告함.

咸平邑居 崔昌默處 去年 十二月 十九日 錢文一萬兩 大炮十柄 納上之意 團團相約矣 其後 錢文一千兩納上郡 餘條 終無消息 故玆以馳通 自憲兵步兵所 捉囚推尋 千萬幸甚 厥澤砲殺可함.

義所 海山書記 李

26. 羅警秘發 第一五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二月 四日 午後十二時頃 首魁 吳參奉이 引率하는 暴徒 約 百二十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新村面 興龍洞(距羅州邑 南方 十五町 斗口渡場) 羅貴宗家에 闖入하여 軍用錢을 納付하라 하고 脅迫 在合錢 十二兩을 掠奪하고 主人 貴宗을 逮捕 同面投珠洞 山中으로 引致하고 同所에서 拉去한 孫洪圭 李云化를 砲殺하고(二月 五日 羅警秘發 第一四號 報告의 分) 其後 本人은 同郡馬山面 山中으로 拉去되었는데 同所에서 朴珉洪의 一團과 合하여 總數 二百餘名이 되었는데 朴은 羅貴宗과 知己의 사이로써 同人의 庇護에 依하여 多幸히 放免되어 昨五日 歸家할 수 있었다.

一. 該賊은 洋銃 數十挺 火繩銃 數百餘挺 軍刀 一을 携帶하고 靈岩郡 金磨面方向으로 去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29. 羅警秘發 第一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七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五日 羅警秘發 第一四號의 續報

一. 羅州郡 新村面 投珠洞에 來襲한 暴徒를 追跡次 向한 當署 巡査의 一隊는 踪跡을 失하고 昨六日夜 歸署하였다.

右 報告함.

31. 韓參通 第三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二月 八日

韓國駐劄軍參謀長 明石元二郎

韓國 內部次官 岡喜七郎 앞

全羅南道 及 全羅北道의 南部는 目下 아직 暴徒의 跋扈가 比較的 많은 地方으로 此를 鎭壓하기 爲하여 南部 守備管區司令官은 同回 同地에 守備兵을 增派할 必要를 認定하고 實施中이므로 全羅北道 南原에는 步兵大隊本部와 一中隊를 增加하여 其 宿舍로 困難을 當하고 있다는 報告에 接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此際 該地方에서 守備兵을 爲하여 相當한 助力을 與하도록 各各 關係官衙에 至急 下命하여 周旋하도록 玆에 依賴한다.

34. 高秘收 第六一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九日

局長 名

副統監(佐竹) 石塚參與官 大將(參謀長)

憲兵隊長 度支部次官 內部次官

光州警察署長 報告

客月 三十一日 午後十二時頃 暴徒 約 二十五名이 光州郡 大枝面居留 營農者 森十內家을 襲來同家를 包圍 襲擊하였다. 森十內는 일찌기 準備의 銃器를 把하고 極力 防戰에 努力하였으나 賊은 頑强히 抵抗하여 드디어 肉迫하여 放火하기에 至하므로써 同人은 家族 四名을 引率하고 血路를 開하여 避難하였으나 其 住宅 倉庫 及 籾 二百石 其他의 物品 總計 價格 一千九百四十餘圓을 燒棄하였다. 此報에 接하자 牧賴警部 以下 數名의 巡査를 討伐차 急行시켰으나 賊의 多數는 이미 逃走 其一部는 羅州郡 平林面의 山中에 潛伏하고 있음을 探知하고 此를 襲擊하여 其一名을 斃하고 일찌기 拉去當한 韓人 一名을 還所하였으나 他 二名을 逸하였다.

右 報告(通報)함.

40. 警收 第六〇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 出沒의 件 報告

海南 駐在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一日 海南郡 鹿山面 泰得村 趙千甲家에 各自 携銃한 約 七名의 匪徒가 來襲하여 白木綿 一疋 麻布 一疋을 掠奪 逃走하였다 한다. 또 同日 午前二時頃 各自 携銃 首魁 不明으로 黑服을 着한 六名의 匪徒가 玉泉 終面 可城洞 居 共鍾英家에 來襲하여 同人을 結縛하고 金錢을 强請하였으나 所持하지 않아서 鷄 二羽 及「마시구」一 草鞋 二足을 掠奪한 後 未明에 比谷面 方向으로 逃走하였다 한다.

靈岩 駐在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三日 午後六時 靈岩郡 北一始面 面長으로부터 匪徒가 來襲하였다는 報告에 接하고 出張 取調한 바 一日 午後十二時頃 北一始面 西堂 居 農 崔仲凡 及 同面 官谷洞 居 農 崔語達 兩家에 黑 及 淺黃의 結襟 筒袖를 着하고 韓銃 六挺 日本刀 一 他는 棍棒을 携帶한 首魁 不明(羅州郡의 者라고 自稱하였다)의 匪徒 約 十五名이 來襲하여 家人을 毆打한 後 兩家 主人 崔仲凡 及 崔語達을 拉去하고 東北方 元井面 方面을 向하여 逃走中 崔仲凡은 山中에서 隙을 乘하여 逃走 山中에 숨어 三日 正午 歸宅하였다. 其 말하는 바에 依하면 銃器購入費로 金 三千兩을 强請하였다 한다.

一. 被害 金品 없다.

一. 拉去된 崔語達은 其 後 羅州郡 及 南平郡을 引廻當하고 五日 午後六時 歸宅하였다. 其 말하는 바에 依하면 一日 官谷洞으로부터 拉去되어 暗夜 山中을 더듬어 羅州郡 東倉里에 到着 散在하여 民家에 宿泊하고 其 翌日 南平郡 新昌里 後의 山中에 達하여 潛伏 日沒에 至하기를 기다려 同里로 내려와 宿泊中 匪徒의 密偵같은 者 一人이 封書를 齎來하자 彼等은 크게 狼狽하여 逃走의 準備中 其 隙을 乘하여 逃歸하였다 한다.

同所에 集合한 匪徒의 數는 六·七十名으를 其中 憲兵 及 韓人 巡査와 如한 服裝을 한 者가 있다. 또 散髮을 한 者는 五·六名으로 銃器는 六十餘挺이 있었다고 한다. 其 逃走의 方向은 不明이다.

右 報告함.

41. 羅警秘收 第一二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二月 五日 羅州郡 馬山面 附近에 暴徒 徘徊의 旨 榮山浦憲兵分隊에서 探知하고 憲兵 五 同 補助員 八 合計 十三名의 一隊는 同夜 馬山面에 出張하여 首魁 及 員數 未詳의 賊과 衝突하여 此를 潰亂시키고 火繩銃 八을 鹵獲한 模樣임.

右 報告함.

43. 羅警秘收 第一二八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一日 羅警秘收 第九五號의 一 及 同月 六日 同第一一六號의 二의 續報

一. 一月 三十日夜 暴徒에게 拉去當한 羅州郡 知良面 江景村 居 河致九는 爾來 靈岩郡 金磨面 及 同郡 元井面 等의 山間部落을 引廻當하고 있었으나 南平駐在의 憲兵補助員이 討伐차 올 것이라는 所聞이 暴徒 間에 傳하여져서 彼等이 倉皇히 逃亡을 準備하고 있는 隙을 乘하여 二月 九日 未明 山路를 더듬어 逃走 無事히 歸家할 수 있었다.

一. 河致九의 言에 依하면 該 暴徒의 一團은 尙今 金磨面 附近을 徘徊하고 있는 것 같다.

右 報告함.

52. 光秘收 第一二二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三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本日 通譯 文明魯의 報告에 依하면

一. 首魁 全海山은 靈光 羅州 光州의 三郡界地點을 根據로 하여 其 附近에 潛伏한 部下는 各種의 風體로 變裝하고 當時 光州郡 古內廂面에 配備된 軍隊를 襲擊하고저 專히 各隊의 機密을

偵察하고 其 目的의 進行에 接近하고 있다고 한다.
一. 首魁 朴珉洪은 羅州郡 鰲山面 及 務安의 海岸 方面을 根據로 하고 全海山과 氣脈을 通하고 同 守備兵을 襲擊하고저 謀議하고 있다는 說이 있다.
金元國은 故 首魁 趙京煥의 部下로 其後를 이어 目下 全海山의 一部隊長으로 各 方面으로부터 金錢 穀類를 掠奪하여 朴珉洪에게 보내고 一面 木浦로부터 武器의 購入을 計劃하고 있다고 한다.
一. 右 三名은 目下 一團이 되어 四方의 財産家에게 金穀을 强請 또는 各 面長 等에게 其 搬送할 것을 命令하였다 한다.
各處의 財産家 等은 後難을 두려워 或은 應諾의 請書를 徵收當하고 或은 金穀을 內密히 寄附하는 者가 있다고 하는 說이 있다.
一. 金元國은 光州郡 德山面 面長에게 穀類를 賣却하여 金貨를 納付하라고 再三 示達하였다고 하는 說이 있다.
右에 對하여 目下 嚴重 搜索中
右 報告함.

62. 全南警秘發 第一八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六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守備隊 配置 變更의 件 報告
今般 守備隊의 配備가 變更되어 本道에는 從來配置의 步兵 第十四聯隊 第二大隊 外(韓國派遣騎兵第一中隊는 從前과 如히 靈光을 守備한다) 只今까지 全羅北道 及 慶尙南道 方面에 配置된 同聯隊 第一大隊의 一部(二個中隊)를 本是 順天 方面에 配置하고 따라서 各 守備隊의 配置가 緻密하게 되어 警察 及 憲兵隊의 配置를 參酌하여 恒常 暴徒가 出沒하는 必要한 地區에 適當한 兵力을 配置하고 守備隊의 實兵力 步兵 六個中隊 騎兵一個中隊와 이루어져 匪徒 鎭壓上 實로 有効의 事라고 認定되었으므로 別紙 警察守備隊及憲兵隊配置一覽表 및 同略圖 添付 參考로 右 報告함.
『警察守備隊及憲兵隊配置一覽表』

70. 警收 第七二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八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 出沒의 件 報告
(중략)
營農者 保護를 爲하여 出張한 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五日 榮山浦 羅州間의 渡船場 搜珠洞(榮山浦로부터 約 八·九町)에 約 六十名의 匪徒가 來襲하여 同地 兩班 羅書房 外 二名을 拉去 東方 約 二里의 山中에서 一名을 銃殺하고 一名은 生死不明이 되었다.
同八日 羅書房은 隙을 乘하여 逃歸하였다고 하나 所聞에 依하면 出金後 放還된 것이라고 한다.
一. 九日夜 羅州 水多面 開口亭의 首魁 朴民洪이가 引率하는 約 六十名의 匪徒는 一泊하고 翌朝飯을 畢할 際 討伐차 出한 憲兵이 前方 約 五·六町의 곳에 나타났음을 보고 狼狽하여 後方 山中으로 潛伏 憲兵의 行動을 監視하고 憲兵은 此를 모르고 他 方面을 向하였음을 認定 正午頃 山脈을 더듬어 北方으로 逃走하였다 한다.
一. 同十日夜 同郡官洞面居(木浦居 靑木十三郎의 小作米 徵收員) 韓人 某家에 約 二十名의 匪徒가 來襲하여 六十餘歲의 老母 及 妻를 毆打하고 籾 十俵를 强奪 長城街道를 向하여 逃走하였다 한다.
一. 右 地方의 面長 及 洞長 其他 富有한 者 等은 거의 匪徒의 害를 蒙치 아니한 者가 없는 狀態로서 其 就職을 厭하고 있었다 한다. 또 竹浦面 水多面과 如함은 家畜을 掠奪當하여 缺乏을 告하고 있는 狀態라고 한다.
一. 以上과 如히 匪徒의 橫行이 猖獗하여 營農者의 小作米徵收에 多大한 影響을 끼치고 또 日本人이 木浦 或은 榮山浦에 退却한 것을 小作人 等은 小作米徵收의 權을 放棄하고 去한 것으로 誤認하고 小作米에 充當할 것을 賣却한 者가 있다. 그리하여 欠橫이 많은 模樣이다.
一. 昨年 十一月中 首魁 沈南一과 分離하여 一旗幟를 揭揚한 朴民洪은 當時 六十名의 黨類를 갖고 郡內 各處를 橫行하므로 郡守는 크게 此를 두려워하며 資産을 가진 者는 恟恟하여 避難의 準備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窮民은 續續 彼等의 群에 入하려고 하는 傾向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右 報告함.

71. 羅警秘收 第一四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二月 十七日 午前六時頃 岡山縣 川上郡 成和町 平民 當時 羅州郡 榮山浦在留 農 宮本喜三郎(明治 九年 四月生)이 羅州郡 田旺面 東村(距榮山浦 約 一里)에 單獨狩獵으로 이르러 二名의 火賊이 出來하여 喜三郎이 池畔에 놓아 둔 獵銃을 奪取 또 軍刀로써 喜三郎의 頭部를 斬傷 右顱頂部에 負傷을 시켰다. 被害者 喜三郎은 目下 榮山浦에서 治療中
一. 被害者 喜三郎은 最初 前記 東村 池中에서 鴨의 떠있음을 認定하고 此를 向하여 發砲하였던바 一羽의 鴨을 쏘아서 獵銃은 池畔에 두고 池中에 들어갔던바 忽然 後方으로부터 지게를 負한 一韓人이 該獵銃을 掠奪 逃走하려 하므로써 被害者는 此를 取返코저 하였던바 附近으로부터 또 一人의 韓人이 出現 周衣下로부터 憲兵 又는 騎兵의 佩用한 것과 如한 軍刀를 拔하여 被害者의 頭部를 向하여 찔러 被害者는 此로 因하여 右顱頂部에 長五仙米突 深 骨膜에 達하는 創傷을 蒙하였으므로 그대로 現場을 逃走하여 正午頃 겨우 歸宅하여 直時 憲兵分隊에 通告하여 同隊로부터는 卽時 憲兵 及 補助員 等이 現場에 急行하였다는 情報에 接하였다.
被害者의 創傷은 生命에 關함과 如한 일은 없다.
右 報告함.

72. 羅警秘收 第一四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十一日 羅警秘收 第一二八號의 一 續報
一. 일찌기 暴徒에게 拉去되어 夜走歸家한 羅州郡 知良面 江京村 河致九의 居宅 뒷편에 本月 十四日夜 別紙寫本과 如한 通文을 割竹에 挾하여 두었다 한다.
右 報告함.
通寄書
除煩言하고 日前 軍中捉來時에 河議官은 四千圓 納俜標요 全奉述은 二千圓 納俜標를 한 次內 一百圓 納上하고 零條納俜次로 期限한바 兩人이 다 逃走하였으니 逃避하는 일만 上策으로 알고 納俜錢을 不納이면 네 두 놈 모함하여 殺害할터이니 그리 알라. 다른 일로 모함함이 아니라 若不然則 榮山浦憲兵大將前에 步撥하기를 네 두 놈이 洋銃器 十柄을 補助하였다 말할 터이니 그리 알아. 措置하라 그리하다가도 殺害치 못하면 何月何日이라도 更捉卽時에는 軍律을

免치 못할 터이오 家內도 亦難扶持할터이니 그리 알아 措處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此 國事에 補助하는 일은 後世得名하리라 以此諒之爲要

湖南第一義所 財務長 安 己酉 正月 二十三日

通知書

除煩言한다. 前日 軍中에 被捉時 河議官은 四千圓 全奉述은 二千圓 出金의 請書를 差出할 際于先 一百圓을 納付하고 殘餘는 期間을 定하고 兩人이 逃走하였다. 汝等 逃避를 上策으로 하고 殘餘를 不納하면 二人 共히 殺害하겠다. 其手段은 他가 아니다. 卽 榮山浦憲兵隊長에게 對하여 汝等이 洋銃 數十挺을 所持하였음을 告하는 데 있다. 此手段을 遂行치 못하는데 있어서는 直時 捕捉하여 軍律에 處할 것이다. 그러할 때는 家族 亦 扶持하기 어려울 것이다. 잘 생각하여 汝等의 意에 從하여 國事를 補助하는 것은 後世에 名을 得할 것이다. 此를 諒하라.

湖南第一義所 財務長 安 己酉 一月 二十三日

82. 羅警秘收 第一八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首魁 及 員數不明의 暴徒가 昨二十日 午後九時 羅州郡 知良面 江京村(距榮山浦 東南方 約十八町) 居留 農事經營者 今村德次 及 綿貫英吉家에 來襲하여 屋外로부터 一齊射擊을 하고 逃走하였다 한다.

一. 榮山浦駐在 巡査 及 同所 憲兵分隊는 이 急報에 接하고 直時 現場에 急行하였으나 賊은 이미 逃走하였으므로 追跡中이라고 한다.

一. 現場의 狀況으로 본다면 賊은 約 三十으로 二手로 分하여 來襲한 것 같고 被害는 없다고 한다.

右 報告함.

93. 羅警秘發 第一八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二十一日 羅警秘發 第一八號의 續報

一. 二月 二十日 羅州郡 知良面 江景村 居住 日人 今村德次 及 綿貫英吉家에 暴徒가 來襲하였다는 報告에 接하고 急行한 警察官 及 憲兵 一行은 賊의 踪跡을 失하고 去二十一日 午後六時 歸所하였다.
右 報告함.

97. 羅警秘收 第一六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四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三月 十七日夜 羅州郡 曲江面 松林 朴門中 墓家留宅에 朴珉洪이 引率하는 暴徒 百餘名이 一泊하고 翌十八日 同郡吾山面 方向으로 逃走하였다 한다.
二. 二月 十七日 午後五時頃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居 日本人中 雁丸喜壽의 雇 韓人 李岩文은 同郡公水面南倉 附近에서 數十名의 暴徒에게 被逮 亂打當한 後 上着用周衣를 强奪當하였다고 한다.
三. 羅州郡 豆洞面 吾山面 曲江面 馬山面 公水面 及 務安郡 石津面 附近은 暴徒가 恒常 出沒한다는 所聞이 있어 不穩의 狀態에 있다.
右 報告함.

98. 羅警秘發 第二〇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四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二十四日 電報 續報
一. 二月 二十三日 午後十一時 羅州郡 新村面 上眞牧浦(距榮山浦 約 十町)에 首魁不明의 暴徒 約 二十名이 各銃器를 携帶하고 來襲 同所 酒幕 主人 金國烈(三十九歲)을 捕縛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榮山浦 巡査 駐在所 勤務 韓人 巡査 崔德順 金顯奎 兩名이 視察을 爲하여 左所에 이르렀던바 崔巡査 亦是 該賊에게 捕捉되어 行方不明이 되었다. 그리하여 當署로부터는 今末 明日 韓巡査 十名을 急派하여 該賊을 追跡시켰다.
一. 崔 · 金 兩 巡査가 同所에 이르렀을때 後方으로부터 呼止하는 者가 있으므로 何心없이 머물렀던바 其中二名의 賊은 約 十米突의 距離에 來하여 各 火繩銃을 내대고 發砲하여 兩 巡査

는 意外에 놀라 一散 逃走하였는데 金巡査는 겨우 追及을 免하고 歸所하였으나 崔巡査는 行方不明이 되어 아마도 賊手에 逮捕되었을 것이다.
此報告에 接한 榮山浦駐在 日人 巡査는 直時 現場에 驅馳하였으나 이미 賊影을 認定할 수 없었다. 또 崔巡査의 死屍 及 流血을 認定할 수 없으므로 必是 拉去된 것이라고 하겠다. 崔巡査는 普通 韓衣위에 巡査用 黑絨의 外套을 着하고 있었다. 또 同人은 아직 斷髮하지 않고 있다.
右 報告함.

109. 羅警秘發 第二一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二月 二十四日 羅警秘發 第二〇號 續報
一. 羅州郡 新村面 上眞牧浦에서 行方不明이 된 當署 巡査 崔德順은 同所에서 約 四十名의 暴徒에게 拿捕되었던 바 巡査라는 것을 覺知當하면 殺害를 免치 못하리라고 思惟하여 闇에 乘하여 所持의 手帖 捕繩 警笛 等을 路傍에 放棄하고 南平邑의 南方距 榮山浦 約 二里의 地點까지 拉去되었을 際 看守者의 隙을 窺하고 逃走하여 二十四日 午後 無事 榮山浦로 歸着하였다.
一. 該 暴徒의 首魁는 全(全海山의 部下인듯)이라 稱하고 또 다른 首魁같은 者 一名이 同行하고 있었다고 한다. 賊徒中 三十名은 銃器를 携帶하고 其中 二挺은 洋式 獵銃으로 首魁 二名은 軍刀를 携帶하고 있었다고 한다.
一. 當署로부터 急派한 巡査의 一隊는 今夜 潘南市場 附近 一帶의 地를 偵察할 豫定
右 報告함.

116. 羅警秘發 第二三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今朝電報 報告와 如히 小官은 日·韓 巡査 憲兵 合同의 一隊를 引率 正午 南平郡 竹谷面 船洞에 到着한바 首魁 朴士化 朴珉洪 姜武京이 引率하는 約 二百五十의 暴徒가 同洞 背後의 德龍山이라고 稱하는 高地 陣地를 構築하고 있었으므로 直時 射擊을 加하였으나 賊은 天險의 地利와 多數를 믿고 頗히 頑强히 抵抗하였는데 對戰 三時間 後 드디어 南方 靈岩郡 方向으로 潰

亂시켰다. 此戰鬪에서 賊의 死 七 傷者 未詳 捕虜 二(其中 一名은 首魁 朴珉洪의 弟인 財務長 朴汝洪으로 右腋下로부터 右頸部에 貫通한 銃創을 受하고 있었던바에 따라 現場에서 一旦 訊同을 하였던바 別紙 調書와 如히 申立하였는데 重傷으로 漸次 衰弱에 陷하여 드디어 絕息하였다) 鹵獲品 雜囊 三 雜品 數點 我에 損害 없다. 射耗彈 三百三十四

一. 當署 濱崎 巡査部長 以下 十名의 日·韓人 巡査가 昨二十五日 賊과 衝突한 南平郡 竹谷面(前回 郁谷面이라 報告한 것은 誤)과 德谷面의 中間에 屹立한 德龍山에는 暴徒가 아직 陣地를 構築 集團의 模樣이 있음에 依하여 小官은 二十六日 日巡査 十 韓巡査 五를 引率하고 羅州憲兵分遣所 勤務 上等兵 三 補助員 二와 共히 討伐을 爲하여 急行 德龍山(距 羅州 三里强)을 距한 約千米突의 小丘에 達했을때 賊의 多數는 同山의 峻嶮하고 海面을 拔하기 約 千五百尺의 高地임을 믿고 其頂上에 整列하여 我隊를 向하여 頻繁히 發砲하고 또 時時로 大砲를 發射하여 頑强히 抵抗하였으므로 我隊는 直時 散開하고 暫時 應射하였으나 頗히 不利한 位置에 있을 뿐만 아니라 山麓의 竹谷面船洞 德谷面鐵川里等의 部落에는 아직 若干의 暴徒가 潛伏하여 我隊의 接近에 備하고 있는듯이 認定되므로 試驗삼아 此에 向하여 數發을 送彈하였던바 果然 約五·六十名의 暴徒가 潛伏하고 있어서 三三五五 德龍山을 向하여 逃走를 開始하였다. 따라서 我隊는 此瞬間 一齊射擊을 加하였던바 때마침 船洞의 一端 民家로부터 發火함을 認定하였는데 該出火은 潛伏中의 暴徒 全部가 逃走時에 其退路를 감추기 爲하여 點火한 것이라고 想像되므로써 我隊는 該部落을 向하여 突擊으로 옮겨 드디어 同村을 占領하였다.

此間 光州守備步兵 第七中隊 進中尉는 約 十名의 兵을 引率하고 賊의 潰走하는 方向 卽 我隊의 右翼을 壓하고 또 同 中隊의 主力은 賊의 背後 卽 德龍山의 南麓으로부터 連하여 射擊을 與하면서 南方 靈岩郡 方向으로 追擊하였다.

我隊는 賊의 陣地인 德龍山 附近 一帶의 地를 掃蕩하여 日沒에 臨迫하였으므로 午後六時 一同은 凱旋의 途에 就하였다.

右 報告함.

捕虜訊問調書

羅州郡 羅州邑 南門外居 朴珉洪 弟 朴汝洪(當 三十歲)

問 汝는 賊魁 朴珉洪의 弟인가

答 그렇다.

問 暴徒가 된 것은 언제인가

答 나는 義兵이 될 生覺은 없었으나 實兄 珉洪이가 義兵의 首魁가 되어 있어서 오래 歸家치 아니하여 한 番 面會하고저 生覺하고 尋訪하여 온 爾來 會計役이 되어 財務長으로 同行하고 있었다.

問 언제부터 同行하였는가
答 近來부터이다.
問 暴徒의 群에 入한 以來 掠奪 또는 戰鬪 等의 大略經歷을 말하라.
答 나는 近來 同行하였을 뿐아니라 會計인 關係로 顯著히 말할 것이 없다.
問 今回의 集團 首魁는 누구누구인가
答 朴士化 朴珉洪 姜大將(名 不知)이다.
問 總數 몇 名인가
答 詳細하게는 모른다. 二百餘名일 것이다.
問 銃器는 얼마 可量 되는가
答 詳細히 모른다. 大抵 所持하고 있었다.
以上 記錄한다.
隆熙 三年 二月 二十六日 午後六時 於南平郡 竹谷面 船洞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捕虜訊問調書
於南平郡 竹谷面 船洞居 韓世煥(二十八歲)
問 汝는 何時 暴徒의 群에 入하였는가
答 暴徒의 群에 入한 것은 아니다. 朴士化 朴珉洪 姜哥等의 大將이 二月 二十四日 自村에 來한 以來 其 小使로 勤務하였을 따름이다.
問 汝는 平素 무슨 營業을 하였는가
答 網巾業이다.
問 暴徒의 總數는 몇名이었는가
答 詳細히 모른다.
問 二十五日 巡査隊가 暴徒와 交戰한 것을 알고 있었는가
答 알고 있었다.
問 信實한 申立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不利할 것이다.
答 아는것은 申立하겠으나 모르는 것은 申立할 수 없다.
右 錄記한다.
隆熙 三年 二月 二十六日 於南平郡 竹谷面 船洞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二月 廿六日 德龍山 戰鬪略圖』

126. 羅警秘發 第二五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二月 二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管內 羅州郡 細花面東倉市場 酒幕店頭에 別紙寫本과 如한 檄文이 貼付되어 있음을 發見하였으므로 參考로 報告한다.

廣告

天生萬民에 各受其職하니 士農工商이 是也라 惟我同胞는 勿以時搔로 等棄天職하고 士者士焉하여 以明忠孝하고 農者農焉하여 以資生活하며 工者工焉하여 以贍器用하고 商者商焉하여 以通有無면 民固國寧을 可指日而見이니 勤勤孜孜하여 以安其職하라 將以靡才로 倡義起兵者는 先報國母之讎하고 又洗君父之辱이니 與我同志者는 勠力共討하고 有志未能者는 率意保後하라 嗟嗟補兵아 生此王國하여 奚助倭人고 雖緣生計나 義則不可하니 與言及此에 淚不可禁이라 書曰人孰無過리오 改則尤善이라 하니 倘不知此而意不歸本耶아 明受此言하여 無失天性하라 大抵 島夷는 徹天之讎요 坼地之仇라 夷頭는 何銕이랴 不受此快劍이며 夷身은 何石이랴 不受吾明砲리오 今日不行이면 明日行之하고 今年不誅면 明年誅之키로 誓死從事하노라 義不悛前習하고 一向侵瀆이면 自洞中으로 指名馳報于義所하여 痛斷其根하여 以杜後弊하고 閭里村落에 雖假貸土稅라도 各隨其力하여 報者報하고 捧者捧하여 分明與受에 勿動人心하라 愚夫蠢婦와 樵童牧竪라도 皆莫非王民이니 一遵我報讎之心하여 勿惰勿荒하고 熱心血誠을 小不離身하라 今當把筆에 不知所告하노라.

己酉 二月 日 湖南壯義所 大將 朴玟洪

127. 全南에 있어서의 暴徒被害 及 其情況

작성일 :

木浦日本人商業會議所

一. 二月 一日 午後十時頃 羅州郡 伏岩面 此內村 領收員 崔珉洪家에 暴徒 八名이 各 銃器를 携帶 來襲하여 同人을 拉去하였다.

(중략)

一三. 四日 午後十二時頃 吳參奉이 引率하는 暴徒 約百二十名은 各 携銃 羅州郡 新村面 興龍洞 斗口渡場 羅貴宗家에 圍入하여 軍用錢을 納付하라고 脅迫하고 所持金 十二兩을 掠奪하고 主人 貴宗을 逮捕하여 同面投珠洞 山中으로 引致하고 同所에서 拉去한 孫洪圭 李玉化를 砲殺

한 後 本人은 同郡馬山面 山中으로 拉去되었는데 同所에서 朴民珙의 一團과 合하여 總數 二百餘名이 되었는데 朴은 羅貴宗과 知己의 사이로써 放免되었다.

一四. 四日 午後十二時頃 首魁不明의 暴徒 約 五十餘名이 羅州郡 新村面 投珠洞에 來襲

(중략)

一八. 五日 羅州郡 高山面 附近에 暴徒가 徘徊한다는 報告에 接하고 榮山浦憲兵分隊 十三名이 討伐次 出發 首魁 及 員數 不明의 暴徒와 衝突하여 此를 潰亂시키고 火繩銃 八을 鹵獲하였다.

(중략)

二二. 五日 榮山浦 羅州間의 渡舟場搜珠洞에 約 六十名의 暴徒가 來襲 兩班 羅專方 外 二名을 拉去하고 東方 約 二里의 山中에서 一名을 銃殺하고 一名은 生死不明이 되어 羅는 隙에 乘하여 逃歸하였다.

二三. 六日 午後八時頃 南平 憲兵洞 酒幕 崔其五家에 一名의 賊이 押入 집을 보던 妻某를 잡아 亂打後 金 若干을 强奪하여 갔다.

(중략)

二九. 九日夜 羅州水多面開口亭에 首魁 朴民洪이 引率하는 約 六十名의 暴徒는 一泊하고 翌朝飯을 終할 時 討伐차 出한 憲兵이 前方 約 五·六丁의 곳에 나타났음을 보고 狼狽하여 後方山中으로 潛伏하여 憲兵의 行動을 監視하고 憲兵은 此를 모르고 他方面으로 向하였음을 認定正午頃 山脈을 더듬어 北方으로 去하였다.

(중략)

三二. 十日夜 羅州郡 官洞面 (靑木十三郎의 小作米徵收員) 韓人 某家에 約 三十名의 暴徒가 來하여 六十餘歲의 老母 及 妻를 毆打하고 籾 十俵를 强奪한 後 長城街道를 向하여 去하였다.

(중략)

四六. 十七日 榮山浦 宮本某는 狩獵을 爲하여 羅州郡 田旺面 에 至하였던바 二名의 賊이 나타나 宮本某의 獵銃을 掠奪하고 또 軍刀로써 頭部를 斬하였으나 겨우 逃歸하였다.

(중략)

四九. 十七日夜 羅州郡 曲江面 松林의 朴門中 齋室에 朴珉珙이 引率하는 暴徒 百餘名이 一泊하고 翌十八日 吾山面 方面으로 去하였다.

五〇. 十七日 午後五時 羅州郡 豆洞面 夢灘浦 居 中尻壽喜의 雇傭人인 韓人 李岩文은 公水面南倉 附近에서 數十名의 暴賊에게 被捕 亂打後 着用의 周衣를 强奪當하였다.

(중략)

五八. 二十一日 午後九時 首魁不明 人員未詳의 暴徒가 羅州郡 知良面 江京村 營農者 今村德次郎 及 綿貫英吉家에 來襲 屋外에서 一齊射擊을 하고 어디론가 去하였다.

(중략)

六五. 二十三日 午後十一時 羅州郡 新村面 上眞牧浦에 首魁不明의 暴徒 約 四十名이 各 携銃하고 와서 酒幕主人 金圍烈을 捕縛하고 있을 무렵 羅州署 韓人巡査 二名이 該所에 至하였던바 一名의 巡査는 賊에 依하여 捕縛되고 一名은 겨우 逃亡 歸署하였다.

(중략)

八二. 二十五日 南平郡 竹谷面 船洞에서 首魁 朴民洪 朴士化 姜武京 三名이 引率하는 約 三百名의 暴徒가 集合하는 것을 偵知하고 此를 攻擊하였으나 賊은 天險과 地理를 利用하고 또 多數를 믿고 頑强히 抵抗하여 容易히 解散하려 하지 않고 또 夜暗으로써 不得已 一時 退却하였다. 此戰鬪에서 巡査部長 濱崎喜次馬는 二個所의 盲貫銃傷을 負하였다.

(중략)

八四. 二十六日 南平郡 竹谷面 船洞德龍山에 集合 陣地를 布하고 있는 朴民洪 外 二名의 首魁가 引率하는 二百五十名의 暴徒를 羅州警察署長 古屋警部가 憲兵隊와 協力 正午에 攻擊을 開始하여 交戰 三時間에 드디어 南方 靈光郡 方面으로 潰亂시켰다. 此戰鬪에서 朴民洪의 弟 朴汝洪이 斃死하였다.

(중략)

九八. 二十八日 羅州郡 細花東倉市場에서 暴徒는 檄文을 配付하였다.

(중략)

一一〇. 二十八日 午前三時 羅州郡 曲仁面 曲浦 李明淑家에 暴徒 六名이 來하여 同人을 拉去하고 山中에서 毆打後 放還하였다.

10. 韓暴通 第三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二月 十二日

韓國駐劄軍 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九. 全羅南道

本道의 不穩함은 京畿道 北部 及 黃海道 東南部에 지지 않아 特히 光州 潭陽 長城 羅州 附近은 가장 甚하여 數가 數十 乃至 二百의 群을 이루는 일이 있다. 爾來 守備隊 憲兵 及 警察官의 熱心한 討伐에 依하여 屢屢히 賊徒에게 大打擊을 加하여 首魁中 或은 殪하고 或은 部下를 解散하는 者 있다고 하나 元來 本道는 人氣가 가장 不良함과 衣食의 必要上 全然 盜賊을 中止할 수 없음과의 因하여 首魁를 離脫한 彼等은 小數의 群으로 各處에 陰顯 出沒하여 特히 南海에

島嶼가 많은 것을 利用하여 本道의 討伐이 頻繁하자 海賊으로 變하여 海島를 劫掠하고 海島에 討伐隊를 派遣하면 忽然 本道內로 遁鼠함과 如한 狀態로서 全然 靜穩으로 歸함은 아직 若干의 日字를 要할 것이다

8. 全南警秘收 第三二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日
全羅南道 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討伐 情況 報告
暴徒討伐 出動中의 光州守備隊長으로부터 三月 一日付로써 左의 通報가 있었다.
一. 二月 二十六日 靈岩 東方 三里의 金山附近의 戰場掃除의 結果 首魁 朴珉洪 以下 二十三名을 斃하였다.
二. 靈光方面의 情況은 아직 詳報에 接하지 못하였으나 騎兵隊 及 憲兵 等과 共力 全海山 李大局이 引率하는 賊團에게 大打擊을 與한 것은 事實이다.
三. 榮山江 右岸에는 커다란 賊團이 없는 것 같다. 左岸의 賊團 姜 及 朴士化 等은 長興方面에 逸走한 것 같다. 第七中隊 第八中隊는 本日부터 四日의 豫定으로써 長興方面의 山中을 包圍討伐할 豫定
四. 大隊本部 及 其他의 隊는 三月 二日 務安에 集合하여 四日夕까지에는 靈岩에 集合할 豫定(第七 第八中隊와 共히)
右 報告함.

11. 羅警秘發 第二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別紙寫本과 如한 檄文을 昨一日 當羅州憲兵分遣所에 投入한 者가 있었다.
右 報告함.
檄文
嗚呼 惟我海東雖小 載在鯨魚背上 禮樂文物之燦然 備具侔擬乎中國 故以小中華稱之者 亶以此也 往在龍蛇之叙 小學童子皆傳誦知悉 不可病上貼床 而夫倭一種 隔在東瀛萬里之外 與禽獸無

異 且與我邦爲隣 數被侵漁 天運環循無往不復 不幸挽近以來 厥類蕃殖 如蛇如鬼 犯于我彊 始諉之以通物偵 開關市終生匪茹 弑我坤聖 脅我君上 奪我政令 擅我財賦 變恠無端 究厥罪狀 千斬萬戮 猶可輕底 幸天不欲喪我邦家 義聲四起 行伍井井 聲律凜凜 歃血同盟如諸葛先生鞠躬盡瘁死而後已 金元局等雖不敏 當此倡□ 不勝激忿 與同志壯士 協力同心 倡起義旅 敢不一辭通照于僉士君子乎彼倭之毒痛生靈陷據城池非徒耳 聞卽目擊者也 須願省內有志之士 一心唱動 期圖成功 則國讐可雪矣 彊土可復 區區生爲我臣死 爲我鬼 豈可晏坐 受彼之凌辱乎 語則無窮走艸告槩

己酉二月 日 右敬通于羅州校中

12. 羅警秘發 第二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當羅州郡內에 있어서의 韓人有志 數名은 別紙趣意書에 依하여 左記事項을 處理하고 一般郡民의 福祉를 增進할 目的으로 羅州郡民會라는 것을 組織 客月 二十二日 當署에 届出하였다.

會則은 當署에서 修正케 할 것이므로 追後 進達한다.

右 于先 報告함.

左記

一. 敎育의 普及을 期할 것

一. 實業의 發達을 計할 것

一. 愚民을 勸諭 就善토록 할 것

一. 外交上의 敦厚를 計할 것

右

羅州郡民會所 趣旨書

風潮新拍而湖山이 寂寞하고 晨鍾普警而錦城이 沈酣하여 團會名稱은 雖有萬口同辭나 範世標幟는 未見一種特色이라 如是焉消費歲月에 日日夕陽이 西下로다. 前途悲觀은 剝床而切近하며 後援實力은 塗地而蹉跌하니 自處吾州於一劣度는 固有我責이나 其爲大缺點於全國은 不與人罵라 嗚呼易其요. 全國之民이 皆有希望而湖省之民이 絕無乎아 湖省之民이 皆發思想而錦州之民이 墮落歟아 何獨無之며 何獨墮焉然哉리요. 惟其腦相腕力之不專注故也라 現當文明前進之日하여 團合力이 差遲一步則實質效果가 殿人一步하고 校速一步則寂人一步하리니 豈可片刻逡巡哉아 然則今日同此郡而圓顱方趾之動物이 莫非注意於前進之人也라 聲氣所同과 影響所及에 務

圖團結하여 使家族生活로 移公德於民族하고 家聲保守로 成美業於民聲 즉 國民資格은 固本貞幹之寧을 可養이요. 國際交誼는 熙往穰來之樂을 可享할지니 其文明幸福之可得을 不待知算而屈指而待矣라 吾豈敢自斷而獨裁也리요. 趨諸時宜하며 聞諸理論에 以一言告之하노니 凡我同志는 勉之哉어다.

隆熙 三年 二月 十五日 羅州郡民會 發起人

吳翔學 李源緖 金容圭 羅英集 朴在晳 崔碩謙 朴洲容 李敏璿 金根煥

13. 羅警秘收 第二〇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去二十六日 小官이 引率하는 巡査 憲兵의 一隊와 共히 朴珉洪 朴士化 姜武京 等의 賊團에 打擊을 與한 光州守備隊에 屬하는 靈岩隊는 二十七日 午後五時 靈岩의 東南方 金山에서 朴珉洪이 引率하는 約 七十의 敗殘兵을 攻擊하고 首魁 朴珉洪 以下 二十三을 殪하고 武器 雜品 多數를 鹵獲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37. 羅警秘收 第二一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二月 二十八日 午前三時 羅州郡 曲江面 曲浦 李明叔家에 首魁不明의 暴徒 六名이 襲來하여 同人을 附近 山中으로 拉去 毆打하고 全身 數個所에 打撲傷을 입혔으나 겨우 歸家할 수 있었다고 한다.

被害者는 일찌기 短銃을 所持하고 있었으므로 暴徒는 此를 掠奪코저 하는 目的으로 襲來한 模樣이나 同人은 武器團束法의 施行 當時 此를 日本人에게 賣却하였으므로써 賊은 目的을 達할 수 없었다고 한다.

右 報告함.

52. 全南警秘發 第三八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八日

全羅南道 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今般 別紙諭告 第一號로써 當觀察使로부터 各 郡守 各警察署長 앞으로 暴徒 情況을 急報할 것을 一般一民에게 知悉시키도록 諭達하였으므로 參考로 一部를 送附한다.

諭告 第一號

本道의 暴徒는 全國中 最跋扈 橫暴를 極하여 各地 到處 金品을 掠奪하고 良民을 苦痛시키기 實로 今日보다 甚하기는 없다. 客歲 暴徒 蜂起 以來 警察 及 守備隊 憲兵隊에서 日夜 盡瘁 匪徒의 偵察討伐에 勤勉 苦心奔走한다. 하나 아직 鎭定에 歸치 않은 憾이 있음은 必竟 暴徒의 情況이 不明하여 地方人民 中 暴徒의 迫害를 두려워 或은 此에 同情을 寄하고 其 情況을 秘로 하여 此를 警察 又는 守備隊 憲兵隊 等에 報告하지 않는데 基因한다. 또 드물게 此를 報告하는 者 있으나 每番 時日을 經過하고 或은 逃走後에 屬하는 等 大部分은 時機을 逸하고 討伐隊로 하여금 往往 徒勞에 歸케 하는 일이 적지 않다. 此弊를 脫치 아니하면 如何히 警察 又는 守備隊 憲兵隊만으로 苦心焦慮한다 하더라도 到底히 地方의 安寧秩序를 恢復하고 良民으로 하여금 安堵케 할 수 없다.

如斯하면 地方의 發達을 바랄 수 없다. 國利와 民福을 期할 수 없다. 어찌 慨歎하여 견디겠는가 大小民人은 그 能히 此를 生覺하여 將來 暴徒의 出沒通過 或은 飮食宿泊又는 金品을 掠奪하고 良民을 拉去하는 等 적어도 暴徒의 情況에 關하여 見聞하였을 때는 各 面長 및 洞長은 職責으로 時를 移치 말고 附近 警察署 又는 巡査駐在所에 報告하라. 또 一般人民에 있어서도 本旨를 體하여 迅速히 附近 警察 又는 守備隊 憲兵隊에 急報하여 將來 匪徒鎭壓上 遺憾이 없도록 깊이 留意하여 隣保相戒 本諭告에 相違함이 없기를 期할 것이다.

隆熙 三年 三月 六日

全羅南道 觀察使 申應熙

81. 羅警秘收 第二三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首魁不明의 暴徒 約 七名이 本月 四日夜 咸平郡 永豊面 萬年洞 城北村 發山村에 來襲하여

村民 三名을 拉去하였다는 報告가 있다.
一. 首魁不明의 暴徒 約 十餘名이 本月 八日夜半 咸平郡 郡東面(距咸平邑 東方 一里) 洪地里 學松丁里虎洞에 來襲 村民 三名을 拉去 羅州郡 居平面 方向으로 去하였다 한다. 該賊은 火繩銃 七을 携帶하고 黑 及 茶褐色服을 纏하고 있었던 바 故 朴珉洪의 部下일 것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89. 羅警秘收 第二三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十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三月 五日 午前三時 羅州郡 豆洞面 金氏坪의 韓人酒店에 首魁不明의 暴徒 六名이 襲來하여 金錢을 强請하였으나 赤貧하여 出金할 수 없으므로 家主 金某를 亂打하고 어디론가 逃走하였다고 한다.
二. 三月 九日 午前六時 靈岩郡 終南面 南海里(夢灘 東方約 四里)에 朴士化가 引率하는 五十餘名의 暴徒集團의 情報에 接하고 夢灘守備 井上伍長 以下 九名은 當署로부터 夢灘 出張中의 日·韓巡査 二名과 共히 現場에 急行하였으나 該賊은 이미 逃亡後 踪跡을 失하여 歸所하였다.
右 報告함.

96. 光警秘收 第二一三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十五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良民을 拉去한 件
(중략)
또 本月 十一日夜 大枝面伊內에 約 二十의 暴徒(首魁不明)가 來하여 藥局 某를 拉致하고 어디론가 去하였다 한다. 그리고 本件에 對하여는 村民의 通報에 依하여 榮山浦憲兵分隊의 憲兵이 出張 搜査中이라고 하는 所聞이 있다. 따라서 同駐在 巡査에 있어서도 嚴重 搜査中에 있다 云云 또 本月 十日夜 南平郡 頭山面 新基에 暴徒 約三十名이 襲來 洞民 曺元伯을 拉去하였다 한다. 此에 對하여서도 또한 憲兵隊에서 搜査中에 있다고 하는 所聞이 있다 云云.
右 報告함.

103. 警收 第一二四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十五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에 關한 件 報告

靈岩 駐在 巡査의 報告에 依하면

一. 本月 十二日 午後六時 首魁 朴鏞植(元 羅州郡 書記)으로부터 陰二月 十九日發 海南 康津 警務分派所 앞 封書 二通을 酒幕送으로 靈岩郡 北一始面 德津里 酒幕 主人 金巨明이 가지고 온 것을 押收 金巨明에 對하여 其 發送先을 取調한 바 同人家에는 北一終面(榮山浦 通路)의 酒幕에서 來한 것으로 其他는 不明하나 推察컨대 羅州郡 又는 南平郡 方面으로부터 出한 것 같다고 한다.

一. 書面은 別紙와 如하며 只今까지 發한 檄文과는 其 旨意를 달리하고 있으므로써 目下 憲兵及 守備隊와 協力 內偵中이라고 한다.

一. 本月 十二日 郡內 昆二始面 隱谷里 里長의 報告에 陰 二月 二十日 匪徒 約 十餘名이 洞內에 來襲하여 各戶를 探索한 後 金在敎家에 亂入하여 同人을 逮捕하려 하였으나 發見치 못하고 目的을 達치 못하였다 한다. 其 來襲의 原因은 昨年 彼等이 同地方에 潛伏時 守備隊에 密告되어 數名의 損害를 受하였음에서 復讐를 爲하여 來한 것 같다. 目下 守備 及 憲兵隊와 討伐의 計劃中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廣告

爲悉布心腹 腎腸瀝血 輪告事 第聞列郡置一進巡檢巡隊技藝卒業者 爲我國乎 爲彼賊乎 若曰資寇兵則無復可言 若曰爲我國則其爲計 欲習其技藝 以蠻夷攻蠻夷 而一進巡檢巡隊之冒羞忍恥 變其膚髮冠裳 聽其指揮藝習 吾信其屈首於一日 伸義於百世 以爲宗社生靈之計矣 第念一進巡檢巡隊 亦大韓人 乃祖父爲先王臣民五百年絲身穀腹 至今卵育於東方天壤秋毫皆主恩 又皆有不共戴天之讎於島夷 乃先祖 有不血肉於古壬辰鋒鏑者乎 酬恩報怨 人之常情常待 吾信其屈首伸義者不薄而厚矣 然則及今義旅蜂起之日 外內相依 唇齒相資 正其快伸之日 而其伸旣快 則前日冒羞忍恥者 可謂見睨曰消矣 去壬辰大駕去鄕京都失守禍及陵廟 無前孔酷 而金健齋先生倡起義旅駐陣江華 招致都民之附賊慫恿者及其回心易慮收復京城易如建□將功贖罪澤庇後仍載籍昭然第 今一進巡檢巡隊 則庶悉其設置之非爲賊而欲爲國也 不於今日而爲功更待何時 若不汲沒相圖則不如早索我於枯魚之肆不但此也 其間或有昧於利害欲爲全軀保妻子之計甘心導賊□刃義類而彼之設心 非但爲免死烹狗島盡藏弓 必加畔君賣國之罪名殲滅之乃已此如燭照數計 雖愚夫不難知之

而列郡一進巡檢巡隊 無慮幾千萬 而無一人義士無一人知周者乎 嗚呼豈然也 必義兵之聲勢 未立難與爲功姑待其風聲發乎 此亦未之思也 凡事分則弱 合則强 若夫中外相依唇齒相資 獨不聞韓魏趙之夾擊智伯而滅之乎 風聲在此氣勢在此而不此之爲一邊觀望一邊爲賊前第者欲何爲哉 事期一失 不可復圖 幸加二思如何大丈夫 寧可玉碎不可瓦全古語也 今日玉碎者 何事瓦全者 何事況畢竟瓦猶未全乎 古云寧止建業死不止武昌生寧飮建業水不食武昌魚此豈不骨髓傷痛之語乎 寧爲朝鮮而死 豈爲島夷而生乎 寧爲朝鮮而窮餓 豈爲島夷而富貴乎 言之至此 心肝畢呈 庶一進巡檢巡隊之俱 有彝性故若玆多誥若曰不然皆亂臣賊子之尤甚者 春秋之法 不待教而誅者 噫彼倭奴 猶話□爲其國君 此畔君賣國之賊 豈可同年而語乎 義旅之起 將不暇討倭 先討國賊 罪惡貫盈天之必誅 氣義激烈大之必助 吾可恃而無恐天誅可畏其各惕念者

己酉 二月 日 都統大將 朴 湖南義所

119. 羅警秘收 第二六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十九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三月 十八日 午後二時三十分 首魁 金元局이 引率하는 暴徒 約 七十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金安面 光谷(距羅州邑 一里)에 襲來하였다는 情報에 接하고 當署로부터 日·韓巡査 七名을 急行케 하였으나 該賊은 逃走後로 踪跡을 失하고 歸署하였다.

該賊團은 十七日 午後 金安面 光谷에 來하여 同夜 同村에 一泊하고 翌十八日 同村背後의 山上에 晝餉을 運搬케 하고 此를 喫了하고 어디론가 去하였다고 하므로 써 巡査의 一隊는 同所에서 마주친 守備兵과 共히 同郡 用文面 方向으로 追跡하였으나 全然 其 踪跡을 得치 못하였으므로 써 同夜 歸署하였다. 賊魁 金元局은 年齡 四十 光州 出身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126. 光警秘收 第二四〇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十二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徒에 關한 件

本日 巡査 山木好太郎(光州署 勤務)의 報告에 依하면

一. 昨年 以來 咸平郡 赤良面「손돌」酒幕 主人 廉某家에 滯在하는 全州人 李 及 林이라고 自稱하는 二人은 一定한 職業이 없이 晝夜 區別없이 外出하고 또 旅人을 取調하는 等 擧動이 不審한 者로 本年 陰正月中 一旅人을 取調하고 疑心스러운 者라고 말하고 있었던 바 右 旅人이 該酒幕 附近 林中에 殺害되어 있는 것을 發見하고 村民等이 此를 埋葬하였다 한다.
또 昨年冬 羅州郡 北倉(該地는 光州 羅州 咸平의 郡界)의 才人(此는 韓國의 遊藝人)이 該酒幕 附近에서 銃刀傷을 受하고 死亡한 것을 認定하고 村民 等이 埋葬한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此 被害는 前記 二名의 所爲일 것이라고 村民은 말하고 있었다는 所聞이 있다.
首魁 朴鏞植의 名으로써 發한 通文을 各 警察署 及 巡査駐在所에 送付(三月 十五日付 光秘收第二〇三號 報告)한 것은 同人 等의 行爲가 아니라는 疑心이 있다고도 한다. 目下 極力 搜索中 右 報告함.

127. 羅警秘發 第三四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十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三月 十一日 午前三時頃 南平郡 頭山面 內上里에 首魁不明의 暴徒 約 百名이 來襲하여 里長 李德玄을 拉去하고 約 一里를 距한 南方魚川面에 이르러 毆打後 放還하였다고 한다.
二. 今月 十二日 午前一時 前과 同一의 暴徒가 南平郡 頭山面 新基村에 來襲하여 面長의 父子公西를 毆打하고 村內로부터 草鞋外 雜品 數點을 掠奪하고 다시 同面內汀里에 이르러 里長 崔贊仲을 約 十町可量 拉去하여 放還하였던 바 該賊은 光州郡 七里面方向으로 去하였다고 한다.
右 報告함.

158. 光警秘收 第二五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十九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중략)
一. 이보다 앞서 細揚油 酒幕에 怪異한 風體의 者가 宿泊하였음을 探知하고 取調한 바 羅州郡 官洞面 龍洞居 金亨允(二十八歲) 으로 金商이라 하고 或은 墓地 選定을 爲하여 왔다고만 말하나 商品을 携帶한 것이 아니고 또 酒幕業者의 말하는 바에 依하면 同人은 最初 二名으로 來하

고 또 뒤로 來한 二名과 會飮하고 暴徒 出沒의 狀況 又는 日本兵의 來否 等을 듣고 三人은 去하였으나 同人만 남은 것이 判明되었다 其 擧動이 不審한 點이 있으므로 引致(目下 取調中)하였다 云云.
右 報告함.

162. 羅警秘發 第三五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二十九日
羅州警察部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三月 二十九日 午前一時 首魁不明의 暴徒 約 二十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新村面 桶井里에 襲來하여(距羅州邑 約 十五町) 同所 梁奉厦를 拉致 用文面 方向으로 去하였다. 目下 偵察中
右 報告함.

175. 羅警秘收 第二九八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三月 三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三月 二十九日 羅警秘發 第三五號의 續報
一. 三月 二十九日 午前一時 羅州郡 新村面 桶井里居 梁奉厦를 拉去한 暴徒의 追跡을 爲하여 派遣한 當署 日·韓巡査 四名은 其 踪跡을 失하고 本日 歸署하였다. 該暴徒는 三十日 午後四時頃 梁奉厦를 拉致 羅州郡 水多面 奉洞에 至하여 同所에서 梁을 毆打하고 다시 어디론가 拉去하였다 한다. 그리고 其 員數는 銃器 六挺을 携帶한 約 十名의 一團이었다고 한다.
一. 三月 二十九日 午後十二時頃 首魁不明의 暴徒 約 十名이 羅州郡 侍郎面 西湖亭里에 이르러 日本人 山下一郎의 宿泊한 一 韓家를 襲擊한 바 同人은 겨우 裏口로 逃走하여 身體에 被害가 없었으나 所持의 白毛布 一枚 背廣服上衣 一枚를 掠奪當하였다고 한다.
推察컨대 前記 同一의 賊인 것 같다.
右 報告함.

180. 全南에 있어서의 暴徒 被害 及 其 情況

木浦 日本人商業會議所

(중략)

一五. 五日 午前三時 羅州郡 豆洞面 金民坪의 韓人酒店에 首魁不明의 暴徒 六名이 來하여 金品을 强奪하였으나 赤貧하여 出金할 수 없으므로 主人을 亂打하고 어디론가 去하였다.

(중략)

四〇. 九日 午前六時 靈岩郡 終南面 南海里에 朴士化가 引率하는 五十餘名의 暴徒가 모였다는 情報에 接하고 夢灘守備隊 井上 伍長 以下 九名 及 巡査 二名이 討伐次 向하였으나 暴徒는 이미 逃走後이므로 踪跡不明

(중략)

四三. 十一日夜 南平郡 頭山面 新基洞에 約 三十名의 暴徒가 來하여 洞民 曺元伯을 拉去하였다.

(중략)

四五. 十一日 午前三時頃 南平郡 頭山面 內上里에 首魁不明의 暴徒 約 百名이 來하여 里長 李德玄을 拉去하고 南方 魚川面에 至하여 毆打後 放還하였다.

(중략)

四九. 十一日 古幕院憲兵隊는 羅州郡 侍郎面 白雲에서 暴徒 約 十二名과 衝突하여 其 一을 殪하고 此를 潰亂시켰다.

(중략)

五一. 同日 首魁 朴鍾植(元 羅州郡 書記)으로부터 海南 靈岩 康津 其他에 檄文을 配付하였다.

(중략)

五四. 十二日 午前一時頃 同一의 暴徒가 南平郡 頭山面長의 父子 公西를 毆打하고 村內로부터 草鞋 外 雜品 數點을 掠奪 다시 同面內汀里에 至하여 里長 崔贊仲을 拉致하고 光州郡內로 去하였다.

(중략)

七一. 十八日 午後二時三十分 首魁 金元局이 引率하는 約 七十名의 暴徒가 各 携銃 羅州郡 金安面 光谷(邑內로부터 一里)에 來하였다는 情報에 接하고 巡査 七名이 討伐차 急行하였으나 이미 去한 것으로 其 踪跡을 失하였다.

(중략)

九五. 二十六日 羅州郡 曲江面에 約 三十名의 暴徒가 集合하고 있다는 報告에 接하고 咸平憲兵隊로부터 討伐次 急行하였다.

(중략)

一一二. 二十八日 午後十時頃 古幕院 憲兵隊는 咸平으로부터 歸途 約 四十名의 暴徒와 衝突하여 此를 擊退 潰亂시켰다.
(중략)
一一七. 二十九日 午後十二時頃 首魁不明의 暴徒 約 十名이 羅州郡 侍郎面 西湖高里에 來하여 日本人 山下一郎이 宿泊하는 一 韓家를 襲擊하여 山下는 겨우 逃走 持參하였던 白毛布 及 背廣服 上衣를 掠奪當하였다.

1. 韓暴通 第四五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三月 一日
韓國駐劄軍 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五. 全南 羅州警察署의 日巡査 六 韓巡査 四는 二月 二十五日 南平(羅州 東方 約 三里) 郡內에서 約 二百五十의 賊을 쳐서 若干의 損害를 주었다. 日巡査 一 負傷하였다.
羅州警察署長 以下 巡査 若干 及 同地 分遣所의 憲兵 二十은 翌二十六日朝 急行 赴援하여 高地上에 陣地를 構成한 前項의 賊을 쳐서 其 八을 殪하고 一을 逮捕 此를 南方 靈岩 方向으로 潰走시켰다.

20. 韓暴通 第六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三月 二十日
韓國駐劄軍 參謀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一〇. 全南 古幕院憲兵分遣所 上等兵 二 補助員 一은 三月 十一日 同地 東北 約 一里의 山中에서 賊 十二와 衝突 其 一을 殪하였다.
(중략)
一二. 全南 南平憲兵分遣所 上等兵 二 補助員 三은 三月 十三日 同地 西北 約 一里 大池里에서 賊 約 六十과 衝突 其 五를 殪하고 銃 一 刀 一을 鹵獲하였다.

7)『한국독립운동사』자료 14 : 의병편 Ⅶ

5. 羅警秘收 第三〇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四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三月 二十七日 午後十時 首魁不明의 暴徒十 數名이 羅州郡 曲江面에 來襲하였다는 報告에 接하고 咸平駐在巡査 憲兵分遣所員 駐屯守備兵의 聯合討伐隊는 直時 現場에 出動하였으나 踪跡을 失하고 歸所하였다. 該賊은 故 朴珉洪의 殘黨八名의 一團으로 其中 一名만 銃器를 携帶하고 二十七日 午後六時 前記 曲江面 酒店 趙成根家에 來하여 飮酒하고 同七時頃 務安郡方面으로 去하였다 한다. 云云
右 報告함.

17. 羅警秘發 第三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四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三月 二十九日 羅警秘發第 三五號 及 三月 三十一日 羅警秘收 第二九八號의 一 續報
一. 三月 二十九日夜 暴徒에게 拉去當한 羅州郡 新村面 桶井里居 梁奉厦는 四月 二日 看守者의 隙을 窺하여 遁歸하였다.
一. 梁奉厦를 拉去한 暴徒는 八名으로 各自 銃器를 携帶하고 있으며 拉去의 當夜 途中에서 金二百圓을 贈與하므로써 放還을 빌었으나 不肯 二日夜 羅州郡 曲江面 鳧海村에서 看守者의 睡眠中에 乘하여 脫走 歸宅하였다고 한다.
一. 該暴徒의 首魁는 故 朴泯洪의 部下이었던 羅成化(當二十五歲 羅州郡 馬山面 方之橋의 者)로 彼等은 晝間에 農 及 商民 等으로 假裝하여 主로 夜間에 行動을 한다고 한다.
右 報告함.

106. 羅警秘收 第三七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四月 二十七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四月 十三日 羅警秘收三二八號의 二의 續報

一. 咸平郡 郡東面 中校里 李益成外 一名이 暴徒에게 拉去當한 旨 報告하였던바 李益成은 爾來 暴徒에게 各處를 끌려다니고 있었던바 本月 十八日 古幕院憲兵隊의 討伐에 際하여 겨우 脫走歸家하였다.
被拉去者 李益成이 暴徒와 同行中의 模樣을 듣건대 首魁는 故朴珉洪의 後를 襲하여 스스로 首魁가 된 羅州郡 馬山面 左倉居 羅成化(三十五歲)로 其黨類 約五十名을 갖고 火繩銃約三十挺을 携帶하고 務安郡 白連洞 羅州郡 龍門洞 同 居平面 錦泉 同郡 龍文里 七峰里 月明谷周海倉東山里 竹浦面 卽文里 等을 徘徊 到處에서 面長 洞長 又는 富農 等을 脅迫毆打하고 金品 粮食等을 强奪 又는 提供시켜 十八日 卽文里에서 前記 憲兵隊의 討伐을 受하고 約八名의 戰死者를 出하여 潰亂하였다. 該賊團은 晝間에는 良民을 假裝하고 夜間에 至하면 黑色의 服을 換着하고 있다고 한다.
右 報告함.

120. 羅警秘發 第四一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四月 二十九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右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四月 二十九日 正午 步撥便으로서 別紙印刷物 四種 表記에는 羅州刑房廳이라 하고 其下에 羅州 南平 靈岩 長興 海南이라 記하고 當署에 投入한 幼兒가 있으므로써 其 出處를 取調한 바 長城郡 方面으로부터 發한 것 같으나 判明되지 않았다. 또 搜査中 아직 第一號廣告라고 記入한 것은 二十四枚 第二號 同上二十四枚 第三號 繁文은 四枚 第四號繁文은 六枚를 封入하였었다.
右 報告함.

廣告各道各郡各面各里大少民處
右文爲通諭事今日事不在多言君父今在何地國勢今至何境五百年宗社存耶亾耶數千里生靈生耶死耶嗚呼扶亾圖存起死還生惟在於上自公卿大夫下至士庶一心殉國奮身討賊而所謂公卿大夫則首爲五賊七賊販君賣國無所不爲其次皆其黨與鷹犬安其危而利其灾樂其所以亾置之勿說其次古家士族因循姑息以全軀保妻子爲上計而豪富權吏反倚恃倭勢以爲安入據賊翼以遺時日乃先祖不血肉於壬丁鋒鏑者有幾人哉忘讎忍恥猶或可說也奴顔蝨附德其煦噓粗有秉彝之天者能如是乎況國亾之日移民易種乃其伎倆移易之日今日之煦噓有足恃乎設以其奴事於我而得免於死亾國破君亾而獨生於世曾狗彘之不若獨不聞僖宗之馬昭宗之猿乎嗚呼國雖亾而義不亡則亾而不亡人雖死而義不死則死而不死凡厥士大夫不思所以亡而不亡死而不死者而惟自促其亡自促其死抑又何哉

見今此彊儞界義旅蜂趕足見秉彝之所同而民之所欲天必從之若不及今投袂同心合力則恐是稅駕無地玆以瀝血奉告幸以人微而棄其言見利而忘其義

己酉 閏 月 日 都統大將 朴鏞植

廣告

爲晝一禁斷事見今義旅之興爲民國計乎爲一身計乎若曰爲一身計則討索民財侈其衣而豊其食猶無足怪者而是一日之計非遠長之慮不見火賊之黨東匪之徒乎肥巳未及死亾隨之言念及此不勝寒心顧此義旅名與實皆義耳上以扶旣亾之宗社下以救方死之生民生義死義將有辭於天下萬世而罔念保國安民之道三三五五攔入里落紂緞亂捧老少不分男女無別此不過火賊之續東匪之習耳大抵軍行不可無費衣食而有餘積於無用者需用於國家之急好事非不好事請助亦可許給亦可盖居者有積倉行者有裹粮也而後大事可集出些力而集大事居與行其功惟均況夫殘戶窮蔀一飯猶德而不思所以斗護之者是豈人心乎至於牛隻之牽去可謂藩籬自撤居者不失於農而後行者糧餉可須而無牛何以爲農但知一臠之滋味而不念向後之飢困粗知一二者必不如此此皆假義兵而懷賊心竟使澤魚相混玉石不分其爲大陣之善不輕而重嗚呼義兵與居民首尾相接患難相恤相恃相恃倚當如父子兄弟之無間而後防難捍患可如手足頭目之赴救而由彼假義之虐猛遂使相視猶敵讎言之痛心此而不禁則義兵不得爲義兵生民不得爲生民見笑於强寇而國隨而亡矣自今以後稱義兵而濁亂里落者勿復以義兵待之縛致大陣使大陣甚焉其或力有所不及則密通于大陣則當捕致論斷而禁條則乖亂名分上下無別其次搜索人家不分內外其次紂綴亂捧不分老少其次牽去寡婦勒之失節其次牽去農牛使之失時其餘條目猥多而此特其大者故條列而揭不焉

己酉 閏二月 日 都統大將 朴鏞植

祭文

維歲次己酉 月 朔 日 都統將朴鏞植以菲薄之奠致祭于大將曺公京煥之靈曰嗚呼哀哉有生則死死死則難均於一死死死則安況又一死强於百萬所不逆覩敗成利鈍武侯猶爾況乎其他捨魚取熊鄒聖所嘉自古湖南義聲最高壬辰之燹忠勇蹻蹻霽峯重峯錦山立慤又三壯士矗石是殞彊域重恢此爲基本扶植綱倫成敗何論古今一轍秉彝有天我倡子和省齋鹿川義古人義死古人死於惟金將志二公志殲賊無筭竟致一躓一軆將軍一南一西懇懇憂愛一念報國衆望之歸庶幾奇功南徼震驚如雷如風令行禁止仁聲八人人心所注可感天神顧余不才托跡下陣或合或分軍容寔振適我分張公則南征神之不佑有憾魚登祚山燈落回谿翅重天不佑宋何嗟及之維余稚息從公于行孤駘之役汪踦不殤死而無憾先公後私如焚如悗言念後圖天月重蒼厲鬼殲賊古有睢陽余悉公心死猶毅魄不滅島夷惟魂不復自公之歿若無可依凡今之人孰知余悲敢將菲奠以洪余哀公其有靈尙其歆哉

祭文

維歲次巳酉 月 朔 日 都統大將朴鏞植以菲薄之尊致祭于都炮將金公元範摠督府朴公圭奉一哨十將李公東彦三哨十將元公在龍四哨十將徐公景洙童蒙執事金福東之靈曰嗚呼哀哉古有義士錦山七百重峯是從同日殉節義重峯義死重峯死正氣不死光岳增彩六節凜凜有辭百世以死報生列聖賜祭丹書鐵券爰及苗裔於不休哉盟有帶礪魚登之役勢不可止壬辰遺種蠢彼黑齒伺隙猖獗宗社以危大夫三事日變於夷販君賣國爲賊鷹犬使盜守門面目有靦國將何恃所恃者民民有秉彝率土作臣一心思奮有死而已舍死向前生而死而賊衆我寡將殞卒隨錦山快死古不專美非戰之罪奈運斯否有將如此有卒如彼强於百萬有今一死天若祚宋熙運循環恢復彊土此爲基根爲李氏臣爲李氏鬼生鮮死鮮義節是偉我子與焉死亦有榮穉息何知壯士齊名我情如狂非私伊公伊後討復誰與成均我奠雖菲我淚如傾僉靈不昧庶其鑑誠

123. 全南에 있어서의 暴徒被害及其情況

(중략)

二八. 五日 羅州郡 西方地區 月明 方面에서 羅州守備隊 上等兵 以下 五名은 偵察中 暴徒 一名 嫌疑者 二名을 逮捕하였다.

二九. 五日夜半 數名의 暴徒가 羅州邑의 北方 約一里半인 笠峙에 來하여 金品을 强請하고 갔다는 報告에 接하고 羅州守備隊는 討伐次 出動하였다.

(중략)

五七. 十三日 羅州郡 東部面居 雜貨商 金仲辰이라는 者 水多面 焦洞의 開市場에서 三名의 暴徒에게 被捕 어디론가 拉去當하였다.

(중략)

八一. 十八日 午前八時 古幕院憲兵分遣所 下士 以下 九名은 羅州郡 竹浦面 直門里에서 首魁 羅成彦이 引率하는 約八十名의 暴徒와 衝突하여 其八을 殪하고 十五를 負傷시키고 九를 捕虜로 한 後 此를 潰走시켰다.

(중략)

一一三. 二十六日 午後三時頃 羅州憲兵分遣所 伏岩出張所 上等兵 以下 六名은 羅州郡 官洞面 伏龍山에서 首魁 朴京道가 引率하는 約八十名의 暴徒와 衝突하여 其九를 殪하고 二十을 負傷시킨 後 潰走시켰다. 補助員 一名 負傷하였다.

12. 全南警秘發 第七九九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四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今 四日 羅州 方面으로부터 步撥便으로 賊魁 李起巽으로부터 當 觀察使 앞으로 別紙寫와 如한 通文을 送來하였다.

己酉 三月 九日 義生李起巽 拜上

客月兩度書 想必下覽之 或無洪喬之嘆則 幸甚幸甚 伏惟和煦 政體上氄務之餘 何以保寗 渾衛一直安過位 馳溯母任之至 起巽旅瑣只是 草行露宿而已 夫上自公卿大夫 下至閭巷士庶 貴賤雖異義慨則同 當此倭醜猖獗憤惋讐恥非宜 公卿士庶 山川草木 亦皆含淚秋也 以若執事之貴重 晏座恬視於心安乎 一旅復憂 一馬刱唐 今不足論 强弱大小因矣 自今城池 要害縱爲彼之所據 然而 衆心結壘 至誠感神 皇須執事告諭于治下諸郡 鼓動義志則 南賊不數月而必焉 嗚呼附賊指路害義同胞抑何心腸 究厥情實則 罪大於賊 請嘗言之壬辰之變 丁酉之亂 誰人祖先 獨得免耶 均是爲讐則 以讐附讐 天下萬國之 不可使聞者也 伊藤之肉分臷之欲食者久矣 執事之心 亦當如此 無此心則 歸去泉坮之下 奈舂磨燒判何 今日此諭非在 執事特指 誘倭害義者論耳 起巽同中軍 梁東煥先鋒 嚴錫雲 前軍朴 後軍吳 遠入智島 砲殺二賊之餘 無所獲 水陸並行 振旅而還 未幾則練精卒繕兵器而屠 貴府掃滅 守備補助諸賊 臨其時 千萬保重 切勿驚動 大望大望 餘俟回 不備書上

18. 羅警秘收 第四〇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五月 一日 午前五時 綾州郡 懷德面 白岩洞에 暴徒 十餘名이 各武器를 携帶來襲하여 洞民을 脅迫하고 있다는 情報에 接하고 綾州駐在所 韓人巡査 二名은 直時 偵察次 向하였던바 該賊은 이미 逃走하고 있었으므로써 漸次 追跡하여 吾道面 九士里에 이르렀던바 該村端에는 擧動이 異常한 者가 數名이 徘徊하고 있었는데 其 時 綾州分遣所로부터 出動한 憲兵 及 同補助員 數名의 一隊도 同時에 此를 發見하고 同隊는 直時 此를 追擊하였던 바에 依하여 韓巡査 二名은 村內를 搜査하였던바 左記 二名의 暴徒를 發見하고 此를 捕獲하고 또 左記物件을 鹵獲하였다.

追擊 次 向한 憲兵의 一隊는 踪跡을 失하고 得한바 없이 直時 歸來하였다고 하였다.

左記

捕虜

南平郡 猪浦面 水茂村 朴春化(三十一歲)

南平郡 猪浦面 水茂村 洪承獻(三十五歲)

鹵獲品

一. 火繩銃 一

一. 韓國製 六連銃 一

一. 日本刀 一

一. 湖南義所印章 一

一. 韓衣 六

一. 白木綿 一疋

一. 冠笠 外 雜品數點

右 報告함.

21. 羅警秘收 第四一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五月 五日 午前三時頃 首魁不明의 賊 約 十四·五名이 約八挺의 銃器를 携帶하고羅州郡 侍郎面 會津(距羅州一里半)의 日本人 橋本豊喜家에 來襲하여 銃器 彈藥 金錢을 줄 것을 要請하였으나 豊喜는 此에 應치 아니하여 賊은 家中을 搜索하고 左記金品을 掠奪하고 家人에 對하여는 別로 毆打 其他의 暴行을 加하는 일이 없이 어디론가 去하였다고 한다.

右에 對하여 當署로부터 日韓巡査 四名을 現場에 急行시켰으나 其踪跡을 失하고 歸署하였다.

該 賊은 被害者에 對하여 五日 後 다시 오겠으므로 銃器 彈藥을 購入하여둘 旨 命하여 두었다고 한다.

賊의 携帶한 銃器 中 村田銃二挺 元折獵銃二挺이 있었다 한다.

一. 十圓幣 一枚

一. 銀銅貨 合하여 二圓可量

一. 朝日 其他의 煙草 七十五錢分

一. 洋服上衣 代 三圓可量

一. 紙入 二個 代 一圓五十錢

一. 샤쓰 一枚 代 五十錢

合計 十七圓七十五錢

右 報告함.

39. 韓參通 第一一二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五月 十一日

韓國駐箚軍參謀長 明石元二郎

韓國內部次官 岡喜七郎앞

全北 光州守備隊長의 報告에 依하면 同道觀察使는 今回 同守備隊長과 共히 長城 靈光 法聖浦 咸平 羅山 羅州 及 仙岩地方을 巡視하고 地方民을 說諭 各面洞長 及 地方有力者에게 暴徒鎭壓의 急務를 說하고 暴徒의 狀報를 敏速히 各 保護機關에 出할 것을 說諭 크게 其注意하였음을 通報한다.

43. 高秘收 第二六〇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十二日

局長

統監(古谷) 副統監(佐竹) 總務長官 軍司

令官(參謀長) 憲兵隊長 內部大臣 次官

近時 全羅南道 地方에 出沒하는 賊魁 李起巽이란 者 本月 四日 羅州方面으로부터 御夫便으로 同道 觀察使便에 別紙譯文과 如한 通文을 送付하여 왔으므로써 目下 所轄警察署에서 注意中 右 報告(通報)함.

53. 警收 第二二四一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十四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에 關한 件

一. 本月 十三日 智島郡 押海島에 暴徒가 侵入하고 있는 旨 探聞하였으므로 十月 四日 市島警部 外 日韓人巡査六名이 討伐로 向하였다.

一. 務安郡 邑內 孔子廟直人 尹滋信家에 本月 九日頃 어디로부터인지 左의 檄文이 到着한 旨 務安府尹으로부터 報告가 있어 目下 搜査 中

右 報告함.

檄文(當署에서 飜譯하였다)

湖南義將 李起巽 中軍 梁東煥 先鋒 嚴錫雲 後軍 吳鎔根 等이 謹히 檄文을 省內 各位에게 告白한다. 曰 우리 東國은 三千里 且 人民은 二千萬에 滿하다. 窃惟컨대 我朝는 禮樂文物이 燦然히 各所에 備하고 一般國民은 巷閭에 滿하여 童稚는 其隷賤을 養하여 君臣의 義 卑尊의 序 있

음을 모르는 者 없다. 五百年間의 惠澤은 中外에 洽하여 적어도 人된 者 누가 君을 爲하여 死를 厭하랴 嗚呼 往昔의 龍蛇의 變은 國家朝野의 措置가 좋지 않았던 罪이다. 當時海外의 醜類가 若干 播하여 渡來하여 漸次 我疆土에 近接하여 처음은 貿易 開港云云으로 稱하여 必竟은 豹狼의 毒을 我 地에 流하고 또 餘地없이 我聖上을 威脅하여보는바 없이 山林川澤을 獨專하여 利를 占하고 其 財賦 政令을 自擅하고 說謫慄捍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此變은 千百載間 처음으로 보는 바이다. 天地를 觀察하건대 木石이라 하더라도 憤慨하고 英雄의 淚 乾함이 없고 鳥啼聲 中江의 光彩도 變하여 戎衣를 拂하는 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卽 手에 寸鐵이 없다고 하더라도 胸中에는 自然히 萬甲이 있다. 激急振腕하기 오래다. 그런데 무슨 幸인가 天은 우리 邦國을 裏를 願치 않는다. 一土 비로소 唱하면 入域 相應하므로써 暗襲 瞽躄도 또한 復興의 計를 生覺한다. 凡 血氣 있는 者 어찌 坐視하겠는가 夫生을 好하고 死를 憎함은 人의 常情이나 死하여야할 날에 死함은 오히려 生하는데 年과 如하다. 예로부터 今에 이르는 命에 危急 時에 捨하여 義를 豫測의 難에 擧하는 者는 國이 있음을 알고 家 있음을 모른다. 君 있음을 알고 臣이 있음을 모르는 大丈夫 此를 能히 한다. 方今 大駕蒙塵 生靈이 塗炭의 境遇에 있다. 北을 望하여 痛哭한다. 五內分崩하여 起巽(大將의 名)軍旅의 學에 어두우나 括然하여 國瘁의 急함을 坐視하는데 不勘하므로 同志의 壯士와 晝夜 計劃을 하여 精兵을 聚하여 兵器를 整齊 醜賊을 殲滅할 것을 企圖하였다. 嗟乎 彼賊에 從하여 利에 嗢하는 斷髮變服하는 者는 모름지기 무슨 心曲한 此 五凶七賊의 所爲이다. 其 罪狀을 究하면 倭者로 因하여 그르치는 者이다. 此를 法律에 照하면 마땅히 千斬萬戮할 것이나 손이 짧아 미침이 없다. 故로 天必히 此를 誅한다. 現今人士는 아직 財産을 惜하고 細敵을 安全히 하여 塊然히 墨守한다 하나 獨히 越南의 歷史에 聞치 않는가 가장 痛恨하는 바의 것은 名은 義士라 稱하나 敎는 없어 「漢唐固之獄唐白鳥之禍」此로부터 學함이 없다. 嗚呼 公卿牧守 及 凡 士農工商은 무슨 面目이 있어 禮義를 忘하고 秋燈下에 徒然히 書를 孤讀하고 秋水를 倒瀉함과 如히하여 敢히 配合의 術을 모른다. 어찌 當世 言行一致를 期하지 못하는가 孟子曰「莫知爲而爲者天也莫知致而致者命也義之所在誠之所在也」라고 한다. 今回 義라 하는 字에 附하여 行하면 上下神祇는 影과 같고 響과 같고 此에 感應한다. 此를 行할 때에 行하지 않으면 成하는 것이 없다. 此로써 同胞에게 바란다. 때는 왔다. 振起하면 國讐는 復할 것이다. 疆土는 還할 것이다. 括目屈括 檄文이 到進함을 기다려 卽時 一朝 蹶然히 雷風 雲雨와 如히 起하면 事 成就아니할 것이냐 大丈夫의 志是와 如히 하여 足할 것이다. 千萬裁諒

己酉 三月 二日 右敬通于 務安移中印

56. 羅警秘收 第四三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十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本月 十二日 午前八時 首魁不明의 暴徒 約三十名이 羅州郡 伊老面 東幕里에 來襲하여 朝餐을 喫하고 附近 松林 中에 潛伏 中 羅州郡 長林派遣所 憲兵 及 補助員의 探知한 바가 되어 交戰 約 三十分 賊은 潰亂하였다 한다.
彼我 損害 없고 暴徒 一名을 生擒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99. 羅警秘收 第四六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二十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警務局長 松井茂 앞
五月 十九日 羅警秘收 第四四四號의 一 續報
一. 五月 十八日 咸平郡 郡東面 上橋里 趙正圭를 拉去한 暴徒를 追跡次 向한 同所駐在 日韓巡査二名은 得한 바 없이 翌十九日 歸所하였다.
該賊은 羅成化의 部下인 것 같다. 其數 十二名으로 各銃器를 携帶하고 黑色의 服裝을 하고 趙正圭宅에 闖入하여 同人을 結縛하고 金錢을 强要하였던 바 被害者는 此에 應치 아니하여 賊은 店頭에 陣列하였던 左記物品을 强奪하고 家主 正圭를 拉去하였다 한다. 拉去 當한 趙正圭는 十八日 午前四時三十分頃 務安郡 白連洞에 이르는 通路와 咸平郡 平陵面으로 通하는 分岐點에서 放還을 受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左記
一. 明紬 一反半 代價 九圓
一. 春紗 四十尺 代價 四圓
一. 工綾 四十尺 代價 五圓
一. 麻布 四反 代價 四圓八十錢
一. 光東紬 二十尺 代價 三圓
一. 手拭 三十二枚 代價 一圓五十錢
一. 鏡 十個 代價 一圓
一. 小刀 十個 代價 九十錢
一. 地干紗 四反 代價 一圓六十錢
一. 打紐 二把 代價 三圓六十錢

一. 草鞋 三十足 代價 一圓八十錢
一. 外雜品 四點 代價 四圓二十錢
合計 代價 四十圓四十錢

100. 羅警秘收 第四六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五月 二十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五月 十五日 午後十二時 首魁不明의 暴徒 十二名이 各洋銃 三 火繩銃 二 軍刀 三·四柄를 携帶하고 羅州郡 竹浦面 甑文里 洞首 李正貞의 宅에 來襲하여 發砲 同人에게 重傷을 입히고 또 同面 松頭 酒店 朴士辰宅에 侵入하여 士辰을 亂打 重傷을 입히고 翌十六日 午前二時 어디론가 去하였다고 한다.
前記 被害者 兩名은 暴徒의 行動을 邑內에 密告하였다는 嫌疑로 被等의 怨恨을 受한 것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3. 韓暴通 第九八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五月 四日
『榮山浦憲兵分隊 管內 及 同 附近 憲兵配置圖』
韓國駐箚軍參謀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全南 羅州 東北 伏岩憲兵臨時派遣所 上等兵 二 補助員 七은 四月 二十六日 羅州 北方 約 三里의 地에서 賊 約 三十과 衝突 此를 潰走시켰다.

18. 韓暴通 第一一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五月 二十日
韓國駐箚軍參謀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全南伏岩憲兵臨時派遣所 上等兵 二 補助員 五는 五月 十二日 羅州西北 約 一里半의 地에서 賊 二十과 衝突 其 一을 殪하였다.

3. 全南警秘發 第一〇〇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一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客月 中 管內警察署長會議 時 目下의 急務인 暴徒의 鎭壓策에 對하여 協議하였던 바 其 席上의 觀察使 및 小林書記官도 列席하고 또 光州守備隊長 吉田少佐 光州憲兵分遣所長 稅所中尉도 參加하여 協議決定된 要領은 左와 如하다.

一. 暴徒 搜查를 爲하여 變裝偵察隊 編成의 件

各署로부터 二·三의 協議案의 提出이 있었던 바 歸하는 바 其 目的이 同一하여 其 方法 亦是 大同小異하므로써 此를 一題로 하여 協議하였다.

警察의 任務로서 各署 各各 暴徒의 偵察搜索에 從事하다 하더라도 配置人員의 制限 經費豫算의 事情도 있고 또 各署 單獨의 行動으로는 充分한 活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管內 濟州島를 除外 光州 羅州 木浦 長興 順天의 五警察署로부터 適當한 巡查를 選定하여 各署聯合의 變裝偵察隊 三部隊를 編成하여 此를 暴徒의 出沒이 最頻繁한 地方 卽 光州 羅州 方面 長興 靈岩 方面 順天 寶城 方面의 三區로 行動시켜 主로 目下 最優勢한 暴徒의 巨魁 全海山 沈南一 安桂洪 梁相基 等의 潛伏한 所在 又는 根據地를 發見하는데 努力할 것

一. 其 行動期間은 約 三個月의 豫定으로 한다.

一. 行動區域은 目的地方 及 此에 接近한 地方은 其 狀況에 依하여 自由로이 行動케 하기로 하고 此를 制限치 말 것

一. 守備隊에 있어서는 此變裝隊의 一部隊마다 約 十四·五名의 討伐隊를 若干의 距離를 갖고 此와 連絡하면서 行動시켜 萬若 暴徒를 發見한 情報를 得하면 直時 此를 討伐하고 其機를 逸케 하지 말 것

一. 經費는 各巡查의 旅費를 管內外를 不問하고 凡 管內日額旅費額에 依하여 支給하기로 하고 從來 各署 配當豫算의 範圍內에서 할 것

一. 萬若 不足을 生할 境遇는 事情을 具하여 內部에 增額請求할 것

一. 密偵은 警察署에서 選拔하고 그 傭賃은 守備隊로부터 支給할 것

一. 變裝隊 一部隊의 編成은 左와 如하다.

變裝偵察隊人員

日人巡查部長 1名

日人巡査 2名(其 中 1名은 可成 韓語에 通하는 者)
韓人巡査 2名(其 中 1名은 日語에 通하는 者)
密偵 3名
計 8名
一. 各署로부터 選拔하는 人員은 左와 如하다.
第一變裝隊-光州警察署
日人巡査部長 1
日人巡査 2
日人韓人巡査 2
計 5
第二變裝隊-木浦警察署
日人巡査部長 1
日人巡査 1
日人韓人巡査 1
羅州警察署
羅州警察署 日人巡査 1
羅州警察署 韓人巡査 1
計 5
第三變裝隊-長興警察署
日人巡査部長 1
同日人巡査 1
順天警察署
日人巡査 1
日人韓人巡査 2
計 5
(實行은 五月末부터 着手의 豫定이었으나 守備隊 交代로 後任守備隊에 本件의 引繼를 하여 두기로 하고 六月 初旬 新守備隊 着後 其 事情에 依하여 實行하기로 約束하여 두었다.)
一. 積極的 暴徒鎭撫策으로 韓民에게 授産의 方法을 設하고 公共事業을 經營할 것
守備隊長 吉田少佐의 希望으로 暴徒의 鎭撫는 單純히 武力으로써 消極的 威壓만으로는 到底히 其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 一面으로는 積極的으로 道路開鑿 又는 其他 무엇이고 一般에게 利益을 受할 公共事業을 일으켜 韓民에게 授産의 方法을 세워 現在의 暴徒의 數보다 增加케하지 않는 方法을 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道는 暴徒의 出沒이 가장 頻繁하고 其勢 亦是 가장 猖獗하다. 이미 三年에 涉하여 只今 아직 그치지 않는 狀態이므로써 間接 直接으로 받는 損害는 實로 莫大한 것이라고 思料한다. 政府에 있어서도 此際 特別한 本道의 事情을 살펴 國庫로부터 特히 相當한 資金을 支出하여 此로써 一의 公共事業을 일으키고 一面으로는 자칫하면 暴徒에 加擔하려 하는 不良遊惰의 輩에 衣食의 途를 授하여 正業에 就케 하고 併하여 一般公共의 利益을 享하는데도 至하도록 또 一面에는 威力으로써 充分히 此를 討伐하여 此의 撲滅을 圖謀하면 兩兩相俟하여 其 功을 奏할 수 있을 것으로 其 餘德은 永遠히 利益을 得할 수 있을 것이다.

只今 充分한 兵力을 增加하고 戒嚴令과 如한 것을 施行하여 一時 武力으로써 鎭壓함은 容易할 것이나 如斯한 方法은 全然 一時的으로 武力을 緩히하면 또 再擧하기에 至할 것이다. 故로 오히려 寬嚴 適當함을 得한 方針으로써 一方으로는 民力을 養하고 不良民으로 하여금 暴徒의 群에 投하는 危險 또 不利함을 깨닫게 하여 續發하는 暴徒를 防止하는 策을 講究 一方으로는 現在 出沒하는 暴徒는 守備隊 又는 憲兵隊 等에서 極力 此를 討伐하려고 生覺하면 其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右 事情을 詳細 陳情키 爲하여 觀察使 및 警察部長 又는 內務部長은 此際 上京하여 必히 政府로부터 本道에 對하여 相當한 方法을 講究토록 盡力이 있기를 希望한다.

目下의 狀況에 있어서 財務署에서 軍隊 又는 警察官의 護衛에 依하여 滯納者의 强制徵稅를 하고 있으나 其實 財務官吏의 身邊護衛보다는 차라리 軍隊 警察의 威力을 憑藉하여 此에 依하여 强制的 徵稅를 하는 것으로 一層 新政에 對하여 惡感을 起하여 延하여 暴徒에 投하는 機會를 作하기에 至한다.

또 게다가 地方費規則을 實施하고 其 結果 다시 軍隊警察의 力을 利用하여 强徵함과 如함은 將來에 惡影響을 주는 것으로 一面에는 暴徒를 討伐하면서 一面으로는 暴徒를 養成하는 것과 같아서 如斯하여서는 언제까지나 鎭靜으로 歸할 수 없으리라고 認定한다. 萬若 本件이 積極的인 方法을 採用치 않고 그대로 單純히 武力만으로써 鎭壓하려 한다면 將來 暴徒의 增加를 助長함과 如한 强制徵稅의 護衛 等은 一切 此를 中止하고 軍隊 및 警察은 極力 暴徒의 討伐鎭撫에 專從하기로 해야 할 것이다.

右의 意見에 對하여는 各警察署長에 있어서도 一同이 此에 同意하고 速히 意見을 容納할 것을 希望한다.

右 會議의 狀況을 報告함.

38. 羅警秘收 第五一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九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六月 八日 正午十二時頃 首魁 羅成化가 引率하는 暴徒 二十名이 銃器 十挺을 携帶하고 羅州郡 用文面 東村 回龍里 背後의 天馬峰에 來하여 回龍里의 人民에게 粮食을 運搬시키고 있다는 情報에 接하고 日韓人巡査 八名이 憲兵 一名 同補助員 三名을 九日 午前七時 現場에 急派하였으나 逃走 後로 得한 바 없이 歸署하였다. 該 暴徒는 羅山 方面을 向하여 逃走한 것 같다.

右 報告함.

43. 高秘收 第三三五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十一日

警務局長 名

副統監(總務長官) 駐箚軍司令官(參謀長)

憲兵隊長 警視總監 內部大臣 次官

全羅北道 古阜警察署 管內 扶安郡 乾先面 茁浦에서 同地에 있어서의 警備의 狀況 等 內偵으로 來한 暴徒 元仁石(二十二歲) 朴雨日(三十一歲)의 兩名을 逮捕 取調한 大要 左와 如하다.

「元仁石」은 本年 一月 以來 全海山의 配下에 加入 咸平 務安 靈光 各郡을 徘徊하여 金錢을 掠奪하고 二月以後는 部將 林長澤에 따라 興德郡 北面 後浦를 襲擊 日本人 二名을 殺害하고 獵銃 其他의 物品을 掠奪하였다. 그리고 今回 全海山의 命을 受하여 茁浦에 있어서의 日本人의 數 及 守備隊 警察官 警備의 實況을 偵察차 來하였다.

全海山의 部下는 二百餘名으로 또 雜役夫 等을 合할 時에는 거의 三百餘名에 達하였다. 全員은 四組로 나뉘어 其 五十餘名을 引率하고 咸平 靈光 光州 等의 各地를 徘徊하고 殘餘는 部將 林長澤 鄭大洪 郭鎭一로 三十餘名 乃至 七十名을 引率시키고 靈光 咸平 羅州 光州 各地方에 出沒시키고 있다. 合同하여 行動하는 것은 甚히 稀少하다. 또 全海山은 客年 靈光郡 社倉에서 騎兵隊로부터 奪取한 騎兵銃 二挺을 所持하고 其他는 火繩銃으로 하고 彈丸은 古鐵로써 鑄造하고 火藥은 只今까지 木浦에 在住하는 淸國人 陳白雲으로부터 供給을 受하였다.

「朴雨日」은 本年 二月 以來 朴道京의 配下가 되어 咸平 靈光 茂長 高敞 興德 扶安의 各郡을 徘徊하고 今回 其命에 依하여 茁浦에 있는 軍隊 及 警察官 警備의 模樣을 內偵하려 來하였다.

朴道京은 配下 百十餘名을 갖고 있고 스스로 其 七十名을 引率하고 先鋒 李道玄으로 하여금 四十名을 引率시키고 合同行動하고 있다. 其 武器는 騎兵銃 一 元鎭衛隊의 携帶하였던 銃十七 步兵銃 二十 火繩銃 六十四挺으로 火藥은 木浦在住의 淸國人으로부터 買入하고 있는 듯이 들었다.

右 報告(通報)함.

54. 羅警秘收 第五二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十四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六月 十一日 午後一時 賊魁 朴士化가 引率하는 暴徒 約 七十名이 羅州郡 潘南面에 出現하여 同所分遣憲兵 及 補助員 十一名은 此와 交戰하여 其七을 殪하고 獵銃 火繩銃 十五挺을 鹵獲하고 我에 損害가 없다고 한다.
右 報告함.

67. 羅警秘收 第五二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十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중략)
一. 羅州郡 三巨里의 松里에 이르니 同所에는 百餘名의 暴徒가 集團하고 있어 三人의 暴徒는 此와 合하여 咸平郡 食知面 有德山에 이르러 다시 同郡 海保面 月仰山에 登하여 夜를 徹하여 翌朝 山下의 月玄亭 芝足里 等으로부터 山上에 朝食을 運搬시킨 後 同郡大洞面 不每洞의 山中에 이르러 金 二千兩을 出給하라고 强迫 毆打當하였으나 所持金이 없으므로써 언제고 自宅에 오겠다는 約 束을 하고 今日 午後二時頃 放還되었다.
一. 首魁는 全海山으로 百餘名이 모두 銃器를 携帶하고 茶褐色의 服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右 報告함.

78. 羅警秘發 第四九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十九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六月 十六日 羅警秘發 第四八號의 續報
一. 咸平郡 葛洞面에 全海山 外 一 · 二賊魁가 引率하는 暴徒集團의 情報에 依하여 于先 當署로부터 日韓人巡査 四名을 急派하고 이어 咸平駐在 日韓巡査 三名도 該 方面에 急行시켰었는데 得한 바 없이 昨十八日 歸署하였다.
全海山이 百餘名의 部下를 引率하고 本月 十四日 十五日에 涉하여 羅州郡 道林面 三巨里 附近

으로부터 咸平郡 葛洞面 附近에 來襲한 것은 事實로 當署派遣 巡査는 守備隊 憲兵隊와 共히 同方面一帶의 地 及 咸平郡 海保面 求密 附近을 搜索하였으나 踪跡不明이므로써 巡査一隊는 十八日 求密에서 守備隊 憲兵隊와 헤어져 一旦 歸署하였다.
右 報告함.

87. 羅警秘收 第五五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二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居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五月 十八日 午前二時 良民을 假裝한 暴徒 五名이 羅州郡 田旺面 舊墓里 黃白善家에 來襲하여 金錢을 强請하였으나 黃은 此에 應치 아니하여 荒繩으로 同人을 結縛하고 靈岩郡 金磨面 方向의 山中으로 拉去 終日 毆打를 加하였던 바 被害者는 身體가 頗히 衰弱하여 翌十九日 解縛하였으므로 隙을 乘하여 脫走 歸家하였다 한다.
該 賊은 銃 其他의 兇器를 携帶치 않았으므로 或은 草賊의 輩라고 思料된다. 또 被害者는 別段의 創傷을 受치 아니하였다.
右 報告함.

93. 光警秘收 第五三九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六月 二十三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徒 搜査逮捕의 件
(중략)
一行은 二十二日 午前三時三十分 目的地에 到着하여 本村 全部를 包圍하고 搜索 中 擧動不審한 者 一名이 逃走함을 認定하고 追跡逮捕하여 取調한 바
羅州郡 芝浪面 二倉 居 白木商 金明瑞(三十三歲) 로 賊徒에 關係 없이 巡査의 進來를 두려워 遁走하였을 뿐으로 他에 何等不審한 者가 아닌 旨를 말하나 甚히 怪異한 點이 있으므로써 同行 目下 取調 中
該 村民의 말하는 바에 依하면 首魁 金東洙는 過日 附近 某酒店에서 日本巡査에 依하여 足部에 負傷(六月 一日付 光秘收 第四七八號 旣報)한 일을 들었으나 其後의 消息이 不明이라 한다. 그리고 搜査의 結果 金東洙는 數日來 該 村에 潛入한 일이 없는 것 같다.
右 報告함.

8)『한국독립운동사』자료 15 : 의병편 Ⅷ

4. 羅警秘收 第五八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六月 二十七日 午後八時頃 首魁不明(아마도 朴士化의 部下인듯)의 暴徒 三十二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茶褐色의 服裝을 하고 羅州郡 曲江面 沙浦 在留 日本人 大木게이 方에 來襲하여 左記銃刀를 掠奪하고 去하였다.
一. 二十四當 經村田獵銃 一挺(附屬品共)
代價 十八圓
一. 日本刀 一振
代價 十五圓
彼等은 被害者에 對하여 何等 危害를 加한 일이 없이 우리는 참 義兵이므로 金錢 等은 掠奪하지 아니하고 軍器로서 銃劒을 求하기 爲하여 來한 것이다. 代金은 不遠에 送付하겠다 하고 去하였다.
咸平駐在日韓巡査 四名은 鶴橘駐在巡査의 通報에 接하고 同所巡査 及 務安駐屯憲兵并 補助員의 一隊와 合하여 羅州郡 南倉 方面에 追跡하였으나 同所로부터 該 賊의 踪跡을 失하고 歸所하였다.
因하여 羅州郡 郁谷面 方丑木에서 南倉分遣所 憲兵을 狙擊한 것은 該 賊徒일 것이라고 思料한다.
右 報告함.

5. 羅警秘收 第五八四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六月 三十日 羅警秘收 第五八〇號의 一의 續報
南倉憲兵分遣所 憲兵 及 補助員이 遭難한 羅州郡 郁谷面 方丑木에 應援을 爲하여 急行한 榮山浦憲兵分隊 附曹長 以下 十六名은 急追하였으나 賊徒의 踪跡을 失하고 六月 三十日 歸所하

였다.
該 賊은 朴士化의 部下로서 其數 二十五名可量이었는데 羅州郡 馬山面 方向으로 逃走하였다 한다.
憲兵이 狙擊當할 際 應戰의 結果 賊 一을 殪하고 火繩銃 六을 鹵獲하고 應援隊에서 同銃 一을 鹵獲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12. 發 第一九九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二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全羅南道 光州申觀察使를 爲始 木浦 榮山浦 羅州 南平 長興 靈岩 濟州島 在留의 日本人并 諸團體 等이 發起하여 再昨年 七月以來 全南에서 暴徒討伐에 從事中 戰病死한 軍人軍屬 并 警察官의 靈魂을 慰勞하고 功績을 無窮히 傳하기 爲하여 忠魂碑를 建設할 것을 發起 今回 別紙와 如히 建設趣意書를 配布하고 大方의 贊同을 求하고 있으므로 玆에 申報한다.

18. 光警秘收 第五〇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五日
光州警察署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魁 金元局에 關한 件
六月 十一日字 光警秘收 第五〇六號 續報
首魁 金元局은 取調의 結果 內亂 及 强盜의 合併罪로써 七月 一日 當地方裁判所에 身柄을 送致하였다. 其 匪徒 嘯聚의 主因及 目的은 左와 如하다.
一. 姓名 年令 身分 職業 前官職의 區別
光州郡 當府面 北村 居 無職業 平民 金元國(或은 金元局) 本名을 金昌燮(三十六年)이라고 하고 號를 石浦라고 稱한다. 일찍이 官歷 없고 또 勳位榮典 없다.
二. 匪徒를 嘯聚하고 或은 擁되어 首魁가 된 動機 卽 原因 手段 目的. 方今 韓國의 內治 外交는 一로 日本政府 及 要路官人의 手에 옮기어 이제는 韓國官民은 上下를 通하여 其頤使에 甘受하지 아니치 못함 悲運에 遭到하였다. 其 聲明하는 바 保護國의 美에 藉하였다 하나 깊이

吞噬의 慾을 藏하였다고 誤解하고 日本政府 及 官民에서 慊焉의 情切한 際 首魁 曺京煥과 光州郡 仙岩市場에서 會見하고 玆에 主從의 關係를 結하고 其部下에 投하여 先鋒將이 되었다. 實로 隆熙 二年 九月 五日이다. 이에 앞서 元國의 實第 金元範은 이미 該 賊團에 投하여 都砲將이 되었다. 越하여 翌三年 一月 十日 該 討伐隊로 光州郡 所旨面 魚登山에서 襲擊을 受하고 一團이 潰敗 曺首魁 玆에 死하고 金元範 亦 生援되었다. 殘黨으로 萎微 不振 거의 適歸할 바를 모르고 後數日을 經過 元範이 殺害되었다는 報를 得하고 悲憤 드디어 決意하고 一身을 犧牲으로 하여 國權을 旣倒에서 恢復하고 同時에 實第의 讐를 報하기 爲하여 爲先 軍隊의 憲兵警察官을 殲滅할 것을 期待하고 本年 一月 下旬 別紙檄文을 各 官憲에게 送하고 一方離散코자 하는 曺의 殘黨을 糾合하고 郭鎭一을 先鋒將에 吳德信을 中軍將에 金在淵을 後軍將에 李敎學을 都砲將에 趙贊成을 犒軍將으로 하고 賊團을 形成하여 스스로 大將이라고 稱하여 此를 指揮하기에 이르렀다.

三. 生擒 또는 歸順에 關하여 感慨 또는 發意

生擒後 彼의 目的은 一時에 雲散하여 軍隊의 精銳當할 수 없음을 自覺하고 參謀智의 足하지 못함을 恨하고 時勢를 達觀하고 得치 못함을 歎하기에 至하였다.

四. 引率 또는 指揮한 匪徒의 員數及 其消長

賊 團形成의 當時는 部下 約一百名으로 本年 四月 初旬에 至한 間은 增減이 없었는 데와 如하다. 然이나 其行動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고 其初에 있어서는 大敗後이었으므로 氣焰오르지 안하고 武器 亦 準備치 아니하여 到底히 精銳의 討伐隊에 敵할 수 없으므로 巧妙히 出沒하여 其銳를 避하여 그리고 國家를 爲하여 起힌 義兵이라는 名目의 下에 良民을 拉去 或은 民家에 侵入하여 軍需라 稱하고 金穀을 强奪할 것을 일 삼았는데 本年 二月 下旬에 이르러 羅州郡 冠洞에서 兵卒 四名의 通過를 狙擊하고 또 四月 二日 咸平郡 吳山面에서 憲兵隊와 交戰하는 等 多少 活動이 불만한 것이 있었 것 같았으나 渠는 其際 負傷하여 스스로 賊團을 統御할 수 없음에 至하여 따라서 賊團의 一切를 擧하여 部下 郭鎭一에게 맡기고 自身은 轉轉潛伏하여 逮捕를 遁하고 있었던 것 같다. 以上에 依하여 볼 때는 郭鎭一의 行動은 衰弱의 傾向에 있는 것 같다.

五. 主된 根據地 或은 主로 出沒한 地域

主된 根據地

咸平郡 赤良面 舲艎面 鰲山面

主로 出沒地域

光州 羅州 綾州 同福 昌平 潭陽 長城 靈光 等의 各郡에 亘함.

右 報告함.

檄文

嗚呼 惟我 海東雖小載在鰈魚背上 禮義文物之燦然備有侔擬乎中國故 以小中華稱之者亶以此也 望在龍蛇之變 小學章子皆傳誦知悉不可床上貼床而 夫倭蘇隔在東瀛萬里之外與禽獸無且與我邦 爲隣 數被侵漁 天運循環無往不復不幸挽近以來厥數蕃殖如蛇如鬼犯于我彊 如倭之以通物貨開 關市終生匪茹殺我坤聖脅我

君上 奪我改令 擅我財賦變惟百端究厥罪狀不敬萬戮猶可輕應幸天不益 我邦家義聲四起行伍井 井 聲律凜凜捽血同盟如諸葛先鞠躬盡瘁死而後已 金元局等雖不敏當此猖獗不勝激忿 與同壯士 同心倡起義旅 敢不一辭通煩於僉士君子乎 彼倭之毒痛生靈陷據城地 非徒耳聞卽 目擊者也 須願 省內有志之士 一心倡動期圖成事則 國讐可雪矣 彊士可復矣 生爲我臣 死爲義鬼 豈可晏坐 受彼 之凌辱乎 語則無窮 猝草告槩

36. 全南警秘發 第一二七一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十二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員

內部警務局長 警視 松井茂 앞

討伐行動開始의 件

當地守備步兵大隊에서는 本月 十三日부터 約一個月의 豫定으로써 別紙略圖와 如히 暴徒討伐 行動開始의 豫定

右 報告함.

一. 此行動에는 光州 羅州 仙岩 羅山 靈岩 夢灘浦 務安 綾州 長興 康津 海南 各 方面으로부터 十一個縱隊를 編成하고 此에 警察官 及 密偵을 附하여 情況을 得하는데 따라 어느 方面에서도 其 區域을 制限치 안하고 活動하는 것으로서 約一個月의 豫定이나 重要한 賊魁를 殪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行動을 續行할 決心으로 主된 目的은 全海山 沈南一을 殪하는데 있다.

49. 長警秘收 第四二三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十六日

長興警察署長

警部 近藤俊夫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報告

(중략)

七月 十日 午後六時二十分受
全羅南道警察部長發
警務局 앞
光州 羅州 海南 各守備隊로부터 十一個縱隊를 編成하고 來十三日부터 本道 全郡에 涉하여 大討伐을 開始할 豫定計劃에 基하여 各警察署로부터 密偵 及 巡査를 附隨 行動시킨다. 此 討伐은 重要한 主魁를 撲滅하기까지 續行한다. 約二個月의 豫定

55. 羅警秘收 第六四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首魁會見에 關한 件
一. 本月 十四日 暴徒 首魁 朴士化는 榮山浦憲兵分隊에 書를 寄하여 大原分隊長에게 羅州郡 上谷面 無名 原野로 (距 榮山浦 西南 約一里半)會見할 旨 申出하였으므로 大原隊長은 快諾하고 翌十五日 午前九時 榮山浦 出發 伊集院副官李少尉(韓人)及 丸班長 以下 憲兵上等兵 十名 同補助員十名을 引率하고 正午十二時 前揭地點에 到着하여 會見을 遂하였다 한다.
一. 首魁 朴士化는 部下 二十餘名을 引率하고 砲手 二 火繩銃 八挺 朝鮮式 軍刀 一振 仕込拔 一을 携帶시키고 會見場에 期待하고 있었다 한다. 그리고 朴의 要求는 我軍에 銃器彈藥이 없고 또 이미 大勢의 歸한 바 如何히도 할 수 없이 降伏할 外 途理가 없으므로써 降을 乞함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我는 一死를 辭치 아니하여도 오직 바라건대 我에 三百有餘의 部下가 있어서 靈岩 南平 綾州 地方에 散在하였다 乞하기 寬大處置를 採하여 是等의 生命을 救助하라고 熱誠으로써 哀願하였다. 大原隊長은 朴에게 對하여 一考함만 不如하다. 不日 部下의 有力者와 共히 我의 分隊에 來하여 其時 確答코자 答하였던 바 朴도 然하고 別을 告하였다고 한다.
一. 朴은 麥酒 雉卵 等으로써 隊長以下의 遠來兵을 犒 饋 款待하였다 한다.
一. 前揭携帶한 武器는 同隊長이 領望하고 分隊에 特歸하였다 한다.
一. 首魁 朴士化는 年令二十八九로서 容貌

59. 羅警秘收 第六四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十九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消淸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七月 十八日 羅警秘收 第六四二號의 一 續報

一. 暴徒 首魁 朴士化 榮山浦憲兵分隊長과 會見後의 動靜을 듣건대 朴士化는 端正 髯을 蓄하고 流名一團의 首魁로서 부끄럽지 않은 風采의 好男子이었다 한다.

一. 朴具 原隊長에 대하여 憲兵隊로부터도 警察로부터도 實際 戰鬪力이 强襲한 것은 守備隊이었다 한다. 種種 談笑한 趣이라

右 報告함.

羅州郡 上谷面 附近에 있어서 자주 書를 憲兵分隊長에게 贈하여 歸順을 申出하고 있다. 同隊長은 歸順은 不可能의 事이나 武器를 悉皆 提供시킬 目的으로서 許否의 確答하지 안는다. 憲兵 補助員 金顯奎을 朴士化의 許에 密派하고 降을 乞할 誠意이라면 武器의 全部를 提出하라고 勸告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本月 十八日 午後六時 또 火繩銃 八挺 雙眼鏡 一個를 榮山浦憲兵分隊에 送附하여 왔다고 한다. 該 雙眼鏡은 (삿구)에 納하여 憲兵分隊班長室에 掛하여 둔 것을 何時의 間인지 (삿구)의 中으로부터 拔取 朴士化의 手에 渡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며 或은 憲兵 補助員의 所爲에서 出한 것이 아니겠는가고들 한다.

一. 本月 十八日 夜半 首魁 朴士化의 部下 十五名이 榮山浦憲兵分隊에 來하여 歸順을 申込하였으므로 同分隊에서 光州府에 同行 後가 아니면 歸順許可할 수 없으리라 하여 光州地方裁判所 拾事局에 交附의 目的으로써 同分隊附班長 丸常太郎 以下 憲兵上等兵 四名 補助員 六名 本日 午前十一時 分隊 出發 光州에 護送하였다. 以上 十五名은 朴의 部下에 있어서 採하기에 足하지 않은 雜輩이라 한다.

一. 또 殘餘의 部下는 續續 分隊에 歸順의 豫定으로 首魁 朴士化에 있어서도 本日中에 分隊에 出頭할 豫定이라 한다.

右 報告함.

61. 羅警秘收 第六五一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二十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首魁 歸順에 關한 件

暴徒 歸順의 動靜에 就하여 昨十九日字 羅警秘收 第六四七號의 一로써 報告한 바 該 暴徒의 首魁 朴士化는 部下 一名을 引率하고 昨十九日 午後四時 榮山補憲兵分隊에 來하여 歸順을 申入하였다 한다.

同地 大原憲兵分隊長은 首魁 朴士化로 하여금 暴徒搜索에 利用할 目的으로써 同地 酒幕에 內密 預置하고 一面 殘黨의 歸順申入者를 期待하고 있다 한다.
右 報告함.
因하여 昨十九日 首魁 朴士化와 共히 歸順을 申入한 者 其 部下 先鋒將이었던 光州郡 水門外 金善件 二十二年인 者라고 한다.

84. 羅警秘收 第六七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七月 二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首魁 朴士化의 動靜에 關한 件
暴徒首魁 朴士化가 榮山浦憲兵分隊에 自首한 件에 對하여는 일찍이 報告한 바 爾來 同人은 榮山浦 酒幕에 있어서 解散한 部下에 對하여 速히 自首를 申出토록 勸誘中이나 目下 其 多數는 長興郡 有治面及 靈岩郡 金礎面 地方에 있어서 其 自首를 否認하고 朴首魁는 憲兵隊의 甘言에 속아 不日 誅戮되리라고 自首를 참고 있는 趣 또 目下 羅州郡 平林 方面에 있는 賊魁 吳參奉인 者에 對하여서도 不斷히 自首를 勸誘하고 있다고 한다.
右 報告함.

16. 韓暴通 第一三五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七月 二十一日
韓國駐箚軍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八. 全南 三巨里憲兵派遣所 上等兵 三 補助員 七은 七月 四日 羅州의 西北方 約五里의 地에서 賊 五十과 衝突 其 五를 殪하고 一을 逮捕 銃 一의 鹵獲하였다.
九. 全南 三巨里憲兵派遣所 上等兵 一 補助員 四는 七月 五日 羅州의 東北 約七里의 地에서 賊 三十과 衝突 其 二를 殪하였다.
(중략)
一四. 全南 三巨里憲兵派遣所 上等兵 一 補助員 四는 七月 八日 羅州의 東北 六里의 地에서 賊 三十과 衝突 其 一을 殪하였다.

2. 司 第一七八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二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匪徒에 關한 件

(七月 三十日 司 第一七八號의 一 中 續報)

七月 三十日 午後八時 約二十名의 匪徒 務安府 望雲面 牧內洞 公金領收員方에 來襲의 報에 接하고 務安邑 鶴橋駐在 巡査 及 憲兵 等 十名이 聯合討伐로 向한 바 午後四時頃 務安府 外邑面 保平里에서 約二十名의 賊과 衝突하여 交戰 約四十分에 賊 一名을 斃하고 三名에게 負傷시켜 다시 一名을 捕獲 또 左記 金品을 鹵獲 瀆走시켰다.

一. 賊의 首魁는 羅某로 羅州 方面으로부터 侵入한 者로 玄化面 方向으로 逃走하였다 한다.

一. 鹵獲品

火繩 三挺, 負袋 一, 笠 一, 手提鞄 一, 韓衣 四, 同袴 八, 韓錢 二貫七百文, 其他雜品 若干

右 報告함.

21. 羅警秘收 第七一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일찍이 暴徒首魁 朴士化인 者 榮山浦憲兵分隊에 自首하고 同隊에 있어서는 此를 榮山浦酒幕에 預置 暴徒의 密偵及 殘徒의 自首 勸誘 等에 利用하고 있었으나 同人은 本月 二日頃부터 어디론가부터 越하여 歸來치 아니하고 同隊 補助員의 探知에 依하면 羅州郡 郁谷面 地方에 徘徊하고 있는 趣이었는데 目下 全然 其 所在를 감춘 模樣으로 同隊에서는 가장 秘密에 極力 搜査中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34. 羅警秘收 第七三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五日 午後十一時頃 首魁 朴正壽가 引率하는 暴徒 約二十五名이 各自 火繩銃을 携帶하고 羅州郡 平里面 斗山里(距 羅州邑 東北方 約二里半) 羅文善方에 來襲하여 該 羅文善을 門前에 引出하고 賊情을 憲兵 及 警察 守備隊에 密報하는 者라 하여 慘殺하고 또 拉去하여 來한 光州郡 東角面 己用里 居 尹京志인 者도 同所에서 虐殺하고 어디론가 逃走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35. 羅警秘收 第七四二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十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八月 十一日 羅警秘收 第七三九號의 一 續報
一. 南平郡 東村面 上藍洞 柳永兩方에 暴徒가 來襲 同人을 拉去한 情報에 接하고 同地方에 出張한 南平駐在 巡査는 附近을 偵察하였으나 得한 바 없이 同日 歸所하였다.
一. 暴徒에 拉去當한 柳永兩은 同日 午後六時頃 歸家하였다. 그리고 同人의 言에 依하면 該徒의 數는 九名으로 火繩銃 三挺을 갖고 있다. 同日 上藍洞을 去한 約半里의 山中에 拉去當하였으나 隙을 窺하고 逃走 歸家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36. 羅警秘收 第七三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十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一日 午前六時頃 南平郡 東村面 上籃洞(距 南平邑 東南方 約一里) 兩班 柳永兩方에 各 火繩銃을 携帶한 首魁不明의 暴徒 約二十名이 來襲하여 前記 柳永兩을 拉去 어디론가 逃走한 急報에 接하고 南平駐在所 日韓人巡査 四名은 此의 偵察로 卽日 該地方에 出張하였다.
右 報告함.

46. 羅警秘收 第七四八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十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四日 暴徒首魁 金有聲은 其 部下 十二名과 共히 榮山浦憲兵分隊에 自首하여 同隊에서는 目下 取調中의 趣이나 아직 同隊로부터 公然 通報에 接하지 아니하며 同隊에서는 此를 秘密에 附하고 있었다 한다.
右 報告함.

48. 習警秘收 第七五一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十六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二日 當署巡査의 同行한 討伐隊는 南平郡 道川面 江亭里에서 同里 居 暴徒 裵彩洙인 者를 捕縛하고 途中 逃走를 企圖하여 討伐兵에게 抵抗하였으므로 此를 殺戮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64. 光警秘收 第六九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二十日
光州警察署長 警部 牧瀨伊左衛門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徒被害의 件
二十日字 德田巡査 報告
本日 羅州郡 三嘉面 居 尹奭柄으로부터 探知한 바 本月 十五日 午後十時頃 首魁不明(目下咸平郡 羅州郡間을 徘徊하는 全海山의 部下이리라는 說이 있다)의 賊徒 各携銃 羅州郡 三嘉面 細洞里村에 襲來하여 同村 酒幕主人 崔聖振(三十五年)을 銃殺하고 어디론가 逃走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65. 光警秘收 第六九五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二十日
光州警察署長 警部 牧瀨伊左衛門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賊魁에 關한 件

二十日字 警部 申台鉉 報告

羅州郡 金海 居 盧雙同

右는 本年 三月頃으로부터 暴徒가 되어 部下 一百名餘의 首魁가 되어 靈岩郡 北面에 根據하여 現에 該 地 附近에 出沒하고 있는 趣 該 地方 住民으로부터 聞知하였다.

右 報告함.

67. 全南警秘發 第一五二三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二十二日

全羅南道警察部長警視 村上則貞

警察署長 앞

今回 臨時 韓國派遣隊司令部는 其 全力(步兵箇聯隊)을 擧하여 全羅南北道에 出沒한 暴徒 撲滅을 爲하여 左의 計劃에 依하여 大討伐 實施에 對하여 警察에서는 此際 出來할 수 있는 限의 力을 盡하여 暴徒의 搜索 偵察 通報 其他 警察官의 執할 任務는 充分 活動하여 討伐隊의 援助에 努할 것이다. 또 實施上 詳細한 事項은 各 討伐隊와 協力하고 또 其 要求에 依하여 될 수 있는 限 便宜를 計하도록 部下 一般에게도 示達할 것이다.

暴徒討伐計劃 援萃

一. 今回의 討伐은 步兵 二箇 聯隊 及 第十一艇隊(水雷艇 四隻) 石油發動汽船 及 梅丸乘組員으로써 施行한다.

二. 陸上은 全羅北道 扶安 泰仁 葛潭 南原을 連한 線으로부터 蟾津江 上流 院村으로부터 同江 沿岸 河東 高浦에 至하는 線으로써 外圍線으로 한다(此線에는 警備部隊를 配置하고 此線 以北에 脫出치 안하기로 한다).

三. 討伐의 期間은 左의 三期로 區分한다.

第一期 約十五日間

第二期 約十五日間

第三期 約十五日間(第三期 海上의 討伐은 第二期의 結果에 依하여 變化가 있을 것이다)

合 約 四十日間

四. 各 期間에 있어서의 各 部隊의 行動區域은 別紙 畧圖와 如하다.

五. 討伐部隊를 分하여 警務部隊 及 行動部隊의 二로 한다.

1. 警備部隊는 警備線으로 配置하고 各 連絡을 保存하고 其 區域內로부터 暴徒를 脫出치 아니하기를 期하기로 한다.

2. 行動部隊는 警備線 內를 두루 嚴密 搜索하고 暴徒의 討伐 撲滅에 努力 今回 觀察使의 訓令에 依하여 各 府郡內 面長 洞長의 許에 調製시킨 二十歲 以上 六十歲 以下의 男子名簿에 依하

여 各 村落에 潛伏한 暴徒의 發見에 努力 併하여 隱匿한 銃器의 收集을 期하기로 한다.
六. 搜索 其他 必要한 境遇는 其 地方 警察官 또는 憲兵隊의 援助에 依한 것으로 한다.
七. 各 部隊는 八月 三十一日까지 外圍線 及 警戒線에 配置하고 九月 一日부터 行動을 開始한다.
八. 司令部의 駐屯 位置는 左와 如하다. 九月 一日부터 同月 五日까지 南原 九月 八日부터 同月 十五日까지 光州 九月 十六日부터 同月 二十日까지 榮山浦 九月 二十一日부터 十月 十日까지 木浦
九. 患者 療養所의 位置는 左와 如하다.
全州 南原 長城 靈光 光州 羅州 順天 寶城 靈岩 海南
十. 物資의 集積地는 左와 如하다.
高敞 靈光 月坪 光州
石實場 順天 福內場 寶城 綾州 羅州
十一. 第三期 海上 各 島嶼의 搜索 討伐은 第二期 討伐의 狀況에 依하여 其 境遇에 至하여 다시 命令하기로 한다.
十二. 各 討伐隊는 討伐終了後 木浦에 集合하기로 한다.
注意事項
一. 各 警察署 또는 巡査駐在所에서 得한 暴徒의 情報는 此際 其 附近 行動中의 討伐部隊에 通報를 怠慢하지 아니할 것
二. 軍隊의 要求 있을 境遇는 勿論 必要라고 認定할 境遇는 署員으로 하여금 搜索 偵察 通譯 等의 任에 當케 하고 또는 密偵을 操縱시킬 것
三. 討伐隊로부터 暴徒의 嫌疑者 또는 擧動不審者를 發見하고 此를 引渡하였을 境遇는 充分 此를 取調 全然 良民이거나 또는 暴徒 加擔者이거나 무엇이던 判明 次第 速히 相當 措置하여 其 結果는 遲滯 없이 當部에 報告할 것
(軍隊에 있어서는 警察官 又는 憲兵에게 引渡하고 凡 其置를 托할 豫定)
四. 糧食 其他의 物資는 各地方에서 買入하기로 한다.
五. 日本人의 在留한 地方은 今回 多數의 軍隊 行動하여 日用品 其他 需用物品을 要하므로 此際 多少 買入의 準備를 하고 暴利를 貪하지 아니하고 相當 代價로써 販賣하도록 미리 注意를 與하여 두라
六. 各 面長 洞長은 討伐行動中 討伐隊에서 搜查上 凡 使用할 것으로써 此로 因하여 目下 實施中의 民籍調查는 勢不得已 此際 一時 中止할 것
그러나 討伐行動을 了하고 他에 移動하여 民籍調查上 差支 없기에 至하면 直時 調查를 續行할 것

七. 暴徒討伐上 必要로 各 府郡內에 居住한 二十歲 以上 六十歲 以下의 男子는 今回 觀察使로부터 各 府尹 郡守에게 訓令하고 永住나 一時의 寄寓와를 勿論하고 現住者는 모두 其 本籍 住所 職業 姓名 年齡을 調査하여 各面 各洞마다 名籍를 調製하여 來九月 五日까지에 準備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또 警察에서도 注意를 與하여 必要한 境遇는 相當 此의 便宜를 計하여 軍隊와 協力하여 調査 對照 其他 搜索上의 目的을 達하기에 努力할 것이다.

76. 羅警秘發 第六二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二十五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眞否不明이나 全海山 沈南一 朴士化 羅成化 外 一二의 賊魁는 目下 康津郡內에 集合하고 있었다는 風說이 있다.
右 報告함.

77. 羅警秘收 第七七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八月 二十五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八月 十六日 羅警秘 收第七四八號의 一 續報
일찍이 暴徒首魁 金有聲이란 者 榮山浦憲兵分隊에 自首한 趣及 報告한 바 同分隊長은 此際 多數의 自首者를 出할 目的으로써 同人을 密偵에 利用하고 部下의 全部에 自首를 勸誘할 旨 命하였던 바 本人은 此를 諾하고 本月 二十二日 務安郡 方面으로 出發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2. 韓暴通 第一三七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八月 四日
韓國駐劄軍參謀長 明石元二郎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全南 三巨里臨時憲兵派遣所上等兵一 補助員 三은 七月 二十日 羅州北方 五里의 地에서 約十五의 賊과 衝突 其一을 殪하고 銃一을 鹵獲하였다.

1. 全南警秘發 第六〇五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一日

全羅南道警察部長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大討伐에 關한 件

今回 軍司令部의 計劃에 基하여 在大邱臨時派遣隊 司令官 渡邊少將은 派遣隊의 거의 全兵力을 擧하여 本道의 暴徒大討伐을 實施하므로 本道에는 이미 客月 二十一日 光州守備隊長 五十嵐少佐와 協議하여 各府尹 郡守 及 各警察署長에게 內訓하여 各各 討伐行動의 援助에 努力시키고 또 別紙日程과 如히 小官 及 觀察使并 小林書記官은 各部署를 定하고 管內에 出張 各面長 洞長 等을 召集하여 親히 必要한 訓諭를 與하고 目下 銳意部民을 督勵하여 討伐隊의 援助에 勉勵하고 있다.

右 報告함.

追而 各府尹 郡守에는 別紙寫와 如히 內訓을 發하고 또 警察署長에는 同趣旨로써 搜査 偵察通報 等 警察의 執할 任務는 全力을 擧하여 暴徒討伐의 目的을 達하도록 訓達하여 두었다.

訓令寫(譯文)

全南秘訓 第一號

暴徒討伐의 必要上 各府郡面洞里內에 在住한 二十歲 以上 六十歲 以下의 男子는 其 業務의 如何를 不問하고 또 從來 在住의 者와 一時의 寄寓者와의 論 없이 적어도 其 部落內에 居住하는 者는 本籍 現住所 職業 姓名 年令을 調査하여 반드시 九月 五日까지 各 面長 洞長 及 里長의 許에 名簿를 調製하여 두고 또 府尹及 郡守는 面洞長을 嚴重히 督勵하여 何時에 든지 軍隊의 要求에 應하고 遲滯없이 此를 提供시키도록 取計함이 可하다.

또 府尹 及 各郡守는 此際 全力을 傾注하여 軍隊의 便宜를 計하고 自進하여 各面洞長을 指揮하고 軍隊의 要求 及 粮食 其他 需用物資의 供給上 差支 없도록 取計 部民을 督勵하여 遺憾없도록 充分 努力할 것이 可하다.

[隆熙 三年 八月 二十二日]

全羅南道觀察使 申應熙

各府尹郡守 앞

『觀察使 出張日程』

『警察部長 出張日程』

『內務部長 出張日程』

6. 收 第四七一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二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清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首魁 朴士化는 部下 約五十名(麻布의 服을 着하고 各自 携銃 其 中 三名 佩劍)을 引率하고 八月 三十日 午前四時三十分 靈岩郡 西終面 毛亭里에 來襲하여 里長 金仲函을 殺害하고 洞民 三名을 拉去하고 木綿 一匹餘 鷄 二十羽(代金圓 二十錢)를 掠奪하고 去하였다. 巡査 憲兵으로부터 成한 討伐隊는 追跡하였으나 得한 바 없다.

一. 右 報告에 接한 靈岩憲兵 二名 補助員 五名 駐在巡査 二名은 聯合 討伐로 急行한 바 暴徒는 西終面 鷹峰洞으로부터 韓船 三隻에 乘하여 逃走 後이므로 追跡하였으나 踪跡을 得치 못하였다.

右 報告함.

10. 羅警秘收 第八〇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清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左記의 者는 일찍이 咸平郡 求密憲兵派遣所에 雇用賊狀 密偵 從事의 者인 바 客月 二十九日 夕 咸平郡 月兵面 內洞 某酒幕에 休憩中 屋後의 山中으로부터 二十餘名의 暴徒가 나타나 同人 等을 毆打 死에 至케 하고 어디론가 逃走하였다 한다.

右 報告함.

左記

羅州郡 西部面 水口村 李成律 二十二年

羅州郡 西部面 北門內 崔致道 四十二年

羅州郡 西部面 州司里 金正太 二十四年

羅州郡 西部面 校村 朴福男 二十五年

追而 朴福男은 死體 發見치 못하였다. 拉去된 者로 生死 不明이라고 한다.

35. 羅警秘收 第八三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十三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清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일찍이 榮山浦憲兵分隊에 自首하여 滯在中 逃走 行方不明이된 暴徒首魁 朴士化는 다시 其 部下 約四十名을 引率하고 客月 十日頃 羅州郡 豆洞面(距 羅州邑 約五里)에서 一泊 어디론가 去한 形跡이 있다 한다.
右 報告함.

44. 全南警秘發 第一七一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十七日
全南警察部長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論告의 件
今般 暴徒大討伐에 對하여 出張中의 南部守備管區司令官 渡邊少將으로부터 別紙와 如히 管內一般 韓民에 對하여 諭告를 發하였으므로 當觀察使로부터 各 郡守 府尹 及 各警察署長으로 하여금 此를 一般에서 周知시키도록 取計하였으므로 參考로 報告한다.
諭告
韓國南部守備管區司令官 陸軍少將 渡邊水哉는 玆에 書를 須하여 管內韓國民衆에게 告하오니 夫皇命을 抗하는 者를 逆이라 하고 無辜을 戕하는 者를 暴라 하고 良民을 苦케 하는 者를 賊이라 하고 不良을 逞하는 者를 匪라 하니 天地에 無所容이오. 賊匪는 人道에 無所與라 하니 予 熟熟히 韓國現今의 形勢를 觀察하건대 內로 至善의 政治와 外로 鄰邦의 保護가 有하여 國利民福을 增進케 하여 國運이 漸次 隆昌의 氣勢에 向하나 雖然이나 邊鄙의 地方에 在하여는 暴徒가 發生하여 暴逆을 逞하여 賊匪가 橫行하여 抄掠을 作하니 民不安堵하여 着實한 事業을 經營할 者 無하니 産業上 至大한 影響을 被하여 地方의 發達을 阻碍됨이 甚多하니 抑一國國力의 充實은 決코 都市의 殷奢繁華에 不在 地方民力의 豊富昌盛에 主在하나니 故로 國力의 充實을 期欲코자 하면 地方에 蠹毒되는 暴徒를 勦滅하므로 急務라할지니 惟人이 此世에 處하여는 各其職에 勉하며 其業에 勵하고 君에 忠하며 親에 孝하며 身을 立하며 道를 行하여서 順良한 臣民됨이 可하거늘 無賴徒食을 是事로 하고 甚하여는 浮浪의 徒를 嘯聚하여 剽窃奪略으로써 良民을 困케 함과 如함은 天理人道에 悖戾할 뿐아니라 又 國法에 不許하니 現今 韓國各地에 存在한 所謂 義兵云者는 實非 憂國之士요. 名을 此에 籍하고 各道를 騷擾하며 無辜를 殘賊하고 錢穀을 强奪하며 皇命을 不服하는 純然한 暴徒요. 國家를 頹廢케 하는 亂臣賊子에 不過하며 韓國의 保全과 人民의 幸福을 欲圖하려면 此等暴徒를 掃蕩하지 아니치 못할지라. 予는 南韓守備司令官의 職으로하여 極力히 此를 根絕토록 努力하여 管內地方의 安寧을 期하느니 民衆도 亦宜此意를 體하여 國家의 進運을 冀하려면 協同一致하여 速히 暴徒를 逮捕하거나 或은

理非함을 諭하고 責하여 使彼等으로 慚愧自服 擇降케 함에 盡力아니치 못할지라 夫天網이 恢恢에 踈而不洩하니 積惡인댄 必有餘殃이라 故로 不良之輩도 早晩自滅할 時가 到하여 身과 首가 所를 異함은 盖遠함이 不在하니 若使 暴徒로 悔過悟非하고 國法의 制裁를 仰함에 在하여는 軍隊는 實로 干涉함이 無할 것이요. 今也엔 賊魁 中 能히 成敗利鈍을 鑑하고 曲直을 明히 하여 投降來者가 躡踵相續함에 至하여 地方의 平定은 庶哉有希일가하니 際此好機하여 暴徒의 親族及 其鄕黨의 民衆은 猶且 各地에 殘存隱伏한 匪賊으로하여 孤疑逡巡하고 降伏歸順을 躊躇하는 者를 知함이 有하거던 此를 反省케 하여 順良한 臣民이 되게 함은 最得其所者로서 天理人道에 適合하고 國利民福을 增進하여 一體히 韓皇帝陛下께 奉할 所以로서 韓國을 爲하여 慶賀할 바이니 民衆은 咸須遵此 諭告하여 暴徒를 戒飭하여 幸勿有 噬臍之悔케 한다.
右 訓諭함.
明治 四十二年 九月 日
韓國南部守備管區司令官
陸軍少將 渡邊水哉

47. 發 第二三六號의 二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十八日
木浦警察署長 警視 市川信淸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九日 發第二三六號의 一 續報
暴徒 朴成實 外 一名을 逮捕하고 取調中인 旨 于先 報告한 바 本月 十一日 以來 市島警部에 日本人巡査 三名을 指揮시켜 集團 六名 中의 끝에 就縛者 四名의 逮捕에 着手하였던 바 其中 金太玉은 近頃 光州 附近에서 討伐隊에 銃殺當한 趣에 있다. 左記 三名을 逮捕하고 玆에 本犯 集團의 全部를 逮捕하였으므로 玆에 報告한다.
左記
羅州郡 曲江面 永民里 李判須 二十三年
羅州郡 茂思面 通文洞 尹去玄 二十四年
羅州郡 曲江面 秋夢九 二十二年
右 報告함.

50. 羅警秘收 第八四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大討伐에 關한 狀況 報告
今回 大討伐은 暴徒 大討伐의 空前의 壯擧로서 其規模 宏大 마침 大戰爭에 對한 行動의 觀이 있다. 그리고 各隊의 兵員은 五名 乃至 十名으로써 一隊가되어 村落山野의 別이 없이 搜索에 努力하고 있으나 如何하겠는가 兵員의 不足은 緻密의 配備를 缺하고 各隊의 連絡不充分의 感이 있다. 鼠賊과 如한 暴徒 潛行脫出은 勢不得이 免할 수 없는 것으로 比較的 効果의 顯著치 못한데 基하여 是等의 點에 起因한 것이 아니겠는가 此際警察은 極力 其缺欠을 補遺하여 充分의 効績을 收하나 包圍圈線 廣함에 失하고 少數人員으로써 此에 備하므로 逸出의 餘地가 十分하여 甚히 遺憾事에 屬한다. 第一期 豫定 討伐은 이미 終하였으므로 第二聯隊 第一大隊本部는 本日 當地에 到着하였다.
右 參考로 報告함.

65. 長警秘收 第五四二號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二十二日
長興警察署長 警部 近藤俊夫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自首의 狀況 報告
當部內에 있어서의 暴徒는 數個의 團體가 있다. 모두 神出鬼沒 少數의 警察官吏憲兵으로 하여금 徒히 奔命에 疲케 하여써 暴威를 逞케 하고 있었는데 本年 憲兵 守備兵增員한 以來 彼等에게 不斷한 打擊을 與한 것에는 想像하나 効果로서 特히 記할 程度는 없었다. 그런데 今回 大討伐을 擧行한 結果 彼等은 거의 四散하여 各其 知己를 便하여 潛伏하고 있었던 것 같다. 此機에 乘하여 討伐隊는 密偵을 利用하고 또는 戶口를 調査하는 等 續續 暴徒를 逮捕하기에 至하였다.
萬一의 赦免을 一縷의 恃로 하여 討伐隊에 續續 歸順 願出하는 狀況에 있다. 卽客月 三十日 賊魁 黃斗一이 部下 九名을 引率하고 海南守備隊에 歸順 願出한 것을 爲始爾來 其 部下 다시 二十五名이 歸順 願出 또 續出하는 模樣이 있다.
이어 首魁 安柱洪 沈南一의 兩團體는 部下 中 가장 優勢하고 猛惡한 것이었는데 此亦 드디어 力盡 本月 十七日 其 部下의 輩八名 寶城駐屯 第二大隊本部 及 第七中隊 等에 歸順 願出하였다.
또 第二聯隊本部 其他에도 部下 三十名 可量 歸順 願出하였다 한다.
如何튼 討伐隊形을 그대로 只今 暫時 持續하는데 있어서는 其 大部는 自首하기에 至할 것으로 思考된다.
右 報告함.

89. 羅警秘收 第九〇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九月 二十八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當署巡査 安得珠의 參加한 臨時派遣步兵 第二聯隊 第五中隊는 本月 二十四日 暴徒 首魁 權澤 逮捕의 目的으로써 搜索中 同人은 全南 長興郡 邑內에 있어서 目下 救世軍에 加盟하여 其 姓名을 鄭贊會라 僞稱하고 救世軍營內에 潛伏하고 있는 旨 安巡査의 探知한 바가 되어 同巡査는 翌二十五日 密偵二名과 共히 同人을 逮捕하고 此를 同隊에 引渡하였다.

權澤은 就捕時 全羅南北道 義兵將의 都大將이라고 自稱하고 있었다고 한다.

右 報告함.

13. 送乙機密 第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 九月 二十四日

臨時韓國派遣隊司令官 渡邊水哉

南韓暴徒討伐續行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定한다.

南韓暴徒討伐續行에 關한 規定

一. 暴徒의 首魁는 各地에 潛伏하여 其 部下 及 其他의 匪賊도 亦是 逮捕되지 않는 者 많다.

二. 派遣隊는 第三期의 討伐及 다시 第一 第二期間에 있어서의 地域의 討伐을 續行하고저 한다.

三. 討伐의 地區를 左와 如히 區分한다.

(別紙畧圖參照)

1. 第一區 步兵第一聯隊守備區內(第一期 第二期討伐實施地域)

2. 第二區 步兵第二聯隊守備區內(第一期 第二期討伐實施地域 及 第三期豫定島嶼)

3. 沿岸諸島嶼(第三期討伐豫定의 島嶼)

四. 討伐實施期日은 第一 第二區에 있어서는 十月 二十五日까지로 沿岸諸島嶼에 있어서는 十月 十日까지의 豫定으로 한다.

五. 步兵 第一聯隊長은 第一大隊(第一 第二中隊欠)로써 沿岸島嶼를 第二大隊로써 第一區의 討伐을 實施한다. 第一大隊 沿岸島嶼討伐結了後는 聯隊長이 適宜第一區內 討伐에 使用하고 又는 當該守備地에 歸還시킬 수 있다. 步兵第一聯隊 第一 第二中隊는 第三期로부터 步兵第二聯隊長의 隸下에 屬한다.

六. 步兵第一聯隊第三大隊는 第二期討伐終了 後 直時 討伐을 實施하면서 陸路其守備地에 歸還시킨다.

七. 步兵第二聯隊長은 其隊及 步兵第一聯隊 第一 第二中隊로써 第二區의 討伐을 實施한다.
八. 石油發動機汽艇은 到着後 兩聯隊에 分屬할 豫定
梅丸은 十月 一日以後 步兵第一聯隊長의 指揮에 屬한다. 따라서 九月 三十日 木浦에서 引繼를한다.
九. 聯隊長은 其擔任地區內에서 適宜 다시 各大隊의 討伐地區를 定하고 討伐을 實施시킬 것이다.
但 討伐實施의 要領은 于先 各部隊를 所要의 各地에 配置하고 其 附近의 討伐을 行케하도록하고 또 地區內에 固有의 守備地가 있는 것은 되도록 該 地方의 討伐에 從事시켜 此에 必要한 增加隊를 加하도록 計劃할 것이다.
十. 工兵小隊는 第二期結了後는 十月 五日까지에 木浦에 集合하여 海路歸還할 것이다.
十一. 各隊는 第二期終了後 直時 行動을 開始할 것이다.
十二. 固有守備地에 있는 部隊는 增加部隊에 對하여 特히 討伐行動上의 諸便宜를 與하고 또 其地方의 狀況等에 對하여 參考가 될 事項은 總히 此를 通報할 것이다.
十三. 服裝은 前計劃과 如하다. 但 必要에 應하여 各衣袴를 使用하는 것도 無妨하다.
十四. 給食은 從前과 如하다.
但 賄料의 第二次 討伐間及 歸營行軍間은 前規定에 依據한다.
十五. 聯隊長은 本命令에 基하여 討伐에 關한 方法을 定하여 九月 二十九日까지에 到着하도록 報告할 것이다.
十六. 討伐에 關한 諸報告는 十月 十日까지에 到着할 것은 木浦에 其 以後에 係한 것은 大邱司令部앞으로 呈出할 것이다.
十七. 討伐의 進捗과 共히 豫定日數 變更의 必要가 있을 때는 聯隊長으로부터 申請을 要한다.
十八. 各中隊의 新配置 及 歸營行軍을 爲하여는 示威搜索 及 給養의 顧慮上 되도록 聯隊에서 分進의 計劃을 할 必要가 있다.
十九. 各 部隊는 豫定의 期間 及 行動을 終了하면 別命을 期待릴 것 없이 平常의 守備勤務로 復歸한다.

6. 羅警秘收 第九二七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四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自首의 件

當署 變裝巡査隊의 同行한 討伐隊에 本月 一日 同二日의 兩日間에서 左記의 者 自首하였다.
左記
南平郡 竹谷面 臥牛 居 賊魁 沈南一의 部下 朴文基 三十一年
南平郡 郁谷面 雲谷 居 金五鳳 三十三年
南平郡 郁谷面 雲里 居 賊魁 沈南一의 部下 朴基順 二十五年
南平郡 郁谷面 馬飮村 居 黃明午 二十六年
南平郡 郁谷面 馬飮村 居 賊魁 沈南一의 部下 金順基 三十三年

7. 羅警秘收 第九三二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自首者에 關한 件
左記者 臨時派遣 討伐隊 岡崎少佐에게 自首에 及하였으므로 謹愼票 下附한 趣에 있다. 報告한다.
左記
(중략)
一. 羅州郡 用文面 余里 金太玉 三十年

24. 羅警秘收 第九四六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九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左記의 者 當署 變裝 巡査隊와 同行한 討伐隊에 本月 八日 自首하였다.
左記
1.羅州郡 平里面 松永院 月城里 居 商 元首魁 曺京煥의 部下 朴成彩 二十八年
右 報告함.

28. 羅警秘收 第九五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十一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二日 左記의 者 臨時派遣 討伐隊에 自首하고 同隊岡崎少佐에서 謹愼票를 下附하였다 한다.

左記

(중략)

一. 羅州郡 芽界面 白洞 崔東鉉 二十九年

一. 羅州郡 曲江面 月海里 林中玉 三十七年

一. 羅州郡 曲江面 月海里 朴石順 三十八年

一. 羅州郡 三加面 鷹遊里 金桂煥 三十五年

一. 羅州郡 曲江面 羣池里 林權仲 五十六年

一. 永洞里 朴相洙 三十二年

一. 羅州郡 曲江面 船頭里 金奉采 二十六年

42. 羅警秘發 第八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十五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當署 管內各地에 出沒 橫暴를 姿한 賊魁 李江山 外 四名은 左記憲兵隊에 自首 或은 同隊에게 逮捕되었다.

左記

(중략)

十月 十三日 榮山浦憲兵分隊에서 逮捕 首魁 羅成化 首魁 朴士化

右 報告함.

54. 羅警秘發 第八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小官及 當地守備隊長의 訓諭에 依하여 左記의 暴徒 加擔者 本月 十八日 當地守備隊에 面洞長과 同行 自首하였다.

左記

羅州郡 官洞面 李京云 四十六年

羅州郡 官洞面 沈亨一 三十三年

羅州郡 官洞面 李大亨 三十四年
羅州郡 官洞面 李官鎬 二十五年
羅州郡 官洞面 鄭先化 三十年
羅州郡 官洞面 李士彦 三十五年
羅州郡 官洞面 李良元 二十九年
羅州郡 官洞面 林化喜 二十六年
羅州郡 官洞面 盧受龍 十九年
羅州郡 官洞面 金判進 二十七年
羅州郡 官洞面 金占水 三十二年
羅州郡 官洞面 申喆順 三十九年
羅州郡 官洞面 趙昌善 同三十三年
羅州郡 官洞面 金用述 二十三年
羅州郡 官洞面 趙君彦 十九年
羅州郡 官洞面 金參化 三十年
羅州郡 官洞面 金成玉 二十七年
羅州郡 官洞面 柴貴成 二十二年
羅州郡 官洞面 金龍基 二十三年
右 報告함.

55. 羅警秘發 第八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清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일찍이 當署 巡査의 同行한 當地守備隊에서 討伐中 暴徒 加擔者 左記의 者에 對하여 面洞長의 保證을 得하여 訓戒放免하였다 한다.
左記
羅州郡 居平面 葛馬地 崔東石 十九年
羅州郡 平里面 朴成彩 二十八年
羅州郡 居面 大長村 羅鳳一 二十一年
羅州郡 用文面 本村里 申可述 三十一年
羅州郡 用文面 本村里 申基述 三十一年
羅州郡 道林面 徐碩振 二十六年

羅州郡 道林面 金善□ 三十二年
羅州郡 道林面 金成律 四十六年
羅州郡 道林面 徐太華 二十年
羅州郡 用文面 朱洛甲 二十五年
右 報告함.

59. 羅警秘收 第九八三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一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十六日 左記 暴徒 加擔者 當署 管內 咸平巡査駐在所에 自首하였다.
左記
(중략)
○羅州郡 侍良面 江岩里 農 首魁 吳正實의 部下 李東奎 三十年
右 報告함.

69. 全南警秘發 第二〇八二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三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大討伐 成績
今回本道內에 있어서의 暴徒大討伐 實施에 對하여는 隨時報告에 及하였던 것과 如히 討伐部隊는 豫定의 計劃에 基하여 極力檢擧 搜索에 勉勵 또 地方官으로서 觀察使 以下 內務 警察兩郡長은 各各 部署를 定하고 널리 管內를 巡視하고 渡邊派遣隊司令官 及 各討伐部隊長과 協力하여 各府尹 郡守 並 警察署長을 督勵하여 討伐行動上의 援助에 勞力 또 各警察署長 並 府尹郡守도 各各 各 管內를 巡視하고 部下를 督勵하고 各官 共히 到處部民을 몽아 懇篤訓諭를 주어 크게 理非를 說하고 暴徒에 加入한 者의 不正當한 것을 깨닫게 하며 討伐隊와 相待 自首를 勸誘 一面人民으로 하여금 暴徒의 潛伏者를 密告할 것을 奬勵하고 다시 討伐隊는 市街 村落 山野를 區別없이 寸隙도 없이 縱橫으로 馳驅하여 匪徒로 하여금 全然 出沒의 餘地가 없게 하여 彼等은 드디어 勢窮하고 또 逃亡할 길이 없어 再昨年 以來로 跋扈 兇暴를 逞하고 出沒에 巧妙한 彼等도 此痛快한 大檢擧에 不堪 續續 逮捕되어 或은 誅戮되는 者 踵을 接하기에 至하여 暴徒도 크게 討伐隊의 威力에 其膽을 被奪하였는지 此時에 當하여 渡邊司令官은 特히 諭

告를 發하여 其 요령을 示하고 또 本使로부터도 管內一般에게 訓諭하여 一面 各 府尹 郡守 及 警察官에 內命하여 匪徒의 自首를 勸誘시키고 또 檢事長과 協議하여 自首者는 可能寬曲히 取扱하기로 하고 便宜한 方法으로 檢의 出張事을 求하고 數百의 自首者 各地에 集合하여 出張處에서 적절處置를 定하고 附和隨行者 等 輕微한 者는 直時 解放하였으므로 暴徒加擔者는 全然 自首의 恩典이 있음을 感하고 이미 自首를 覺悟한 首魁 黃斗一을 爲始 多數의 部下를 引率 或은 二 三十 五六十 一團을 하여 守備隊警察憲兵 又는 郡衙巡査駐在所 等에 續續 自首를 申出 今日까지 約一千에 가까워 또 續續 自首하고 있다.

特회 安桂洪 沈南一等 重要한 巨魁는 大槪 縛에 就하고 或은 誅戮되어 거의 本道의 匪徒로 하여금 屛息시켰다. 要컨대 今回의 大討伐은 討伐部隊의 非常한 奮勵에 依하여 豫期以上의 好結果를 奏하여 本道地方에 多大한 利益을 與하였다. 是 必竟 全道에 涉하여 周到緻密한 討伐隊를 行動시켜 數十日繼續檢擧에 勉勵한 것은 勿論이나 또 一面에는 地方行政官 並 檢事等 各 機關이 잘 서로 一致協力하여 討伐隊의 援助에 勞力 鎭撫 盡力한 結果라고 思料한다.

그러하다. 그리고 現今 오직 若干의 殘賊 各所에 潛伏 遁竄한 者가 있으므로 討伐隊는 此機에 乘하여 匪徒를 根絕하는 目的으로써 다시 繼續日夜息을 멈추지 못하고 餘黨의 檢擧에 盡瘁하여 全然 暴徒의 撲滅을 期하기까지 其 期間을 豫定치 안하고 目下 本道와 全羅北道와의 境界 靈光郡 方面에 있어서의 五十嵐少佐(臨時派遣步兵第二聯隊第二隊長) 指揮下에 行動하고 있다.

以上의 狀況이므로 本道에 있어서의 暴徒의 全滅을 期하고자 하여 各 地方에 있어서의 警察 又는 憲兵의 配置를 아직 充分치 못하므로 便宜한 方法으로 各 郡守에게 命하여 村落의 住民으로 하여금 自衛的으로 村民團結費用을 要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暴徒의 檢擧警戒에 勞力케 하여 目下討伐의 補助機關에 利用하고 있다.

前述과 如회 各討伐機關과 地方行政官이 서로 協力하여 暴徒의 撲滅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으므로 秩序恢復이 全然 地方의 安寧을 보는 날은 반드시 가까움에 있을 것을 믿는다.

또 今回大討伐의 結果 今日까지의 成績을 擧하면 左表와 如하다.

右大要를 略叙하여 報告한다.

左記

暴徒討伐成績

自八月 二十五日 至 十月 二十一日

一. 暴徒의 死者 四百二十名

二. 逮捕又는 自首者 一千六百八十七名 其中自首者約八百五十

三. 鹵獲銃器 四百五十五挺

四. 刀槍 五十一

五. 逮捕한 重要 首魁 左와 如하다.

- 沈南一 本名 秀澤, 字德弘, 元巨魁 金聿의 部將으로 金의 死後 獨立하여 首魁가 되어 部下 二百餘名을 갖고 優勢한 巨魁이었다. 綾州郡 風峙의 岩穴內에서 被逮
- 安桂洪 寶城郡의 貧困한 農民으로부터 起하여 部下 二百七十을 갖고 出沒 最巧한 巨魁이었다. 寶城郡 鳳德面 法化村(福內場 附近)에서 被逮
- 黃斗一 海南郡에 있어서의 首魁의 一人으로 部下五十을 갖고 八月 三十日 部下 及 銃器를 搜帶하고 守備隊에 自首하였다(郡守의 勸誘에 依함)
- 朴士化 沈南一의 部將으로 一旦 榮山浦憲兵分隊에 自首하였으나 再次逃走하여 行動하였으나 또 逮捕되었다.

羅成化 沈南一의 部將

朴永根 沈南一의 部將

尹洪八 沈南一의 部將

姜采洪 沈南一의 部將

林行楚 沈南一의 部將

宋炳雲 黃斗一의 參謀로 黃과 共회 自首하였다.

姜武景 沈南一의 股肱의 部將으로 沈의 兄弟와 交를 結하고 沈과 共회 風峙의 岩窟內에서 被逮

孫德五 安桂洪의 部將

廉圭範 安桂洪의 部將

廉仁瑞 安桂洪의 部將

鄭奇贊 安桂洪의 部將

任在文 安桂洪의 部將

林夏中 安桂洪의 部將

劉又三 安桂洪의 部將

申文景 安桂洪의 部將

金永禧 安桂洪의 部將

梁鎭汝 光州 附近의 酒幕業者로 一時 部下 約五十을 갖고 光州 附近에 出沒하였다.

梁士文 一名判烈 元 金泰元의 殘黨으로 光州 附近에 出沒하고 部下 約七十을 가졌다.

權澤 元 金聿의 部將으로 羅州 附近에 出沒한 者이다.

吳參奉 元金聿의 部將으로 七十二歲의 老人이다.

牟午年 沈南一의 部將

李江山 沈南一의 部將

金敬允 獨立하여 興陽方面에 出沒하여 一時 部下 五十을 갖었다.
六. 殺戮된 者
林昌模 一名 林洛均, 寶城郡의 稍 勢力家로 元 高光順의 部將으로 再昨年 十一月 高光順 等과 共히 智異山에 暴徒를 起하여 討伐隊의 捕虜가 되어 流刑에 處되었는데 大赦에 依하여 放免되자 本年 四月 再次暴徒가 되어 安桂洪과 共히 寶城 方面에 出沒하였는데 本月 十日 其子 林鶴圭 及 部將 任參奉 以下 六名과 共히 潛伏地에서 戰死하였다.
林鶴圭 林의 長子
安參奉 林의 部將
林參奉 林의 部將
其他 小首魁 並 火賊의 首領이었던 者 數十名에 오른다.
備考
『南韓暴徒大討伐成績一覽表』
巨魁의 未就捕者(逃走所在不明)
全海山 一名 全垂鏞 全州의 者
目下 五十嵐少佐의 討伐隊에서 搜索中 小首魁 李起巽 一名 李錦齊 逃走所在不明
小首魁 金永伯 逃走所在不明
小首魁 盧一同 逃走所在不明
小首魁 李甘龍 逃走所在不明
小首魁 李德三 逃走所在不明
小首魁 姜勝宇 逃走所在不明
小首魁 徐應五 逃走所在不明

70. 羅警秘收第九九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三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二十二日 當署 巡査의 同行한 討伐隊에 左記 暴徒 加擔者 自首하였다.
羅州郡 三加面 細洞 居 柳文益 三十三年
羅州郡 三佳面 三里 居 趙萬石 十九年
右 報告함.

76. 羅警秘收第一〇〇〇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五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二十三日 當署 巡査의 同行한 討伐隊에 左記 暴徒加擔者 自首하였다.

左記

羅州郡 三加面 良林里 吳正洙 二十九年

羅州郡 三加面 良村里 林澹述 十八年

羅州郡 三加面 三岩里 金仁贊 二十八年

羅州郡 三加面 三岩里 吳七鳳 二十年

羅州郡 三加面 松洞里 申三奉 二十五年

右 報告함.

87. 羅警秘發 第九一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三十日

羅州警察署長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逮捕의 件

本月 十七日 當署 管內 南平巡査駐在所에서 左記五名의 暴徒 加擔者 逮捕되었다.

左記

○南平郡 德谷面 等內里 首魁 金道淑의 部下 鄭啓文 三十六年

○南平郡 竹谷面 巨城里 首魁 金道淑의 部下 趙道玄 四十八年

○南平郡 德谷面 朴谷里 首魁 金道淑의 部下 尹大淵 二十三年

○南平郡 德谷面 朴谷里 首魁 金道淑의 部下 崔仲彬 二十七年

○南平郡 郁谷面 龍江里 首魁 權澤의 部下 韓斗煥 二十九年

右 報告함.

90. 全南警秘收 第二二〇三號

작성일 :

十月中 暴徒狀況月報

一. 警察官의 暴徒에 對하는 措置

八月 下旬부터 行動을 開始 九月에 入하여 峻烈한 活動에 移한 當道內에 있어서의 臨時派遣隊

의 討伐行動은 繼續 本月에 至하여도 此를 繼續하고 非常한 功果를 奏하였다. 警察에 있어서도 體然署員의 大部分을 派하여 軍隊와 共力策應하여 其熱心한 動作은 거의 巨魁를 刈해 盡하여 配下를 滅盡시켜 討伐隊로 하여금 豫想 以上의 成績을 擧得한 것은 警察官의 行動이 크게 興하여 有力하다고 一般의 認定하는 바가 되어 警察의 名譽를 發揮하기에 至하고 또 出張前의 留守署員에 있어서도 本務에 鞅掌하는 一傍 寸閑을 裂하여 敗竄潛伏의 一匪徒 搜索에 努力 一方에는 利害를 說하여 歸順을 勸誘하고 內外相呼應하여 거의 不眠不休에 精勵한 結果는 遂 全南의 暴徒로 하여금 屛息시켜 이제 脫網餘燼의 草賊二三의 群으로 하여 山間僻地에 出沒하여 纔에 其 餘喘를 保하기에 不過하다. 一般良民으로 하여금 塗炭의 苦를 脫시켜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시킨 바에 至코자 하고 있다.

一. 暴徒의 狀況

가. 首魁

前月에 있어서 巨魁 安桂洪은 于先 縛에 就하여 一般의 歡呼를 受한 바 本月에 至하여 愈 討伐의 光輝를 發揚하고 巨魁 沈南一을 逮捕 林昌模를 誅戮한 것을 最로 하고 首魁 姜武景 吳參奉 朴士化 李永俊 牟千年 林鶴奎 等 모든 首領을 捕縛 或은 誅戮하고 全南의 暴徒로 하여금 거의 全滅시키기에 至하였다. 이제야 남은 金永伯 梁相基 張仁肖 李德三 姜勝宇 金東洙 鄭大洪等의 小首魁 數人에 不過하나 杳히 消息이 없고 어디론가 遁竄潛伏하고 있다. 就中 鄭大洪 兄弟와 같음은 일찍이 故 李大局의 部下로부터 慘殺되었다는 說 或은 眞히 近하리라 要컨대 最早 首魁로 目할 것 없기에 至하였다.

나. 暴徒數

本月에 至하여 自首 又는 誅戮 當한 暴徒는 遙히 二千을 越해 殘徒의 各地에 潛伏한 者 約 一二百의 微微한 것이다.

다. 根據地及 徘徊地方

前月報와 同

一. 暴徒首魁 及 暴徒數 增減의 狀況

前月報와 같고 전연 窮迫의 狀을 增한데 不過하다.

一. 首魁의 性質

前月報와 同

一. 暴徒에 投하는 動機

前項과 同

一. 人民의 暴徒에 對하는 感情의 變邊

오래 橫暴 掠奪을 逞한 暴徒에 對하여 慊焉하던 人民은 若干 覺醒의 時期에 進하고 있었던 때 討伐隊의 威力은 全南의 天地를 壓하고 其 効果의 顯著함에 從하여 愈 暴徒慊忌의 情을 增하

여 態度 玆에 一變하여 進하여 最寄官憲에 此를 密告하는 風을 生하고 特히 近來 所所에 民討伐의 名下에 夜警番小屋을 設하고 村民輪番宿置하여 賊의 行動에 餘地가 없게 함과 如한 感情變邊의 一班을 窺하는데 足할 것으로 益益 良好의 傾向에 進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愚民은 只今 아직 賊의 後難을 두려워 速히 官憲에게 密告를 하지 않는 者 드물지 않다.

一. 暴徒의 地方經濟上에 及한 影響

暴徒跋扈로 오래 市場沈衰 金融必迫의 苦境에 있으나 이제 漸次 鎭靜에 歸하여 秩序略恢復한 後로부터 一時 閉鎖한 市場과 如함도 此 再興한 個所가 있다. 綿花買入等으로 各地方에 侵入한 者도 많고 若干 順調로 向하고 있다.

一. 官吏人民旅行에 對하는 警察保護回數 二十六回

5. 高秘收第五四九九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七日

案

全羅南北道警察部長 警務局長

暴徒大討伐의 件

客月 一日부터 十月 十日까지 南部守備管區에서 暴徒 大討伐實施에 關하여 八月 二十日 警視發 第一一四號로써 通達한 바 繼續 本月 二十五日까지 大討伐을 實施하도록 決定한 旨 駐劄軍參謀長으로부터 通報가 있었으므로 此旨 알아두기 바란다.

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6 : 의병편 Ⅸ

43. 高秘發 第三九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一月 二十二日

統監(佐竹) 內部大臣 內部次官

總務長官 憲兵隊長 外波武官 駐劄軍司令官(參謀長)

警務局長名

九月中 暴徒狀況

管內 暴徒는 全般에 涉하여 크게 減退하여 靜穩의 狀況으로 向하고 있다. 軍隊討伐行動 開始以來 顯著히 好果를 奏하고 就中 全羅南道와 如함은 其 最한 것으로 京畿道 全羅北道 黃海道 忠淸南道 慶尙北道 咸鏡南道 江原道의 幾部에 襲來를 受한 일이 있으나 그러하다고 賊徒의 團體로 큰 것 없다. 忠南 全北의 二道는 全羅南道의 餘響을 受하여 襲來의 度數도 또한 많은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此 首魁로 믿을 것 中에는 一, 二 憂國의 志士 있다. 一, 二 地方의 有力

者가 있다고는 하나 其 大部分은 解散兵 或은 一定의 職業이 없는 無賴의 徒로서 此의 부끄러운 者 刑餘者 無職者 또는 被拉者 赤貧無宿의 工夫 等 많이 따라서 財物掠奪을 目的으로한 强盜와 其 擇할 바 없으므로써 一般 人民右게 嫌忌恐怖當하기에 至하여 官憲의 討伐撫飛를 希望하고 其中에는 頗히 便宜를 與하는 趨勢라고 되었다. 此를 各道에 分하여 槪況을 叙述 事故의 統計를 添付한다.

右에 報告(通報)한다.

一. 全羅南道

當 管內는 全土에 있어서의 가장 暴徒 猖獗한 地이다. 客月 下旬부터 行動을 開始하고 本月에 入하여 峻烈한 活動에 移한 軍隊討伐은 非常한 移功을 奏하고 到處 疾風草靡의 觀이 있다. 警察에 있어서도 各 署員의 大部分을 派하고 中隊 又는 小隊에 모두 一名 乃至 二名의 巡査를 分屬시키고 또는 變裝隊를 派遣하는 等 軍隊와 서로 呼應하여 勢力搜査 偵察에 任하였다.

其 結果는 巨魁의 就縛 首魁의 搏拿이 되어 一千五百名에 가까우려 하는 自首 又는 戮誅者를 出하여 거의 當道 暴徒의 盡滅을(本月에 至함) 보기에 至하였다.

巨魁 安柱洪 于先 縛에 就하고 沈南一 林昌模 等 將次 囊中에 있다(十月中 巨魁 沈南一은 逮捕되고 林昌模는 誅戮되고 首魁 吳參奉 姜武景 亦 縛에 就한 快報가 있다) 暴徒도 亦是 大討伐에 依하여 大部分은 이미 撲滅하였으나 殘黨 아직 二, 三百은 各處에 潛伏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根據地로 指目될 地 없다. 一般 民心은 暴徒의 掠奪 殺傷 等 暴戾를 極하므로써 日로 離反 觀察使 書記官 警察部長 各 郡守 等 管內를 奔走하여 到處에서 人民에 對하여 訓諭를 주고 一面으로 軍隊의 威風이 있다. 따라서 討伐의 빠를 것을 翹望하고 此 徒의 動靜을 軍門에 密告하기에 至하였다. 此 上과 如히 年來 暴徒의 橫行이 甚히 今에 至하여 鎭定에 至치 아니하므로써 一般 經濟上 其 影響을 蒙함이 甚하고 就中 日本人으로 進하여 地方에 投資事業을 經營하는 者 없고 金融의 逼迫을 來하여 各 市場에 있어서의 物資의 集散에도 影響하기 不尠한 狀態이다. 本月中 官吏 旅行保護 二十三回에 及하였다.

50. 第二六六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一月 二十五日

全羅南道觀察使 앞

內部大臣

左案 訓令發布함이 可할가

暴徒의 橫行이 其 最甚하였던 全羅南北 兩道는 이제 大討伐의 効에 依하여 겨우 鎭撫의 域에 達하고저 한다. 是等 討伐開始 以來 逮捕 及 自首한 것으로서 裁判所에서 起訴猶豫의 處分에 付한 것 中 此를 良途에 誘掖하여 生業의 途를 與하고 不良의 所業으로 하여금 다시 하지 않

음과 同時에 一面 地方 交通運輸의 便을 開하여 殖産興業의 發展을 計하고저 하여 玆에 道路 開修의 工을 起하여 二個年 繼續의 事業으로 하고저 한다. 마땅히 此 趣旨를 體하여 左에 示한다. 各項에 依하여 實行上 遺策 없기를 期하여 斯의 計劃을 完全케 할 것에 努力할 것이다.

一. 暴徒의 種類人員

光州地方裁判所 檢事長의 調査報告에 依하면 同 裁判所 檢事에 있어서 起訴猶豫의 處分을 하고 또 할 可望의 것의 中 左의 人員은 此를 工事人夫로서 使用하기 適當하리라고 하였다. 卽

一. 生活難을 爲하여 暴徒에 加入한 者 三百人

一. 勞動을 시켜 加入한 者 百人

一. 强制되어 加入한 者 百人

二. 道路工事의 槪要

工事는 全羅南道 海南에서 康津 長興 寶城 順天 及 光陽을 經由 河東에 至하는 延長 三十五里間이라 한다. 此의 用地는 貴官에 있어서 可成 所有者를 勸誘하고 案附시키기를 要한다. 그리고 四區로 分하고 同時에 着手할 豫定이므로 諸般의 計劃은 一般 適切함을 要한다.

三. 警察官의 配置

一定 人員의 人夫에 對하여 適當의 人員으로써 同 韓人巡査를 配置하고 警戒를 하게 한다. 警察官의 監督下에 是等 特種의 人夫를 使役하는데 있으므로써 監督은 寬大에 失하여 狎泥하며 嚴格에 失하여 反抗을 사는 等의 虞慮가 없도록 要는 寃嚴 其 마땅함을 得하여 橫縱中康을 保全 彼等으로 하여금 反抗 逃亡의 餘地가 없음을 要한다. 故로 配置할 警察官은 特히 撰拔하여 스스로 勤直의 標本이 되고 彼의 人夫 等으로 하여금 感化시키는 的의 人物을 配置하기에 努力할 것

貴官은 此等 生業없는 人夫 等을 生業에 就케 하기 爲하여 設計한 趣旨 及 反抗 逃亡 等의 異狀없고 誠實에 就業할 것을 訓令하도록 併하여 當該 郡守로 하여금 또 回樣 訓諭手段을 講究할 것

警察部長은 特히 實地出張 充分한 訓戒를 與할 것이다. 또 暴徒이었던 人夫의 住居地 面長 及 洞長 等에게 保證의 責任을 負케 하는 等의 手段을 講究하는 것도 亦 一策일 것이다.

四. 工夫의 取締

人夫는 一組 約 二十人으로 하고 此에 監督 指導할 工夫 一人을 두고 工夫 二人에 對하여 工事監督員 一名을 配置하고 工事監督員 三名에 就하여 技手 一名을 置한다. 卽 技手 一名 工事監督 三名 工夫 六名으로 人夫 約 百八十名을 使役하기로 하였다. 是等 工夫는 附近 民家를 徵發하여 此를 宿舍로 하고 또는 臨時急造의 測突에 收容하고저 한다.

人夫의 食事는 一定의 供給者를 定하고 一飯의 代價를 六錢 以下로 하고 供給者로부터 人夫에게 給食하고 其 代金은 人夫의 工錢에서 控除하고 官으로부터 直接 供給者에게 支拂하기로 하

였다.
五. 經費의 槪要
工費費는 本年度에 있어서 三萬四千圓 次年度에 있어서 十七萬六千圓을 支出하고 一里에 對하여 六千圓의 額으로써 工을 竣하기로 한다.
六. 其他
人夫는 起訴猶豫의 暴徒에 限치 아니하면 一般 人民이라 하더라도 土工勞動 希望者는 此를 使用할 것을 要한다 또 暴徒이었던 者라고 하더라도 放災 後 一定의 職業을 갖고 妻子를 養하여 相當한 生計를 營爲하는 者는 無理하게 工事에 就케 하지 아니하여도 可할 것이다.
工事監督을 爲하여 當龐에서 技師派遣에 對하여 諸事 打合을 하여 雙互 便宜를 計하여 事業上 遺憾없기를 期할 것이다.
右 訓令한다.

60. 全南警秘收 第二二〇三號
작성일 :
全羅南道警察部
十月中 暴徒狀況月報
一. 警察官의 暴徒에 對한 措置
八月 下旬부터 行動을 開始 九月에 入하여 峻烈한 活動으로 옮긴 當道 內에 있어서의 臨時派遣隊의 討伐行動은 繼續 本月에 至하여도 此를 繼續하여 非常한 功果를 奏하였다. 警察에 있어서도 依然 署員의 大部分을 派遣하여 軍隊와 共力策應하여 其 熱心한 動作은 거의 巨魁를 까라 놉이고 配下를 滅盡시켜 討伐隊로 하여금 豫想 以上의 成績을 擧케 한 것은 警察官의 行動이 크게 干與하여 힘이 있었다고 一般이 認定하는 바가 되어 警察의 名譽를 發揮하기에 至하고 또 出張 外에 殘留署員에 있어서도 本務를 鞅掌하는 한편 寸暇를 割愛 敗竄潛伏의 匪徒搜索에 努力하고 一方으로는 利害를 說하여 歸順을 勸誘하고 內外 서로 呼應하여 거의 不眠不休로 精勵한 結果는 이제 全南의 暴徒로 하여금 屛息시켜 이제는 脫網餘燼의 草賊이 二, 三의 群을 이루어 山間僻地에 出沒하여 겨우 其 餘喘를 保全하는데 不過하다. 一般 良民으로 하여금 塗炭의 苦를 脫케 하여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케 하기에 至코저 하고 있다.
一. 暴徒의 狀況
가. 首魁
前月에 있어서 巨魁 安桂洪이 于先縛에 就하고 一般의 歡呼를 受하였던 바 本月에 至하여 이제 討伐의 光輝를 發揚하여 巨魁 沈南一을 逮捕하고 林昌模를 誅戮하였음을 最上으로 하고 首魁 姜武景 吳參奉 朴士化 李永俊 牟千年 林鶴奎 等 모든 首領을 捕縛 又는 誅戮하여 全南의

暴徒로 하여금 거의 全滅시키기에 至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金永伯 梁相基 張仁尙 李德三 姜勝宇 金東洙 鄭大洪 鄭大仁 等의 小首魁 數人에 不過하나 杳杳히 消息 없고 어디론가 遁竄潛伏하였다. 就中 鄭大洪 兄弟와 如함은 일직이 故 李大局의 部下로부터 慘殺當하였다는 說이 或은 眞에 가까운 것 같다. 要컨대 벌써 首魁로서 指目할 만한 것이 없기에 至하였다.

나. 暴徒數本

月에 至하여 自首 又는 誅戮된 暴徒는 遙히 二千을 超越 殘徒의 各地에 潛伏한 것 約 一, 二百의 微微한 것일 것이다.

다. 根據地 及 徘徊地方

前月報와 같다.

一. 暴徒首魁 及 暴徒數增減의 狀況

前月報와 같고 한 層 窮迫한 狀을 增加한데 不過하다.

一. 首魁의 性質

前月報의 같다.

一. 暴徒에 投身하는 動機

前項과 같다.

一. 人民의 暴徒에 對하는 感情의 變邊 오래 橫暴 掠奪을 恣行한 暴徒에 對하여 慊烏치 않었던 人民은 若干 覺醒의 時期에 進하고 있었을 때 討伐隊의 威力은 全南의 天地를 制壓하여 其效果의 顯著함에 따라 이제 暴徒 慊忌의 情을 增加하는 態度가 玆에 一變하여 나아가 最步 官憲에게 此를 密告하는 風을 生하고 特히 近來 處處에 民討伐의 名下에 夜警富小屋을 設하고 村民이 輪富宿直하여 賊의 行動에 餘他없게 함과 如한 感情變邊의 一班을 窺知함에 못하도록 益益 良妨한 傾向으로 進하고 있다. 然이나 一部 愚民은 只今 아직 賊의 後難을 두려워 速히 官憲에게 密告하지 않는 者不尠하다.

一. 暴徒의 地方經綸上에 及한 影響

暴徒 跋毫로 오래 市場이 沈衰하여 金融 逼迫의 苦境에 있었으나 이제 겨우 鎭靜에 歸하고 秩序가 若干 恢復하였으므로 一時 閉鎖하였던 市場과 如함도 此를 再興한 個所가 있다. 目下 綿花買入 等을 爲하여 各 地方에 들어오는 者도 많고 若干 順調로 向하고 있다.

一. 官吏 人民旅行에 對하는 警察保護回數

二十六回

25. 全南警秘收 第二四七三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二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榮山浦憲兵分隊로부터 派遣한 變裝隊는 種種 搜査의 結果 暴徒 首魁 全海山(一名 垂鏞)이가 全羅北道 長水郡 中審面 下洞花里에 潛伏 中의 것을 探知 本月 十七日의 夜 此를 逮捕하고 二十一日 同 分隊에 押收 取調 中의 旨 通知가 있었다.
右 報告함.
追而 同人은 目下 同里 耶蘇學校 習字科 敎師를 勤務하고 있었다 한다.

27. 羅警秘收 第一一一八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二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淸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 首魁逮捕에 關한 件
榮山浦憲兵分隊附 長岡緖方 憲兵 上等兵의 一行은 全羅北道 長水郡 中富面에서 自稱 首魁 全海山(令 二十八年 可量)을 逮捕하고 本月 二十一日 同 分隊에 引致하였다. 眞僞 아직 不明하나 同人은 同 分隊長의 訊問에 對하여 日本國 陸軍大臣에 面接하지 않으면 말할 必要 없다 하고 何事도 答하지 않을 趣로서 아직 同隊에서 取調
右 報告함.

33. 全南警發 第三〇九四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八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今回 道路修築에 關하여 特殊勞動者 取締心得은 別紙와 如히 制定施行하므로써 玆에 報告한다.
訓令 第十八號 各警察署
道路修築 特務勞動者 取締心得 左와 如히 相定한다.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八日]
全羅南道觀察使 申應熙
特殊勞動者 取締心得

第一條 特殊勞動者라 함은 일찍이 暴徒에 興하여 訓戒放免 不起訴 起訴猶豫 歸順者 及 處刑滿期 等으로 警察監視의 下에 道路修築工事에 就役시키는 勞動者를 말한다.
第二條 特殊勞動者에 對하여는 業務에 勉勵케 하며 遊情座食의 弊를 矯正 自營自活의 精神을 涵養하므로써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 特殊勞動者 多數集合할 時는 騷擾礫生의 虞慮 없다 할 수 없다. 故로 警戒注意를 加하여 其 餘地 없게 함을 要한다.
第四條 特殊勞動者 病 其他의 事故를 申出하였을 時는 精密調査를 遂하여 正當하다고 見認하였을 外 恣意로 休業 又는 歸村시키지 않음을 要한다.
第五條 特殊勞動者는 就業 中은 勿論 罷業 後라하더라도 喧嘩口論 其他 不謹愼의 行爲없도록 要한다.
第六條 特殊勞動者의 賃金 中에서 控除積立이 있는 貯金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음이 아니면 半途還給하지 아니한다.
但 不得已하다고 認定할 時는 取締巡査는 當該 主任에게 其 旨 申告할 수 있다.
第七條 特殊勞動者는 公休 又는 罷業 後 宿舍 等에서 賊博 又는 飮酒에 耽내고 其他 無益의 雜費를 使消하는 等의 事없기를 要한다.
第八條 取締巡査는 每日 就業 前 罷業 後 必히 人員의 點檢을 하고 訓論의 要가 있을 時는 其時 此를 行한다.
但 就業 前의 點檢에 있어서 當日의 人員 及 姓名을 工事監督員에게 申告한다.
第九條 取締巡査는 每夜 二回 以上 特殊勞動者의 宿舍에 監檢하여 彼等의 行動을 視察한다.
第十條 取締巡査는 工事場에 있어서의 秩序維持의 責에 任하고 犯罪事件 其他의 事故 發生의 境遇는 相當措置하고 萬若 事件이 重大하여 應援을 要할 時는 最寄警察憲兵 及 守備隊에 請求하고 一面 本屬署長에게 急報한다.
第十一條 取締巡査는 就業時間 中은 終始 其 工事場을 巡視하고 特殘勞動者는 勿論 一般 勞動者에 對하여서도 警察上의 注意取締를 한다.
第十二條 取締巡査는 日人 一名 韓人 二名을 付하여 日誌 一冊을 製하고 各自의 勤務 及 受持勞動者의 顯著한 功過 其他 一切의 事故를 記載하여 他日의 用에 供한다.
第十三條 取締는 日人巡査 一名 韓人巡査 二名으로 特殊勞動者 四十名 乃至 六十名의 監視取締에 任하므로써 日人巡査는 自己 受持에 屬하는 勞動者 名簿를 第一號 書式에 依하여 調製하여 其 勤惰를 期한다.

34. 全南警發 第三〇九八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九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今回 起工한 道路修築工事에 就業시킬 暴徒關係者 訓諭를 爲하여 本月 十六日 出發 海南 康津 長興 寶城 綾州의 各郡에서 暴徒關係者 一般 人民 及 面里長 有志者 等을 모아 道路工事의 因하여 起한 所以의 大體에서 此에 從事하는 暴徒關係者의 心得 及 一般 人民의 遵守할 事摘 等을 懇諭하고 本月 二十六日 歸任하였다. 左에 槪要를 記하여 茲에 報告한다.

槪要

一. 各郡 共 參集한 人員은 二百名 乃至 六百名 可量으로 其中 暴徒關係者로 道路工事에 從事하는 者 左와 如하다.

가. 海南 珍島 莞島의 三郡으로 五十七名 中 病 其他의 事故로 不參 十三名

나. 康津郡에서 十八名

다. 長興郡에서 百八名 中 病 其他의 事故로 不參者 二十三名

라. 寶城郡 四十九名 中 病 其他의 事故로 因하여 不參者 十七名

마. 綾州郡은 五名

一. 特殘勞動者 賭料는 一食 四錢 一日 十二錢으로 各郡 共賭方 引受人이 왔다. 下等 社會의 生活狀態로 한다면 一日 十二錢의 賭는 決코 粗惡의 食物이 아니다. 引受人에 있어서도 直接 關係가 아니고 當該 官憲에서 賭料의 仕拂을 受하는데 있어서는 缺損의 憂慮가 없으므로써 기꺼히 引受하는 實況이다.

一. 宿金은 差向 各郡 邑內 附近으로부터 起工着手의 事情이므로써 適當한 韓人宿을 撰定하여 秋毫도 不使 不當을 感치 않는다.

一. 賭料는 一日 十二錢에 不過하므로 一日 八錢式의 小使金을 交付하고 남는 十錢은 貯蓄하는데 承諾시켜 當該 係에도 其 旨 交涉하여 두었다.

一. 修築道路 關係郡 居住의 特殘勞動者는 大槪 就役을 忌避하는 色 없으나 遠隔地에 居住의 者는 一般으로 就役을 기꺼히 하지 않는 狀況이다.

一. 一般의 貧民就役者도 修築道路 附近 居住의 者는 希望者가 極히 多한 故로 實際의 動態에 應하여 三十錢 二十八錢 二十六錢의 三等에 區分 使役하여도 오히려 기꺼히 此에 應하는 實況이다. 그러나 遠隔 居住의 貧民은 特殊勞動者와 같이 進하여 希望하는 者 多치 않은 것 같다.

一. 小官 巡廻 中은 海南 長興 寶城 筏橋 順天의 五營 工所 中 寶城而已 起工하고 있고 其他도 繼續 起工의 豫定이었는데 이제 順天의 外는 다 起工의 報에 接하였다. 그리고 特殊勞動者는 差向 修築道路 附近 居住의 者만을 使役하여 漸次 一般에 及한 計劃이므로 目下 勞動者에 從事에 者는 前記 各郡 特殊勞動者 中 約 三分의 二 可量이나 數日을 出치 않고 全部 出役하기에 至할 것으로 一般 特殊勞動者는 一月末頃까지는 工事都合上 使役하기에 至치 아니할

것이다.

[隆熙 四年 一月 十日]

案

警務局長

統監(佐竹) 總務長官

度支部次官 軍司令官

渡邊聯隊長 師團長

農商工部次官

(內部次官, 地方局長) 回覽

全羅南道에 있어서의 道路修築工事를 起하고 일직이 暴徒에게 與한 者를 特殊勞動者로서 此에 就役시키게 되었으므로써 同道 警察部長은 該 勞動者에 訓諭를 行하기 爲하여 客月 十六日 出發 海南 康津 寶城 綾州의 各郡을 巡回 同月 二十六日 歸任하였다. 其 所報의 槪要는 左와 如하다.

一. 各郡 所到 暴徒關係者 一般 人民 面里長 及 有志者 等 二百名 乃至 六百名을 모아 道路修築工事의 由來 及 此에 從事하는 暴徒關係者의 心得 并 一般 人民의 遵守할 事項 等을 示指하였다.

一. 工事에 從事할 暴徒關係者는 海南 珍島 莞島의 三郡에 五十七名 康津郡에 十八名 長興郡에 百八名 寶城郡에 四十九名 綾州郡에 五名이 있다.

一. 特殊勞動者 賭料는 一食 四錢 一日 十二錢으로 各郡 共賭方 引受人이 있다. 그리고 一日 十二錢 賭는 勞動者의 賭로서 敢히 粗惡치 않은 것 같다.

一. 宿舍는 差當 各郡 邑內 附近부터 起工着手의 豫定에 對하여 適當한 韓人宿으로써 此에 充當秋毫도 不便을 感치 않는 것 같다.

一. 特殊勞動者에는 一日 八錢式의 小使錢을 交付하고 더구나 또 勞動賃에서 十錢을 剩餘하여 得하므로써 此를 貯蓄시키는 것을 承諾시켰다.

一. 工事關係郡 居住의 特殊勞動者는 大槪 就役을 忌避하는 色이 있으나 遠隔地에 居住하는 者는 一般으로 就役을 기꺼워하지 않는 것 같다.

一. 一般의 貧民就役者도 道路 附近 居住者는 기꺼히 此에 從事하고 實際의 動態에 應하여 三十錢 二十八錢 二十六錢의 三等으로 區別하여 勞賃을 給하나 彼等은 進하여 就役을 希望한다. 然이나 遠隔의 地에 居住하는 者에 至하여는 卽 不然이다.

右 報告(通報)함.

68. 羅警秘收 第一〇五五號의 一

작성일 : 隆熙 二年 十二月 三十一日

羅州警察署長 警部 古屋清威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本月 二十九日 午後十二時頃 首魁 不明의 暴徒 約 三十名이 各 銃器를 携帶하고 羅州郡 伊老面 新基村(距 羅州 二里)에 襲來하여 同 村民 黃道玄이란 者를 拉去하여 同郡 官洞面의 境界에 이르러 此을 銃殺하고 어디론가 去하였다는 情報에 接하였으므로써 三十一日 午後三時 日韓巡査 三名을 偵察을 爲하여 現場에 派遣하였다.

右 報告함.

10)『한국독립운동사』자료 17 : 의병편 X

1. 韓憲警乙 第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三年 一月 四日

韓國駐箚憲兵隊長 榊原昇造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全南 羅州郡 內에서 賊 一을 逮捕하였다.

十二月 二十四日 榮山浦憲兵分隊 下士 一 上等兵 二 補助員 三은 羅州郡 郁谷面 新店里에서 賊魁 沈南一의 部將 高聖元이 潛伏하였음을 探知하고 此를 逮捕하였다.

21. 韓憲警乙 第六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三年 一月 二十一日

韓國駐劄憲兵隊長 榊原昇造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賊情彙報

全南 羅州郡 內에서 賊魁를 逮捕 銃과 刀를 押收하였다.

一月 十六日 榮山浦憲兵分隊 下士 一 上等兵 一 補助員 三은 羅州郡 馬山面 朴浦里에서 賊魁 朴民洪의 副將이라고 自稱하는 全致洪을 逮浦하고 火繩銃 一 巡査刀 一 韓刀 一과 雙眼鏡 一을 押收하였다.

2. 全南警秘視 第四九號

작성일 : 隆熙 四年 二月 四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客月 七日 高秘發 第九號로써 暴徒首魁 全海山에 對하여 隆熙 二年 五月 警秘 第七九號에 基하여 報告方 通達相成了承 左記 調査報告한다.

左記

一. 匪徒를 嘯集하고 首魁가 된 動機 其他

九歲時 처음 學窓에 就하여 二十四歲까지 專心 學事에 勵하여 相當한 造詣가 있다. 幼時 穎悟하여 近里에서 秀才의 評이 있다. 生家에서도 그 時代까지는 相當한 生活을 하고 있었으므로 實父는 彼가 學才에 多大한 望을 囑하고 秋毫도 家事를 助力케 하지 아니하고 事를 擧하기까지 歲分 農業에 從事하는 一傍 讀書를 일삼고 就中 가장 孔子 孟子 朱子와 戰國의 事를 記載한 서적을 耽讀하여 不知不議間에 幼時부터 일찌기 志士的 激越의 情에 驅使되어 그 春秋左氏傳을 繙함에 當하여 마치 韓國의 現狀이 戰國時代와 酷似하여 韓帝가 있으나 오직 名만으로서 逆臣 다만 暴威를 奮하여 私利私欲을 計하고 단지 日本에 阿附盲從하여 一身의 榮達을 圖하는데 汲汲할 뿐, 日本 또 統監府를 設置하고 統監을 派遣하여 韓國 固有의 軍隊를 解散하고 바꾸어서 自國의 兵으로 守備에 任하고 其他 多數의 大小官吏를 自國으로부터 派하여 모든 方面에 配置하고 완전히 韓國의 政權을 奪取하고 此를 壓伏하고자 하는 底意가 있는 것으로 誤解하고 일찌기 壬辰의 役에 日本이 韓國을 犯코자 하여 來하였으나 事 成치 아니하였음과 같이 全然 義兵의 힘으로 今日까지 韓國을 維持한 것으로 盲信하고 乙未事件의 當時도 이미 事를 起코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若年으로서 遺憾이나마 此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正히 日本을 韓國으로부터 驅逐하고 또 自國 奸臣을 要路로부터 退하고 純然한 國體의 廓淸을 行하는 때라고 憤慨한 나머지 일찌기 彼 等이 所謂 義烈의 國士로서 渴仰한 李錫庸(暴徒蜂起의 初期에 있어서의 全羅北道 第一의 首魁)을 南原으로 訪問 兩人 會見 後 愈共同擧兵으로 決하고 李의 部下 百餘名에게 將으로 立한 것은 實로 再昨年 陰曆 一月 八日로서 彼 等은 未久 南原平野에서 日本守備隊에 依하여 猛烈한 二回의 打擊을 受하여 거의 部下를 全滅하고 僅히 맨몸으로 逃走하였다. 때마침 全南 光州 無等山 附近에 賊徒 金泰元의 非常한 勞力이 있음을 듣고 此에 投할 생각으로 潛行의 途中 金의 戰沒을 듣고 一時 落暗하였으나 그 殘徒를 모아 事를 擧하기로 決하고 所在 搜査 中 羅州 龍珍山麓에서 全의 部長이었던 首魁 曺京煥과 會하여 此와 提携하기로 決하고 金의 部下 二百餘名을 收容하고 總將이 되어 行動하였는데 同年 陰曆 七月 二十七日 曺와 分離하여 爾來 單獨行動으로 跋扈하여 昨年 四月에 至한 것이다.

一. 生擒 또는 歸順에 關한 感慨 또는 發意

最初 事를 起한 처음에는 반드시 成功할 確信이 있었으나 今日과 같은 狀態에 陷하였음은 實로 意外의 結果로서 萬若 今日의 悲運을 豫想하였다면 다른 方法도 있었을 것이라고 傲語하고 自己가 一時 部下를 解散한 것은 決코 素志를 中止한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려 務할 機會를 얻어 다시 發하여 반드시 目的을 達할 것을 期하였는데 天運을 得치 못하고 드디어 縲紲의 辱됨을 受하는 몸이 되어 이미 方法이 없다. 此 以上은 死나 幽獄이나 元來 覺悟하는 바로 秩毫도 두려울 바가 아니다. 假令 志望을 達치 못하였다 하자 國家를 爲하여 奮鬪하여 刀折矢盡하여 敵手에 落하여 敢히 遺憾은 없으나 단지 此 後 自己의 意志를 繼續할 者 없는 것을 恨한다. 此 以上의 希望은 日本이 韓國을 이렇게 壓迫하고 此 以上 日本이 如何한 計劃으로 韓國을 處置하려 하는가를 듣고자 하는 것이 第一 다음은 日本이 이렇게 韓國을 壓迫하고 있는 狀況을 世界에 公表하고 싶은 것이 第二 其次에는 暴徒의 名稱을 自己의 頭上으로부터 除去코자 하는 것이 第三이라고 壯語하여 狂에 가까운 義를 唱하고 있었다.

一. 引率 또는 指揮한 匪徒의 員數와 其消長

最初 再昨年 陰曆 一月 八日 李錫庸과 함께 全羅北道 南原에서 兵을 擧하여 歲未滿에 日本守備兵에 依하여 擊破되어 一敗地에 塗하여 다시 再起不能에 至하여 가만히 走하여 本道에 來하여 曺京煥과 會하고 後에 分離하여 一方의 首魁가 되어서부터 老幼의 部下는 諭示하여 歸하게 하고 壯丁만을 모아 軍律을 嚴肅히 하고 他의 首魁와 달리 無謀의 掠奪을 不許 素行 嚴正 寡慾을 없이 하여 一般의 信用을 得하여 名聲이 頓히 加하여 部下에 來投하는 者 多하고 嶄然 頭角을 나타내어 再昨年 九月 十月頃은 彼가 가장 全盛의 時代로 一時 部下 三百을 越한 일이 있었다. 其 後 度度 討伐機關에 依하여 擊破되어 昨年 二三月頃에 至하여 部下 一人 滅하고 二人 去하여 드디어 四月 下旬에 이르러 僅少의 部下를 解散하여 몸을 감추기에 至하였다.

一. 主된 根據地 或은 主로 出沒한 地域

有力한 根據地는 靈光郡 佛甲山과 石門 內로 여러번 靈光 咸平 羅州의 各郡에 出沒하고 長城 光州 兩郡에도 時時로 侵入한 일이 있었다.

以上

追而 本文에 左의 一項을 漏記하였다. 따라서 附記한다.

一. 氏名 年齡 身分 職業 前官職

原籍 全羅北道 任實郡 南面 菊花村 狐田洞

現住所 全羅北道 長水郡 中富岩面 洞花里 居住 儒生 無職業 相當한 學職과 文筆이 있다. 官職 없다.

全海山(本名 基洪)(一名 垂鏞 幼名 鐘葉)當 三十二年

6. 全南警秘發 第一二八號

작성일 : 隆熙 四年 二月 十九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前月 二十五日字 高秘發 第八八號 暴徒의 道路工事從事의 件에 關한 前年 十一月 二十六日字 高秘訓 第三五五號 通牒事項 中 不分明한 點에 對한 報告指示를 받고 左記와 같이 報告한다.

左記

一. 道路工事取締를 爲하야 配置한 巡警의 擔當區域人夫數 및 巡警姓名.

海南 河東 間 道路工事는 海南區 長興區 寶城區 筏橋區 順天區의 五個區로 나뉘었으며 모두가 工事進行 中에 있으며 그 就役人夫 數 및 取締巡警은 左表와 같음.

『就役人夫數 및 取締巡警表』

二. 起訴猶豫處分을 받은 暴徒總數 및 그중 工事에 使用할 수 있는 數와 使用 中에 있는 人員

客年 十月 中부터 同 十二月까지 光州地方裁判所 檢事局에서 起訴猶豫處分을 한 本道 內의 暴徒數는 合計 九百八拾參名으로서 이외에 警察署 憲兵隊에서 訓戒放免處分한 者 및 歸順者와 處刑滿期者 등 合計 參百五拾七名이 있음. 以上 暴徒總數 中 工事에 使用할 수 있는 數 및 使用中의 人員 등을 各署 別로 보면 다음 表와 같음.

『各 署 別 工事에 使用暴徒表』

三. 未使用 暴徒에 對한 警察의 監視方法

起訴猶豫處分이 된 暴徒는 모두 面里長에게 保證을 시키고 每月 一回 居住地 所轄 警察署 또는 警察官派出所에 出頭하여 謹愼의 表를 提出케 하도록 하라는 檢事의 命令도 있으므로 當該 官署는 恒常 本人의 行狀을 監視하는 同時 謹愼表 提出出頭有無를 調査하야 再犯의 憂慮가 있는 者는 그 뜻을 報告하고 또 品行이 良好하여 監視할 必要가 없게 되었다고 認定되는 者는 謹愼表 提出의 義務를 免除하고 그 事實을 報告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警察署 등에서 訓戒放免處分을 받은 者들도 역시 面里長으로 하여금 保證하게 하고 때때로 所轄 警察署 派出所 등으로 出頭케 하며 이들을 監視하고 있지만 本官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 暴徒들을 眞正으로 改過遷善케 하려면 一層 監視를 嚴重히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여 昨冬의 管內 署長會議때 別紙樣式의 暴徒視察名簿를 作成하여 各 管內 起訴猶豫 訓戒放免處分을 받은 者 및 刑期滿了者와 歸順者 등을 모두 登錄하고 不斷히 이들을 監視하며 그 結果를 記入케 하고 있음.

以上

8. 高秘發 第一二三號

작성일 : 隆熙 四年 二月 五日

統監(佐竹) 總務長官
內部次官
駐劄軍司令官(參謀長)
憲兵隊長
警務局長
十二月 中의 暴徒狀況은 別紙와 같다.
右 報告(通報) 한다.
十二月 中의 全國暴徒의 狀況은 거의 其 形을 감추고 時時로 各 道에 出沒하는 者 있으나 모두 少數로서 其 行動이 火賊과 擇할 者 없고 特히 全羅南道와 如히 隻影도 못본다 하나 지금에 注意를 要할 것은 黃海道로 同道 內의 首魁라고 볼만한 者는 時時로 江原道에 侵入하여 暴擧를 試圖하고 있다. 要는 黃海道의 搜索은 크게 必要한 것이라고 認定 當該 官憲에게 訓示하여 두었다. 左에 各 道의 狀況과 狀況表를 添付한다.
全羅南道
大討伐의 偉効는 本道 暴徒의 跡을 絕하고 敗竄의 少數者 深山幽谷에 蟄息하고 或은 時時로 良民을 假裝村閭에 潛伏하는 者 있다 하나 寥寥한 것으로 討伐의 威怜하여 僅히 身으로써 彷徨出沒하는데 不過하다. 巨魁 全海山은 憲兵隊의 手에 逮捕되고 首魁 梁相基는 警察署에 檢擧되어 目下 活動하는 首魁로서 볼만한 것이 없다. 本道는 全國 中 暴徒의 巢窟이었으나 本月 中 五名 以上의 集團으로 볼만한 來襲 二回일뿐 따라서 一般人民은 官憲에게 同情信賴를 敦히 하고 一般의 經濟上에 있어서의 狀況 亦頗히 好良으로 進하고 있다.

6. 全南警秘發 第四二一號
작성일 : 隆熙 四年 三月 十七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南海岸道路 改修工事에 關한 報告
一. 工事進行程度
海南 長興 寶城 筏橋 順天 各 工區에서 險峻한 언덕 및 河川 등의 難所는 뒤로 미루고 其他 路線에 對하여 우선 초벌工事를 마친 다음 마무리 工事를 하는 現在 모두 초벌工事에 着手하였는 바 그 進步狀況은 극히 良好하며 이와 같은 趨勢로 나간다면 豫定期間 內 竣工은 물론 難所를 除外한 普通線路改修費는 豫想 외로 節減되어 河川架橋 峻嶺開鑿 等 其他 難所工事에 넉넉한 金額을 投入할 수 있게 되므로 豫定한 以上의 完璧한 道路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임.
一. 道路用地

工事의 方法은 現在 道路의 修築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나 道幅을 넓히고 峻嶺을 避하여 建設하게 되므로 자연히 沿道의 家屋이나 田畓을 侵蝕하게 됨은 물론이며 境遇에 따라서는 現存의 道路를 全然 離脫하여 田畓을 貫通하게 되는 곳도 적지 않은 바 이런 境遇에는 工事監督과 協議하여 日本人 所有에 屬하는 것이면 主로 警察署 및 所轄 警察署長이 韓人에 屬하는 것이면 郡守가 承諾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工事進行上 秋毫도 妨害받는 일이 없음.

一. 特殊人夫의 宿舍 및 食事

沿道部落 內 適當한 民家를 物色하여 宿舍에 充當하고 그 집 主人 或은 酒幕業者에게 一食 四錢式 一日 拾貳錢의 比率로 食事供給請負를 주었는 바 이 請負業者와 人夫들 間에 紛爭이 있다든가 또는 不平不滿이 있다는 등의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그 동안 모든 일이 극히 圓滿하게 進行 中임.

一. 特殊人夫의 勞役成績 및 賃金

特殊人夫는 警察取締下에 있으므로 普通人夫에 比하야 規律이 바르며 昨年 末 工事 開始 當時부터 從事한 者는 業務에 익숙하여져서 每日 就業하기 前에 한번 作業方法을 알려주면 卽時 그 要領을 터득하여 혼자서 工事를 잘하므로 일부러 그를 쫓아다니며 指導監督할 必要가 없을 程度까지 熟達하여 그 成績은 極히 良好함. 이에 反하여 普通人夫는 規律的 動作이 서투를 뿐만 아니라 就業이나 休務가 自由로움으로 因하야 去就無常이기 때문에 業務를 習得할 틈이 없어 成績은 不良함. 特殊人夫의 賃金은 元來 一日 參拾錢式 均一하게 支給할 豫定이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特殊 普通 雙方 共히 勞役의 良否 勤勉의 如何에 따라 差等을 주어 支給하지 않으면 作業督勵上 得策이 아닐 것으로 보고 不均一制를 施行하고 있음. 그 等級은 二十六錢 二十八錢 三十錢 三十二錢 三十四錢의 五等級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三十二錢 以上의 賃金을 받는 者는 極히 少數이며 現況으로 본다면 平均 二十八九錢을 넘지 않을 것임. 또한 그 支給額은 每日 變更되고 또 本人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가 賃金을 支給할 때에 비로소 알려주는 등 一定치 않으므로 이 때문에 疑惑을 일으키고 誤解를 사는 등의 憂慮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支給額은 事前에 本人에게 알려주고 最少限 一週 或은 十日間은 一定額을 支給한 다음 그 동안의 成績을 勘案하야 等級을 昇降케 하여 그들의 疑惑을 풀고 그들을 奬勵한다면 出納 整理하기에도 便利할 듯하여 이와 같이 變更하게 하였음.

一. 特殊人夫의 取締

特殊人夫의 取締法은 客年 十二月 二十九日字 全南警發 第三〇九四號로서 報告한 特殊勞動者 取締要領에 依하여 지나치게 嚴하지도 않고 寬大하지도 않으며 每日 朝夕 就役 前後에 特殊人夫의 點呼를 實施하고 就役 中에는 始終 巡視하며 工事現場의 秩,를 維持하고 夜間에는 그宿舍를 臨檢하여 그들의 行動을 監視하므로써 取締上 遺憾 없도록 하고 있음.

第一次로 就役한 人夫는 改修道路 附近 部落에 사는 者들만으로 그 數는 二百六十三名이었

으며 本年 二月 中旬부터 三月 上旬까지 數次 就役시킨 것은 二百六十二名으로서 總數는 五百二十五名에 達하였음. 그러나 그중 最近 就役시킨 者를 가운데 光州 部內에 屬해 있는 者들 중 筏橋工區에서 六名 寶城工區에서 四名 羅州 部內에 屬해 있는 者들 중 海南工區에서 三名 또한 第一次로 就役한 者들 중 順天 部內 사람 一名 등이 逃走하였다는 最近 數次의 報告에 接하게 됨은 심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임. 이들 逃走者는 大槪 懶怠하고 無爲徒食하는 무리들로서 規律的 勞役에 익숙하지 못하고 勞苦를 견디지 못하여 逃走한 者들임(別紙 報告).
이제 各 工區別 配屬人員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一. 各 工區에 配屬한 特殊人夫의 配當을 表示하면
『各 工區에 配屬된 特殊人夫表』
現在 各 工區에 配屬되어 있는 者 中 病이나 其他 事故 一時 歸省 등의 理由로 因하여 每日 百에 對하여 十내지 十五名 程度의 休業者가 있으며 이들 中에는 正當한 事故로 因하여 日數를 限定하고 歸省을 許諾한 바 있으나 個中에는 事故 原因이 除去되고 時限이 滿了되었어도 勞苦를 싫어하여 놀기나 좋아하는 者도 있으나 大多數는 正當한 事由로 不得已 休務하게 된 者들임.
一. 道路改修에 對한 一般의 感情
南海 海岸線 道路工事가 開始되자 各 工區에는 技手 以下 監督員 等 數名이 來往하고 勞役事夫가 集合하여 諸般 物資의 需用이 增加되므로 金融이 調和를 이루고 따라서 沿道의 部落은 大槪 好況을 나타내며 또 沿道要地에는 道路工事 開始 後 旅人宿 飮食店 雜貨商 等을 開業한 日本人도 間或 있으며 또 前途有望함을 豫想하여 各地로부터 現地調査 視察次 來往하는 者들도 적지 않고 多少 時勢에 能通한 韓人들은 罪惡을 矯正함에 德政으로 하고 있는 新政治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同時에 道路가 竣工되고 運輸交通의 便이 열리게 되는 때에는 大端한 利得이 있을 것을 考慮하여 大槪 良好한 感情으로 本事業을 받아 들이고 있는 實情임.

7. 全南警秘發 第四二二號
작성일 : 隆熙 四年 三月 十七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特種勞働者 逃走의 件
海南 河東間 道路工事 開始 以來 이에 使用한 特殊勞働者 中 三月 十七日 現在까지 別表와 같이 逃走者 十四名이 나왔음. 이제 그 原因을 調査하건대 逃走者의 大多數는 멀리 떨어져 있는 他地方으로부터 就役한 者들로서 就業 後 規律的 作業에 익숙치 못한 데다가 嚴重한 監督과 勞働에 견딜 수 없어 結局은 走하게 된 것이며 그 중에는 休業 中인 同僚와 家族을 데리고 逃

走한 者도 있음.
『特種勞働者 逃走取調表』

11)『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8 : 의병편 XI

8. 全南警秘發 第九六三號
全羅南道警察部
五月中暴徒狀況 月報
一. 警察官의 暴徒에 對한 措置
暴徒가 終熄된지도 時日이 꽤 經過하였으나 여전히 放心하지 않고 未逮捕 暴徒의 檢擧와 隱匿武器 索出에 힘쓰는 한편 自首 및 起訴猶豫 處分을 받은 暴徒關係者의 擧動을 監視中에 있는 바 羅州署에서는 本月 三日 全海山의 部下로서 什長으로 있었던 暴徒 魯連淑이라는 者를 逮捕하였고 또 長興署에서는 本月 三十日 寶城郡 南上面 虎尾里에서 酒幕業을 하는 金善夏宅에 來襲한 火賊 七名을 追跡함.

12)『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9 : 의병편 XII

2. 韓暴秘通 第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五月 十四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韓國 內部大臣 任善準 앞
通報
第二巡査隊 警部로부터 警務局長 앞으로 報告한 要旨는 左와 같음.
韓國 第二巡査隊는 賊魁 金泰元을 討伐後 殘賊을 소탕하기 위해 繼續 包圍線 內의 搜索을 實施하여 五月 二日로써 全部를 終了했음. 그 槪要는 左와 같음.
首領을 잃은 殘徒는 모조리 흩어져 大部分이 全羅北道 淳昌 地方으로 遁走한 것 같으며 其他는 당초에 强制로 不得已 暴徒에 加擔한 者는 首領의 滅亡과 동시에 生業에 安住하려는 것 같음. 이들에 대해서는 該當 郡守로 하여금 徐徐히 歸順을 勸告시키고 있음. 이번에 包圍搜索한 長城, 咸平, 靈光, 羅州의 各郡에 걸친 그들의 根據地 內의 人民은 衷心으로 金律, 金泰元의 暴虐無道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를 鬼神처럼 여겼으나 二賊魁의 滅亡은 모두 歡喜의 情狀에 있는 것과 함께 巡査隊의 勇敢한 行動은 깊이 上下에 認識되는 同時에 暴徒에 대한 威力도 더욱 더 거세지고 갈모핀(雨備를 입은 兵丁이라는 뜻)의 이름은 暴徒가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음.

9. 韓暴通 第六九號 接 隆熙 二年 五月 十八日 收 警秘 第四四六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五月 十七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B. 憲兵
全羅南道 鶴橋憲兵分遣所 憲兵軍曹以下 十名은 五月 十五日 羅州郡內에 있어서 약 八十名의 賊과 마주치자 이를 潰亂시켰음. 賊의 사망자는 八名 負傷者 多數임을 確認함.

22. 韓暴通 第八〇號 接 隆熙 二年 五月 二十九日 收 警秘 第四八六九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五月 二十八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三. 全南 羅州憲兵分遣所의 特務曹長以下 六名은 五月 二十五日 羅州 北方 三十里 地點에서 약 百名의 賊을 攻擊하여 그중 一名을 쓰러뜨리고 若干을 負傷시켰으며 三名을 사로잡았음. 鹵獲品은 小銃 三挺 其他 若干이 있음.

14. 韓暴通 第九九號 隆熙 二年 六月 十七日 警秘收 第五五三〇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六月 十六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중략)
二. 全南 羅州分遣所의 上等兵 五名은 六月 十四日 咸平郡內에서 약 三十名의 賊과 衝突하여 그중 二名을 쓰러뜨리고 同日 羅州郡內에서 약 二十名의 賊과 마주치자 이를 潰亂시켰음. 賊의 損害는 不明임. 다음 十五日 同郡 신선리에서 賊魁 趙正仁(部下 百餘名을 가진 자임)을 사로잡았음.

30. 韓暴通 第一七一號 隆熙 二年 八月 二十八日 警秘收 第七九一八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八月 二十七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通報
(중략)
四. 全南 羅州憲兵分遣所의 下士以下 七名은 巡査 五名과 協同하여 八月 二十日 鳳鶴洞(羅州 北方 약 三十里) 附近에서 약 四十名의 賊을 擊退하고 그중 一名을 쓰러뜨렸으며 銃器 一挺을 鹵獲했음.

19. 韓暴通 第二二三號 隆熙 二年 十月 二十六日 警秘收 第九九〇一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月 二十四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通報
(중략)
二. 全南 榮山浦憲兵分遣隊에서 組織한 下士以下의 討伐隊는 十月 二十二日 羅州 北方 四十里의 地點에서 약 百五十名의 賊을 攻擊하여 그중 十名을 쓰러뜨리고 銃器 軍刀 其他 多數를 鹵獲함. 我 補助員 一名이 卽死함.

10. 韓暴通 第二六二號 隆熙 二年 十二月 十二日 高秘收 第八五七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十一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通報
(중략)
四. 全南 羅州憲兵分遣所의 下士以下 三名과 補助員 五名은 十一月 十五日 羅州 北方 약 四十里의 地點에서 약 八十名의 賊을 攻擊하여 銃 一挺, 彈藥 若干 및 陣中日記 등을 鹵獲함.

13. 韓暴通 第二六四號 隆熙 二年 十二月 十五日 高秘收 第九四五號
작성일 : 明治 四十一年 十二月 十四日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
通報
(중략)
四. 全南 榮山浦憲兵分遣隊의 憲兵 一名과 補助員 三名은 十二月 四日 羅州 北方 약 六十里의 靈光郡 朗月山에서 약 六十名의 賊을 攻擊하여 그중 二名을 쓰러뜨렸음.

4. 韓參通 第三六四號

작성일 : 明治 四十二年(一九〇九年) 十一月 二十六日

韓國駐劄軍參謀長 明石元二郎

警務局長 松井茂 앞

別册 南韓暴徒大討伐 實施詳報 一部를 參考로 送付합니다.

南韓暴徒大討伐 實施詳報

一. 討伐 前 暴徒의 狀況 및 討伐의 目的

全羅南北道는 이미 자주 報告한 바와 같이 他道에 比하여 賊勢는 猖獗하고 首魁들은 各地에 割據하여 그 中 勢力이 强大한 者는 數百名의 部下를 保有하고 常時 各地를 橫行하며 掠奪과 蠻行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或은 在留 日本人을 急襲하거나 심지어는 數가 적은 守備兵이나 또는 護衛兵을 攻擊하는 等 暴行을 敢行하고 있었음. 特히 巨魁中 沈南一, 姜武京, 安桂洪, 林昌模 等과 같은 者들은 政治的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爲政上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므로 해서 守備隊에서는 이들의 討伐을 行하고 數次의 큰 打擊을 가한 바 있으나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服從하는 頑固한 人民들의 도움으로 아직도 餘勢를 維持하며 騷擾가 끊임없음에 비추어 좀더 大規模의 討伐을 行하여 一擧에 이들을 掃蕩하여야 할 必要가 있어 이에 今次의 大討伐을 實施한 것임.

二. 討伐計劃

(一) 討伐을 行할 區域 및 討伐區分은 附圖 第一과 같음.

(二) 討伐實施는 九月 一日에 開始하고 所要日數는 約 四十日間으로 함.

(三) 討伐隊는 警備部隊와 行動部隊로 區分하여 警備隊로 하여금 包圍線을 形成하고 所要地點을 守備케 하며 行動部隊로 하여금 包圍線 內의 搜索 檢擧를 行하게 함.

(四) 沿岸警備는 第十一艇隊 및 石油發動機 氣艇과 梅丸(船舶名)으로 함.

(五) 警備部隊 및 行動部隊의 區域은 聯隊長이 이를 計劃 實施하도록 함.

(六) 討伐隊는 八月 三十一日中에 包圍線上에서의 集結을 끝내도록 함.

(七) 集團行軍에 鐵道 및 船舶을 利用하는 것을 不許함.

(八) 討伐 終了 後 各 部隊는 木浦에 集合할 것.

(九) 歸路行軍 및 船舶輸送에 대하여는 別途 指示토록 함.

討伐實施中 그 計劃變更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十月 一日부터 同月 二十五日에 걸쳐 第二次 討伐을 行하기로 決定하고 그 計劃을 다음과 같이 決定함.

大討伐 續行計劃

一. 派遣隊는 第一, 第二 期間의 地域討伐을 續行한다.

二. 討伐의 地區 및 部署는 別紙 略圖와 같다.

三. 討伐實施期日은 第一 및 第二區(附圖 第二 參照)는 十月 二十五日까지 沿岸 諸 島嶼는 十月 十日까지로 豫定한다.

四. 步兵 第一聯隊 第三大隊는 第二期 討伐 終了 後 討伐을 實施하며 卽時 陸路로 其 守備地로 歸還케 한다.

五. 步兵 第二聯隊長은 其 聯隊와 步兵 第一聯隊 第一, 第二中隊로 第二區의 討伐을 實施케 한다.

六. 石油發動機 氣艇은 到着後 兩聯隊에 分屬시키고 梅丸은 十月 一日 以後 第一聯隊長의 指揮에 屬하게 하며 九月 三十日 木浦에서 이를 引繼케 한다.

七. 工兵小隊는 第二期 終了 後에는 十月 五日까지 木浦에 集合하여 海路로 歸還케 한다.

八. 各 部隊는 第二期 終了 後 즉시 行動을 開始케 한다.

九. 各 部隊는 豫定期間 및 行動을 終了하면은 別途 命令을 기다림이 없이 平常의 守備勤務에 復歸케 한다.

三. 討伐實施

派遣隊司令部 및 步兵 兩聯隊는 八月下旬까지 準備를 整頓하고 九月 一日부터 行動을 開始하였으나 第二期 經過中 暴徒首魁가 逮捕되지 않은 者가 많고 小匪賊들도 逃走한 者들이 많음을 알고 豫定의 若干을 變更하여 第三期 沿岸 諸 島嶼의 討伐을 小數部隊로써 施行케 하고 派遣隊의 大部分은 第一期 및 第二期의 討伐을 再次 施行키로 하고 十月 一日부터 同 二十五日에 걸쳐 第二次의 討伐計劃에 依據하여 討伐을 實施함. 各隊가 實施한 討伐方法의 槪要는 다음과 같음.

一. 各 中隊는 將校, 准士官 또는 下士官을 長으로 하는 數個 區隊로 區分하여 警備線內를 前後縱橫 各 方面으로 行動하며 彼此 連絡을 維持하고 線內의 搜索 및 檢擧를 實施케 함.

二. 村落의 搜索 및 檢擧에 있어서는 우선 그 村落의 外廓을 包圍하는 것 같이 警戒兵을 配置한 後 面洞長을 招致하여 미리 作成하여 둔 男子名簿 또는 面洞長 以下 各 個人을 各處에서 審問하고 그 結果에 따라 暴徒를 捕縛하는 等의 方法을 取함.

三. 搜索은 가장 嚴密히 實施하고 峻嶺深谷에 이르기까지 斥候 또는 部隊를 派遣하여 特別히 愼重을 期하고 晝間에 山野에 潛伏하였다가 搜索網을 逸脫하려는 賊徒를 捕獲하기 위하여 夜間에 突然 村落을 急襲하여 一切檢擧를 實施하든가 或은 討伐隊가 通過하기를 기다렸다가 村落으로 돌아오는 匪徒를 檢擧하기 위하여 멀리 돌아서 同一村落을 突然 再次 搜索하는 等 韓人들로 하여금 我側의 行動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晝夜를 不問하고 豫測할 수 없는 行動을 取하였음.

四. 軍服을 着用하고 搜索을 實施하면 卽刻 暴徒나 그 密偵들에게 發覺되어 目的을 이룰 수 없는 일이 많고 또 匪徒의 橫行이 頻繁한 地方의 住民들은 後患이 두려워서 입을 封하고 敢히

賊情을 말하려고 하지 않으나 韓服을 着用한 變裝隊에 對하여는 住民은 一見 이를 暴徒로 誤認하여 賊情을 말하는 일이 많으므로 때때로 이 變裝方法이 奏效한 때가 많음.

五. 各隊 모두 密偵을 遠距離地域까지 派遣하여 暴徒의 行動所在를 探知케 하고 或은 逮捕한 暴徒를 利用하여 他 暴徒를 探索케 하든가 或은 감추어놓은 武器를 發見한 것 等 때때로 커다란 功績을 올린 바 있음.

六. 村落을 搜索 檢擧하는 것은 적어도 二回 以上으로 하고 主要한 地方은 十數回의 搜索을 거듭한 境遇도 있었음.

七. 討伐의 目的을 達成키 위하여 가급적 自首를 勸奬하고 各 隊長은 恒常 討伐地方의 民衆을 訓諭하는 等 武力과 慰撫를 兼用하는 方法을 取하였음.

八. 抵抗이나 逃走를 企劃하는 者 以外에는 一切 殺戮을 禁하고 모두 憲兵이나 警察에 引渡하여 取調를 받게 하며 特히 自首者와 같은 者는 面洞長이 責任지고 監視케 하고 自宅에서 謹愼하며 命令을 기다리게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아직 自首하지 않은 者의 自首를 誘發하였음.

九. 銃器搜索을 위하여는 屋 內外는 勿論 담장이나 耕作物 사이 等에 이르기까지 時間이 許容하는 限 搜査를 하였으며 討伐 後에는 凶器가 거의 없도록 할 것을 期하였음.

十. 暴徒를 檢擧함에 있어서는 密偵을 利用하는 外에 暴徒를 審問하여 얻은 情報에 따라 必要한 手段을 講究하였으며 或은 甘言으로 殘餘의 暴徒를 誘惑하여 順次的으로 多數의 暴徒를 檢擧할 수 있었음.

憲兵과 警察의 協同

憲兵은 若干名을 派遣하여 討伐隊에 連合케 한 바 守備隊의 行動上 적지 않은 便宜를 얻을 수 있었고 警察은 討伐作戰의 始終 可能한 限의 人員을 派遣하여 搜索檢擧에 從事케 하는 等 가장 열심히 協助를 하였음.

海軍의 協助

今次의 討伐中 暴徒가 海上으로 脫出한 者는 매우 적었으므로 水雷艇이 討伐上 直接的인 效果를 나타낼 機會가 없었으나 該 船隊가 海上警戒를 嚴密히 한 結果 沿岸島嶼 討伐을 위하여 大兵力을 使用할 必要를 없게 한 功績은 실로 크다고 볼 수 있음.

地方官憲의 動態

全羅 兩道의 韓國官憲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援助를 하였으며 道路의 開修, 物資의 調辨 및 宿營準備 等 軍隊行動에 多大한 便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觀察使 以下 各 地方을 巡廻하며 郡守 以下를 督勤하는 한편 人民들을 說諭하는 等 暴徒鎭定에 極力 盡力함.

通信連絡

第六師團에서 派出한 電話通信班을 兩聯隊에 分屬시킴으로써 警備電話의 不足을 補充하였으

며 近距離의 通信連絡을 위하여서는 韓馬와 徒步傳令을 利用하였음.

四. 討伐의 功果

(一) 巨魁 沈南一 安桂洪 林昌模 姜武京 金京久 以下 二千餘名을 逮捕할 수 있었으므로 賊勢는 크게 떨어지고 自首者가 續出하게 되어 多年間 搔亂하였던 全南北 兩道地方은 이제 말끔히 掃除되고 다만 餘賊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形便에 不過한 狀態가 되어 人民들은 安心하고 各自의 生業에 從事할 수 있게 된 結果 産業에 좋은 影響을 가져 왔으며 其他 新貨幣의 流通을 圓滿하게 하였고 道路橋梁의 修理를 施行할 수 있게 하는 等 地方 隆盛에 좋은 影響을 주었음. 今回의 討伐에 있어서의 成績을 들면 左表와 같음.

『南部守備管區 大討伐의 成績表』

五. 討伐中의 我側 損害는 左와 같음.

派遣된 步兵 第二聯隊에서 兵卒 五名 戰死 一名이 負傷함.

六. 經理

(一) 經費節減에 留意한 結果 比較的 大部隊가 長時日에 걸친 行動에도 不拘하고 討伐豫定金額 卽 人件費 壹萬四千圓, 物件費 四萬五千圓, 合計金額 五萬 九千圓의 範圍內에서 實施가 可能하였음.

(二) 行動의 便宜上 극히 小部隊로 分散하여 規定의 炊事道具를 使用하는 時期가 얼마 안되는 것과 運搬費 節約이라는 考慮 下에 炊事道具는 一般的으로 携帶하지 않고 炊事는 오로지 飯盒或은 地方 在來의 炊事道具를 利用케 한 바 各隊는 何等의 困難을 느끼지 않고 容易하게 炊事를 하였고 또한 飯盒炊事는 恒常 더운 食事를 할 수 있게 되어 嗜好와 衛生上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因하여 運搬費를 크게 節約할 수 있었음.

給養法은 司令部에서 韓國內 旅費規定附表 第二의 定額을 實費支給으로 하고 各隊는 自炊給養으로 하여 副食費는 가급적 滿足하도록 給與를 하고 整理를 쉽게 한다는 配慮 下에 討伐行動中 그 地域 內를 通하여 平等하게 二十一錢 九厘를 標準으로 하여 實費를 支給함.

(三) 運搬은 韓馬와 人夫를 使用하였고 그 役賃金과 韓馬使用料는 人馬를 合하여 一日 壹圓五十錢以內로 하고 臨時雇傭은 一里 三十錢以內로 하고 人夫는 一圓 六十錢 以內로 하였으며 運搬할 物件은 가급적 이를 減少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韓國 在來의 習慣인 村送法에 依하는 等 極力 經費節約을 實施한 結果 그 成果는 大槪 良好하였음.

七. 衛生事項

(一) 討伐中의 衛生狀態는 一般的으로 良好하였고 作戰中 數名의 腸窒扶斯 患者가 發生하였음은 甚히 遺憾으로 思料되는 바이나 其他의 一般患者 發生數는 平素 守備地에서 發生한 患者數에 比하여 約 半數도 못미치는 好成績을 나타내었음.

(二) 作戰中 患者의 診療를 위하여 새로이 南原, 靈光 月坪, 順天, 羅州, 靈巖, 海南, 寶城 等

數個處에 患者療養所를 特設하고 治療上 遺憾없도록 措置함.
(三) 宿營地選定에 대하여는 極力 地方傳染病의 有無를 調査하고 給水物資를 考慮하였으며 特히 宿舍는 가급적 比較的 淸潔한 官公署 等을 選定하였었으나 野營이나 夜間行動을 取할 때가 많았으며 또 山間僻地에 이르러서는 狹小한 家屋에서 밤을 지새운 일도 있었음.
(四) 防疫은 上下가 모두 盡力하였음. 卽 衣食의 取締, 食器의 取扱 昆蟲類의 驅除 宿舍의 選定 및 士兵들의 健康診斷을 實施하였으며 「크레오소-트」丸은 各人의 希望에 따라 服用케 하였음.
마라리아 豫防으로서는 모기防止用 覆面을 使用케 하였음.
더욱 今次의 討伐作戰에서 實地로 여러 가지 注意를 하게 한 結果 下士官以下 一般士兵의 個人 衛生思想이 大幅 發達하였음.
(五) 患者 發生의 狀況은 前記한 바와 같이 極히 少數로서 第一期 및 第二期에 있어서의 患者發生 總數는 七十四名에 不過하였으며 그中 主要한 疾病은 胃腸病患者 一五名 말라리아 九名, 外傷 六名 等이 가장 많았었음.

結論

大討伐 全般의 成績은 大槪 希望點에 達하였으며 全羅南北道 特히 全羅南道에 있는 巨魁들은 大槪 捕獲 또는 誅戮하여 거의 群賊을 根絕시켜 目下 平穩狀態를 回復하여 掃討의 功을 이룰 수가 있었음. 따라서 今後 軍隊의 緻密한 配置와 地方行政의 刷新과 相應하여 安寧을 期함에는 將次 今般과 같은 暴徒의 橫行은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狗盜草賊은 전혀 根絕되었다고는 保障키 어려워 아직도 사소한 被害는 免치 못할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나 要컨데 討伐의 目的이었던 暴徒는 이에 鎭定의 一大段落을 成就하였다고 確信하는 바임.

4. 全南警秘收 第二四七七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一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十一月 十三日付 高秘發 第三八三號로써 示達한 今年 九月 暴徒討伐 開始以來의 狀況 調査 後 이에 報告함.

記

一. 討伐 實況 大要

今秋에 있어서의 暴徒大討伐은 從來에 없었던 大規模의 計劃으로 거의 派遣隊의 全部가 參與하게 되었고 海軍 또한 이에 호응하여 海上을 警戒하였다. 그리고 그 實力은 步兵 二個 聯隊와 第十一艇隊(水雷艇 四隻) 石油發動 氣船 및 梅丸 乘組員으로 하였다.

討伐期間을 三期로 區分하고 第一期 및 第二期를 各 約 十五日間 第三期를 約 十日間 合計 約 四十日間으로써 終了할 豫定으로 九月 一日부터 이제 大行動을 開始하였다.
우선 討伐部隊를 나누어 警備 및 行動의 二隊로 하고 警備部隊는 警備線에 配置하고 各 連絡을 保持하고 其 區域 內로부터 暴徒를 脫出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其外 圍線은 全羅北道 扶安, 泰仁, 葛潭, 南原 等을 連結한 一線에서 蟾津江 上流 院村에서 同江 沿岸 海京高에 이르는 線으로써 이에 兵士를 두어서 警戒하고 行動部隊는 警備線 內를 두루 嚴密히 搜査하고 暴徒의 討伐撲滅에 努力하며 또 當道 觀察使의 訓令에 依하여 各府 郡內 面·洞長의 許可에 의해 만든 二十歲 以上 六十歲 以下의 男子名簿에 의하여(永住와 一時居住와의 區別 없이 現住在를 網羅한다) 各 村落에 潛伏한 暴徒의 發見에 努力하고 隱匿한 武器의 收集을 期하기로 하였다.
渡邊 派遣隊司令官은 司令部를 引率하고 九月 一日부터 全羅北道 南原에 그 本部를 設置하고 스스로 全般에 걸친 指揮를 하고 行動狀況의 進捗에 따라 其 司令部를 當 道內 光州, 榮山浦, 木浦 等에 轉進하여 十三日 大邱에 歸營하였다.
이 大要의 計劃에 기초하여 各 部隊는 다시 中隊, 小隊, 分隊 等 多數의 行動部隊를 編成하고 警備線 內를 또 數個로 나누어서 各 分擔區域에 依하여 詳密한 搜査와 討伐을 함에는 八月 三十一日까지에 警備隊, 行動隊 모두가 이 準備를 마치고 九月 一日부터 活動을 시작하였다.
最初 前記한 方法에 의하여 大槪 拂曉 等 最利의 時間을 期하여 各 村落을 包圍하고 各戶에 대하여 綿密한 點檢을 하였으나 男子들은 모두 所在를 감추고 不在者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豫期의 效果를 認定할 수 없어서 各 隊長들은 실망하게 되고 따라서 거의 第一期間은 充分한 效果를 認定하지 못하고 經過하였다.
이에 各 隊長은 鳩首討伐方法에 골몰하고 점점 部下들을 채찍하여 峻烈하게 搜查를 續行함과 아울러 地方官吏들과 交涉하여 面·洞長 其他 有志者들을 召集하고 大義明分에서 說破하고 暴徒의 罪惡을 列擧하여 지금까지의 成績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國事에 대하여 冷淡함을 吐하고 지금까지 暴徒를 蔭匿함은 勿論 그 所在를 알고 通報하지 않는 일, 또한 良民으로서 討伐隊의 搜查에 있어서 꼬리를 감추는 것 등은 모두 이를 暴徒로 看做하고 嚴正한 處分을 하도록 하고 또 面·洞長과 같은 公職이 있는데 이들 通報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連累者로 파악하여 一層 嚴罰에 처함으로써 或은 諭說하고 或은 威脅하여 이들이 良心을 喚起시킴과 아울러 峻烈한 行動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서도 共히 한편으로는 여러가지의 方法을 講究하여 夜暗을 이용하거나 風雨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警察官으로 하여금 巧妙히 變裝을 시켜 搜查하는 것이 좋다. 또는 機敏한 密偵을 使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銳意搜查한 結果는 우선 巨魁 安桂洪을 逮捕하고 계속하여 一般人民도 討伐軍의 뜻이 韓國을 爲하여 온갖 苦難을 겪으며 秩序의 維持에 努力하는 義心을 깨닫고 心窃히 暴徒의 兇暴함을 미워한 討伐隊의 案外에 優하여 恩威併行함

을 보고 飜然히 깨달아 속속 密告의 횟수가 增加한 바 討伐隊의 熱誠과 相應하여 第二期에 있어서는 豫想 以上의 好成績을 거두어 首魁, 巨魁의 半 以上을 刈盡하였다.
從來 일찍이 없었던 嚴正한 이번의 討伐을 만나서 各 巨魁를 비롯하여 전전긍긍하여 거의 對抗할 용기를 잃고 部下를 解散하고 武器를 숨기고 一身을 숨기는데 급급하여 드디어 首魁를 비롯하여 그 部下暴徒 千餘名은 自首 또는 逮捕, 誅殺되어 巨魁 沈南一을 비롯하여 第三期에 있어서는 거의 全南의 暴徒를 盡滅하였고 나아가 光州守備 步兵 第二大隊의 눈부신 活動은 討伐隊의 꽃이라고 생각되며 豫定의 行動을 마친 後도 同隊는 아직 行動을 계속함으로써 行動線을 寶城 地方으로 收縮하여 當道 暴徒의 巢窟이었던 同 地方을 席捲하여 그 자취를 끊고서 다시 第二의 不穩地의 靈光, 咸平 및 全北 茂長 方面으로 移動하여 전에 없던 效果를 거둠으로써 十一月 十一日 屯營地로 돌아왔다. 同隊와 같은 屯營을 出發한 以來 실로 八十餘日間을 討伐行動에 消費하였다.
本 討伐에서 賊은 討伐隊의 威風에 놀라고 오직 몸을 숨기는데 급급하였고 이런 狀況에서 커다란 衝突交戰은 전혀 없었으므로 討伐軍으로 하여금 脾肉의 歎을 나타내게 하였다.
二. 警察官 援助의 狀況
本 討伐이 開始됨에 앞서 各 警察署에 있어서는 郡守에 알리고 面·洞長을 재촉하여 男子名簿作成 等 討伐準備에 힘을 기울이고 더욱이 討伐 行動開始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의 人員을 나누어 이를 共應하여 軍隊와 行動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辛苦艱難을 겪으면서 多大한 援助를 주었다. 軍中에 있어서는 專的으로 搜査偵察의 主任으로서 密偵活用 等의 樞機를 이용하고 變裝하여 單身으로 危地를 侵入하기도 한다. 夜氣를 무릅쓰고 一夜를 들판에서 지내기도 한다. 風雨를 무릅쓰고 賊情을 探知하고 其 精勵한 根氣와 獨特한 搜査와는 充分한 功을 奏하여 討伐 逮捕 等에 非常한 좋은 結果를 招來하여 各 隊長 等으로부터 계속하여 多大한 贊辭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自首 逮捕者의 訊問 或은 通譯 代務 物資調達等에 盡力하고 其間에는 또한 討伐을 위하여 動搖한 民心의 靜謐에 努力하는 等 警察 本能의 名譽를 發揮하는데 충실하고 軍의 業務에도 자못 有益한 助力을 提供하였다.
出動中의 巡査는 前述한 바와 같이 집을 지키는 者들에 있어서도 또한 많은 苦難을 겪게 되었다. 人少寡員의 留守에 있어 日常 普通一般의 警察事務에 鞅掌하는 한편 討伐隊의 後援에 뜻을 두고 安寧秩序의 維持에 努力하여 潛伏暴徒의 歸順勸誘 또는 搜査에 종사하고 或은 討伐機關 脫網의 單賊이 巧妙히 後方에 蠢動한 者들의 擊攘에 從事하여 行動隊에 策應하고 或은 警察單獨의 變裝隊 等을 組織하여 後方에 綿密한 掃蕩에 힘을 기울이는 等 거의 不眠不休로 討伐隊 餘加의 巡査에 많은 苦難을 겪으면서 活動하였다. 요컨대 이번의 大討伐에 있어서 警察은 그 精力을 기울여 이에 協力活動하여 軍隊는 勿論 一般官民으로부터 絕大적인 同情과 贊辭를 얻고 더욱더 信賴의 度를 높임으로써 그 聲譽를 發揮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宜哉라

永日 不眠不休 精力 以上의 活躍을 한 反響은 그 후에 있어서 이에 基因한 疾病으로 二名의 巡査가 죽고 또한 三·四名의 巡査도 病臥하기에 이른 것을 보아도 스스로 非常한 勞力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委細는 每日 提出되는 月報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參照하기를 바란다.

三. 就捕暴徒의 種類

自首 또는 逮捕한 暴徒中 巨魁 沈南一, 安桂洪 및 誅戮된 巨魁 林昌模와 같음은 再昨年의 政變에 있어서 憤然慨起하여 大巨魁 奇三衍 및 金筆 等의 流를 酌하고 最初 成分 國事的 觀念이 없는 것이 아니라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거의 掠奪誅戮을 敢行하여 그 行動이 火賊과 다를 바 없고 其他의 首魁에 있어서도 이름을 義兵이라고 稱하므로써 自身의 慾心을 채우고자 하는 데에 不過하다. 더욱이 部下들이 暴徒에 投身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그들의 煽動에 依하여 無意味하게 이에 비롯된 것으로 國事를 뜻하는 것은 全無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出身別에 있어서 또한 巨·首魁에 있어서는 兩班 儒生 解放軍人 吏員 等 文筆을 알고 있는 者들이 많으나 一般部下에 있어서는 모두 遊惰從食의 貧富한 農民에 不過하다.

四. 捕獲品의 狀況

九月 一日부터 十月 三十一日에 걸치는 期間에 軍隊에 있어서 押收 또는 鹵獲한 物品은 銃 五三九挺 刀 五十六振 鎗 十挺으로 同日부터 十一月 三十日까지에 各 警察署에서 獲得한 것은 銃 二六七挺 刀 二二振 彈藥 八一二發 火藥 四斤半 貨幣 二十四圓餘로서 이를 合計하면 銃器에 있어서 八百六挺 刀槍을 合하여 七十八挺의 多數에 달하고 이에 計數未詳에 屬하는 憲兵隊 및 十一月中 守備隊의 分을 合하면 捕獲 銃만으로도 前月까지에 족히 千五百을 넘으리라고 思料된다.

捕獲品의 大部分은 거의 銃器 및 刀劍 等의 武器類로써 銃의 種類는 大概 火繩銃의 粗雜한 것에 屬하고 또 刀槍도 使用에 충분하지 못한 것 뿐으로 廢棄處分할 것이 많다.

이밖에 帽子, 周衣 等의 雜品이 없는 것이 아니나 이를 利用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그곳에서 破毁한 것이 많다.

五. 首魁討伐에 대하여 民心의 傾向 詳細

義兵이라고 自稱하고 國勢挽回를 標榜하여 蜂起한 당시에 있어서는 官民 모두가 마음속 깊이 同情을 나타내어 남몰래 金品을 提供하고 或은 討伐隊의 行動 等을 알려주는 者들이 많았으나 近來에 이르러 그들은 其 美名剝離하여 從히 金品을 掠奪하고 人命을 傷害暴戾함이 끝이 없음에 이르러 人心이 날로 離反하고 그들에 대하여 慊爲치 않았을 때 今回 大討伐의 開始가 되어 특히 觀察使 以下 書記官, 警視 및 各 郡守 等이 討伐隊에 協力하여 管內를 다니면서 訓諭에 힘쓰면서 民心의 誤解를 풀어주고 一面 討伐隊에서 極力威壓을 加한 結果 人民도 暴徒撲滅의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傾向을 나타내고 또 討伐隊의 威風에 恐怖를 느껴

속속 匪徒의 動靜을 密告하여 옴에 이르렀으나 그중에는 그들의 後難을 두려워하여 速히 官憲에게 申報치 아니하는 者도 적지 아니하였는데 討伐隊의 威力이 全南의 天地를 壓하여 그 효과가 顯著함에 따라 더욱 暴徒에 대하는 人民의 態度가 一變하여 일일이 이를 官憲에게 密告하지 아니하는 者가 적기에 이르러 특히 各所에 民討伐의 이름아래 夜警處小屋을 設置하고 村民輪處에 宿直하여 賊이 行動할 餘地가 없기에 이르므로써 感情變遷의 一班을 파악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討伐隊의 餘威는 이에 民心을 一新케 하는 느낌이 있다.

5. 全南警秘收 第二〇〇二號

작성일 : 隆熙 三年 十月 二十七日

全羅南道警察部長 警視 村上則貞

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앞

今年 十月 十五日付 高秘發 第二七六號로써 本道內에서 逮捕 또는 自首한 暴徒首魁 姜士文 外六名에 대하여 昨年 五月 警秘訓 第七九號에 基礎하여 報告함. 保安課長으로부터 照會에 依하여 取調한 바 左記와 같은 바 이에 報告한다.

(중략)

全羅南道 南平郡 郁谷面 九永洞 前官職 없음. 農業 權寧會(一名 洚) 二十五年

一. 暴徒加入의 動機

自己는 光武 十年 二月부터 九日까지 崔益鉉에게 修學하였는데 隆熙 元年 三月頃 崔가 淳昌郡에 와서 그 第子 一般에게 말하기를 皇帝陛下로부터 國運의 非함을 嘆하시어 各道에서 義兵을 일으키라는 密勅을 내리었으므로써 擧兵할 通知를 發하여 自己에게도 右 詔勅의 寫와 通知를 送越하였는데 崔가 그후 國軍에 대하여 日本 對島에 流配되어 그곳에서 죽기에 이르렀는데 自己가 恒常 이를 遺憾으로 여기고 또 皇帝讓位 軍隊解散 日本官吏 任用 等의 일이 있은 후 이를 日本抑壓이라고 憤慨하고 있을 때인 隆熙 二年 陰 六月 二十八日 沈南一에게 招致되어 南平郡 竹谷面 德龍山에서 처음 同人과 會見하고 함께 國事에 盡加할 것을 誓約 그 書記가 되었었는데 同年 九月 曺京煥에게 招致되어 그 部下가 되었다가 十一月에 그 書記가 되었다.

一. 逮捕에 對한 感慨

朴玟洙는 今年 二月 十日 靈岩郡 之井面에서 戰死하였는데 그때 歸順의 詔勅을 보고 暴動이 不可함을 깨닫고 自首하고자 생각하였으나 普通의 暴徒와 同視될 것을 두려워 鄭贊會라고 僞稱하고 自宅 附近에 潛伏하여 陰曆 六月 十二日 救世軍에 加入 其 書記가 되어 長興邑에 있다가 陰 八月 二十三日 逮捕되었는데 救世軍에 加入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나 義兵에 干與함은 國事를 위함이므로 韓國人으로서는 惡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一. 引率 또는 指揮한 匪徒의 員數 및 그 消長

自己는 書記이었으므로 스스로 部下를 引率 또는 指揮한 일이 없다.

一. 根據地 또는 주로 出沒한 地域

沈南一, 朴玟洙의 部下로 行動한 것은 南平, 羅州, 長興, 光州, 寶城郡 等으로, 曺京燉은 咸平, 長城, 靈岩 等이다.

全羅南道 咸平郡 大也面 山亭洞 農業, 일찍이 訓長이었던 일이 있다. 多少 學識이 있다. 沈南一(本名 守澤)

三十九年

一. 匪徒嘯集의 動機

日本의 政策이 韓國을 德化하는 것이 아니다. 暴力으로써 이를 奪코자 하므로써 日本을 韓國으로부터 驅逐하고자 하여 隆熙 元年 九月부터 十二月까지 奇三衍, 金泰元, 金律 等 諸首魁가 어떠한 行動을 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長城, 靈光, 咸平 各,郡을 徘徊를 하고 있다가 隆熙 二年 陰 二月부터 뜻을 決定하여 咸平, 南平, 寶城, 長興 各郡에서 一人 三人씩의 部下를 모아 스스로 그 將이 되었다.

一. 逮捕에 대한 感慨

그런데 그 後 日本軍의 勢力이 强하여 交戰할 때마다 部下를 잃고 또 土倭(土倭라 함은 韓國人으로 日本에 味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많아서 도저히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생각하고 今年 七月 二十一日 靈岩郡 金磨面에서 部下를 解散하였는데 한 管 守備隊에 依하여 八月 二十六日 逮捕當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遺憾에 不堪하다. 일이 이에 이르러서는 원래 죽음은 覺悟하는 바이나 自己는 假令 獄中에서 죽더라도 自己의 罪惡으로서가 아니고 日本의 强暴에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一. 引率 또는 指揮한 匪徒의 員數 및 其 消長

昨年 五,六月頃부터 部下를 前後의 三軍에 分하여 姜武景을 前 軍將 安贊在, 朴士化를 中軍將으로, 魯秉吳를 後軍將으로 하고 各自 三四十名에서 많을 때는 百名 가량 引率하고 있었는데 自己가 直接 이를 引率하지 않았으므로써 그 員數 等도 精確한 것은 모른다.

一. 根據地는 一定하지 않다. 주된 出沒地域은 羅州, 南平, 綾州, 康津, 靈岩, 長興, 寶城 等의 各 郡이다.

2.『暴徒史編輯資料』[22]에 보이는 나주의병

전라남도편(全羅南道編)
전남경비친(全南警備親) 제89호, 융희 2년 9월 29일
전라남도 경찰부장 경시(警視) 촌상측정(村上則貞)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松井茂) 전
본월 2일 경비발 제760호 통첩에 대하여 관내 폭도의 상황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1. 적도 봉기의 원인

관내 폭도 봉기의 원인은 재작 광무 10년 6월 일한협약에 반대한 홍주·남원 등에서 폭거를 일으킨 저 민종식(閔宗植)·최익현(崔益鉉) 등의 유류(遺類), 광양군의 유생 백낙구(白樂九), 장성군의 유생 기삼연(奇參衍), 창평군의 고광순(高光洵) 등이 세계의 대세에 통하지 못하고, 한국 현재의 위치·상황에 자상치 못하여, 헛되이 완고한 구사상(舊思想)에 젖어, 일본의 보호정책을 오해하고, 만연히 무지한 완민(頑民)을 선동하여 폭도 50여 명을 끌고 동년 11월 중 구례 및 광양의 2군을 습격한 데서 비롯하여, 때때로 전라북도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고 각지에 준동(蠢動)하였으나, 당시는 그 세력이 미약하여 전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지난 광무 11년 7월, 경성에서 한병(韓兵)의 폭동 이래 각 지방 일반에 불온의 형세가 다시 일어나 특히 본도와 같은 곳은 고래로 완고의 유생이 많으므로 항시 우국의 지사로서 자처한 기삼연(전라남도의 유명한 유생으로서 민비사건 이래 늘 상복을 입고대로 만든 상립을 썼다)은 호남창의대장이라 칭하고 비밀히 배일적 격문을 도내 각 군에 배포하여 스스로 의병이라 칭하고 폭도를 규합하면서부터 민심이 크게 동요되었고, 이에 더하여 항산(恒産)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랑한 백성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 많고, 개중에도 나주군의 김태원은 동학도 이래 가장 표한(慓悍)하여 유명한 무뢰한으로서 그 아우 김율(金聿), 기삼연의 문하에서 나와 박사라 칭하며 기의 부하가 되었다)은 위협 공갈로써 자주 오합(烏合)의 무리를 규합하여 교묘히 각지에 출몰하며, 그 세력이 떨쳐 무시 못 할 형편이다. 본년 1월 이래 광주·나주를 근거지로 삼고 부근 각 군을 발호하여 그 당파 또한 사방에 만연하여 드디어는 해안 지방의 일부 및 도서를 제하고는 전도가 거의 폭도 봉기의 소굴로 화하였다.

---

22)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공훈전자사료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나주의병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독립운동사자료집』3(1971)에 실린 해당 쪽수를 표기하였다.

2. 거듭하는 수괴자 성명 및 경력과 봉기 중의 행동

1) 김태원(金泰元)

나주군에서 김참봉이라 칭하고 동학도 이래 유명한 무뢰한으로서 기력이 대단하고 표한(慓悍)으로서 그 이름이 원근에 소문났다.

기삼연이 폭거를 기도하매, 그 아우 김율과 같이 이에 투신하여 성대한 폭도를 합치고, 혹은 일진회원(一進會員)을 참살하고 폭행 협박으로써 민재를 약탈하고 출몰이 자재하여 크게 광주·나주 간에 발호하며, 기삼연이 죽은 뒤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여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가지고 다니며, 그 동작이 기민하여 신출귀몰(神出鬼沒), 실로 무시할 수 없어 크게 군대·경찰의 두통꺼리라 할 수 있다. 본년 1월 22일 그 부하 4백 명을 끌고 함평주재소를 습격하여 일인 순사 1명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1월 26일에는 나주군에서 기삼연 · 이철형(李哲衡) 등과 연합하여 부하 약 3백 명을 이끌고 토벌대와 교전하여 다대한 손해를 입고 도주하였으며, 다시 2월 1일 광주군 무등산에 웅거하여 패잔병을 모으던 중, 경찰 · 수비대 연합으로 토벌대를 조직하여 공격하여 보았으나 전투가 격렬, 드디어 이익을 보지 못하고 지휘관 천단조장(川端曹長) 및 3등병 1명이 전사하고 그들도 또한 큰 손해를 입고 흩어졌다.

3월 21일, 장성군 광곡(廣谷)에서 부하 약 80명을 끌고 잠복 중, 토벌대의 포위 공격을 받고 암굴에 웅거하여 교묘히 교전하다가 드디어 밤을 타서 도주하였으며, 기타 군대 · 경찰 · 특설순사대 등의 토벌을 받은 일이 연 10회에 이르렀으나, 완강히 싸우다가 본년 4월 25일 드디어 광주군 강동(江洞)에 잠복 중 토벌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2) 김율(金聿)

김태원의 아우로서 기삼연의 문하생으로 박사라 칭한다.

그가 폭동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작년 8월 중 경성에서 내려 보낸 신문을 읽고, 그 기사 중 한국은 결국 일본이 병탄한 바 되어 한국민은 점차 일본인에게 구축되어 드디어는 해도(海島)로 유망(流亡)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 크게 개연하여, 앉아서 타인의 손에 죽느니보다 차라리 스스로 나아가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기삼연과 기맥을 통하여 따로 한 기치를 세우고 형 김태원과 한가지로 광주 · 나주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 군에 출몰하여 일시는 그 부하가 5백에 달하여 그 세력이 김태원 이상이었으나, 군대 · 경찰의 추구(追究)가 더욱 엄밀하므로 점차 그 세력이 쇠약한 끝에 본년 3월 30일 광주경찰서에서 그 잠복소를 탐지한 바 되어 드디어 체포됐다.

(중략)

3. 적정(敵情) 성쇠의 개황과 출몰 구역 및 그 일시(日時)

본년 12월 중 기삼연 · 김태원 및 김율 등의 거괴(巨魁)가 발호할 때는 그 집단이 많을 경우 5백, 적으면 50~60을 내리지 않았다. 수비대 · 경찰 및 특설순사대는 전력을 다하여 이의 토벌에 힘써 극력 박멸을 철저히 한 결과 이들의 거괴(巨魁)는 대개 주륙을 당하여 적세(敵勢)는 쇠하였으나, 패적(敗賊)의 제2류, 3류의 소수령(小首領) 등은 지금의 형편으로는 귀순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하여 다른 생활의 길을 세워 정업에 나아갈 수도 없어 드디어 이름을 의병에 빙자하고 종래의 행동을 계속하여 산야에 잠복하면서 민재(民財)를 약탈하는 일종의 화적으로 변하였으므로 종래의 화적 · 강도 등은 편의상 이들과 서로 합하여 각지를 출몰, 14~15내지 20~30의 소적단(小賊團)으로 되었는데, 수비대 · 헌병 · 경찰 등의 배비지구(配備地區)의 사이를 뚫고 몇 개의 적단과 연합하여 1백 이상에 달하는 때도 있으나, 근본부터 오합(烏合)의 무리로서 토벌대의 우세한 것을 만나면 문득 해산하여 양민으로 가장하고, 정찰대 또는 연락병 혹은 소수의 헌병·순사 등을 보면 저격을 하며, 약하게 되면 곧 분산하여 그 종적을 감춰 자못 밥상의 파리를 쫓는 것과 같이, 실로 진압 기관으로서는 분주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 출몰 구역은 원래 일정치 않아 본년 1월부터 3월경까지는 거듭하여 광주 · 나주 · 영광 · 함평 · 담양 · 장성 · 곡성 · 옥과(玉果) · 구례(求禮) 등 전라북도에 접근한 방면에 출몰하였으나, 4월 이후에는 큰 수괴가 대개 멸망하고 잔당은 화적으로 변한 자가 많고, 그 구역도 따라 일정치 않다.

그러나 점차 동복 · 화순 · 능주 · 보성 · 장흥 · 영암 · 강진 및 순천 · 낙안 · 광양 등 남부지방으로 전출하여 근래에는 남평(南平) · 능주 · 보성 · 낙안 동복 등지에서 출몰하는 것 같다. 그리고 광주 · 나주 부근에서 전라북도 경계에 접근한 일대 지역은 수습되지 않고 소수의 산적이 배회하여 동(東)에서 치면 서(西)로 달아나고 남에서 치면 북방으로 흩어져, 일정의 근거도 없고 조직도 없으므로 이것을 정찰 수색하는 데 극히 곤란을 느끼고 있다. 또 출몰 상황이 대개 야간을 이용하고 때로는 대담하게도 주간에 소수의 군대 · 헌병을 공격하기도 한다.

요컨대 적의 우세한 대집단(大集團)은 수괴의 멸망과 때를 같이하여 대개 궤산하였으나, 잔여의 작은 수령 및 북방 전라북도로부터 침입한 일부의 적단은 화적과 함께 각지에 출몰하여 본년 7~8월 이후 다시 그 출몰 구역을 확장하여 적세는 다시 떨칠 것 같다.

4. 적도에게 준 타격 및 적도 내습이 거듭되는 사건의 전말

작년 가을 9월 이후 때때로 출몰한 폭도에 대하여는 정보에 따라 군대 · 경찰의 협동토벌대로서 이것을 격파하였으나, 본년 1월 이래 적세가 크게 창궐하여 혹은 순사주재소를 습격하고 혹은 일한인(日韓人)을 참살하는 일이 때때로 일어나며, 또 그 출몰 구역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본년 1월 24일 광주수비대대에 속한 각 분둔대(分屯隊)로써 10개 종대(縱隊)를 편성하여

광주·나주·장성·함평·순창(전라북도) 등의 사이에서 큰 토벌을 단행하여 거괴(巨魁)기삼연·김태원·김율 등이 거느리는 폭도의 집단에 큰 타격을 주어 이것을 궤산시킨 결과, 거괴 기삼연을 사로잡고 수십의 폭도를 죽이고 총기를 노획하는 등 적세를 꺾었다.
다음 2월 중 대구로부터 출마(出馬)한 국지(菊池) 연대장 지휘하에 15개 종대를 편성하여 전라 남북 양도에 걸쳐 각 방면으로 일제 대토벌을 벌이고 나주수비기병중대 또한 이에 호응하여 5개의 분진대(分進隊)를 활동케 하여, 연합토벌대는 그 첫 착수로서 적장 김유성이 거느린 1백 50명의 집단을 장성군 탑정리(塔亭里)에 습격하여 적장 이하 72명을 죽이고 그 집단을 전멸케 하여 크게 적세를 압박하고, 이래 수사 정찰을 계속 행하여 정보의 수집에 힘쓰며, 이에 따라 수비대·헌병·경찰 및 특설 순사대에서 토벌한 횟수(回數) 1백 50여회, 적의 사망자 7백 56명 부상 수백 명, 포로 7백 명이었으며, 적괴 김율을 사로잡고 또 가장 표한(慓悍)하며 가장 출몰에 교묘한 김태원은 교전 중에 총살하고 기타 이 진사는 세가 궁하여 드디어 귀순을 빌고, 많은 대소의 적괴는 멸망하였으며, 적의 조직적 집단은 대개 궤산하여, 5,6월에는 일시 진정된 듯하더니 다시 제2의 소수괴(小首魁) 및 전라북도로부터 침입한 일부의 비적은 순천·장흥 등 본도의 남부 지방에 출몰하여 7,8월 이래 그 출몰 구역을 확대하고 이에 더하여 화적적 작은 적단이 각지에 산재하여 양민의 금품을 약탈함으로 목하 각 진압 기관에서 이의 박멸에 힘쓰고 있다.
(중략)
(6) 융희 2년 1월 1일, 거괴 김태원 및 그 아우 김율이 이끄는 폭도 50여 명이 담양 우편 취급소 및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였으나 일인 순사 2명에게 격퇴되고 시체 1을 버리고 궤산하였다.
(7) 1월 3일, 김태원 이하 약 1백 명의 적괴는 다시 함평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2명의 주재 일인 순사가 한때 이에 응전할 즈음 나주로부터 응원한 순사 및 헌병과 함께 추격하여 드디어 이를 궤산시켰다.
(중략)
(9) 1월 22일, 적괴 김태원은 폭도 약 4백을 거느리고 대거하여 다시 함평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에 일인 순사 3명, 헌병 1명이 이와 대전하여 적 1명을 죽이고 총기 1을 노획하였으나, 이때 적은 읍내를 사방으로 포위하여 군청에 침입, 저격하여 일인 순사 1명은 전사하였다. 오전 9시부터 격전 수시간 동안의 교전 중 학교(鶴僑)에 있던 헌병장교 이하 3명이 급함을 듣고 달려와 오후 4시경에야 겨우 이것을 격퇴하였다.
(10) 1월 26일, 거괴 기삼연 및 김태원이 이끄는 폭도 약 3백 명은 장성군 비치리(非峙里)에서 토벌대와 충돌하여 시체 32명을 유기하고 궤주하였다.
(11) 동일 나주군 오현(烏峴)에서 수괴 불명의 폭도 약 30명이 토벌대와 충돌하여 시체 24를

유기하고 드디어 전멸하였다.
(중략)
(14) 2월 2일, 거괴 김태원은 담양군 산성에서 토벌대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고, 다시 광주 무등산 중에 웅거하여 약 3백의 폭도를 모아 재거를 계획 중 수비대 및 경찰대로 조직된 토벌대가 공격하였으나 적은 교묘히 돌담에 의지하여 맹렬히 반격하여 용이하게 퇴각하지 않았다. 용감한 돌격을 시도(試圖)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토벌대의 지휘관인 천만조장(川滿曹長)과 상등병 1명이 전사하여 중과부적으로 드디어 일방의 혈로(血路)들 뚫고 퇴각하였다. 다음 증원된 토벌대가 이를 추격하였으나, 드디어 전부 궤산하여 그 종적을 찾지 못하였다. 적의 사자 3명.
(중략)
(18) 3월 29일, 광주군 월정리(月亭里)에서 적의 거괴 김율은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잠복 중 경찰에 탐지되어 드디어 군대 · 경찰 · 순사대로 조직된 토벌대에 의하여 생금되고 그 밖에 죽은 자 5명이었다.
(19) 4월 25일, 수비대·순사대로 된 토벌대는 광주군 강동(江洞)에서 거괴 김태원이 이끄는 약 50의 폭도를 공격하여 괴수 김태원 이하 13명을 죽이고, 먼저 무등산에서 적의 손에 들어간 천만 조장의 쌍안경을 탈환하였다.
(중략)
(24) 7월 20일, 헌병의 수색대는 남평군 도천면(道川面)에서 폭도 약 50명을 공격하여 5명을 죽였다.
(25) 7월 25일, 헌병의 수색대는 남평군 죽곡면(竹谷面)에서 폭도 약 1백명과 충돌하여 7명을 죽이고, 헌병 1명이 부상당하였다.

출전 :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1, 554~563쪽

3. 『陣中日誌』[23]에 보이는 나주의병

1) 1907년

23) 참고한 저본은 『陣中日誌』(전3책, 토지주택박물관, 2010)로, 현재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나주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발굴하여, 초역(抄譯)한 것이다. 초역문 말미의 ( )에 권수와 쪽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예) 『진중일지』 1권 87쪽 → (1-87). 일본 인명(人名)은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8월 8일 : 영산포와 나주가 불온한 징후가 있다고 이사관으로부터 파견을 요청하여 하사 1, 병졸 14명을 파견하여 무사히 도착함. 일본군사고문 및 한국대대장이 당지를 출발하여 일부를 광주까지 호위하고 돌아옴.(1-87)

8월 11일 : 8월 10일 나주정찰을 위해 출발한 파견분대장의 보고는 다음과 같음.
거류민 예비중위 전변모(田邊某)의 말에 의하면 나주의 사민들이 집합하여 평의(評議)하는 등 불온한 조짐이 있고, 일본인은 상품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교제상에 있어서도 이전과 크게 달라 이 지역에서 폭도(의병-필자, 이하 같음)가 일어날지라도 그들로부터 일어날 것임. 그래서 영속적인 군대 배치가 필요하며 다시 나주 부근에 행군하여 민심을 위로하고 다음날 귀대하였음.(1-96)

8월 14일 : 오전 7시 30분 광주 및 목포 수비대로부터 보고받은 개요는 다음과 같음.
광주진위대 교관 중평(中平)대위로부터 금촌(今村) 중위가 통보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영산포는 극히 조용함, 나주 남평 기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일본 인민은 한인의 여러 풍설에 미혹하거나 혹은 목하 형세를 억측하여 인심이 흉흉하여 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산포 등으로 피난해 오기도 함.(1-110~111)

8월 24일 : 오후 7시 30분에 도착한 목포수비대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3일부터 나주에 분파된 하사 이하 13명의 척후는 해당 지역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지난 21일 목포로 철수했는데 나주의 일본 거류민은 해당지역의 은행 창고 우편국 등이 있고 또한 중요한 지역이므로 군대 파견을 간절히 희망하는 청원서를 제출함.(1-137)

11월 15일 : 고부수비 제6중대장 중원(中原)대위 보고의 요지(11월 6일).
지난 1일 고창에 내습했던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진소위의 보고에 의하면 포로를 심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자백했다고 함. 호남창의회맹소의 지휘부를 진술한 내용 중에 후장군 김준삼이 나주 거평 출신이라 함.(*김준삼은 김준, 후군장 직책 역시 선봉장의 오기로 추정됨-작성자).(1-493~494)

11월 23일 : 위와 비슷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한 내용. 11월 18일 광주 출동한 동 수비대 제2대대장 불파(不破) 소좌의 보고 요지. 고창 부근에서 전선을 파괴한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중조(中條) 소대를 파견해서 드디어 의병과 조우함. 동 소대가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음. 후군장 김준삼은 나주군 거평면 거주자로, 가마솥을 제조한 직업.(1-

524~525)

2) 1908년

2월 15일
국지(菊池) 토벌대 명령(2월 15일 오후 5시 남원)
1. 정보에 따르면 태인 염암(塩岩) 갈담(葛潭) 순창 담양 장성 정읍에 이어지는 지역 내에는 의병장 박처사, 고진사, 김태원 등이 통솔하는 여러 의진이 배회하는 것 같음.
2. 토벌대는 이들 의병을 소탕하기로 함.
여시(勵示)
1. 장성 이북에서 집산(集散)하며 폭행을 자행하는 박처사 김태원 및 고진사 국기계(鞠奇桂) 등이 이끄는 의병은 본월 초순 금촌대(今村隊)에 의해 포로가 된 의병장 기삼연의 유지를 받들어 활동하기로 한 것 같음. 3월 1~2일경까지 이들의 다수를 백양사로 모이게 할 것. 정보에 따르면 이들 적은 실로 본월 2일 우리의 전우 천만조장(川滿曹長)과 임상등병(林上等兵)을 죽인 회한의 노배(奴輩)로서 이번 대토벌은, 하나는 이 지역을 진정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조장 및 상등병의 조전(弔戰)이므로 각 종대장(縱隊長) 이하는 열심히 분려(奮勵)하여 잔적의 의병장을 섬멸하여 양 전사자의 영령이 지하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보에 접하면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장래의 작전에 방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독단적으로 결행할 경우 주야를 논하지 말고 행동하여 대목적을 달성하여 적시의 기회를 잃치 말 것.
3. 의병에 대한 처치는 결코 완만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맹렬 용감하게 결행하여 나중의 후회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적을 격퇴하지 못하거나 적의 진지를 점령하기 어려울 경우 요점은 끝까지 추격하여 의병장을 처분하는 데 있으며 다수의 노적(奴賊)을 섬멸하는데 있음.(2-45)

2월 23일 : 2월 19일 밤 부사본(富士本) 특무조장(卒 9) 및 기병 5명은 탑정(塔丁, 장성 서쪽 20리)에서 통령(統領) 김용구(金容球)가 통솔하는 150명의 의병을 포위하여 새벽부터 공격하여 교전 2시간 동안 덕영(德永) 기병대위 등 10명의 기병이 와서 3면에서 합동으로 공격하여 그 의병장 김용구 이하 72명을 죽이고 그 다수가 부상당해 거의 이를 전멸시킴. 노획품은 포 1, 총 31, 도(刀) 4, 의병의 연명부 1, 도장 3, 기타 다수. 아군의 손해는 없고 소모탄은 708발. (중략) 지난 20일 장성 부사본대가 궤란시킨 의병장 김용구는 김태원의 동생임.(* 일본군은 김용구에 대해 잘못 파악함-작성자).(2-99~100)

3월 9일 : 광주 길전(吉田) 소좌의 전보 보고
금촌대는 박산에서 의병을 협격하여 1명 죽이고 1명을 붙잡음. 추격했지만 어두운 밤이어서 김태원을 놓쳤음. 추격중 약간의 노획품 있음.(2-156)

3월 19일 : 광주 수비구 사령관 길전소좌 보고(3월 12일 광주)
3월 9일 오전 1시 30분 금촌대 박산부근 전투 상보
약 30명을 통솔한 의병장 김태원은 지난 7일 능주 방향에서 와서 선암(仙岩, 동 시장 북방 약 1천미터)에서 1박하여 본 8일 일몰경 탑동방향으로 향했는데 김태원은 쌍안경을 소지하고 있음. 같은 지역에서 식사를 마친 후 길을 따라 여러 마을을 수색하던 중 3월 9일 오전 1시 박산(선암 서북방 약 15리)에서 약 10명의 의병을 추격하여 이를 격파하여 급히 추격하여 상박산(박산 북방 약 1천미터)에 이르자 다시 도주중인 약 30명의 의진에 대타격을 주어 모두 이를 궤란시킨 시간은 오전 2시. 이 전투에서 의병 5명을 죽이고 1명을 체포했고 10명을 부상시킴. 노획품은 화승총 2, 탄약 의류 기타 잡품 다수. 의병장 김태원은 겨우 몸을 빼어 달아나서 그 종적을 잃음.(2-169)

3월 29일 : 3월 20일 의병장 김태원(혹은 김율이라 함)이 지휘하는 약 80명의 의병이 3월 18일 이래 광곡(廣谷, 광주 서북방 약 50리) 부근에서 배회한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따라 오후 2시 중조대(中條隊)를 파견하고 아울러 장성분견대에 명령하여 서로 호응토록 함.
약 50명의 의병이 월암리 동방 약 1천미터의 바위산을 점령하여 산복의 절벽이 있는 바위굴을 이용하여 돌을 쌓아 견고하게 방어설비를 갖추고 완강히 저항, 일본군의 사격이 효력을 발하여 돌격하여 의병 진지 20미터까지 접근하여 투석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장성대의 전중승차(田中勝次)는 왼쪽 발에 관통상, 광주대의 말연가장(末延カ藏)은 왼팔에 관통상. 여러 부대의 호응을 받아 의병을 포위했으나 일몰이 되어 오후 8시 30분 의병은 어둠을 이용하여 암굴을 빠져나와 날쌔게 도주를 기도하여 이를 추격했으나 종적을 잃음. 의병 전사 5, 부상자 여러 명, 노획품은 화승총 4, 외 잡품 약간. 일본군 2명 부상, 소모탄 433발. 3월 25일 광주수비구 사령관 길전 소좌 (보고).(2-195~197)

4월 9일 : 기삼연 및 김율을 생포한 제8중대 금촌(今村) 중위에게 상사(賞詞)를 부여해달라고 군사령관에 보고하여 각 대에 통보.
3월 29일 김율이 인솔하는 약 15명의 의병은 월정(月亭, 광주 서방 약 30리)에 잠복해 있다는 정보를 접하여 대대 명령에 의해 길전 특무조장 이하 31명을 이끌고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를 출발하여 급행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해 달려감. 여러 부대가 합동으로 이를 추격한 끝에

오후 7시 신기리(월정 동북방 약 1천미터)에서 양민으로 분장하고 온돌 아궁이에 잠복한 거괴 김율을 생금(生擒)함. 의병 전사 5, 부상자 약간, 노획품은 화승총 잡품 약간. 소모탄 90발. 3월 30일 금촌 중위 (보고).(2-223~224)

12월 29일 : 12월 18일 월암 부근 산전(山田) 하내(河內) 양대 전투상보 추가
1. 산전대의 소모탄 620발
2. 포로를 심문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음
광주군 두방면 차사동 백창선(白昌先, 20)
나주군 통림면 도림 김판암(金判岩, 25)
2명은 모두 의병의 포수로서 주로 사격에 관계함.
창선의 수령은 순창군 출신으로서 김모라 칭하며 부하 70명이 있고 의병장 전해산과 합한 후 나주군내 활동중 조경환과 합할 목적이었음. 전투에 참여한 의병의 병력은 전해산의 120-30명과 김모의 70명이 합한 것임.(3-89)

3) 1909년

1월 1일 : 순천수비대장 이웅(伊熊) 중위 보고(12월 21일 순천)
3. 광주 서방지구에서 산전토벌대가 생포한 포로의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포날짜	생포지명	출생지	성명	연령
12월 20일	담양동	나주군 반남면	이채일(李采一)	25
12월 20일	담양동	나주군 도림면	오용섭(吳用燮)	27
12월 22일	계동	함평군 월악면	박상언(朴上彦)	16

1) 각 의진에 관한 진술한 바는 다음과 같음.
(1) 전해산은 부하를 長이하 10 내지 20명씩 12부대로 편성하여 교묘하게 지휘하여 각각 행동하며 자신은 약 5,60명을 통솔하고 필요할 기회에 전 병력을 집결시킴.
부장 정참위는 경성 출신으로서 한병(해산군인) 6~7명과 같이 투신하여 오로지 모두 군사적 교육을 담당하며 전토 행군 주둔의 각개 동작부터 야간에 각 동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면밀하게 교육하여 행군을 담당. 자신은 전영(前營)사령관(선봉장 의미-작성자)으로서 전투시 가장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지금 부하들로부터 전해산과 동등하게 존경을 받고 있음.
숙영할 때에는 의병장의 숙박한 촌락 주위의 각 마을에는 12부대로서 모두 연결되는 전초선을 풀어 각 부대로부터 혹은 다수의 밀정을 파견하여 각 마을을 수색하는 등 주의를 가장 엄

밀함. 이들이 보유한 무기는 다음과 같음.
30년식총 3(보 1, 기 2), 동 탄약 약 90발, 한병총 2, 동 탄약 약 20발, 천보총 26, 이연발 1, 블랑포(권총식 화승총) 1, 개조 화승총 100, 쌍안경 2, 군도 2, 30년식총검 1, 조선도 4 등. 이하에 30년식 총의 총탄 제조에 고심하는 내용 등.
조경환은 1백명을 통솔하며 활동, 김모의가 이끄는 약 30명 활동
이상의 3부대의 의병장은 서로 기맥을 통하며 집결하거나 행동함. 그 활동구역은 도림 선암사창 월암 대치 등 광주 나주 영광 장성을 잇는 선 이내에서 각지에 강력한 산병호를 구축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새로이 순창 북방 지구 및 영광 동북방 지구에서 활동하기도 함.
기타 신모(신보현이라 함)은 약 30명을 거느리고 담양 북방지구를, 오참봉은 약 20명을 거느리고 나주 북방지구를 배회하고 있으며 다만 약탈하는 일이 있으며 감히 일병과 맞서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 전해산 의진의 경우에는 극력 일본군과 자웅을 겨루기를 주장함.(3-95~100)

1월 16일 : 광주수비대사령관 길전소좌 보고(1월 11일 광주).
나주경찰서장 고옥경부 통보(1월 6일 나주) : 고막원헌병분견소에서 전사한 헌병보조원의 시체를 호송하러 온 헌병 상등병이하 7명은 어제 5일 오후 5시 귀로중 군하(郡下) 문암리(文岩里, 영산포 서방 약 10리)에서 약 50명의 의병으로부터 저격을 받아 보조원 1명 전사, 그 부대는 곧바로 추격했지만 의병은 산중으로 도망하여 종적을 잃었다고 함. 어제 5일 영산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야모(野 某)는 사냥을 하기 위해 문암리 부근에 이르러 약 20명의 의병이 집합한 것을 발견하여 도주할 때 소지한 2연발총을 떨어뜨렸는데 드디어 의병이 빼앗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의진은 헌병대 일행을 저격한 같은 부대로 보임.(3-144)

1월 20일 : 1월 10일 어등산에서 조경환 의진의 기습받은 상황. (3-151~155)

2월 15일 : 나주경찰서장 고옥(古屋) 경부 통보 요지(2월 6일 나주)
1월 30일 밤 의병 약 20명(의병장 金殷植)은 나주군 지라면 강경촌(江京村)에 침입하여 촌민 2명을 납치했는데, 김은식은 박사화의 부하이다. 박사화는 지죽면 기동 출신으로서 목하 부하 백여 명에 군총 1, 화승총 20, 군도 2를 보유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있음.(3-198~199)

2월 24일 : 광주수비구 사령관 길전소좌 보고(2월 17일 광주)
2월 4일 의병장 박민홍이 통솔하는 약 백명의 의병이 사기동(沙器洞)에서 1박했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토벌할 목적으로서 2월 9일 나산 출발하여 석교(나주 서북 25리)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음. 2월 4일 이들은 석교 동남 약 500미터의 산 위에 집결하였고 사기동에서 1박한 후 남쪽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소대는 사기동 부근의 마을을 수색활동을 전개했으며 오동장(烏洞場, 나주 서방 20리)에서 제8중대 가평등(嘉平(?)藤) 토벌대와 연락을 취하며 새로운 정보를 얻음.
사민(土民)의 말에 의하면 1월 6일 영산포헌병대는 해당 의병들의 추적을 중지했고, 그날 밤 영산포에서 1박함. 같은 지역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음. 영암수비 헌병대와 호응하여 영산포 등지를 수색하는 활동을 서술.(3-224~225)

2월 27일 : 오후 3시 도착 광주수비구사령관 길전소좌 전보 보고(오후 1시 나주)
강리구(江里口) 대위이하 15명, 진(進) 중위이하 10명의 양 토벌대는 어제 26일 철천(鐵川, 영산포 동남방 약 25리) 부근의 고지에서 나주경찰서와 전투중인 박민홍 박사화 등이 통솔하는 약 200명의 의병을 공격하여 전투 3시간 후에 이들을 구축하여 목하 극력 진격중에 있음. 이 전투에서 의병의 전사 20, 포로 2, 총기 기타 노획품 있음. 의병의 퇴로는 영암대 이웅(伊熊) 중위이하 11명, 해남대 도전(島田) 중위이하 16명의 양 종대(縱隊)로 충분한 것 같아 성공을 예상함.(3-243)

2월 28일 : 오후 2시 50분 도착 광주수비구사령관 길전소좌 전보 보고(오후 1시 영산포)
이웅중위이하 11명(영암대)은 27일 오후 5시 반 금산 동북 고지(영암 동북 약 30리)에 웅거한 박민홍이 통솔하는 약 70명의 의병을 공격하여 궤란시켰는데 의병 전사 20, 무기 약간을 노획했고 우리의 손해 없음.(3-245)

2월 28일 : 오후 11시 20분 도착 광주수비구사령관 길전소좌 전보 보고(오후 10시 40분 목포)
금회(今回)의 목표물인 박민홍은 어제 27일 이웅대(伊熊隊)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확실하며 잔존한 의병은 영암 동방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해서 강리구(江里口) 촌강(村岡) 진(進)의 여러 부대로서 다시 이를 추격케 함.(3-247)

3월 1일 : 광주수비구길전소좌의 박민홍 전사 전보에 지극히 만족한다는 대구 국지 연대장의 통보. 오후 6시20분 도착 광주수비구사령관 길전소좌 전보(오후 3시 40분 목포)
귀 전보를 받고서 일동은 모두 감격하여 삼가 감사함. 나주 영산포 부근은 일본인 농업 경영자가 각각 산재하여 의병의 피해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들은 자주 수비대의 주둔을

희망해왔음. 이제 박민홍은 죽었고 다수의 부하들은 각각 흩어져 도주하여 화적적 행위를 계속할 것이므로 차제에 제5중대의 주력을 나주로 이동하여 동 중대로서 몽탄(무안 동남방 25리) 함평(나주 서방 약 50리) 나산(나주 서북방 약 30리) 선암(광주 서방 약 30리) 부근의 수비대를 담임할 것을 인가함.(3-249)

3월 3일 : 나주 함평을 남북으로 잇는 지구와 그 이남 영산강 양안 지구에는 박민홍 의병장의 의진을 주력으로 심(남일), 김(?) 등의 소속 의병들이 활동한다는 것에 의거하여 대대가 이 지방 의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2월 25일부터 광주 능주 해남 영암 나산 몽탄 수비대를 토벌대로 편성하여 출동. 각 수비대의 활동구역 약도.(3-254~257)

몽탄수비대장 장곡천중위보고(2월 20일 몽탄) : 2월 22일 들은 정보는 다음과 같음. 의병장 박민홍 및 박사화(심남일의 부하로서 목하 독립하여 부하 4,50명 있음) 2명은 영산포 영암 중간 지구에서 부대를 분산하며 활동, 서로 합진하면 백명 이상의 세력에 달함.(3-258)

3월 4일 : 오후 9시 30분 도착 광주수비구사령관 길전소좌 전보 보고(오후 6시 50분, 영산포) - 박민홍의 잔당을 추격할 목적으로 파견된 강리구(江里口) 대위 이하의 여러 부대는 지금 영암에 도착하여 활동 중.(3-260)

3월 14일 : 영암대 이웅(伊熊) 중위 보고(2월 28일 金山), 이웅 중위 이하 12명의 토벌대는 어제 27일 오후 5시 영암군 군와동(軍臥洞, 영암 동북방 약 30리)에 이르렀을 때 의병장 박민홍이 톨솔하는 의진이 금산(軍臥洞 동방 약 2천미터)에 집합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급행해서 금산 동방 고지에 웅거한 의병을 공격하여 이를 궤란시키고 의병장 박민홍 이하 23명을 죽이고 화승총 11, 도 3, 잡품 다수를 노획함.(3-320~321)

3월 14일 : 복내장수비대 진(進) 토벌대 철천(鐵川) 부근 전투상보(3월 7일 복내장), 복내장수비대 장교가 지휘하는 10명 이상의 토벌대는 2월 25일 저녁 무렵 남평에 이르러 숙영했는데 헌병 및 순사들에 의하면 남평 나주 이북 지역은 비교적 평온하다고 함. 박민홍은 26일 능주대에 의해 격파되어 도주하여 27일 밤 금산에 집합했다고 함. 박사화는 박민홍과 같이 금산에 와서 무기를 휴대한 3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북방으로 사라짐. 전장(戰場) 부근에 있던 의병은 약 70명으로 무기를 휴대한 자는 다음과 같음. 화승총 35정, 도 15진, 엽총 2정, 다만 의병의 탄착이 4백미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군용총을 소지하지 않음. 박민홍은 산골짜기로 도주할 때 경부로부터 관통총상을 받고 진퇴의 자유를 잃고 바위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추격 끝에 사살한 후 추격을 종료한 후 야간에 시체를 조사할 때 그 복장에서 소지품을 조사하는 한편, 실제 박민홍인지 주민과 일진회원을 불러 보게 해서 실제 박민홍이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함. 금산 부근 이웅토벌대의 전투약도.(3-325~328).

3월 14일 : 포로의 말에 따르면 이들 의병은 박민홍 박사화 강명옥(姜明玉) 등 세 의병장이 합진한 것, 어제 24일 나주방면에서 와서 그 병력은 약 300명, 총기 소지자는 210명, 총기 종류는 30년식 보병총 1, 기병총 1, 엽총 6, 화승총 206정, 도 26.(3-329~330)

3월 14일 : 2월 27일 제7중대 영암 이웅토벌대(長이하 12명 외 통역 1), 금산 부근 전투상보 ; 2월 26일 밤 10시에 영암을 출발하여 27일 새벽 3시 한대동(寒大洞)에 도착, 척후를 신흥(영암 동방 약 30리)에 파견해서 얻은 정보 --〉 오전 9시 한대동에서 적도의 밀정인 소사(小使, 慶哥〈?〉ケヨンガー, 15세)란 자를 체포, 그 말은 다음과 같음. 다수의 의병은 본월 25일 남평군 운고리(ウンゴリ, 東倉 동방 10리)에 집합, 한대동 가까이에 와서 밀정의 소사를 향도로 삼아 운고리를 향해 전진할 목적, 오전 11시 한대동 출발 오후 5시 15분 반와촌(半臥村) 도착. 이때 같은 마을 일진회원으로부터 다음의 정보 획득. 의병장 박민홍이 거느린 의진은 목하 금산(영암 동북 약 30리)에 집합, 그 전망초는 그 지역 부근의 고지에 도착. 반와촌의 독립가옥에 은폐하여 무장을 정비한 후 금산을 향해 출발, 1킬로미터의 우동동(牛(中?)同洞)의 소요를 발견. 오후 5시 30분 금산에 돌입하여 의병은 곧장 북단으로 진출함, 5시 35분부터 교전 시작, 45분 도주 시작, 7시반경 어두워지며 추격 못함, 2월 28일 새벽 촌민을 몰아 전투지를 청소시킴, 의병의 피해는 유기 시체 의병장 박민홍 이후 23명, 화승총 11정, 도 3진, 회중시계 1.
26일 오전 6시 30분 남평 출발, 도천(道川, 남평 서남 약 20리)에 도착, 토인의 말에 의하면 의병 200명이 24일 철천(영산포 동남 25리)에 집합했다는 정보 획득, 그 지역 정찰, 오전 11시 장대점(長坮店, 철천 서방 약 2천미터)에 도착, 취조 결과 의병 약 300명 집합한 정보, 철천의 서남방 고지에 의병 약 200여 명 집결, 오전 11시 30분 의병과 286고지에서 교전, 나주경찰서, 나주헌병대도 합동 작전, 철천 남방으로 의병 퇴각하는 과정에서 의병 1명 전사, 의병은 바위에 의지하여 공방전 전개, 의병 전부를 죽인 후 오후 4시40분 상황 종료, 의병 전사 11, 부상 알 수 없음, 포로 1과 화승총 3, 도 1, 배낭 2, 잡품 등. --〉 오후 5시 불흥사에 도착한 의병의 퇴로 불명, 포로는 불흥사에서 도주를 기도하여 사살. 포로의 말에 의하면 철천에 집합한 의병은 박사화가 통솔한 120명, 박사화는 약 80여 명 인솔, 강명기란 자가 100명, 총 300명으로 그 반수 이상 총기를 휴대. 철천 부근 전투약도.(3-330~337)

3월 19일 : 광주수비구사령관 길전소좌 보고(3월 13일 광주)
광주수비구 관내의 의병 정황은 대체로 평온한 상태, 영산포 나주 부근 및 그 이남 영산강 양안 지구는 불온한 형세, 그 의병장 박민홍은 1월경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 철천 부근에서 박민홍이하 2백여 의병과 충돌. 2월 26일 강정에서 능주대가 박민홍 이하 약 200명과 교전, 의병 전사 14, 포로 1(소모탄 603발), 남평대가 26일 철천 부근에서 박민홍이하 약 200명과 교전, 의병 전사 11, 포로 1(소모탄 258발), 영암대가 27일 금산 부근에서 박민홍 이하 80명과 교전, 의병 전사 23(박민홍의병장 포함, 870발).(3-363~369)

3월 19일 : 나주경찰서 고옥 경부 통보(2월 26일 나주), 경찰과 헌병대 합동으로 남평군 선동에서 박민홍 박사화 강무경이 인솔하는 의병 약 250명과 교전, 덕룡산(나주에서 약 30리)에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완고한 투쟁, 약 3시간 공방전, 의병은 영암군 방향으로 퇴각, 의병 전사 7, 부상자 불명, 포로 2명, 잡낭 3, 등. 소모탄 334발.(3-369)

3월 27일 : 나주 근방의 의진은 박사화(부하 약 100명) 및 강무경(부하 80명)이 이합집산하며 활동.(3-405)

4월 1일 : 3월 27일 오참봉이 50명을 거느리고 나주 동북방 약 15리 대지 습격.(3-405)

4월 10일 : 3월 29일 조경환의 부하 오참봉 및 이재호(李在鎬) 이하 약 50명이 광주 소용면(召用面) 월파정(碧波亭, 월평 남방 약 30리) 부근에서 옥산동(玉山洞, 월평 서남 약 30리)으로 향하던 도중의 사정(沙亭)에서 오전 6시 교전 후 퇴각, 전사 6, 포로 2, 화승총 4 등. 소모탄 138발.(3-445)

4월 16일 : 나주수비대장 길수(吉瀨) 중위 보고 요지(4월 6일 나주) - 종래 선암과 함평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이기선(李起善 : 이기손의 잘못)은 이안석(李安石)으로 개명, 3-40명의 부하가 있는데 목하 나주 서방지역에서 활동. 의병에 납치되었던 영산포 부근의 부호 양진모(梁榛募)란 자는 귀택했음. 그가 다음과 같이 의병 정황을 언급, 의병장은 나주군 마산면 방하교 출신의 나성화, 박민홍 사망 후 부근의 의병장으로 부하 4,50명(총기 약 4,50정), 야간에 활동할 때 황색 복장, 통상 4-5리 행군, 인민의 재물을 약탈, 주간에는 평상 한복을 착용하고 각지로 흩어져서 일본군대의 행동을 정찰.(3-469~470)

4월 18일 : 나주서방 약 20리 월명동(月明洞)에서 체포된 의병 전예중(全禮中)은 선암 서방

지구 도마교(道馬橋) 부근에 다수의 한총을 민간에 은닉했다고 진술, 이 병기를 압수할 목적으로 4월 7일 오후 7시 상등병 이하 7명을 해당 지역 파견, 수색하여 이를 발견하여 귀대. 전예중은 병기 압수 목적을 달성한 후 귀로에 도주를 기도하여 총살당함.(3-475~476)

4월 22일 : 4월 13일자 영산포분파대장 보고의 정보 내용 - 종적을 알 수 없는 의병장 심남일은 작년 12월경부터 해남 부근에 은신하여 양총 40여 정을 밀매해서 그 지방에서 50명의 부하를 모집, 본월 하순 영암군에 들어와 그 부장 강무경 및 박사화이하 수십명의 부하를 소집하여 이를 합진하여 1백여 명으로 편성, 목하 남평 영암 양군에서 활동 중. 의병장 심남일은 남평군 죽곡면 거성동에서 궁민(窮民) 일반에 대해 의연금으로 1천냥을 기부함.(3-496~497)

5월 13일 : 함평분견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나주군 하의(荷衣, 함평 동북 약 20리) 및 대장리(大長里, 함평 동북방 약 30리)에 의병이 잠복했다는 밀고를 접수한 후 해택(海澤) 상등병 이하 5명은 이를 체포하기 위해 5월 5일 의병 2명(전해산의 부하로서 4월 14일 발미(發味) 전투후 귀가한 자)을 체포하여 귀대.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의병장 전해산은 오동(梧洞) 전투후 불갑산(佛甲山) 및 군유산(君遊山) 부근에서 부하를 해산한 후 영광군 방면으로 간 것 같음.(3-573~574)

4. 『第二巡査隊에 관한 編冊』[24]에 보이는 나주의병

융희 2년 3월 5일 警秘 제432호
在光州 特設第二巡査隊附 警部 安藤友熊
警務局長 松井茂 殿
순사대 상황 보고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전주에서 순사 34명을 소모함. 지난달 25일 전주를 출발하여 같은달 29일 광주에 도착함.
그 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음.
1. 광주에서 순사 모집의 상황

---

24) 『제2순사대에 관한 편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데, 현재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초역하여 수록하였다. 일본 인명(人名)은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

광주는 전주에 비해 순사지원자가 적음. 전 해산군인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지금은 광주에 거주하는 자도 비록 응모하기를 주저함. 지원자가 있어도 비록 그들과 같은 무리로서 폭도에 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정예의 무기를 지급하여 폭도에게 향하는 것은 다소 불안한 상황임. 신원이 확실하고 관찰사 군수 등의 보증을 요하는 등 채용에 신중을 더하게 되어 아직 1명도 채용에 이르지 못한 까닭에 당 광주에 있어서는 밀정으로 활동하는 자 약간 명의 채용에 그치고 나머지는 전주에서 보충시키는 것으로 해야 함.

2. 교련

광주수비대장 소좌 吉田藤三郎은 순사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음. 순사대가 도착하자 즉시 今村 중위를 주임으로 해서 훈련에 착수함. 그리고 각 순사의 操練이 의외로 양호하므로 간단히 장비 및 사격연습 외의 교련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함. 2일간으로써 연습을 종료시킴.

3. 광주의 폭도 상황

군대와 경찰의 토벌로 타격을 받은 폭도는 지금은 대부분 흩어졌음. 현재는 그 수괴로 인정되는 金泰元, 金聿, 安判九 등으로써 약 30명 정도의 부하를 가진 것으로 사료됨.

4. 순사대 제1회의 행동

순사대는 광주관내 2개의 요소에 분견 주둔하기로 함. 길전수비대장은 적의 소굴인
장성과 함평 지방에 위력을 과시하는 행군을 추진할 것을 희망함. 본일 별지에 적은대로 훈시함에 의해 경시 2명, 일본순사 3명, 한인 순사 24명으로 2분대를 조직하고 다음날 6일 밀정 2명을 선발함. 소직(안등후웅 경부-작성자)의 감시아래 다음날 오후 7일 오전 9시 발 약 10일의 예정으로 장성 영광 함평 나주 각 군을 행군함. 搜索招撫에 착수하여 권(權重彬-작성자) 지휘관은 경시 1명, 순사 10명을 데리고 본부에 잔류하여 부근의 정찰에 임하는 것으로 함.

5. 향후 할 수 있는 방침

전라남도에 걸친 폭도는 지금은 점점 쇠퇴하였지만 그러나 그 수괴를 완전히 초멸하지 못하여 장래에도 정밀을 기해야 함. 그들은 군대와 경찰의 타격을 받아 그 수색이 급한 고로 우리 순사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로 그들을 귀순시키는 방책을 채택하고 별지에 적은 바와 같이 公示文을 각군의 요소마다 게시해서 순사대가 있음을 알림. 장성 방면에 위력적인 행군을 마침과 동시에 도내 군대가 주둔하는 2개소에 파견해서 초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6. 순사대에 대한 관민의 의향

순사대에 대한 한국 관민의 의향도 양호함. 일본의 군대와 경찰관의 폭도 토벌에 대한 한국의 어리석은 지방민들의 관념이 유동적임. 한국과 일본의 국제 간의 전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순사대가 활동을 시작함과 함께 그 미몽에서 벗어나 좋은 감정이 우리에게 모이고 있어서 이미 관민 누구나 그 성공을 바라고 있음. 아래와 같이 다소 시일이 지나면 적괴를 송두리째 근

절할 수 있을 것임. 광주에서의 성공은 일거에 전라북도를 풍비시킴에 이를 것이므로 실로 광주에서의 성공 여부는 장래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지휘관 이하는 하루하루 신중히 그 계책을 추진하고 있음. 위와 같이 보고함.

訓示

1. 목하 전남의 폭도는 여러 차례의 토벌에 의해 세력이 쇠퇴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滅裂의 상태로 있음은 사실임. 아직 김태원 김율 이진사의 수괴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력을 회복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므로 이진사는 영광 부근에, 김형제는 함평 혹은 나주군내에 잠복해서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주로 장성 영광 함평 및 나주 북부에 흩어져 있음.
2. 순사대는 지난번 폭도의 검거 토벌과 귀순 권유의 목적으로 장성 영광 함평 나주의 여러 군을 약 10일간의 예정으로써 행동하여 수괴를 검거하는데 힘을 다함.
3. 행동 중에는 수비대 및 경찰분파소와 연락을 통해 부근의 상황을 서로 통보하므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출동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더함.
4. 시기를 얻을 때마다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본직에 보고하기를 바람.
5. 나는 지휘관 이하 각 관의 독려 노력에 의해 성공의 기대가 절실함.

명치 41년 3월 5일

광주수비대장 吉田勝三郎

융희 2년 3월 16일 巡秘收 제2호

제2특설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행군중 제2회 상황 보고

전라남도 서북부의 각 군을 행군 중인 순사대는 예정된 행군을 마치고 지난 15일 광주로 귀대함. 행군 중 장성에서 사창장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은 이미 보고함과 같고 그 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음.

1. 영광군 사창장부터 직접 나주로 향한 제1분대는 길을 따라 수색하며 본월 14일 오후 6시 나주에 도착하여 본대에 합하는 도중에 폭도집단을 만났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본월 13일 오후 11시 함평군 大伏面 斗谷에서 김율의 부하이자 都督將으로서 50명을 인솔한 吳明淑을 체포하고 화승총 1정을 압수함.

(2) 본월 14일 오전 9시 함평군 獐本面 登江에서 김율의 약탈품을 수색 보관한 金德三을 체포해서 김율로부터 받은 소 1두 및 화승총 2정을 압수함.

2. 사창장에서 예정한 행동을 하던 제2분대는 길을 따라 수색하고 이르는 곳마다 인민을 위무하고 폭도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요지의 연설을 한 외에는 이상없음.

3. 수비대의 주밀한 배치 및 신속한 수색과 순사대가 풀어놓은 밀정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수괴의 강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맹한 자들도 지금 몰래 귀가시키는 일도 있음. 그 수괴를 죽여서 지방을 조용히 진정시키기 위해 김태원 · 김율 · 이진사 등 적괴의 소재를 엄히 파악하는 중임.
4. 今回의 행군이 지방 민심에 미치는 효과는 장래에 나타날 만함. 또 대원들이 폭도의 토벌과 수색을 열심히 함으로써 행동도 민활함. 단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부대를 위해 특별히 기록할만한 일임.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3월 23일 경비 제491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3월 13일 오후 11시 함평군 대복면 斗谷에서 의병장 김율의 도독장으로 50명을 인솔하는 吳明淑을 체포, 화승총 1정을 압수.

융희 2년 4월 1일 순비수 제31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본월(3월) 19일 동복으로 향한 제 1분대는 본거를 동복면에 두고 부근 각 군을 수색해서 폭도 2명 및 김태원으로부터 병량미 150석의 보관을 수락받은 자 1명을 체포함. 화승총 2정을 압수하고 본일 광주로 귀대함. 해당 병량미는 피징수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3월 29일 순비발 제21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순사대 행동의 건
본월 20일 이래 순사대 행동 및 폭도 상황은 아래와 같음.
(중략)
6. 전라남도 폭도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김율 김태원의 두 수괴가 각기 배회하므로 지난번 장성 함평 영광 지방의 행군 결과, 일단 폭도에 가담한 자는 차제에 귀순한다는 경향이 생겨도 적괴 김태원은 귀순자는 그 일족을 모두 살륙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주저하는 것 같음. 우리 순사대는 수비대 경찰과 연합하여 극렬한 수괴의 체포 및 정찰

에 노력함.

융희 2년 3월 30일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순사대가 今村 중위가 지휘하는 수비대와 협동으로 3월 29일 광주군 소지면에서 의병을 공격하여 5명을 죽이고, 의병장 김율을 생포함.

융희 2년 3월 29일 순비발 제22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적괴 통문의 건
본월 23일 적괴 김율로부터 별지 제1호에 적은 바와 같은 통문을 순사대 지휘관 권중빈 앞으로 송부해 옴으로써 즉시 제2호에 적힌 바와 같이 답장을 보냄.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3월 30일 순비수 제26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어제 29일 오전 11시 광주경찰서 밀정은 적괴 김율인 자가 부하 십수명을 인솔해서 광주군 所旨面 月亭에 잠복한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수비대 경찰 순사대 등이 연합토벌대를 조직함. 우리 순사대는 일인 순사 2명, 한인 순사 12명으로써 1개 부대를 조직해서 오후 1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함. 오후 4시 적의 잠복지인 소지면 본소지촌에 도착하였으나 적은 이미 촌락을 떠나 전방의 한 작은 언덕위에 집합하고 있으므로 今村 중위가 이끄는 1개 부대는 즉시 이를 향해 공격을 개시함. 우리 순사대는 좌측 산록의 촌락을 수색하며 나아감과 동시에 공격을 가함. 적은 잠시도 지탱하지 못하고 죽은 시체 5구를 버리고 흩어짐. 적이 궤산한 후에 우리 순사대는 수비대와 함께 부근의 촌락을 수색했는데 순사대의 순사 4명 1조는 한 민가에서 거동이 수상한 한인 1명이 집안에서 도주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함. 그는 계속 양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만난 4명의 순사 중에 김율을 아는 자가 김율이라고 지목하자 그는 결국 자백하고 조용히 순사의 포박에 응함. 그는 평소 短銃을 휴대하였으나 당일 공격이 급박하므로 숙박한 한 집에 두고 휴대하기에 편하게 부하인 아무개에게 이를 휴대시키고 몸에 아무 것도 휴대하지 않았음. 포박 당시에 그는 流石(나침반-작성자) 1개만을 지니고 있어서 부끄러워하였음. 김율은 전라남도에서 폭위를 떨친 두명의 수괴중 한사람으로서 본월 9일 함평군 竹

山에서 영광을 수비하는 기병대에게 타격을 받은 이래 그 세력을 잃었음.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순사대 지휘관에게 통문을 보내는 등 조만간 귀순의 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음. 본 도에서 주된 적괴로 현재 잔존하는 김율의 형인 김태원임. 우리 순사대는 온힘을 다해 그 수색에 노력함. 김율은 체포 즉시 수비대에 인도함. 본인 취조의 상황은 따로 당 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3월 13일
특설제2순사대장 권중빈
경무국장 송정무 전
밀정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첫째 장성 서남방 약 25리에 기삼연의 부하로서 포군을 거느린 朴某가 잠복함. 둘째, 의병장(폭도 수괴) 조대장, 김율, 안판구 등은 목하 영광군내 往相洞의 산간에 근거하며 때때로 부하를 사방으로 파견하여 약탈한다고 함.
이러한 정보에 따라 제1분대장 金龜鉉 등 순사 9명을 1)항의 목적지에 파견하여 9일 오전 9시 朴萬吉이란 자를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죄상을 자백하며 본인은 전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기에 면장의 보증을 받고 면죄문빙을 줌. 2)항의 정보에 대해 10일 오전 6시 포위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9일 오후6시 장성을 출발, 야간 행군하여 鳥峴에 도착, 예정된 시각에 왕상동 송림을 포위 수색했으나, 그 전날 영광수비 기병이 왕상동에서 5리 떨어진 죽산에서 김율이하 약 30명을 격파하여 궤란시킨 결과 왕상동 근거지에서 퇴각 도주한 것으로 사료됨.
의병은 이미 사방으로 흩어지고 김율 등이 인솔하는 부하는 약 30명에 불과한데 그들은 강제로 의병에 가입하여 지금은 다수가 귀가하면 관헌의 체포가 두려워 도주한 까닭에 혹 그 지역에 주둔하는 순사대가 그러한 상황을 알고서 초무에 노력하면 그 功果를 얻을 것임. 장성에서 기삼연의 친족 奇益否(奇立夫〈奇宰〉의 오기-작성자) 및 그 아들 기산도 등이 다시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풍문이 있음.

융희 2년 4월 5일 순비발 제44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순사와 귀순한 匪徒 피해의 건
특설제2순사대 순사 金良辰
전라남도 영광군 외동면 연산동 거주
귀순 비도 朴萬吉
1. 박만길은 원래 폭도 수괴 기삼연의 부하로서 본년 3월 8일 순사대에 체포되었으나 그후

改悛의 상황이라 하여 면장과 동장의 보증에 의해 귀순을 허락한 이래 자택에 있으면서 적괴 김태원의 행동을 시시로 순사대에 밀보함. 본월 2일 오후 1시 폭도 약 10명이 동인의 집에 와서 길 안내를 해달라고 유인하여 자택에서 약 3정(丁)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서 총살당함. 이를 미행하던 그의 처 林氏도 그들에게 발각당한 바 되어 동시에 총살당함.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적은 사방의 산마루에 전망초소를 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한 상황을 알 수 있음. 적괴는 김태원으로서 거느리는 부하는 약 30명. 박만길 부부의 피해는 오로지 적정을 순사대에 밀보하고 있음을 적괴가 알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함.
2. 순사 김양진은 특명 이래 밀정으로 활약하였는데, 영광군에 출장하던 중 귀순한 비도 박만길의 밀보에 의해 적괴 김태원의 소재를 탐지하는 한편, 이를 광주 순사대 본부에 급보하고, 스스로 적의 행동을 살피다가 토벌 순사대가 도착하기 전에 적이 먼저 알게 됨. 본월 2일 영광군 縣內面 鉢山里에서 마침내 그들에 의해 살해당함.
3. 가해 폭도에 대해서는 엄밀 수색중임. 위와 같이 보고함.
4월 5일(순비발 제44호) ; 특설2순사대 경부 안등우웅이 경무국장 송정무에게 보고.
순사귀순 비도 피해의 건 ; 특설2순사대 순사 金良辰, 전남 영광군 외동면 蓮山洞 거주 귀순비도 박만길. 박만길은 원래 의병장 기삼연의 부하로서 3월 8일 순사대에 체포되어 개전의 정을 보여 면장 동장의 보증에 의거하여 귀순을 허가한 이래 자택에 거주할 때 의병장 김태원의 활동을 때때로 순사대에 밀보, 그러던 중 4월 2일 오후 1시 의병 약 10명이 박의 집에 들어와 길 안내를 해달라고 권유하여 자택에서 약 3정 떨어진 도로변에서 총살, 이를 따라가던 그의 부인 林氏도 그들에 발견되어 총살됨.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의병은 사방의 산마루에 전망초를 세워 동민의 외출을 금지당한 상황이었음. 의병장은 김태원으로 그가 인솔하는 부하는 약 30명, 박만길 부부의 피해는 전적으로 의병 정보를 순사대에 밀보한 때문.
순사 김양진은 특명이래 밀정에 전적으로 종사하여 영광군 출장중 귀순 의병 박만길의 밀보에 의거하여 의병장 김태원의 소재를 탐문하고 일면으로 광주순사대 본부에 급보하여 자신은 의병의 행동을 엿보다가 토벌순사대가 도착하기 전에 의병이 먼저 탐지하여 4월 2일 영광군 현내면 鉢山里에서 그들에게 살해됨.

융희 2년 4월 6일 순비수 제46보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영광군 社倉場에 파견된 수색하던 순사대는 본월 2일 순사대 순사 김양진을 살해한 자인 아래의 4명의 행위를 정탐하여 알아냄. 지난 5일 잠복한 같은 군 현내면 발산을 급습해서 그중 1명인 朴敬玉을 체포함. 본인은 전 적괴 奇三衍의 부하로서 담양(금성산성-작성자)의 전투

에서 패한 이래 본년 2월 김태원의 무리에 가담하여 監督으로 일함. 이번에 김양진이 순사대 순사가 되어 밀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3명과 모의하여 이를 살해한 죄상을 자백함. 가해자 폭도는 아래와 같음.
광주군 黑石面 聖德村 체포 박경옥
옥과군 廉某 通稱 玉果
영광군 현내면 발산 거주 종모(宋某의 오기-필자) 통칭 宋칼창(カルチエンク)
영광군 사창장 주점 주인 趙昌植.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10일 순비수 제46호의 2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순사를 살해한 폭도 체포의 건
영광군 현내면 발산리 거주 통칭 송칼창이라고도 함, 宋己成 19세.
위 사람은 당 순사대 순사 김양진을 살해한 폭도의 한사람임. 본월 6일 순비수 제46호로써 보고 조처함. 본월 8일 동 현내면에서 동민의 협력을 얻어 체포하여 취조함. 본인은 김태원의 부하로서 김양진이 정탐을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듣고 다른 3명과 모의하여 길에서 만나 이를 살해한 요지로 마침내 죄상을 자백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22일 순비수 제95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본일 전보함과 같이 장성군 月坪에서 分屯한 제1수색 순사대는 본월 19일 밤 적괴 김태원이 잠복한 곳인 함평군 赤良面 堂洞을 포위 수색했는데 김태원은 부하 9명을 인솔하여 18일 밤 다른 곳을 출발한 이후였는데 체류한 아래 4명의 폭도를 체포해서 축적한 병량미 40석을 압수함. 더 나아가 추적 중 본월 20일 함평군 大化面 松沙村을 포위 수색해서 아래 기록한 2명을 체포하여 저장한 병량미 80석을 압수함.
당동에서 체포한 자
十人長 元弘相 39세
賊探 沈天澤 32세
砲手 秋辰浩 26세
포수 沈弘澤 22세
송사촌에서 체포한 자

都進大將 高良鉉 60세
적탐 高炫根 16세

융희 2년 4월 20일 제651호
수신 : 통감 부통감 내부대신 차관 주차군사령관 통감장관 석총참여관 북부/남부사령관 헌병대장 탁지부차관
발신 :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
전라남도 광주 제2순사대 전보
4월 20일 오후 6시 22분 발, 6시 42분 착.
경시 김귀현의 순사대는 19일 장성군 월평에서 비도 수괴 김태원에 속한 유력한 비도 4명을 체포하여 스스로 취조하기 위해 간수 순사 1명을 남기고 다른 순사들로써 김태원을 추적하기에 이름. 약 50명의 비도는 그 틈을 노려 급습함. 김경시는 대퇴골에 중상을 입고 포획한 폭도 4명은 도주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21일 순비수 제91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警視 金龜鉉이 부상당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전보에 의하면 그 전말은 아래와 같음.
1. 본월 19일부 순비발 제90호의 보고대로 김태원을 수색하는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 붙임 제1분대장 김귀현은 본월 18일 오후 광주본부를 출발하여 연도에서 수색하고 분둔지인 장성군 월평에 도착함. 같은 날 밤 부근 龍山洞을 수색하여 김태원의 후군장 金玉鉉, 동 都砲將 崔龍雲을 체포함. 다음날인 19일 월평시장에서 김태원의 부하 도포장 沈在奉, 동 都從事 金在權을 체포함.
2. 체포한 폭도의 말에 의하면 김태원은 월평에서 1리 떨어진 곳에 잠복해 있다는 말에 의해 김경시는 한인 순사 1명으로 체포된 폭도를 지키게 하고 분둔소에서 스스로 취조를 위해 일본인 순사 朝井重之進에게 한인 순사 7명을 붙여 김태원의 잠복지에 파견하는 한편, 1리 정도 거리에 있는 장성수비대에게 급보함.
3. 그런데 오후 5시 장성수비대가 도착하기 전 폭도 약 50명의 급습을 받은 간수 수 순사는 즉시 응전해서 먼저 오는 적 1명을 죽임. 김경시는 칼를 빼들고 적진으로 돌입하여 점차 한쪽의 혈로를 열고 순사와 함께 민가로 피했는데 폭도는 그 분투에 두려워 선듯 추격하지 못함. 총성을 들은 장성 주둔 헌병이 응원하므로 그들은 전부 철수함. 이때 전에 체포한 4명은 느슨한 틈을 타서 결국 마침내 도망함.

4. 김경시의 부상은 왼편 대퇴부에 총상(복합골절)으로 중상임. 德永隊長은 부대내 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조처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19일 순비발 제90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지금 폭위를 떨치고 있는 적괴 김태원은 출몰이 빈번해서 수비대 헌병 경찰 순사대의 엄밀한 수색을 피하므로 이번에 다시 부임한 수비대장 德永 기병대위의 지휘에 의해 수비대 기병의 지원아래 순사대는 전력을 다해 수색함. 아래의 계획대로 실행함.
1. 순사 3명에 딸린 기병 약간은 장성 飛鴉場, 西倉, 羅山, 沙川場의 5개소에 분둔해서 목적지를 멀리 포위수색해서 수괴가 포위선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도록 할 것.
2. 각 분대장이 인솔하는 순사대는 포위선내 주요 지점인 월평, 사창, 평림(平林)의 3개소에 분둔하여 기병 약간의 지원아래 담당구역을 수색할 것.
3. 수색기간은 약 15일간으로 하고 본월 20일부터 행동을 개시할 것. 순사대의 주력은 어제 18일 밤 출발하여 연도를 수색하고 분둔지로 향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28일 순비수 제128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김태원 공격 詳報
본월 26일 적괴 김태원을 죽였다는 요지를 지급 전보로써 보고함. 그 상황은 아래와 같음.
1.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본월 24일 광주군 馬池面에서 우리 포위선을 탈출하였던 김태원 일파 曺士圭가 인솔한 폭도에 대해 광주본부에 있는 예비순사대는 수비대 경찰과 합동토벌을 단행하는 한편, 수색대는 즉시 마지 방면에서 행동할 것을 지령함.
2. 위의 명령에 접한 월평 평림 사창에 분둔한 3개 분대는 분둔 기병과 함께 바로 마지 방면으로 향함. 장성에 분둔한 石田 기병 중위도 여러 기를 이끌고 월평 분둔 제1수색대와 함께 행동하며 연도의 부락을 수색하여 행진하였고, 사창에 분둔한 제3수색대는 25일 오전 7시 함평군 平能面에서 적괴 김태원의 傳令使 李文景을 체포함. 그의 자백에 의하면 김태원은 지난 24일 광주군 召古龍面 斗洞에서 숙박한 적이 있다고 하므로 즉시 두동으로 신속히 행진중 평림에 분둔하는 제2수색대가 행진해 오자 서로 만나 협력하여 두동을 포위하여 수색했는데 김태원은 지난 24일 오후 7시 어디론가 도주한 후여서 숙박한 閔永斗의 집에서 체류하던 김태원의 비서 金圭哲이란 자를 체포함. 월평에 분둔하던 제1수색대도 도중에 1명의 폭도를 체

포하여 김태원의 소재를 수색함. 3개 수색대 및 석전 기병대는 두동에서 만나고, 그런데 월평에 분둔하는 제1수색대가 체포한 폭도의 말에 의하면 김태원은 두동에서 약 1리 쯤 떨어진 광주군 魚登山麓 朴山洞에 잠복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신변을 따르는 비서와 전령사를 체포한 점을 고려할 때 김태원은 이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먼저 박산동을 포위수색하기로 하고 오후 1시 각 부대의 부서를 정하여 행동에 들어감.

3. 박산동은 광주군 어등산의 기슭에 있는 한 마을로써 앞에는 黃龍江이 있어 적이 근거지로 삼을만한 요새의 장소임. 수색대는 석전중위가 이끄는 기병대와 함께 산을 넘고 강을 지나 오후 4시 30분 목적지에 도달함. 別紙의 약도와 같이 제1수색대는 좌익에서, 제2수색대는 우익에서, 석전 기병대는 우측 후방에서, 제3수색대는 좌측 후방에서 4방으로 포위의 형세를 취함.

즉시 맹렬한 銃火를 퍼부어 오후 7시에 이르러 적은 완전히 궤산됨. 전투중 사창에 분둔하는 제3수색대의 전방 약 300 미터의 바위굴에서 비교적 美服을 걸친 폭도가 갑자기 도주하므로 이를 수괴로 인식한 일본인 순사 窪佐兵衛는 三澤 기병일등졸과 함께 탄환이 빗발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히 추격해서 생포하려 했지만 교묘히 도주하므로 추격할 수 없게 되자 사격에 능한 와순사 및 삼택 일등졸은 바로 사격을 가해 이를 죽임. 적이 궤산한 후 이를 살펴 보니 몸에 하얀색 두루마기와 하얀 거위빛 비단 바지를 입고 쌍안경 1개, 조선도 1, 나침반 1개, 화약낭 1개, 서류 등을 소지함. 생포한 폭도의 증언에 의해 그가 곧 적장 김태원으로 판명됨. 그가 휴대한 쌍안경은 본년 2월 2일 광주군 무등산 전투에서 전몰한 길전(吉田) 수비대의 軍曹 川滿布建이 휴대한 것을 탈취한 것으로 그는 이후 항상 이 쌍안경의 이점을 이용하여 멀리 우리 부대의 행동을 보고서 진퇴를 교묘히 하여 토벌대에게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함. 금회 그를 죽임과 함께 이를 탈환할 수 있었음.

4. 처음에 대규모 포위 수색을 계획하여 본월 20일부터 15일간을 예정한 이래 連日連夜 험한 산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건너며 낮에 몇시간 잠을 취한 외에는 항상 철야로 행동함. 비가 오는 밤에는 때로 부락을 수색해서 동 지방에서 귀신처럼 두려워하는 김태원도 몸을 피하는 것이 힘들어서 예정된 3분의 1의 기간에 그를 죽이고 대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 이번 전투에서 한인 순사들은 언제나 용감하게 행동해서 사격 역시 확실하고 특히 정찰 및 잔여의 폭도 수색에서는 일인 순사보다 뛰어났음. 일인 순사 또는 군대의 지원에 의거하여 지휘를 잘 받들었음. 순사대는 폭도 토벌에 유효하다는 실험하였음.

5. 금회의 전투에서 김태원 이하 중요한 副將과 함께 23명을 죽임. 화승총 3, 조선도 1, 쌍안경 1, 잡품 약간을 노획함. 우리는 사상자 없음.

6. 수괴 김태원을 죽였으나 잔여 폭도가 아직 부근에 잠복하고 있어서 수색대는 나머지 폭도를 초멸하여 동 지방의 폭도 재기의 우려를 끊기로 하고서 향후 5일간 예정으로 포위 지역을

전부 수색하기로 함. 동시에 별지와 같이 警示을 각 마을에 붙여 귀순을 권유함. 위와 같이 보고함.

警示

감히 義軍이라 칭하고 인민을 선동해서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를 겁간해서 관헌에게 반항하는 暴魁 김율은 이미 순사대에 체포당함. 또한 지금 폭괴 김태원도 우리 부대에게 주륙당했음. 순사대는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귀순을 권하고 도탄의 고통을 구해서 민심을 편안하게 하였음. 김율 김태원은 완강히 저항하며 효유를 따르지 않은 고로 순사대가 체포, 주륙을 가함. 이제 나머지 폭도를 엄히 수색해서 나머지 도당을 전멸하려고 함. 이를 기회로 폭도에 한번 가입했어도 잘못을 후회하는 자는 속히 와서 귀순하여 면죄문빙을 받을 것. 만약 몰래 귀순하는 자는 체포하지 않고 그 죄를 사면할 것임을 알림.

융희 2년 3월 16일 순비수 제2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제1분대는 13일 오후 11시 함평군 대복면 두곡에서 김율의 부하인 도독장으로서 약 50명을 인솔하는 吳明淑을 체포함, 화승총 1정 압수. 김율의 군수품을 보관하는 일을 하는 金德三을 체포하여 김율로부터 예치한 소 1두, 화승총 2정을 압수.

융희 2년 3월 11일

특설제2순사대 권중빈

경무국장 송정무 전

제2순사대 조경시가 8일 오후 7시30분 정찰중 김태원의 부하 약 40명이 각자 총기를 후대하고 7일밤 소지면 仙岩里 塔洞에 와서 다음날 8일 석식후(6시30분경) 그곳에서 10리 떨어진 박산리로 출발했다고 확인함. 토벌대는 이를 향해 急進하여 정찰한 결과 그곳에서 숙영한 형적을 인지, 수비병이 4-5발 사격함. 의병은 낭패하여 도주하며 한편으로 저항을 시도, 우리 순사대 일행은 야간사격이 어려워 육박전으로 상박산에 이르러 마을 안이 비어 사람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음. 의병이 도주하며 남긴 흔적으로 약간의 유류품을 발견함.

융희 2년 4월 27일 광비수 제294호

광주경찰서장 경시 坂東榮次郎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 전

폭도거괴를 죽인 건

이미 전보로써 급히 보고함과 같이 본월 25일 기병 및 특설순사대로 이루어진 수색대는 예정한 계획에 따라 수색 행동 중에 1명의 폭도를 체포해서 취조했는데 적괴 김태원이 함평군 烏山面 박산동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음. 동일 오후 4시 각 분대는 공동으로 세 방면에서 포위공격해서 드디어 적괴 김태원 이하 13명을 죽임. 포로 2명, 노획품은 화승총 3, 쌍안경 1, 칼 1을 얻었음.

1. 이에 적괴 김태원은 종래 자주 포위를 벗어나 교묘하게 변장하여 도망하므로 이를 실제 인물인가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30일(29일-작성자) 체포한 김태원의 친동생 김율(자칭 호남창의대장)을 동행하여 경부 林和一 이하 5명을 박산동 방면으로 출장시켰는데 동일 오후 7시 적괴 김율은 도중에 도주를 꾀하므로 부득이 즉시 이를 총살함.

1. 거괴 김태원이 죽은 것은 확실히 명료하므로 출장한 인원들은 그날밤 철수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29일 순비수 제133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수색상황
포위선내 수색을 계속하던 중 제1수색대는 어제 28일 영광군에서 폭도의 저장미 60석과 총 1정을 발견하여 압수함. 해당 저장미는 전 적장 김태원이 부근의 豪農으로부터 징발한 것임.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4월 25일 순비수 제111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광주군 마지면 大佳村에 의병이 집합했다는 첩보에 의거하여 토벌대를 조직, 오후 1시 공격을 개시, 교전 약 1시간만에 전부 궤산, 이 전투에서 의병 10명 전사, 화승총 3정, 잡품 등 노획, 의병은 김태원 일파인 曺士圭가 인솔하는 약 50명.

융희 2년 4월 25일 순비발 제113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수색순사대의 상황 보고. 4월 20일(25일의 오기-작성자)부터 24일까지 4일간 수비대 연합 수색한 순사대 상황 보고. 장성 월평 분둔 제1분대는 4월 21일 밤 큰 비를 무릅쓰고 장성 남

이면 풍산촌을 포위, 약 30명의 의병이 도주한 후 남긴 총기 2정을 압수, 22일 새벽 인근 마을 수색하여 김태원의 謀士 金文三을 죽이고, 從卒 李泰權(16세)을 생포. 21일 함평 평림분둔제2수색대는 함평 장본면 內登江에서 의병이 은닉한 화승총 4정 압수. 영광군 사창분둔 제3수색대는 21일 새벽 영광 대야면에서 의병 1명 죽이고 1명 생포, 다음날 새벽 내동면에서 2명 죽이고 1명 생포.

융희 2년 4월 25일 순비발 제112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폭도상황
1. 본월 20일부터 실행한 대수색으로 수괴 김태원은 부대를 해산하고 막하 십 수명을 인솔해서 곳곳에 흩어져 잠복해 있음. 그는 순사대의 활동을 두려워하는 것 같음. 그는 순사 김양진을 살해했지만 별지 1호에 적은 바와 같이 순사대는 무기를 가지고 의병을 해치려는 계획이 없음에도 그 무뢰배들이 순사대 1명을 죽인 것에 대해 매우 경악함. 지금 순사대 병사들을 해치는 자는 효수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장성군 지방 주점 벽 위에 게시함. 또 이번에 김경시가 부상하자 순사대가 주민과 의병을 잡기 위해 공격함. 다시 김경시의 부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동시에 이러한 활동을 행하는 무뢰배들을 파악하여 해당 범인들을 포획함. 군대에는 별지 제2호의 통문을 순사대에게 보낸 것과 같음. 주민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순사대의 뜻을 환영한다는 것을 살피는 것에 만족함. 그래서 귀순을 권유한 우리 부대의 통문에 대해서도 큰소리로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
2. 부대를 해산한 폭도는 주로 장성 함평 영광의 3개 군의 마을로 삼삼오오 배회하며 먹을 것을 구하고 금전을 징수함. 마을 주민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십수호의 마을에서 폭도를 위해 술과 음식을 준 날은 실제 드물며 그들은 농민이나 상이으로 변장하여 교묘히 토벌대의 이목을 피해 대낮에도 시장을 횡행하다가 하루 아침에 틈을 엿보다가 총을 들고 흉폭한 행동을 함. 마을 주민들은 후환을 두려워해서 감히 알리지 못함. 수색대는 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식별하는데 고심함.
3. 순사대는 처음에 지방 인민들에게 속히 폭도를 귀순시키라고 권유함. 단 자수한 자는 그 죄를 사면한다고 공시함.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성과가 없었음. 흉폭을 수행하다가 하루아침에 체포된 자도 그 죄를 자백하고 귀순을 청할 때는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믿는 까닭임. 고로 이번 대수색에서 행동을 철저히 하여 폭도를 초토해서 지방민에게 충분한 위력을 보여야 한다는 방침이 나옴. 위와 같이 보고함.
필사한 통문 : 暴徒大將傳令 各陣義軍 初八日

曾聞巡査隊兵乃是宣諭行中云 而雖持兵器只自護身而已 不有害義之心 是去乙現聞 何許無賴輩殺一巡査隊兵於靈光等地云 極爲驚愕 當自義所派軍跟捕是去 果從今義所中一有害巡査隊兵者斷未免梟首矣 互相警告勿犯適料事 湖南義所 (印) 長城郡 造浦酒店 壁上付 証十五日.
巡査隊 指揮官 趙義甲 座下 湖南義所 金準.

융희 2년 5월 7일 순비발 151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지난달 28일 순비수 128호로써 보고한 바와 같이 적괴 김태원의 전사후 나머지 폭도를 전멸하기 위해 포위선내를 수색 중인 바 본월 2일 전부 수색을 끝내고 철수함. 수령을 잃은 잔여 폭도는 모두 흩어져서 전라북도 순창지방으로 도망한 자도 있으며, 그런데 우연히 일시적으로 강제로 폭도에 가담하는 자는 수령의 죽음과 동시에 생업으로 돌아가 안도하는 자도 있음. 이들을 깊이 물색할 필요가 인정되며, 당해 군수가 천천히 귀순을 권유해야 함.
이번 포위수색한 장성 함평 영광 나주의 각 군에 있는 의병의 근거지 내의 인민은 김율 김태원을 두려워하여 귀신과 같다고 인식함. 장정은 폭도로 징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金穀을 제공하라는 명령에 따라 주민들이 거의 도탄의 고통에 있을 때 적괴가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어쨌든 환희의 상황임. 처음에 순사대가 행동을 개시하자 순사 중에 폭도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자가 있으므로 토벌의 성과가 우려되었음. 또한 우리가 의병들과 교전하는 점을 의심스러워 하기도 함. 그런데 순사대가 매우 민첩하게 행동하자 의병들이 자못 낭패해 하자 몇몇 근거지를 전전하다가 종적이 드러나 마침내 추적을 당해 토벌되기도 함. 우리 순사대의 행동은 상하가 철저히 인식함과 동시에 폭도에 대해서는 위력이 더욱 커져서 우의를 입은 일본군을 실로 두려워함.
이미 제1기의 진압 계획을 끝내자 집단의 폭도들은 궤산하여 점차 정온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 순사대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긴즉 전라남도의 북부에 위치한 담양 부근의 적을 토벌하고, 순창으로 들어가 점차 전라북도로 전진하는 것으로 함. 그런데 지난번 보성군에서 헌병을 죽이고 총기를 빼앗은 폭도의 일단은 지금 오히려 그 총을 사용해서 현재 순천경찰분서의 순사를 죽일 때 그 총을 사용한 것임. 고로 전라북도로의 전진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집단을 토벌할 필요를 인정하고 목하 정찰중임.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5월 21일 순비발 제177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故 적괴 김태원이 횡행한 구역인 함평 영광 장성의 각 군에는 인민이 기증하거나 또는 징수당한 상당수 병량미가 지금도 각각의 장소에 貯積되어 있는 바와 같이 김태원의 잔여 폭도들도 때때로 동 지방에 출몰하는 것은 오로지 병량미에 의거한 것이 인정됨. 어제 20일 순사대 1개 분대를 파견해서 다시 수색을 위해 전에 발견한 것과 아울러 매각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돌려주기로 처분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5월 25일 순비발 제192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지난번에 우리 순사대를 위해 토벌하기로 한 고 적괴 김태원이 지금도 생존해 있다는 풍설이 있음. 당시 그 전투에 참가한 헌병 경찰처럼 차츰 의혹을 제기하여 김태원이 생존해 있다는 풍설은 여하튼 그가 귀신처럼 외경된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족함. 그의 잔여 폭도들이 그러한 풍설을 유포하여 활동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병 경찰이 그의 생사에 의심을 두는 것은 이미 그러한 폭도의 술책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所爲라고 인정됨. 그의 죽음은 순사대가 생포한 폭도와 밀정 등의 실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 그리고 부근의 유력한 모 일진회원이 특별히 와서 김태원의 시체를 실제 보고서 크게 기뻐한 바 그의 전사후 동 지방이 정온한 상태로 돌아가서 금일에 이르렀음. 그의 생사에 의심을 둘 여지가 없음.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5월 25일 순비발 제194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본월 21일 순비발 제177호로써 고 적괴 김태원이 횡행한 지역에 저장중인 병량미 수색에 착수한 건에 대하여 보고함. 어제 이후에 발견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몰수함. 나락 1,042석.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5월 30일 순비수 제207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적의 잔도 및 병량미 수색을 위해 고 적괴 김태원의 근거지역을 수색한 순사대는 본월 28일 광주군 소고룡면 신촌에서 고 김태원의 후장군 金玉鉉을 생포함.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6월 9일 순비발 제237호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鹵獲米 취조를 위해 사창으로 출장 중인 김경시의 부대는 본일 철수 도중 오후 1시에 광주군 마지면 馬雲村에서 폭도 함평군 鳥枝에 거주하는 金甲洙 21세를 체포해서 본부에 인계할 때 호송하는 순사에게 저항한 때문에 그를 총살함. 동인은 해산병으로써 김태원의 부하로 포수가 되어 어등산에서 패전한 이래 곳곳을 배회하며 살았던 자임. 위와 같이 보고함.

융희 2년 7월 27일
특설제2순사대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특설제2순사대는 본년 3월 1일 광주에 도착한 이래 이미 5개월을 경과함. 도착 당시는 폭도 수괴 기삼연이 이미 없어졌어도 김율 김태원 이하 각 수괴가 사방에서 할거하여 흉포함이 극심했음. 우리 순사대는 적극 토벌에 임하여 드디어 수괴를 殺獲하고 부하는 흩어져서 현재 정온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
전라남도가 차츰 정온한 상황으로 돌아감으로써 본년 6월 초부터 순사대는 점차 북진해서 각 지역에 근거한 폭도 집단을 격파하기 위해 다른 도로 전전한 건에 대하여 광주수비대장 德永 기병대위에게 자세히 말함. 덕영 기병대위는, 제2순사대가 광주수비대에게 배속되었기 때문에 동대 수비의 계획 중에 포함되어 사령관에게 간단히 보고하며 다른 도로 진격을 허락함. 단 순사대의 행동은 광주수비구역에 한하여 적의 동정을 얻어 추적한 경우 외에는 타 수비구역에 들어갈 수 없으며 回示를 받아 금일에 이르러 다른 지역으로 전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제2순사대를 설치한 초기에 이를 전라남도에 파견하고 적정을 얻는 것은 道의 여하한 물음은 멀고 궁핍해서 그 소명을 기하는 취지로써 남한수비대 지휘의 권한을 가진 남부수비사령관의 지휘을 받는 것으로 함. 전 도에 겨우 3개 순사대를 두어 적지 않은 경비를 투입하고 그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었음. 그 행동을 한 수비대의 수비구역에 국한한다는 내용의 취지에 있다고 믿음. 하물며 덕영 대위의 수비구역은 전남의 일부 수개 군에 그치고 있음.
위와 같이 1개의 수비대에 배속하여 행동을 제한할 경우에는 순사대 특설의 목적을 완료할 수 없음. 이와 같이 한 수비대에게 배속함에 이른 것은 주차사령부와 남부 수비사령관 및 남부사령관과 광주수비대 간에 우리 순사대의 사정을 소통하는데 태만한 것으로 인정됨. 이제 때가 더워져서 행동에 점점 곤란함이 더해짐. 순사대는 한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전라남북도

의 적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한 고로 군사령부에 대해 순사대는 남부수비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지방수비대장의 지휘를 받아 행동을 함께 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 행동이 한 수비구역에 국한하더라도 점차 넓게 활동해서 서로 교섭하여 양해를 받아 해결되기를 원함. 본건에 대한 덕영수비대장과 내부로부터 군사령부 교섭을 희망함. 위와 같이 갖추어 보고함.

융희 2년 10월 16일 全南警 제226호
전라남도경찰부장 경시 촌상칙정(村上則貞)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 전
폭도대토벌 개시 보고
관내 의병 세력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 거의 전도 각군에서 출몰 상황, 광주수비대(기병제1중대장 덕영대위)가 이를 소탕하기 위해 소속 각 분둔대와 제2특설순사대와 함께 11縱隊 편성. 10월 14일부터 약 2주간 예정으로 광주·화순·동복·능주·남평·순창·담양 7개 군에 걸쳐 대토벌작전 개시. 이에 호응하여 영암수비대(기병제3중대장 楠本대위)에서 그 소속 분둔대의 거의 모두 동원하여 남방으로부터 여러 개 分進隊를 편성하여 의병을 압박하기 위해 토벌을 개시하기로 예정함. 영산포헌병분대에 속한 각 헌병분견소에서 영광·함평·나주 각 군에 출몰하는 의병을 소탕하기 위해 본월 15일 약 2주간 예정으로 토벌대로 활동. 이상의 계획은 전라남도 거의 전부가 일제히 토벌대 활동을 시작하여 의병 진압에 다대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그 결과는 수시로 보고할 것.

융희 2년 10월 30일 순비발 제539호
특설제2순사대 경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순사대 해산에 따른 의견 제출, 전라남도 의병 상황의 개요.
1. 수괴 梁振汝 및 그 부하 梁相基, 부대장 曺某(正浩라고 함), 金某는 부하 약 80, 부대장 등과 별도로 활동하며 20-30명 인솔. 주로 광주·영광·장성 활동, 영광군 사창에서 정지척후 4명을 죽이고 그 총을 노획하여 지금 휴대하고 있음.
1. 수괴 김응백은 부하 약 30명, 광주 창평 담양 활동
1. 수괴 이대극(대국으로 오기-필자)은 약간의 부하, 나주·광주 활동, 심남일 등과 협력.
1. 수괴 심남일(실제 씨명 불명, 그는 호남 제일이라는 의미로 남일이라 칭함), 부대장 魯雙童, 동 姜武京, 동 李京玉은 부하 80명, 부장 등과 별도로 행동하며 20-30명 인솔. 장흥 영광 능주의 중간지대 활동. 심남일은 해산병으로 그 행동이 자못 교묘하여 헌병 기병을 죽이고 빼앗은 30년식 총 약간 보유.

1. 수괴 安齊元(안규홍의 오기-작성자)는 부하 약 50명, 주로 순천 보성 활동.

융희 2년 9월 27일
특설제2순사대 안등우웅
경무국장 송정무 전
영암지방 의병 상황을 보고, 영암의 의병은 약 1백명. 그 수괴는 심남일(35세), 선봉장 강무경(남평 출신, 39세), 중군장 이경옥(33세), 후군장 노쌍동(무안 출신, 30세). 이들은 30년식총과 수렵 한총을 보유하고 장흥 · 영암 활동. 토벌대의 예봉을 피하고 저격과 야간기습을 시도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활동.

5. 『全南暴徒史』[25]에 보이는 나주의병

제1장 總說
本道에서 봉기한 暴徒史實을 적음에 있어 편의상 이를 3期로 구분한다.
제1기 光武 10년(1906) 1월부터 隆熙 원년(1907) 12월까지
제2기 융희 2년(1908)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제3기 융희 3년(1908)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제1기의 대표적 巨魁는 崔益鉉 高光洵 奇參衍 등이며 모두 名門閥族 출신으로서 經書나 史記에 통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崔益鉉같은 사람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제2기에 이르러서는 이따금 놀고먹는 무리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義兵의 美名을 빌어 약탈을 하는 자가 있었다. 이 期의 대표적 거괴는 金泰元 金聿의 형제다.(8쪽)

(1907년) 10월 奇參衍이 茂長(현 全北 高敞郡屬面)과 高敞을, 12월에는 法聖浦(靈光郡)를 습격했는데 항상 石水庵 또는 靈光 王女峰(현 長城郡 森溪面 水玉里)에 屯集하면서 총병력 4백명으로 그 위세를 떨쳤다.

이달 金泰元이 羅州 三加面(현 光山郡 三道面)에 습래하였다.

이듬해(1908) 1월 巨魁 奇參衍이 潭陽을 습격했고 동월3일 金泰元이 咸平을 습격했다.

---

25) 『전남폭도사』는 全羅南道 警務課에서 1913년에 간행하였다. 이 자료를 전남일보에서 1977년에 번역, 출판하였다(李一龍 譯,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全南日報印書館, 1977). 잘못 기록된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나주의병과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 정리했는데, 오탈자와 같은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아 수록하였다. 자료의 말미 ( )에 번역본의 쪽수를 적었다.

奇參衍이 죽은 후 金泰元 金聿 형제가 여러곳에 출몰하였는데 관헌의 토벌기관이 점점 조여들고 또 大部隊의 행동이 어렵게되어 삼삼오오 흩어져 각지에 잠복하면서 야간약탈을 하고 아울러 그들의 원수인 일진회원을 마구 죽이는 등 교묘하게 관헌의 손을 피해 兇行을 저질렀으나 3월 19일 光州郡鼎洞(현 光山郡 松汀邑) 전투에서 패해 이마무라중대(今村中隊)에 동생 金聿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형 泰元은 계속 여러 곳에 출몰하여 관헌과 회전하였으나 咸平 烏山(현 光山郡 林谷面 烏山리)전투에서 토벌대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융희2년(1908) 4월25일의 일이었다. 이날 金聿은 형 泰元의 시체확인을 위해 관헌에게 연행도중 도주를 기도해 총살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제2기에 있어서의 거괴는 모두 사라져 각 군의 경우 평온을 되찾았다고는 하나 강용언(姜龍彦)이 順天에, 임창모(林昌模) 安圭洪이 寶城에, 김동신(金東臣, 金容球의 誤記로 추정-작성자)이 靈光에 있고, 조경환(曺京煥) 전해산(全海山) 강사문(姜士文) 김기순(金基順) 오재수(吳在洙) 양진여(梁振汝) 조정인(趙正仁) 임선달(林先達)의 도당이 각지에서 출몰했다.(13~15쪽).

(1909년) 7월에 들어서 全海山이 우리 토벌기관의 중압(重壓)을 못이겨 부대를 해산하고 全北에 숨었고, 沈南一은 부하가 흩어져 겨우 姜武京이하 수십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朴士化는 오하라(大原) 헌병대위에게 회견을 청하고 부하의 투항조명(投降助命)을 청하기에 이르렀다.(17쪽)

(1907년) 12월 25일 오후 10시 羅州 三加面(현 光山郡三道面) 면장 柳宜根 집에 金泰元 휘하의 30여명이 침입하여 그를 납치, 동면북쪽 산속에서 총살했다. 이 급보를 받은 羅州경찰서원이 달려가 수사했으나 아무 성과도 없었다.(30쪽)

(1908년) 1월 3일 거괴 김율(金聿)의 부하 1백여 명이 咸平주재소에 내습했다. 순사 2, 우편취급소장 및 재류민 2명이 응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務安郡 鶴橋(현 咸平郡屬面 · 학다리)로 후퇴했는데 이들의 소지품은 모두 약탈당했다. 토벌대(순사 · 헌병)가 추격하여 羅山에서 회전했으나 곧 산속으로 달아나 종적을 감추었다.(33쪽)

(1월 17일) 咸平郡 平陵面(현 羅山面) 金先達 집에 거괴 金泰元의 부하 20명이 침입하여 한전 1천관을 약탈해갔다. 경찰관이 급행하여 수사했으나 아무 성과도 없었다.(33쪽)

1월 22일 거괴 奇參衍 金泰元 및 金聿의 연합집단 4백여명이 재차 咸平주재소를 습격했다.

순사 3, 헌병 1명이 즉각 응전했으나 하다노순사(波多野巡査)가 전사했고 탄약마저 떨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木浦분견소장 이하 6명이 來援, 교전 8시간 만에 이를 격퇴했다.(34쪽)

1월 하순 거괴 奇參衍이 排日檄文을 돌리고 아울러 日人官民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또한 거괴 金聿 등도 격문을 각 방면에 돌려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했다.(35쪽)

2월 2일 오전 7시 昌平郡 內南面 芝谷(현 潭陽郡 南面 屬里)에 폭도 3백명이 모여 있다는 정보가 있어 주재소 순사 5, 光州수비대 하사 이하 6명이 합동 수색하여 外南面 無等里(현 潭陽郡 南面 茂洞里 茂洞村)에서 충돌, 가와미쯔 조장(川滿曹長)과 하야시 상등병(林上等兵)이 전사하고 卒 2명이 부상함에 한쪽의 혈로(血路)를 뚫고 퇴각했다. 光州에서 지원대가 급히 출동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35~36쪽)

(1908년) 3월 20일 오후1시 光州, 長城 양 수비병과 기병의 연합대가 長城郡 南三面 月岩(현 黃龍面 黃龍里 月岩마을)에서 거괴 金泰元이 이끄는 약 60명과 5시간 동안 교전하여 적 4명을 죽이고 화승총 4정과 기타 잡품을 노획했다. 다나까(田中) 스에노베(末延) 양 일등졸이 부상했다.(38~39쪽)

3월 29일 오후 1시 光州수비 이마무라(今村) 이구마(伊熊) 양 중위가 이끄는 토벌대가 光州郡 所旨面 鼎洞(현 光山郡 松汀邑)에서 거괴 김율(金聿)의 부하 20명과 만나 1시간 동안 교전하여 5명을 죽이고 추격 수색 결과 所旨面 新基里(현 光山郡 松汀邑)에서 우두머리 金聿을 체포했다.(40쪽)

4월 14일 羅州郡 官洞面 回龍(현 光山郡 平洞面 龍洞里)에 총을 든 비도 15명이 내습하여 이 마을의 김정운(金正云)과 이사홍(李士弘)을 구타하고 엽전 4백냥을 약탈 도주했다. 羅州경찰서원이 급히 출동했으나 아무 성과도 없었다.(42쪽)

(1908년) 4월 19일 光州수비 도꾸나가 기병대위(德永騎兵大尉)가 거괴(巨魁) 김태원(金泰元)의 소탕을 위해 8개 종대(八個縱隊)를 편성하고 앞으로 15일간 행동하기로 했다.(43쪽)

4월 20일 月坪(현 黃龍面 月坪里) 분둔(分屯) 순사대가 金泰元의 후군장(後軍將) 김옥현(金玉鉉) 외 3명을 체포하고 그 주력(主力)이 우두머리를 추적중 돌연 폭도 약 50명 역습해 와 포로

를 감시중이던 김경시(金警視)가 순사 1명과 함께 분전 혈로를 뚫고 민가에 피난했다. 이 틈에 김모(金某) 외 3명은 도망했고 金경시는 좌측대퇴부(左側大腿部)에 중상을 입었다.(43쪽)

4월 25일 기병(騎兵) 및 특설순사대(特設巡査隊) 순사로 편성된 토벌대가 예정계획에 따라 수색중 거괴 김태원(金泰元)이 咸平郡 烏山面 朴山洞(현 光山郡 林谷面 博湖里 博山부락)에 잠복하고 있음을 탐지, 즉시 출동하여 이날 오후 4시 이를 포위공격, 거괴 金 이하 13명을 죽이고 화승총 3정과 기타 잡품을 노획했다.

수괴(首魁) 金泰元

羅州群 居平面 葛馬池(현 文平面 北洞里) 출생. 연령 30세. 휘(諱)는 김준(金準). 金聿의 형이다. 융희 원년(隆熙元年 1907) 11월 동생 金聿 및 奇參衍 등과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켜 그 세력이 한창일 때에는 부하가 2백명이 넘었다. 羅州부근을 본거지로 하여 咸平, 長城, 靈光, 潭陽 각 군에 횡행하면서 교묘하게 관헌(官憲)의 손을 피했는데 융희(隆熙) 2년 2월 우리 토벌대와 長城郡 西二面(현 黃龍面 일부)에서 싸워 크게 패한 후 점차 세력이 쇠퇴했다. 동년 4월 咸平郡 烏山面 朴山洞(현 光山郡 林谷面 博湖里 博山부락)에서 우리 토벌대와 또 싸워 대패(大敗)하여 드디어 전몰(戰歿)했다.(44~45쪽)

4월 25일 거괴 김율(金聿)을 총살했다. 앞서 우리 토벌대는 光山郡 所旨面 鼎洞(현 光山郡 松汀邑)에서 그를 체포했는데 4월 25일에 전몰한 金泰元의 시체확인을 위해 연행도중 도주를 시도함으로써 살해되었다.

거괴(巨魁) 金聿

羅州郡 居平面 葛馬池(현 文平郡 北洞里) 출신. 연령 27세. 한서(漢書)를 읽고 다소 문필(文筆)에 능하다. 스스로 박사(博士)라 칭하고 성품이 완미(頑迷)하고 항상 배일사상(排日思想)을 품고 한국의 대관(大官)이 일본(日本)에 아부하여 3천년의 예의(禮儀)의 고국(古國)을 판다고 개탄, 융희원년(隆熙元年 ; 1907) 11월에 거괴 奇參衍 및 형 金泰元 등과 호응하여 도당을 모아 그 세력이 한창일 때에는 부하가 2백명에 이르렀다. 隆熙 2년 3월 咸平郡 竹山(현 月也面 月也里 2區 대매부락)에서 우리 토벌대와 싸워 여지없이 패해 세력이 쇠퇴하였고 드디어 光州郡 所旨面(현 光山郡 松汀邑)에서 우리 토벌대에 생포되었는데 도주를 꾀하다 총살되었다.(44~45쪽)

5월 25일 羅州郡 平里面 今洞(현 光山郡 平洞面 龍洞里)에 폭도 약 50명이 내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羅州경찰서원 및 헌병대가 오후 8시 今洞에 도착했는데 적은 지물(地物)을 이용하여 사격을 가해왔고 아군도 이에 응전함으로써 격전 2시간 만에 1명을 죽이고 3명을 포로하

고 격퇴했다. 화승총 2정과 양총(洋銃) 1정을 노획했다.(48쪽)

(6월 15일) 폭도 수괴 조정인(趙正仁)이 羅州郡 三加面 新村(현 광산군 三道面 新洞里 屬村)에서 나주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었다.(53쪽)

(7월 20일) 南平주둔 헌병대가 同郡 道川面 白洞(현 羅州郡 茶道面 岩亭里)에서 약 50명의 폭도와 충돌, 교전 1시간 만에 이를 격퇴했는데, 5명을 죽이고 화승총 1정을 노획했다.

7월 25일 오후 1시 南平주둔 미야자와 상등병(宮澤上等兵) 외 2명이 南平郡 竹山面 長垢店(현 羅州郡 鳳凰面 閣東里 장구매)에서 폭도의 집단을 공격, 이를 격퇴했으나 잔당(殘黨)이 부근 산속에서 저격하는 바람에 미야자와상등병이 부상했다. 적의 사자(死者) 7명.(56쪽)

(8월 5일) 羅州郡 郁谷面(현 봉황면과 旺谷面에 編入) 이관오(李觀五) 집에 총을 휴대한 비도 17명이 내습, 음식을 강요하고 돈 75원을 약탈했다. 경찰관이 급히 달려가 수사했으나 종적을 알 수 없었다.(57쪽)

(8월 5일) 1백여 명의 폭도가 나주군 馬山面 海潮浦(현 왕곡면 松竹里)에 내습, 榮山浦 재류민 야마가와모(山川某)가 소유하는 창고감시인(倉庫監視人)을 협박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일 폭도 20명이 다시 내습, 그를 협박 지폐 65원을 강탈했다.(57~58쪽)

(8월 15일) 새벽 나주군 마산면 해조포(현 왕곡면 송죽리) 창고에 내습, 잡품을 강탈했다. 토벌대가 급히 달려갔으나 알 수 없었다.(59쪽)

10월 13일 수괴 조경환(曺京煥)이 이끄는 약 8명이 羅州郡 伏岩面 活乃洞(현 老安面 長洞里 內洞부락) 최민활(崔珉活) 집에 침입, 금품 3백여 원을 약탈했다.(68쪽)

10월 17일 오전 3시 히라노 토벌대(平野討伐隊)기 나주군 道林面(현 광산군 삼도면)에서 거괴 전해산(全海山)이 이끄는 1백50명의 폭도와 충돌, 이를 궤란(潰亂)시켰는데 3명을 죽이고 화승총 5정을 노획했다.(68쪽)

(12월 2일) 밤 나주군 金安面(현 노안면 金安里)에 총을 든 비도 10명이 내습, 서광삼(徐光三) 정길중(鄭吉仲) 집에서 농우(農牛) 1마리씩을 약탈해갔다.(76쪽)

12월 29일 오후 12시 폭도 약 30명(화승총 30)이 모두 총을 들고 나주군 伊老面 新基村(현 노안면 良川里 속촌)에 내습, 이 마을에 사는 황도현(黃道玄)을 납치하여 총살했다. 나주경찰서원이 급히 출동, 수사했으나 단서를 얻지 못했다.(81쪽)

융희(隆熙) 3년(1909) 1월 1일 오전 3시 총을 휴대한 비도 약 1백명이 나주군 古幕院(현 文平面 玉堂里 속촌) 분견소에 내습, 소원이 교전하여 이를 격퇴했는데 보조원 2명이 즉사했다. 학다리주재소(鶴橋駐在所)와 木浦경찰서원이 지원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으나 이미 교전 후여서 종적을 알 수 없었다.(84쪽)

(1월 5일) 오후 5시 古幕院(현 나주군 문평면 옥당리 속촌) 헌병분견소 헌병이 전사(戰死)한 보조원의 시체를 호송중 侍郎面 文岩里(현 나주군 多侍面 佳雲里 屬村)에서 약 50명의 비도로부터 저격을 받아 보조원 1명이 전사했다. 일행은 즉시 추격했으나 종적을 잃었다.(85쪽)

1월 19일 榮山浦헌병분대 제1, 제2의 양구연합토벌대(兩區聯合討伐隊)가 나주군 水多面 草洞(현 多侍面 永洞里 속촌)에서 거괴 심남일(沈南一) 및 박민홍(朴民洪)이 이끄는 약 1백50명의 적과 교전하여 3명을 죽이고 격퇴했다.(88쪽)

(1월 21일) 榮山浦 제1, 제2 양구연합토벌대(兩區聯合討伐隊)가 나주군 郁谷面 九川洞(현 왕곡면 月川里 속촌)에서 수괴 박사화(朴士化)가 이끄는 약 1백50명의 적을 공격, 3명을 죽이고 이를 격퇴했다.(89쪽)

1월 25일 오후 5시 榮山浦 분견소 연합토벌대가 나주군 馬山面 興洞(현 왕곡면 新浦里 속촌)에서 수괴 박사화(朴士化)가 이끄는 약 70명의 적을 공격, 화승총 2정을 노획했다.(89쪽)

2월 4일 오후 11시 수괴 오참봉(吳參奉)이 이끄는 약 1백20명의 비도가 나주군 新村面 曲龍洞(현 나주읍) 나귀종(羅貴宗)의 집에 침입, 현금 12냥을 약탈하고 그를 납치했다.

2월 5일 榮山浦-羅州 간의 도선장(渡船場) 비珠洞(현 나주읍 土界里?)에 약 60명의 비도가 습래, 1명을 총살하고 나모 외 1명을 결박하여 납치했다. 토벌대가 즉시 출동했으나 이미 도주한 후여서 얻은 것이 없었다.

2월 6일 오후 4시 토벌대 사까구찌군주(坂口軍曹) 이하 12명이 나주군 馬山面 內洞(현 왕곡

면 新浦里 속촌)에서 수괴 박민홍(朴民洪)이 이끄는 약 1백명을 공격, 11명을 죽이고 이를 격퇴했는데 화승총 8정을 노획했다.(90~91쪽)

2월 26일 에리구찌(江里口) 스스무(進) 양 토벌대가 영산포 鐵川(현 나주군 영산포읍 雲谷里) 부근에서 박명홍(朴明洪-朴民洪과 동일인)이 이끄는 약 2백명의 적단과 충돌, 이를 궤란시켰다.(94쪽)

2월 27일 오후 5시 영암대 이구마중위(伊熊中尉) 이하 12명이 靈巖 동북쪽 金山 동쪽 고지에 웅거한 박명홍(朴明洪)이 이끄는 70명의 적을 공격, 해가 질 무렵에 이를 격파했는데 수괴 박(朴) 이하 23명을 죽였다.(94쪽)

3월 13일 오후 5시 南平분견소 헌병 2, 보조원 3명이 光州郡 大枝面 大池里(현 광산군 大村面 大枝里)에서 수괴 오성술(吳成述)이 이끄는 약 60명의 폭도와 충돌, 5명을 죽이고 한총 1, 군도1을 노획했다.(97쪽)

3월 19일 오전 3시 羅州와 기맥(氣脈)을 통하기 위해 羅山에서 파견된 상등병 이하 3명이 오후 6시 國子洞(현 나주군 文平面 國洞里 國士村) 언덕에서 저격을 받고 응전 중 오오무라대(大村隊)가 내원(來援)해서 이를 격퇴했는데 적 3명을 죽이고 화승총과 기타 잡품을 노획했다. 한국인 인부 1명이 죽었다.(99쪽)

4월 18일 오전 8시 古幕院분견소 하사 이하 18명이 나주군 竹浦面 直門里(현 다시면 文洞里 曾文부락)에서 수괴 나성화(羅成化)가 이끄는 80명과 충돌, 8명을 죽이고 9명을 포로했다. 노획물은 화승총 14, 군도 4.(103쪽)

(6월 1일) 榮山浦분대 東倉파견소원이 靈巖郡 北二終面 梨木洞(현 新北面 梨泉里 梨木洞) 남쪽 고지에서 수괴 박사화(朴士化)가 이끄는 적도 약 50명과 충돌, 5명을 죽이고 화승총 4정을 노획했다.(115쪽)

6월 7일 오후 11시 古幕院분견소 鳥洞場파견소원이 나주군 茅界面 通門洞(현 文平面 玉堂里 屬村)에서 적괴 나성화(羅成化)가 이끄는 약 50명의 비도와 충돌, 5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다.(116쪽)

6월 27일 야밤 비도 약 60명이 모두 총기 또는 칼을 휴대하고 나주군 曲江面 永洞里(현 洞江面 曲川里 屬村) 김종대(金鍾大) 집에 난입, 엽전 2백80냥을 약탈했다. 동일 해뜰 무렵 同郡 田旺面 良地里(현 왕곡면 良山里 屬村) 김소사(金召史)를 묶고 엽전 58냥을 약탈했다.(119쪽)

7월 14일 폭도거괴(暴徒巨魁) 박사화(朴士化)가 榮山浦 분대장 오오하라대위(大原大尉)에게 편지를 보내 회견을 청했다. 대위는 이를 수락하고 이날 정오 나주군 上谷面(현 公山面)의 무명촌에서 회견했다. 회견의 요지는 투항의 뜻을 비치고 자기 한 몸을 버려 부하 1백여 명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대위는 후일에 확답할 것을 약속했으며 박(朴)도 이를 수락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대위의 노고를 위로했다.(124쪽)

(7월 18일) 수괴 박사화(朴士化)의 부하 15명이 총기 8정을 들고 榮山浦분대에 투항해 왔다. - 7월 19일 박사화의 선봉장 김선중(金善仲)이 榮山浦분대에 투항했다. 박사화도 투항했으나 이날 밤 도주했다.(126쪽)

8월 15일 오후 10시 수괴를 알 수 없는 총을 든 비도가 나주군 三加面 細洞里(현 광산군 三道面 松山里 속촌)에 내습, 마을 주막 최성진(崔聖振)을 총살했다. 토벌대가 급히 출동했으나 종적을 잃었다.(130쪽)

(8월 30일) 오전 4시 수괴 박사화(朴士化)가 이끄는 약 50명이 영암군 西終面 毛亭里(현 郡西面 茅亭里)에 내습, 이장 김중승을 살해하고 동민 3명을 납치, 잡품을 약탈했다. 토벌대가 추적했으나 종적을 잃었다.(135쪽)

(9월 25일) 제5중대 요시다조장(吉田曹長) 이하 7명이 長興 부근에서 폭도수괴 권택(權澤)을 체포했다.

權澤

南平郡 郁谷面 九禮洞(현 나주군 旺谷面 月川里 屬村) 25세

벼슬을 한 적이 없고 작위영전(爵位榮典)도 없음. 경서(經書)에 능통하며 담력이 커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았다. 융희(隆熙) 원년(1907) 6월 기삼연(奇參衍)의 부하가 되었고, 奇가 죽은 후 자칭 대장(大將)이 되어 융희 2년 6월 도당을 모아 德山에서 거사했다. 동 3년 2월 관헌의 중압(重壓)을 못견뎌 행적을 감추고 구세군(救世軍)에 들어가 현재 부위(副尉)의 계급에 있는데, 長興郡 汭陽里(현 장흥읍 屬里)에서 체포되었다.(137~138쪽)

나주 출신 귀순자 일람표

면이하 주소(직업)	성명	연령	귀순 연월일	귀순 후의 상황 행동
道林面 石岩村(農)	金敎豊	51	1908.2.12	농사에 전심하고 있으며 다시 비도가 될 우려없음
도림면 佳山(농)	柳貞烈	21	〃	〃
茅界面 蓮洞(농)	張東文	22	2.14	〃
거평면 죽곡(농)	朴采洪	29	2.19	〃
〃 (商)	尹万在	38	〃	〃
모계면 연동(상)	羅明煥	46	〃	〃
〃 (농)	羅華旭	27	〃	〃
〃 (농)	李澤圭	28	〃	〃
거평면 葛馬地(농)	李福圭	29	2.24	〃
삼가면 宋洞(농)	吳元圭	28	4.13	〃
도림면 松內(농)	南廷德	49	4.3	〃
官洞面(농)	李京用	52	5.6	농업에 전심하고 있어 딴 유혹을 받을 우려없음
삼가면 雲坪(농)	鄭景泰	36	〃	농업에 전심하고 있어 다시 폭도가 될 우려없음
도림면 方洞(농)	朴炳吉	26	5.5	〃
삼가면 宋洞(농)	吳日善	25	〃	〃
관동면 蓮洞(농)	金自和	42	〃	〃
삼가면 細洞(농)	金重鉉	30	〃	〃
〃	吳彩洙	30	5.23	〃
관동면 木村(농)	林學善	36	5.14	〃
〃	李鳳雲	26	〃	〃
복암면 店嶝(농)	曺明寬	40	6.10	〃
양리면 谷店(농)	金周參	37	〃	〃
관동면 條洞(농)	金喜化	29	〃	〃
나주읍 亭子洞(농)	金正泰	23	6.27	〃
삼가면 細洞(농)	崔成辰	32	7.15	〃

(146~152쪽)

6.『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에 보이는 나주의병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오성술 의병장, 뒷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나성화 의병장,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사화 의병장

권택 의병장

참고문헌

〈한국 측 자료〉

『舊韓國官報』 / 京鄕新聞 / 大韓每日申報 / 皇城新聞 / 독립신문

鄭錫珍, 『蘭坡遺稿』

李炳壽, 「錦城正義錄」

吳駿善, 『後石遺稿』

奇宇萬, 『松沙先生文集』 ; 『송사집』 1~18,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흐름출판사, 2020~2021.

『隋城崔氏世譜』, 1921.

『隋城崔氏世譜誌狀錄』·『隋城崔氏世譜』丙編, 1955.

黃玹,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

『東學亂記錄』 下, 국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의병항쟁 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邊相轍·邊萬基 외, 『鳳棲·鳳南日記』, 국사편찬위원회, 1979.

申箕善, 『奉使日記』, 『陽園遺集-申箕善全集』, 아세아문화사, 1981.

『密陽朴氏淸齊公派家乘譜』, 호남문화사, 1988.

丁潤國 편, 『羅州牧誌』, 1989.

『國譯 錦城邑誌』, 나주문화원, 1989.

『潭陽郡邑誌』, 규장각 소장, 규 10784 : 『鄕史의 脈』 제4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1992.

박찬승 편, 『羅州近代百年史-신문자료집성(1887-1960)』, 나주시·목포대학교박물관, 1997.

홍영기 편, 『義重泰山』, 죽봉김태원의병장기념사업회, 1998.

홍영기 편, 『정석진과 蘭坡遺稿』, 순천대 지역개발연구소, 2010.

趙熙濟, 『念齋野錄』, 1950 ; 金濬 역, 고려대 역사연구소·신아출판사, 2017.

〈일본 측 자료〉

『第二巡査隊에 관한 編冊』, 내부 경무국, 1908.

『暴徒에 관한 編冊』, 내부 경무국, 1907~1909 ; 『韓國獨立運動史』 자료 8~19, 국사편찬위원회, 1979~1990.

『朝鮮暴徒討伐誌』, 조선주차군사령부, 1913 ; 『독립운동사자료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폭도사편집자료』, 내부 경무국, 1909 ; 『독립운동사자료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陣中日誌』 Ⅰ~Ⅲ, 제14연대, 1907~1909 ; 토지주택박물관, 2010.

『全南暴徒史』, 전라남도 경무과, 1913 ; 이일룡 역, 『비록 한말전남의병투쟁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統監府文書』 2, 국사편찬위원회, 1998.
『한말의병전쟁자료집 暴徒檄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선인, 2000.
『노사학파가 기록한 호남의병열전』, 홍영기 김은영 외 편역, 사)노사학연구원, 2019.

〈연구서〉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省齋奇參衍先生傳』, 기호원 편, 1990.
『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史 硏究』, 홍순권, 서울대 출판부, 1994.
『義重泰山』, 홍영기 편, 죽봉김태원의병장기념사업회, 1998.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홍영기, 일조각, 2004.
『한말 전기의병』, 김상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말 중기의병』,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말 후기의병』, 홍영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호남의병장 전해산』 상·하, 이태룡 엮음, 삼조출판사, 2010.
『나주독립운동사』, 윤선자 외, 나주시, 2015.

〈연구논문〉
李光麟, 「安宗洙와 『農政新編』」 改訂版 『韓國開化史硏究』, 일조각, 1969 ; 1985.
정원길, 「鶴皐 鄭燾洪先生 抗日義擧記」, 영문화사, 1987.
조동걸,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의 位置」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맹수, 「鄭錫珍의 『蘭坡遺稿』」, 『錦湖文化』, 1992년 8월호.
홍영기, 「1896年 羅州義兵의 結成과 活動」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下, 일조각, 1994 ;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조동걸, 「외롭게 산화한 나주의 아전의병」,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의 길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奎章閣』 18, 1995.
이상찬, 「1896년 의병운동의 정치적 성격」,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상찬, 「1896년 의병과 명성왕후 지지세력의 동향」 『한국문화』 20, 1997.
이상찬, 「갑오개혁과 1896년 의병의 관계」, 『역사연구』 5, 역사학연구소, 1997.
박진철,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 향리가문의 동향」, 『大東文化硏究』 44, 2003.
배항섭, 「1896년 나주 향리층의 의병주도와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51, 2005.

배항섭, 「중 · 후기 의병전쟁 시기 나주 지역 향리층의 동향」『한국사학보』 23, 2006.
박이준, 「한말 의병과 나주」, 『羅州市誌』, 2006.
홍영기, 「한말 나주의병의 주도인물과 활동」, 『韓國學論叢』 34, 2010.
조일형, 「역주『송사집』」, 전남대학교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9.
전라남도교육청, 「남도 민주평화 길 체험학습 자료집-나주」, 2020.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국가기록원 -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https://kyu.snu.ac.kr

집필
홍영기(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배항섭(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정다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원)

편집·교정·교열
선영란(나주시 학예연구사)
김태례(미디어민 대표)

나주의병사 3
자료편(구한말 나주의병)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처 나주시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전화 061)339–4605 팩스 061)339–2922
펴낸곳 미디어민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60
전화 062)971–0923 팩스 062)971–0929

비매품/무료
94090
9 791198 148858
ISBN 979–11–981488–5–8
ISBN 979–11–981488–2–7 (세트)

이 책의 저작권은 나주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단 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南平縣
光州界
龜山
東村面
鳳凰山
和順界
衙
客舍
倉
書院
鄉校
南山
縣內面
金山面
頭山面
錦城界
道乙介面
等介面
魚川面
倉
西
竹谷面
德谷面
綾州界
猪浦面
南倉
九峯山
方谷面
茶峙面
佛會寺
長興界
錦城界